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Ⅰ)

2019. 9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Ⅰ)

2019. 9

기 획 재 정 부

보조사업평가단

목 차

제1부 서 론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3
2. 국고보조금의 기능 ····· 5
3. 국고보조금의 유형 ····· 6
4.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 10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 13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 14
3. 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 14
4.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 15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1. 법적근거 ····· 24
2.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특징 ····· 24
3.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 25
4. 2019년 평가단 구성 ····· 28
5. 평가 절차 ····· 30
6. 평가 기준 ····· 31

제2부 평가결과 분석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 ····· 37
2.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 ····· 37
3. 판정유형별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 ····· 38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1. 부처별 최종 판정결과 ····· 39
2. 부처별 세부사업 최종 판정결과 ····· 45

제3장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1. 보조사업 재평가 개요 ····· 66
2.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 66

제3부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1. 대법원 ····· 77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87
3.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 99
4. 기획재정부 ····· 109

5. 교육부 ····· 1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91
7. 외교부 ····· 299
8. 통일부 ····· 319
9. 법무부 ····· 381
10. 국방부 ····· 411
11. 행정안전부 ····· 431
12. 문화체육관광부 ····· 541
13. 농림축산식품부 ····· 935
14. 산업통상자원부 ····· 1303
15. 보건복지부 ····· 1521
16. 환경부 ····· 1787
17. 고용노동부 ····· 1917
18. 여성가족부 ····· 1997
19. 국토교통부 ····· 2073
20. 해양수산부 ····· 2187
21. 중소벤처기업부 ····· 2387
22. 국가보훈처 ····· 2507
23. 식품의약품안전처 ····· 2527
24. 국가인권위원회 ····· 2581
25. 방송통신위원회 ····· 2595
26. 금융위원회 ····· 2695

27. 국민권익위원회 ····· 2703
28. 방위사업청 ····· 2713
29. 경찰청 ····· 2725
30. 문화재청 ····· 2735
31. 농촌진흥청 ····· 2847
32. 산림청 ····· 2901
33. 특허청 ····· 2981
34. 새만금개발청 ····· 3011
35. 해양경찰청 ····· 3019

제1부 서 론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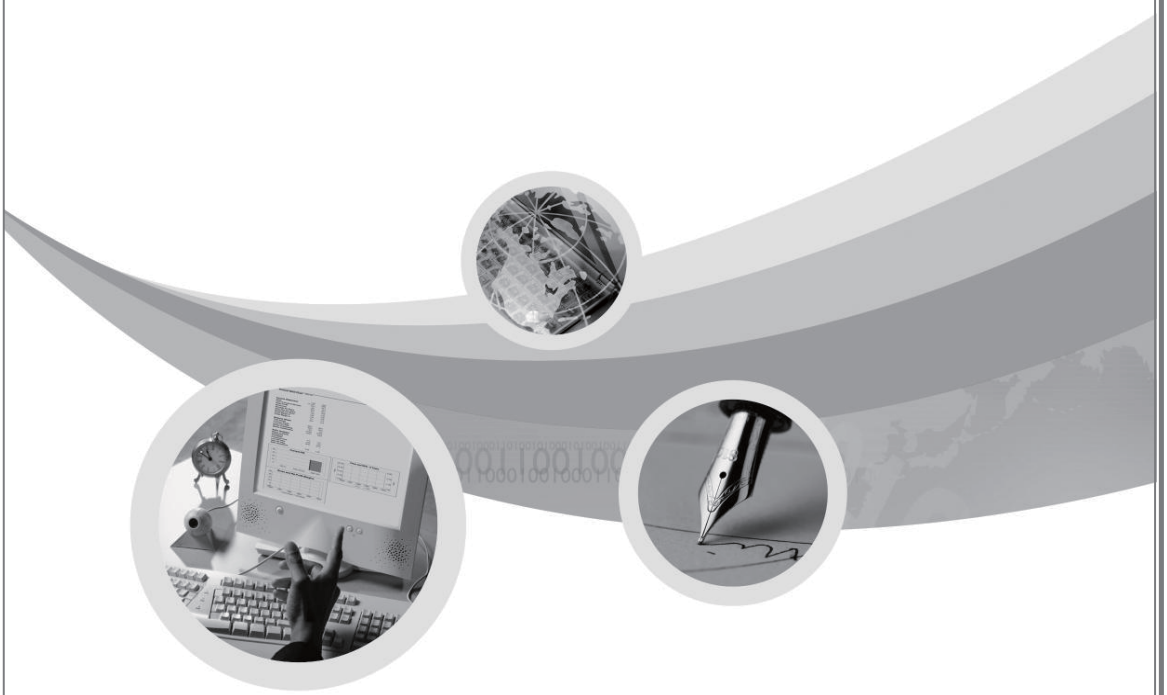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임

○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목적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분야의 서비스)

○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사업)

○ 재해 지역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 복구 사업)

○ 신규사업의 보급·장려(혐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독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 가능)

□ 정부 간 재정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이유는 ①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 ②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전자의 이유는 주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 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동시에 지역 간 세원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존재 이유임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수단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가 있는데, 이들 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음

○ 국고보조금 제도

- 국가와 지방 간 서로 이해가 얽혀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무(사업)를 실시할 때, 일정한 행정수준의 확보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지원(교부, 부담, 보조)하는 제도

○ 지방교부세 제도

- 국가수입 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려는 제도

<표 1-1>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비교

구 분	국 고 보 조 금	지 방 교 부 세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재 원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재원성격	특정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배 분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확보 의무	재원부족액 기준배정

2. 국고보조금의 기능

□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공공재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능을 수행함

- ㅇ 특정 공공재에 대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도록 보장함
- ㅇ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케 함
- ㅇ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함

□ 이러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과 지방정부의 입장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중앙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음

- ㅇ 의무교육, 사회보장 등 국민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정에 대해 국가적으로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ㅇ 산업의 발전이나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정비를 중앙정부가 별도의 지방단위 행정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음
- ㅇ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서비스를 권장하여 조장하고자 하는 사무·사업의 보급향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 ㅇ 국가가 실시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국민의 이익에 합치하고 통제의 효율화를 확보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 입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 ㅇ 국고보조금의 지출대상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 ㅇ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심한 경쟁과 불신을 초래하는 병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실시가 필요가 있는 사업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함으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투자의 비효율성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만, 보조금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이와 같은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s)로 인해 지방재정이 필요이상으로 팽창하여 방만한 재정운영 관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서 부과하고 있는 수준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여 지방재정 운영을 경직화시킬 수 있음

3. 국고보조금의 유형

□ 보조금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② 보조금 지출 상 일정의 지방비부담(Matching Fund) 방식의 차이, ③ 보조금 규모의 제한성 여부, ④ 법적 근거와 경비부담 기준 ⑤ 보조율의 차등 여부, ⑥ 보조금의 교부조건, ⑦ 보조금 시행주체, ⑧ 보조금의 신청 여부, 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1) 보조금의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함

-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특정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능적 보조금(Functional Grants)을 의미함

○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함

(2) 지방비 부담방식 기준: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

○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사업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형태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정률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기도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 특정한 사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임·

- 정액보조의 방법은 보조대상이 되는 사무·사업의 양을 표시하는 일정한 수량에 일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개개의 사무나 사업마다 일정액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기준 : 개방형보조금과 폐쇄형보조금

○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 중앙정부가 분담할 비중만을 결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비용부담 보조금의 한 유형임

-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부담을 하는 한 어떤 공급수준이라도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함이 없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됨

○ 폐쇄형 보조금(Closed-Ended Grants) : 보조금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비용부담 보조금이지만 보조대상이 되는 지방공공서비스가 일정한 공급수준을 초과해서 과잉공급되는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모든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음

- 따라서 폐쇄형 보조금은 재원사용의 효율화와 부당한 보조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음

(4)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

○ 부담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그 기관에게 법령에 의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의 일종임

-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법령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의의 국고보조금임

○ 교부금 :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임

- 따라서 관련 소요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

○ 협의의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로서 장려적 보조금이라고도 함

(5) 보조율의 차등 기준 : 일률보조금과 차등보조금

○ 일률보조금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을 의미함

○ 차등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임

- 차등보조의 방법에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10%, 15%, 20% 등)을 가감하여 인상·인하 보조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
- 차등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역 간 재정적 격차문제를 완화해 줄 수 있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균등화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조금을 통한 재정균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6) 보조금의 교부조건 여부: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의 준수를 제시하는 교부조건(예컨대,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 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 보조금임

- 따라서 특정보조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으로서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시점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

○ 포괄보조금(Block Grants) :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를 요구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보조금임

- 포괄보조금은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임

- 따라서 포괄보조금은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그 총액과 비도의 범위만을 지정해 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음

(7) 보조금의 시행주체 기준: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

○ 직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보조금이 여기에 속함

○ 간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 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양식어장사업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케 하고 있음

(8) 보조금의 사전신청 여부: 신청보조금과 무신청보조금

○ 신청보조금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하려는 자에게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받는 보조금임

- 보조금 신청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사가 보조사업에 반영되고, 보조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유도하며,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필요성,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청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있음

○ 무신청보조금 : 지방정부의 보조금 신청이 없더라도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중앙정부가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 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임

(9)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

○ 이밖에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4.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예산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신청주의 도입(동법 제4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함

- 이러한 신청주의는 보조금 예산편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지방비부담 협의 및 의무(동법 제7조, 제13조)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

- 지방비협의의 필요성은 중앙 각 부처로부터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자의적으로 편성 운영되는 경우 타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임

○ 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설정(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 보조금은 그 지급의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최근 2016년 12월 기준, 122개 사업유형별로 정해져 있음

- 기준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성 있는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을 적정화를 위해 설정된 것임
- 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차등보조율제도 도입(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일정률(20%, 15%, 10%)을 가산하는 인상보조율과 기준보조율에 일정률(20%, 15%, 10%)을 차감하는 인하보조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등화의 기준은 적용대상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임
-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제한(동법 제14조) :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 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동법 제15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 외의 모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를 위하여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의무지출사업(국가재정법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보조금의 교부조건(동법 제18조)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영세·유사보조금의 통합운영(동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8조)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내역을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내의 유사한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의 유사한 영세보조금의 통합은 영세보조금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재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보조금의 용도제한 및 반환(동법 제22조, 제31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 기관에 재교부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①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② 당초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③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④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임
- 여기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동일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함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 2019년의 경우,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77.9조원이 지원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9년의 경우에는 2018년 대비 11.0조원 증가하였음. 정부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증가율이 5.8%이나 국고보조금의 규모의 평균 증가율은 7.5%로 나타나고 있음

<표 1-2>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정부총지출(예산기준) 추이(2015~2019)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 보조금 규모(조원)	58.3	61.4	59.6	66.9	77.9	7.5%
· 자치단체보조	45.1	46.7	46.4	50.2	58.8	6.9%
· 민간보조	13.3	14.7	13.2	16.8	19.1	9.5%
○ 정부 총지출(조원)	375.4	386.4	400.5	428.8	469.6	5.8%
○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규모	15.5%	15.6%	14.9%	15.6%	16.6%	1.7%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국고보조금을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민간보조는 전체 보조금의 약 24.5%(19.1조원), 자치단체보조는 75.5%(58.8조원)를 차지하고 있음

○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 보조금보다 전체 비중은 낮지만, 일단 지원되고 나면 민간보조사업자들이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축소 또는 폐지가 어려우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가재정지출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국고보조사업 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여 국가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

○ 이와 동시에 국고보조금의 급증은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도 작용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음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및 관련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이 설정되어 있음

○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122개 사업 분야에 적용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및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가 마련하는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이들 국고보조의 대상사업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3. 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 최근 국고보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가 요구됨

○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보조사업 심사제도 미비,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미흡,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 등이 부정수급의 4대 요인으로 분석됨

○ 부정수급의 발생은 공공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가용재원의 누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뢰성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함

□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대 원인별로 부정수급 및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부정·부적정 지출에 대한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함

○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IT 인프라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 구축, 보조사업 관리 규정의 체계화 및 교육 강화

○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 강화, 3년 주기의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

○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개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도입,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강화

○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 : 부처별 보조사업 집행점검 체계 구축 및 보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투명성·효율성 강화, 보조사업 정산절차 개선, 부기등기 도입 등 사후관리 절차 강화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보조금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적격성심사 기준,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증지침, 보조사업 평가지침, 회계감사 세부기준,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 통합되고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함

4.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평가의 대상사업, 수행체계, 평가방법, 사후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 평가의 정의) 보조사업 평가는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의 종료 및 연장기간의 종료가 도래한 사업의 실효성과 보조금 지원 필요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존속여부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 평가의 목적) 보조사업 평가는 기존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보조금 예산의 존속여부와 연장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조사업 평가의 대상사업

제4조(보조사업 평가의 대상) 보조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중 동법 제1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의 종료 및 연장기간의 종료가 도래한 사업
2.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사업 평가의 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 평가의 대상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 보조사업 운용 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장 보조사업 평가의 수행체계

제6조(보조사업 평가의 전문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을 존속평가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 평가 전문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전문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여 보조사업 평가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 평가의 관리·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평가 전문기관 및 보조사업 평가단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평가 지침의 준수여부
2. 보조사업 평가 관련자료 관리 및 보관 현황
3. 그 밖에 보조사업 평가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② 보조사업 평가 전문기관 및 보조사업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 평가단의 구성) ① 보조사업 평가 전문기관은 보조사업 평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평가단은 평가단장 1인, 분과장,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의 수 및 평가위원의 수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보조사업 평가단은 존속평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행을 위해 평가단 내 총괄팀을 둘 수 있다.

④ 보조사업 평가단은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평가대상사업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 평가단의 책무) ① 보조사업 평가단은 관련 부처가 제출한 평가자료 및 의견을 동 지침 제14조의 평가내용 및 제19조의 평가절차를 바탕으로 검토·분석·평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존속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② 보조사업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 운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③ 보조사업 평가단은 평가 종료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기한 내에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총괄팀의 구성과 사무) ① 보조사업 평가단의 총괄팀은 평가단장 1인, 분과장, 보조사업 존속평가 전문기관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평가의 운영 및 관리의 총괄
2. 단계별 평가결과의 종합 및 분석, 평가방향 제시
3. 기타 평가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

제11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사무) ① 조정위원회는 평가단장 1인, 분과장, 각 분과별 평가위원, 보조사업 평가 전문기관 과제관리자 1인 등으로 구성한다.

② 보조사업 평가단의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유형별 검토를 통한 평가결과의 일관성 검증
2. 평가대상사업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제시
3. 사업폐지 판정에 대한 재검토
4. 기타 평가결과와 관련한 사항

제12조(보조사업 평가의 기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매년 1월에서 4월까지 실시한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기획재정부와 보조사업 평가단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평가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 평가의 평가방법

제13조(보조사업 평가의 자료제출) 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보조사업 평가단이 요청하는 평가자료 및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평가단은 보조금 시스템에 축적된 부정수급 관련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 평가의 평가내용) 보조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내용에 대해 각각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존속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1. 보조사업의 타당성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제15조(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들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효과성
4. 보조사업의 필요성
5. 보조사업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제16조(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들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제17조(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① 보조사업 평가단은 동 지침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조사업의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으로 최종판정을 도출한다.

② 보조사업 평가단은 도출된 각 판정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1. 즉시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다음 년도 폐지
2. 단계적폐지 : 즉시폐지는 아니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폐지
3.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4.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5. 사업방식 변경 : 사업 방식이나 보조율 변경 등
6. 정상추진 : 적정 소요 지원

③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세부항목별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정상추진으로 간주한다.

④ 보조사업 평가단은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운용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보조사업 규모별 평가) 보조사업 평가의 대상사업을 규모에 따라 유형화 하고 별표 1과 같이 규모별로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규모에 따른 유형화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분류 기준
소규모 사업	사업 규모 50억 이하 사업
중규모 사업	사업규모 50억 초과 200억 이하 사업
대규모 사업	사업규모 200억 초과 사업

제19조(보조사업 평가의 절차) 보조사업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로 평가결과 및 판정사유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평가단의 총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 1단계 평가(서면평가)
2. 1차 조정회의
3. 2단계 평가(1차 대면평가)
4. 2차 조정회의
5. 3단계 평가(2차 대면평가)
6. 3차 조정회의
7. 추가 심사
8. 최종 조정회의
9. 최종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20조(최종 평가보고서의 제출) 평가완료 후 보조사업 평가단의 각 평가위원은 종합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을 최종 평가보고서에 반영하여 평가단 총괄팀에 제출하고, 총괄팀 및 보조사업 평가 전문기관은 각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조정·취합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기획재정부 장관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조사업 평가의 사후조치

제21조(보조사업 평가 결과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 운용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사업 평가의 재평가) 보조사업 평가의 최종결과에 대해 보조금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장관·사업담당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23조(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과의 연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때는 반드시 타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예산요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보조사업과 관련한 기타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보조사업 평가 결과의 공개) 보조사업 평가단 및 보조사업 평가 전문기관이 최종 평가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보조사업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근거조문(제14조, 제15조, 제16조)

1. 보조사업의 타당성

평가항목(배점)		평 가 요 소
1-1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②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		①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한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 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지 고려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		①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려
		③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고려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		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자체수행이 가능한지를 고려
		②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
		③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인지 고려
		④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고려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	소규모 사업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사업	②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
		③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 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대규모 사업	④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
1-6 사회적가치 실현 (가선점 최대 3.0)		사회적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18.3)

보조사업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근거조문(제12조, 제13조, 제14조)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분석

평가항목(배점)		평 가 요 소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	지자체 보조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를 고려
	민간 보조	① 통합관리지치 제14조에 따른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 고려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		①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실 집행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페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 등을 고려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		①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		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
		② 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1. 법적 근거

□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를 위해 근거조항을 보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 국회 통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4.29.] [법률 제13931호, 2016.1.28., 일부개정]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특징

□ 금년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일몰제 실시에 따라 19년 말 기점으로 3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2016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17년에 신설된 사업

□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보조사업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정량평가를 도입하여 평가방법 및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음.

○ 소규모 사업: 50억 이하, 중규모 사업: 50억 ~ 200억 이하, 대규모 사업: 200억 초과

- 소규모 사업은 보조사업에 따른 행정비용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은 향후 장기간 재정추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정량평가 도입에 따라 평가지표 총점 기준으로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폐지 또는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결과를 부여하였음.

3.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추어 일정을 관리하면서 진행하였음

□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 부처에 설명하는 평가설명회를 개최함

□ 서면평가는 설정된 평가방향에 맞춰 미진했던 자료보충을 위한 추가 제출자료 및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한 후 심층적으로 평가결과를 도출

□ 서면평가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업을 중심으로 부처 보조사업 담당자들과 2단계에 걸쳐 대면 심사를 진행함

○ 서면평가를 통해 도출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처의 소명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실시

□ 각 단계별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평가위원들이 제기한 쟁점사업, 평가결과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업 그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분과별 회의와 총괄·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 분과별 회의는 각 분과장 주재로 분과 내 모든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검토, 주요 쟁점사항 조정을 위해 분과별 각 3차례 진행

○ 평가단장 및 각 분과별 분과장과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들이 참석하고 필요 시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참석하는 총괄·조정회의를 4차례 진행

- 총괄·조정위원회는 평가단장 1인, 분과장 5인, 분과별 전문 평가위원 5인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담당자 1인으로 총 12인으로 구성

[그림 1-1]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2018년 12월 중순	**평가대상 확정 및 부처통보** o 기획재정부: 평가대상 정리
12월 중순	**평가편람 및 평가단 구성 (기획재정부/총괄팀)** o 기획재정부/평가단 단장: 평가단 구성 완료 o 기획재정부/평가단: 평가편람 작성 및 확정
12월 13일	**부처 평가설명회 (기획재정부/총괄팀, 대상: 평가대상사업 부처 담당자)** o 기획재정부: 평가취지 및 결과활용방안 설명 o 총괄팀: 평가단 소개, 평가절차 및 방법 설명(기초조사보고서 작성 Q&A)
12월 21일	**평가위원 대면심사 가능일정 취합** o 2월초 ~ 3월 중순 대면심사 가능일자 제출 o 제출처: 사무국_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제도팀
12월 28일	**부처별 기초조사보고서 제출완료** o 제출처: 사무국_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제도팀
1월 2일~ 1월 10일	**기초조사보고서 1차 검토** o 평가사무국: 평가매뉴얼 배포(1월 2일) o 평가위원: 추가요청자료 및 질의사항 제출(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1월 10일)
1월 12일	**평가단 설명회 (대상: 평가단 전원)** o 기획재정부: 평가취지 및 평가 주요착안사항 등 설명, 임명장 수여 o 총괄팀: 평가단 소개, 평가방법 설명 & 행정사항 (서약서 등)
1월 14일~ 1월 28일	**1단계 심사(서면평가)** o 부처: 추가자료 및 질의사항 답변 제출(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1월 18일) o 평가위원: 1단계 심사 완료 및 제출(제출처 및 기한: 평가사무국, 1월 28일) - 산출자료: 평가보고서, 평가표 ·판정유형: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2월 9일	**제1차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o 서면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 방향 논의

일 정	추 진 내 용
2월 11일~ 2월 27일	**2단계 심사(1차 대면평가)** o 평가사무국: 1단계 심사결과 부처 통보(2월 11일) o 부처: 심사결과에 대한 소명의견서 제출(제출처 및 기한: 평가사무국, 2월 15일) o 평가위원: 2단계 심사 완료 및 제출(제출처 및 기한: 평가사무국, 2월 27일) - 산출자료: 평가보고서, 평가표
3월 2일	**제2차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o 1차 대면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 방향 논의
3월 4일~ 3월 22일	**3단계 심사(2차 대면평가)** o 평가사무국: 2단계 심사결과 부처 통보(3월 4일) o 부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출(제출처 및 기한: 평가사무국, 3월 8일) o 평가위원: 3단계 심사 완료 및 제출(제출처 및 기한: 평가사무국, 3월 22일) - 산출자료: 평가보고서, 평가표
3월 23일	**제3차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o 2차 대면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 방향 논의
3월 25일~ 3월 29일	**추가심사** o 평가사무국: 3단계 심사결과 부처 통보(3월 25일) o 부처: 예외적인 사업*에 한해 이의제기 제출 (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3월 27일) * 폐지 및 통폐합 수용불가 사업, 사실관계 다른 보고서 서술내용 등을 대상으로 유·무선 진행 o 평가위원: 최종평가보고서(안) 제출 (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3월 29일)
3월 30일	**제4차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o 최종평가보고서(안) 분석
4월 1일~ 4월 12일	**최종평가보고서 작성/제출** o 총괄팀 : 종합보고서 작성 o 평가위원 : 사업별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4. 2019년 평가단 구성

□ 금년도에는 평가단장 1인, 분과장 5인, 평가위원 34인으로 총 40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함

○ 교차검토 역할을 1차로는 해당 분과장이 그리고 평가결과 조정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함

□ 평가단장 및 5인의 분과장이 평가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그림 1-2> 2019년 평가단 구성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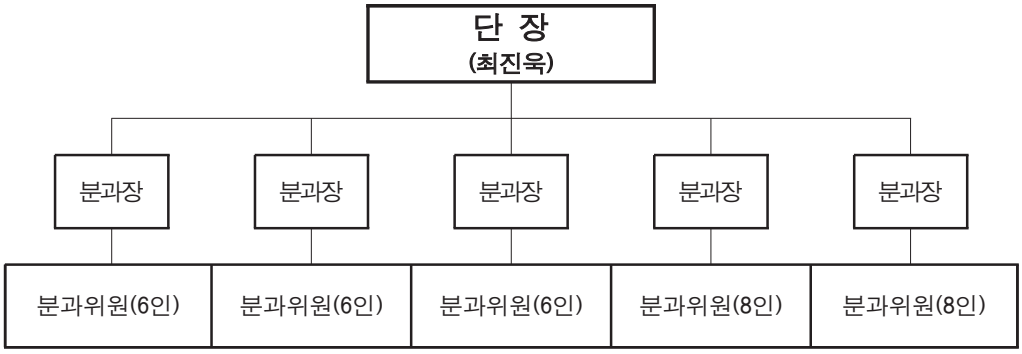

<표 1-3> 2019년도 평가위원

직책	성명	소 속
평 가 단 장	**최 진 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 1 분 과 장	하 연 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 2 분 과 장	조 임 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 3 분 과 장	김 재 훈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 4 분 과 장	권 오 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5 분 과 장	류 덕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김 영 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유 승 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권 남 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오 영 민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김 성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 과 위 원	박 정 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신 동 면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임 성 묵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분 과 위 원	배 인 명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이 재 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강 은 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 과 위 원	하 윤 희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교수
분 과 위 원	오 세 희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이 정 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이 인 원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전 승 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안 병 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이 종 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윤 소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분 과 위 원	정 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 과 위 원	구 철 회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이 광 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 과 위 원	김 미 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분 과 위 원	이 병 량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박 소 영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전 봉 걸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강 지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분 과 위 원	한 종 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분 과 위 원	고 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분 과 위 원	김 지 영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분 과 위 원	차 미 숙	한국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 과 위 원	최 유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분 과 위 원	김 주 영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 과 위 원	정 장 훈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 평가 절차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로 평점을 부여하고,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정상추진'

○ 각 사업별로 주심 및 부심을 두어 2인 교차평가 진행

□ **1단계 심사(서면평가)**

○ 부처가 작성한 「[양식1]기초조사보고서」 및 제출자료를 근거로 서면심사 결과 도출

- 평가단은 평가보고서 및 평가표를 작성하고 다음의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부처에게 통보

· ① 즉시폐지, ② 단계적폐지, ③ 통폐합, ④ 감축, ⑤ 사업방식변경, ⑥ 정상추진

- 부처는 평가보고서에 대한 「1차 소명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2단계 심사(1차 대면평가)

○ 서면평가 결과 및 「1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평가대상별 1차 대면평가 실시

- 평가단은 평가보고서 및 평가표를 작성하고 다음의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부처에 통보

· ① 즉시폐지, ② 단계적폐지, ③ 통폐합, ④ 감축, ⑤ 사업방식변경, ⑥ 정상추진

- 부처는 평가보고서에 대한 「2차 소명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2차 대면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차 소명의견서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나 자료는 제외하고 작성하되,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만으로 설명

□ 3단계 심사(2차 대면평가)

○ 1차 대면평가 결과 및 「2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평가대상별 2차 대면평가 실시

- 평가단은 평가보고서 및 평가표를 작성하고 다음의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부처에 통보

· ① 즉시폐지, ② 단계적폐지, ③ 통폐합, ④ 감축, ⑤ 사업방식변경, ⑥ 정상추진

□ 추가심사

○ 3단계 심사결과(즉시폐지·단계적폐지·통폐합만 해당)에 심각한 이견이 있거나 평가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총괄반이 추가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심사 실시

- 평가단은 최종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총괄팀에 제출(1일 이내)

□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 각 단계별 평가마다 평가위원이 독립의견으로 명확하게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부처와의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의견 참고가 필요한 경우에 「조정위원회 검토 필요사업」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필요사업의 자료는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평가위원은 단계별 평가결과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

6. 평가 기준

□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지표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착안사항을 마련함

○ 평가항목별로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항목별 평가결과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유지로 판정함.

□ 평가지표별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

1-1.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①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한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 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지 고려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①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 고려
③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고려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자체수행이 가능한지를 고려
②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
③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인지 고려
④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고려

1-5.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를 고려
③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④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

1-6. 사회적가치 실현

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8.3)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분석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① 공모절차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 고려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①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실 집행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 등을 고려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①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
② 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제2부 평가결과 분석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제3장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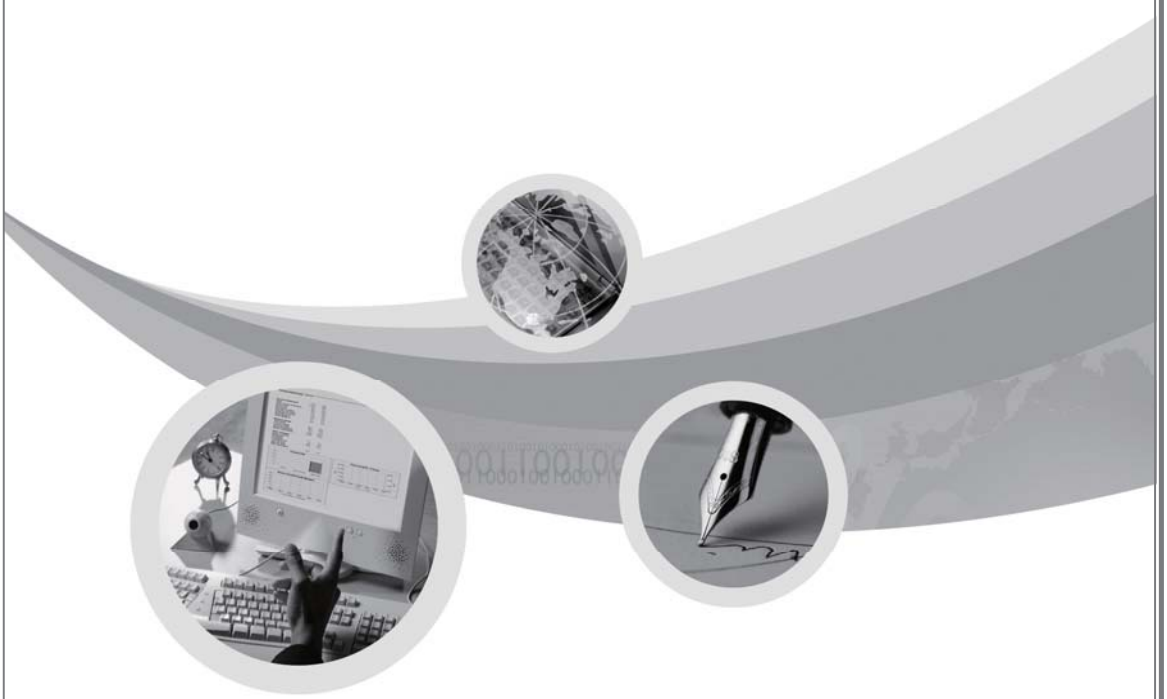

제1장 최종 판정결과 총괄 분석

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

□ 2019년도에는 16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존속기한 3년 도래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타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449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정상추진' 155개 사업 (34.5%), '즉시 폐지' 4개 사업 (0.9%), '단계적 폐지' 8개 사업 (1.8%), 통폐합 1개 사업 (0.2%), 감축 105개 사업 (23.4%), 사업방식변경 176개 사업 (39.2%) 이었음

<표 2-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결과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사업수(개)	4	8	1	105	176	155	449
비율(%)	0.9	1.8	0.2	23.4	39.2	34.5	100.0

2.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

□ 2019년에는 449개 평가대상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약 11조 5,463억 원이었음

○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5조 9,382억 원(51.4%),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34억 원(0.03%),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1,486억 원(1.3%), 통폐합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17억 원(0.01%),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1조 3,633억 원(11.8%),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4조 911억 원(35.4%) 이었음

<표 2-2>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결과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예산(억원)	34	1,486	17	13,633	40,911	59,382	115,463
비율(%)	0.03	1.3	0.01	11.8	35.4	51.4	100.0

3. 판정유형별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

□ 국고보조금 감축 제안은 향후 3년 동안, 즉시 폐지 판정을 통해서 약 34억 원, 단계적 폐지 판정을 통해서 약 1,486억 원, 통폐합 판정을 통해서 약 11억 원, 그리고 감축 판정을 통해서 약 1,440억 원이 제안됨.

○ 20년 감축 제안 규모는 즉시 폐지 판정을 통해서 약 34억 원, 단계적 폐지 판정을 통해서 54억 원, 통폐합 판정을 통해서 11억 원, 그리고 감축 1,200억 원이 제안되었으며, 21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 폐지 판정을 통해서 약 1,432억 원, 그리고 감축 판정을 통해서 약 241억 원이 제안되었음.

○ 총 규모 기준으로 20년 약 1,299억 원이, 21년 ~ 22년까지 2년간 약 1,672억 원의 감축이 제안되어 향후 3년 동안 총 2,971억 원(전체 사업비의 약 2.6%)의 감축이 제안되었음.

<표 2-3> 최종 판정결과별 국고보조금 감축규모[1)]

(단위 : 억 원, %)

판정결과	19년 예산 (A)	감축 규모				감축비율(B/A)
		2020년	2021년	2022년	총규모 (B)	
정상추진	59,382	-	-	-	-	-
즉시 폐지	34	34			34	100.0
단계적 폐지	1,486	54	210	1,222	1,486	100.0
통폐합	17	11	-	-	11	62.0
감축	13,633	1,200	105	136	1,440	10.6
사업방식 변경	40,911	-	-	-	-	-
합계	**115,463**	**1,299**	**314**	**1,358**	**2,971**	**2.6**

1) 항목별 반올림 결과 합계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1. 부처별 최종 판정결과

□ 2019년 평가대상은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35개 부처 449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11조 5,463억 원이며, 보건복지부가 1조 2,5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양경찰청이 0.3억 원으로 가장 적음.

□ 5개 이상 사업을 평가한 부처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비율이 높은 부처는 농촌진흥청(75.0%, 총 8개 사업 대상), 법무부(60.0%, 총 5개 사업 대상)·특허청(60.0%, 총 5개 사업 대상), 통일부(50.0%, 총 10개 사업 대상)·식품의약품안전처(50.0%, 총 8개 사업 대상) 순이었음.

○ 사업 개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 19개, 산업통상자원부 14개, 문화체육관광부 13개 순으로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개수가 많았음.

□ 예산규모로 볼 때 100억 이상 인 부처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 비율이 높은 부처는 통일부(99.2%), 고용노동부(92.9%), 행정안전부(90.4%) 순이었음.

□ 국고보조금 감축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100억 이상인 부처 중 감축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이었고, 예산 대비 감축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부처는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순이었음.

○ 국고보조금 감축 제안 금액 : 농림축산식품부 1,576억, 문화체육관광부 492억, 산업통상자원부 233억

○ 감축 제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국방부 59.9%, 농림축산식품부 10.4%, 문화체육관광부 4.6%

<표 2-4>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사업 수)

(단위 : 개, %)

구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합계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04]대법원							1	100.0%					1
[0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100.0%	2
[10]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1	100.0%	1
[11]기획재정부											2	100.0%	2
[12]교육부							2	18.2%	6	54.5%	3	27.3%	11
[1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6.3%					3	18.8%	8	50.0%	4	25.0%	16
[14]외교부							1	33.3%	2	66.7%			3
[15]통일부							3	30.0%	2	20.0%	5	50.0%	10
[16]법무부									2	40.0%	3	60.0%	5
[17]국방부			1	33.3%					1	33.3%	1	33.3%	3
[18]행정안전부							5	26.3%	6	31.6%	8	42.1%	19
[19]문화체육관광부							24	40.7%	22	37.3%	13	22.0%	59
[20]농림축산식품부			1	1.8%	1	1.8%	21	38.2%	21	38.2%	11	20.0%	55
[21]산업통상자원부	2	6.1%	2	6.1%			5	15.2%	10	30.3%	14	42.4%	33
[22]보건복지부							6	13.0%	21	45.7%	19	41.3%	46
[23]환경부							1	4.8%	10	47.6%	10	47.6%	21
[24]고용노동부							2	18.2%	5	45.5%	4	36.4%	11

구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합계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25]여성가족부			1	8.3%			4	33.3%	4	33.3%	3	25.0%	12
[26]국토교통부							6	33.3%	6	33.3%	6	33.3%	18
[27]해양수산부	1	3.1%	1	3.1%			7	21.9%	11	34.4%	12	37.5%	32
[28]중소벤처기업부							2	10.5%	9	47.4%	8	42.1%	19
[29]국가보훈처							1	33.3%	1	33.3%	1	33.3%	3
[32]식품의약품안전처									4	50.0%	4	50.0%	8
[33]국가인권위원회									1	100.0%			1
[34]방송통신위원회							2	12.5%	8	50.0%	6	37.5%	16
[36]금융위원회			1	100.0%									1
[37]국민권익위원회									1	100.0%			1
[44]방위사업청							2	100.0%					2
[45]경찰청									1	100.0%			1
[47]문화재청							2	20.0%	7	70.0%	1	10.0%	10
[48]농촌진흥청							1	12.5%	1	12.5%	6	75.0%	8
[49]산림청							4	33.3%	4	33.3%	4	33.3%	12
[50]특허청									2	40.0%	3	60.0%	5
[53]새만금개발청			1	100.0%									1
[54]해양경찰청											1	100.0%	1
총계	**4**	**0.9%**	**8**	**1.8%**	**1**	**0.2%**	**105**	**23.4%**	**176**	**39.2%**	**155**	**34.5%**	**449**

<표 2-5>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예산 규모)[2)]

(단위 : 억 원, %)

구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합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04]대법원							444	100.0%					**444**
[0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264	100.0%	**8,264**
[10]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120	100.0%	**120**
[11]기획재정부											2,620	100.0%	**2,620**
[12]교육부							12,534	12.6%	28,215	28.4%	58,430	58.9%	**99,179**
[1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68	0.5%					24,578	10.5%	172,151	73.7%	35,725	15.3%	**233,722**
[14]외교부							930	1.2%	75,603	98.8%			**76,533**
[15]통일부							5,200	0.7%	1,012	0.1%	739,721	99.2%	**745,933**
[16]법무부									55,283	79.3%	14,404	20.7%	**69,687**
[17]국방부			23,297	59.9%					11,611	29.9%	3,972	10.2%	**38,880**
[18]행정안전부							45,406	6.8%	18,691	2.8%	601,445	90.4%	**665,542**
[19]문화체육관광부							404,932	38.1%	527,605	49.6%	131,349	12.3%	**1,063,886**
[20]농림축산식품부			102,000	6.7%	1,710	0.1%	529,033	34.8%	607,404	39.9%	280,288	18.4%	**1,520,435**
[21]산업통상자원부	2,169	0.2%	20,823	2.0%			12,664	1.2%	372,448	36.4%	613,911	60.1%	**1,022,015**
[22]보건복지부							18,732	1.8%	644,846	60.6%	400,556	37.6%	**1,064,134**
[23]환경부							55,268	6.3%	29,764	3.4%	791,501	90.3%	**876,533**

2) 항목별 반올림 결과 합계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구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합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24]고용노동부							1,222	0.1%	88,381	7.1%	1,163,897	92.9%	**1,253,500**
[25]여성가족부			961	0.3%			41,900	15.0%	230,306	82.4%	6,320	2.3%	**279,487**
[26]국토교통부							22,295	3.7%	339,959	56.8%	236,371	39.5%	**598,625**
[27]해양수산부	11	0.01%	120	0.03%			24,752	6.0%	151,795	36.6%	238,329	57.4%	**415,007**
[28]중소벤처기업부							80,687	12.4%	157,663	24.3%	410,764	63.3%	**649,114**
[29]국가보훈처							882	5.8%	2,213	14.6%	12,090	79.6%	**15,185**
[32]식품의약품안전처									9,016	11.1%	71,941	88.9%	**80,957**
[33]국가인권위원회									200	100.0%			**200**
[34]방송통신위원회							14,429	9.3%	94,106	60.8%	46,343	29.9%	**154,878**
[36]금융위원회			1,000	100.0%									**1,000**
[37]국민권익위원회									199	100.0%			**199**
[44]방위사업청							2,528	100.0%					**2,528**
[45]경찰청									51,695	100.0%			**51,695**
[47]문화재청							38,310	9.8%	351,774	90.1%	435	0.1%	**390,519**
[48]농촌진흥청							806	2.2%	13,251	35.4%	23,404	62.5%	**37,461**
[49]산림청							25,756	27.3%	33,750	35.8%	34,695	36.8%	**94,201**
[50]특허청									22,169	66.3%	11,246	33.7%	**33,415**
[53]새만금개발청			350	100.0%									**350**
[54]해양경찰청											27	100.0%	**27**
총계	**3,448**	**0.03%**	**148,551**	**1.3%**	**1,710**	**0.0%**	**1,363,288**	**11.8%**	**4,091,110**	**35.4%**	**5,938,168**	**51.4%**	**11,546,275**

<표 2-6> 부처별 감축규모[3)]

(단위 : 억 원, %)

구분	19년 예산 (A)	감축 규모				감축비율 (B/A)
		2020년	2021년	2022년	총규모 (B)	
[04]대법원	444	40			40	9.01%
[0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264					
[10]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120					
[11]기획재정부	2,620					
[12]교육부	99,179	300	300		600	0.60%
[1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3,722	3,001	809		3,810	1.63%
[14]외교부	76,533	47	93		140	0.18%
[15]통일부	745,933	279			279	0.04%
[16]법무부	69,687					
[17]국방부	38,880	5,000		18,297	23,297	59.92%
[18]행정안전부	665,542	4,114			4,114	0.62%
[19]문화체육관광부	1,063,886	36,436	3,052	9,752	49,240	4.63%
[20]농림축산식품부	1,520,435	47,942	3,835	105,835	157,611	10.37%
[21]산업통상자원부	1,022,015	4,226	19,850	973	25,049	2.45%
[22]보건복지부	1,064,134	9,470			9,470	0.89%
[23]환경부	876,533	5,000			5,000	0.57%
[24]고용노동부	1,253,500	147			147	0.01%
[25]여성가족부	279,487	1,708		561	2,269	0.81%
[26]국토교통부	598,625	868			868	0.14%
[27]해양수산부	415,007	5,207	1,761		6,968	1.68%
[28]중소벤처기업부	649,114	3,700			3,700	0.57%
[29]국가보훈처	15,185	35			35	0.23%
[32]식품의약품안전처	80,957					
[33]국가인권위원회	200					
[34]방송통신위원회	154,878	1,221			1,221	0.79%
[36]금융위원회	1,000		1,000		1,000	100.00%
[37]국민권익위원회	199					
[44]방위사업청	2,528	135			135	5.34%
[45]경찰청	51,695					
[47]문화재청	390,519	130			130	0.03%
[48]농촌진흥청	37,461	54			54	0.14%
[49]산림청	94,201	800	750		1,550	1.65%
[50]특허청	33,415				0	
[53]새만금개발청	350			350	350	100.00%
[54]해양경찰청	27					
총계	**11,546,275**	**129,859**	**31,450**	**135,767**	**297,076**	**2.6%**

3) 항목별 반올림 결과 합계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부처별 세부사업 최종 판정결과

□ 각 부처별 세부사업에 대한 판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9년에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내역 사업별 판정결과에 따라 판정결과는 복수판정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때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적합한 판정결과를 최종 판정결과로 판단했음

<표 2-7> 부처 사업별 최종 평가결과

(단위 : 백만 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대법원	본부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444	감축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	1,017	정상추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역협의회활동추진	민간경상보조	7,247	정상추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공기관갈등관리	민간경상보조	120	정상추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보조	민간경상보조	2,100	정상추진
기획재정부	통상연계형경협사업	민간경상보조	520	정상추진
교육부	대입전형자율화지원	민간경상보조	522	사업방식변경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지원	민간경상보조	7,090	감축
교육부	이러닝세계화(ODA)	민간경상보조	5,717	사업방식변경
교육부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6,713	사업방식변경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130	사업방식변경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센터지원	민간경상보조	936	사업방식변경
교육부	국가진로교육센터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425	정상추진
교육부	고등교육및대학재정정보분석 시스템운영	민간경상보조	2,065	정상추진
교육부	글로벌교육지원사업(ODA)	민간경상보조	5,444	감축
교육부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	민간경상보조	55,940	정상추진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보조	13,197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회의개최및국제기구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1,268	즉시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정보화)	민간경상보조	200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제주)	자치단체경상보조	179	정상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생활주파수활용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2,155	정상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SW사업선진화(정보화)	민간경상보조	5,395	정상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53,911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지역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835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12,189	감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신산업창출및중소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4,060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CT전파자원선순환개발환경조성	민간경상보조	3,437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	민간경상보조	103,152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27,996	정상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초연결망인프라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3,651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자전화사기대응체계구축	민간경상보조	905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정보화)	민간경상보조	9,234	감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격차해소지원(정보화)	자치단체경상보조	3,155	감축
외교부	동북아지역국가와의교류협력강화	민간경상보조	400	사업방식변경
외교부	국제평화재단및제주포럼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930	감축
외교부	인도적지원(ODA)	민간경상보조	75,203	사업방식변경
통일부	6.25전쟁납북자기념관운영	민간경상보조	100	사업방식변경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912	사업방식변경
통일부	이산가족문제해결지원	민간경상보조	100	감축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통일부	학교통일교육강화	민간경상보조	2,911	감축
통일부	사회통일교육내실화	민간경상보조	2,189	감축
통일부	경협기반(무상)	민간경상보조	295,596	정상추진
통일부	구호지원	민간경상보조	81,539	정상추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지원	민간경상보조	20,530	정상추진
통일부	민생협력지원	민간경상보조	302,757	정상추진
통일부	이산가족교류지원	민간경상보조	39,299	정상추진
법무부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11,726	정상추진
법무부	법률구조	민간경상보조	54,761	사업방식변경
법무부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민간경상보조	649	정상추진
법무부	변호사제도의선진화	민간경상보조	522	사업방식변경
법무부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민간경상보조	2,029	정상추진
국방부	일반지원시설	자치단체자본보조	23,297	단계적폐지
국방부	자기계발교육	민간경상보조	3,972	정상추진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11,611	사업방식변경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60	정상추진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운영	민간경상보조	2,666	감축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746	사업방식변경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민간경상보조	7,557	사업방식변경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180	감축
행정안전부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7,618	정상추진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395,745	정상추진
행정안전부	접경권발전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9,000	감축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98,547	정상추진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4,142	정상추진
행정안전부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민간경상보조	250	사업방식변경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사업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5,023	사업방식변경
행정안전부	동원자원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133	사업방식변경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55,318	정상추진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자치단체자본보조	3,270	감축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민간경상보조	18,375	정상추진
행정안전부	제주4.3평화재단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640	정상추진
행정안전부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 (ODA)	민간경상보조	2,982	사업방식변경
행정안전부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290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6,760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활성화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7,312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07,129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및운영	민간경상보조	90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제작지원	민간경상보조	7,280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민간경상보조	2,680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창작지원	민간경상보조	33,202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2,779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8,984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진흥기반조성및확산	민간경상보조	25,617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개도국문화자원역량강화(ODA)	민간경상보조	824	사업방식변경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문화체육관광부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4,403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향유지원	민간경상보조	40,180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24,598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84,609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유통지원	민간경상보조	9,919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육성	민간경상보조	11,818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및대중문화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6,631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5,354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49,644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8,854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콘텐츠및운영	민간경상보조	32,460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정책지원	민간경상보조	5,325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민간경상보조	31,209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올림픽공원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28,981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건립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7,710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한스타일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6,605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가상현실콘텐츠육성	민간경상보조	22,027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자체,사회서비스)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5,930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국제협력및수출 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13,078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체험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35,912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생활문화진흥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6,134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첨단영화기술육성	민간경상보조	1,590	사업방식변경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작은도서관조성(ODA)	민간경상보조	507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6,225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7,758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핵심관광지육성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9,250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중부내륙권관광개발(지역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8,600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10,263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지원	민간경상보조	11,410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민간경상보조	1,750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보조	3,273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산업화추진	민간경상보조	5,942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지역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5,205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지원	민간경상보조	11,737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및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7,194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해외교류	민간경상보조	3,064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5,340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패션문화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9,617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30,212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1,013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산업활성화	민간경상보조	6,707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4,589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ODA)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6,193	정상추진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예관광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5,330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	민간경상보조	6,746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리모델링	민간자본보조	2,717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운영(정보화)	민간경상보조	6,976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자원안전관리체계 구축(정보화)	민간경상보조	640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ODA)	민간경상보조	16,663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상대응	민간경상보조	1,623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650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88,752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품종심사및재배시험	민간경상보조	3,717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이양직불	민간경상보조	47,179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원원종및원종생산	자치단체경상보조	5,692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자조금	민간경상보조	26,00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생산유통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59,307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710	통폐합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민간경상보조	7,578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유지관리	민간경상보조	150,000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41,104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 확대	민간자본보조	42,000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9,013	사업방식변경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3,215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8,400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산업종합지원(융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576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3,190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31,64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9,561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	자치단체자본보조	42,00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민간경상보조	3,466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지원	민간경상보조	8,13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민간경상보조	16,082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자치단체자본보조	10,318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식품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2,806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민간경상보조	9,858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시도가축방역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27,286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HACCP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650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0,95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51,628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조건불리지역직불	자치단체경상보조	54,647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유통교육훈련	민간경상보조	2,289	감축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30,959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시설현대화	자치단체자본보조	29,68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마케팅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8,254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실태조사	민간경상보조	833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경관보전직불	자치단체경상보조	8,356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인력지원	민간경상보조	9,947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비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6,40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28,00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푸드서비스선진화	민간경상보조	1,350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수출활성화	민간경상보조	931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민간경상보조	1,500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38,110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폐업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02,000	단계적폐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민간경상보조	72,523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3,998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23,501	정상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민간경상보조	1,931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민간경상보조	1,982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1,695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민간경상보조	113,799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	민간경상보조	595	사업방식변경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1,875	즉시폐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	민간경상보조	573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113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12,029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민간경상보조	15,141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민간경상보조	69,765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효율향상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44,523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	민간경상보조	1,925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민간경상보조	4,529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유통구조개선	민간경상보조	3,438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94,500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진단보조	민간경상보조	973	단계적폐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	2,498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LPG소형저장탱크보급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1,343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자치단체경상보조	3,659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몬트리올의정서대응	민간경상보조	755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서민층가스시설개선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9,850	단계적폐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제도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2,230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수출경쟁력강화지원	민간경상보조	33,590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418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촉진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48,148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산자부)	민간경상보조	56,373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촉진(세종)	자치단체자본보조	9,911	정상추진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3,225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경상보조	244,629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생태산업개발을통한미세먼지 및온실가스감축	민간경상보조	2,604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5,000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산업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294	즉시폐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1,149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6,866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4,368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민간경상보조	4,193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국가보건의료표준화	민간경상보조	837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관리	민간경상보조	1,605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민간경상보조	1,636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진료정보교류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4,651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및관리체계구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363	감축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인식개선및정신의료기관평가	민간경상보조	670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865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64,220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체계구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35,580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혁신형건강플랫폼구축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141	감축
보건복지부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민간경상보조	400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11,096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52,220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보호및지원	민간경상보조	1,427	감축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4,953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응급처치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3,126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72,456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국민인식개선	자치단체경상보조	470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450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한센병환자관리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0,641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농특)	자치단체자본보조	43,863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28,564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6,854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520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2,699	감축
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관리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5,323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국가결핵예방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32,615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실시	자치단체경상보조	321,129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대응대책	자치단체경상보조	79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민간경상보조	509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2,332	감축
보건복지부	권역재활병원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619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및인권증진	민간경상보조	582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에이즈및성병예방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1,409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질병조사관리및실험실감시망운영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804	정상추진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수립및관리활동	민간경상보조	190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장기및인체조직기증관리	민간경상보조	775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원관리	민간경상보조	517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8,861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의료관련감염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1,966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나눔문화확산	민간경상보조	770	감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민간경상보조	663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	민간경상보조	830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구축·운영(정보화)	민간경상보조	293	정상추진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	55,268	감축
환경부	국립공원및지질공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721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1,219	정상추진
환경부	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	민간경상보조	4,896	정상추진
환경부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476,000	정상추진
환경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자치단체자본보조	5,336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7,205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영농폐기물재활용촉진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0,686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12,377	정상추진
환경부	수질및수생태계측정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	969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	자치단체경상보조	39,360	정상추진
환경부	공공수역녹조발생대응	자치단체경상보조	500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42,000	정상추진
환경부	지하역사공기질개선대책	자치단체경상보조	19,998	정상추진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환경부	친환경제품보급촉진및환경표지제도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800	정상추진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89,661	정상추진
환경부	환경교육강화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5,190	정상추진
환경부	수질보전활동지원(금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854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수질보전활동지원 (영산강섬진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582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수질보전활동지원(낙동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281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수질보전활동지원(한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630	사업방식변경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민간경상보조	934	감축
고용노동부	중장년층취업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22,621	사업방식변경
고용노동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0,671	사업방식변경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경상보조	571,475	정상추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민간경상보조	210,560	정상추진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	1,630	사업방식변경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	자치단체경상보조	1,159	사업방식변경
고용노동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자치단체경상보조	288	감축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민간경상보조	42,300	사업방식변경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민간경상보조	3,626	정상추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민간경상보조	378,236	정상추진
여성가족부	취약·위기가족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4,167	정상추진
여성가족부	미래여성인재양성	민간경상보조	961	단계적폐지
여성가족부	가족사업관리및연구	민간경상보조	98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확산	민간경상보조	524	감축
여성가족부	여성사전시관	민간경상보조	748	사업방식변경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여성가족부	일·가정양립사회환경조성	민간경상보조	1,351	감축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5,018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24,442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글로벌여성리더포럼	민간경상보조	90	정상추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32,078	감축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7,947	감축
여성가족부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민간경상보조	2,063	정상추진
국토교통부	항공전문인력양성	민간경상보조	2,814	정상추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87,437	정상추진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 (일반)	자치단체자본보조	1,290	사업방식변경
국토교통부	전환교통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200	사업방식변경
국토교통부	청소년국토교육지원	민간경상보조	293	사업방식변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진흥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3,045	감축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0,800	감축
국토교통부	첨단도로교통체계	자치단체경상보조	29,000	정상추진
국토교통부	광역BIS지원(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2,520	사업방식변경
국토교통부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 관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122	감축
국토교통부	물류산업지원	민간경상보조	1,960	감축
국토교통부	철도핵심인력양성	민간경상보조	1,101	감축
국토교통부	택시산업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5,267	감축
국토교통부	전세임대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75,677	정상추진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출자	자치단체자본보조	65,703	사업방식변경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출자	자치단체자본보조	35,743	정상추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출자	자치단체자본보조	266,953	사업방식변경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전산화(보조,정보화)	자치단체경상보조	5,700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민간경상보조	14,915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2,950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9,471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33,072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활성화	민간경상보조	3,750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자치단체자본보조	5,881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수산물자조금지원	민간경상보조	3,907	감축
해양수산부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13,126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어촌6차산업화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4,910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제주항	자치단체자본보조	27,572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37,214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화순항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양식등재해대책비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	감축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자치단체경상보조	11	즉시폐지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협력(ODA)	민간경상보조	1,200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55,805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민간경상보조	542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내수면자원조성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9,559	감축
해양수산부	수산물위생관리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9,634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제주외항(2단계)	자치단체자본보조	372	정상추진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77,388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제주일반항건설	자치단체자본보조	14,652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낚시산업선진화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860	감축
해양수산부	수산물물류표준화	민간경상보조	948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천일염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6,525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육성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1,929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5,145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민간경상보조	2,625	감축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민간경상보조	120	단계적폐지
해양수산부	관상어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841	감축
해양수산부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6,123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화(정보화)	자치단체경상보조	960	감축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공고(마이스터고)육성	민간경상보조	99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남북경제협력중소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220	정상추진
중소벤처기업부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민간경상보조	1,310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민간경상보조	2,220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인큐베이터	민간경상보조	892	정상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중기부)	민간경상보조	98,400	정상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재기지원	민간경상보조	22,450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민간경상보조	52,326	감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민간경상보조	12,575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제주)	민간경상보조	228	정상추진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저변확대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8,361	감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캐피탈선진화	민간경상보조	1,617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7,411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7,975	정상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혁신지원	민간경상보조	270,986	정상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창업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14,117	정상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68,087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41,894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인프라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17,946	정상추진
국가보훈처	교통시설이용지원	민간경상보조	12,090	정상추진
국가보훈처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민간경상보조	2,213	사업방식변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민간경상보조	882	감축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제도활성화	민간자본보조	6,603	사업방식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감시및대응	자치단체경상보조	1,150	사업방식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검사능력강화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사업방식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지원	민간경상보조	4,581	정상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5,598	정상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	43,528	정상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운영	민간경상보조	263	사업방식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18,234	정상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공동협력	민간경상보조	200	사업방식변경
방송통신위원회	EBS프로그램제작지원	민간경상보조	28,339	사업방식변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환경조성	민간경상보조	2,593	정상추진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대외방송송출 지원(민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7,911	정상추진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민간경상보조	379	사업방식변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	민간경상보조	1,736	정상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1,520	정상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아리랑국제방송지원	민간경상보조	37,156	사업방식변경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채널운영실적점검평가(민간)	민간경상보조	221	정상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24,194	사업방식변경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인프라개선(민간)	민간자본보조	2,830	사업방식변경
방송통신위원회	국악방송지원	민간경상보조	5,717	감축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활용긴급구조지원체계강화	민간경상보조	220	사업방식변경
방송통신위원회	KBS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민간경상보조	8,712	감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민간경상보조	32,362	정상추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민간경상보조	484	사업방식변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민간경상보조	504	사업방식변경
금융위원회	전문금융인양성과정설립	민간경상보조	1,000	단계적폐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및민간협력	민간경상보조	199	사업방식변경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민간경상보조	350	감축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수출지원	민간경상보조	2,178	감축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	51,695	사업방식변경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	200	사업방식변경
문화재청	문화재예방관리강화	민간경상보조	160	사업방식변경
문화재청	조선왕릉보존관리	민간경상보조	435	정상추진
문화재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민간경상보조	2,686	감축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보조)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35,624	감축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문화재청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3,351	사업방식변경
문화재청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민간경상보조	5,003	사업방식변경
문화재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운영	민간경상보조	2,626	사업방식변경
문화재청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민간경상보조	80	사업방식변경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320,354	사업방식변경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분석(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607	정상추진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3,251	사업방식변경
농촌진흥청	농작업재해예방(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	정상추진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개선지원(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5,429	정상추진
농촌진흥청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제주)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05	정상추진
농촌진흥청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지역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7,025	정상추진
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7,238	정상추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806	감축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1,093	감축
산림청	목재생산및품질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471	정상추진
산림청	산림경영지도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1,267	감축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2,256	감축
산림청	임산물수출촉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5,877	사업방식변경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21,413	사업방식변경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21,503	정상추진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공적개발원조(ODA)	민간경상보조	500	정상추진
산림청	산림교육치유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140	감축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19년 예산	판정결과
산림청	산림복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2,221	정상추진
산림청	산림경영계획작성	자치단체경상보조	410	사업방식변경
산림청	생활림및정원조성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6,050	사업방식변경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 인력양성	민간경상보조	4,896	정상추진
특허청	발명교육활성화	민간경상보조	12,503	사업방식변경
특허청	여성발명진흥	민간경상보조	1,520	정상추진
특허청	지식재산연구활성화	민간경상보조	4,830	정상추진
특허청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민간경상보조	9,666	사업방식변경
새만금개발청	새만금문화예술활성화	민간경상보조	350	단계적폐지
해양경찰청	총무활동	민간경상보조	27	정상추진

제3장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1. 보조사업 재평가 개요

□ 보조사업 연장평가 이후 소관부처가 평가의 최종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2조(보조사업 평가의 재평가) 보조사업 평가의 최종결과에 대해 보조금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 장관·사업담당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연장평가 결과이행의 귀속연한이 3년인 점을 감안하여 '17년~'19년에 연장평가를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이 중 평가 지적사항을 이행하거나 국회·감사원 지적, 정부정책의 중점 추진 등 사정 변경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청 받아 재평가를 진행하도록 함.

○ 재평가를 신청한 사업 중 사업성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지적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17개 사업에 대해 실시함.

○ 재평가는 2019년 보조사업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음.

2.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 재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20년 예산안 편성 시, 기존 평가결과를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6개 부처, 6개 사업에 대해 평가결과를 일부 변경함.

□ 농촌진흥청 -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 사업

○ (기존 평가결과, '19년 실시) 감축(54백만원), 사업방식변경: 정보화 경진대회 중 정보화와 관련이 없는 식대, 학술행사, 홍보용품 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경진대회 시상금 및 우수사례 보급 교육에 예산을 사용하길 권고함 (내역사업 정보화 경진대회 예산 175 백만원 중 식대, 학술행사, 홍보용품 등 행사성 예산 54백만원 감축)

○ (재평가 결과) 감축(21.6백만원)·사업방식변경: 정보화 경진대회 중 정보화와 관련이 없는 식대, 학술행사, 홍보용품 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경진대회 시상금 및 우수사례 보급 교육에 예산을 사용하길 권고함 (내역사업 정보화 경진대회 예산 70백만원 중 식대, 학술행사, 홍보용품 등 행사성 예산을 약 30%에 해당하는 21.6백만원 감축)

- 사유: 감축의 기준이 된 175백만원은 지자체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국고지원만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재산정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진흥 사업

○ (기존 평가결과, '18년 실시) 감축(19년~21년 총 3,650백만원): 공공디자인진흥사업 및 건축문화진흥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애매하고 반드시 국고보조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재평가 결과) 감축(건축문화진흥사업 20% 감축)·사업방식변경: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18.5.), 포용국가 과제 선정('19.2.) 등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디자인진흥 사업은 19년 예산을 유지하도록 평가결과를 조정함. 단, 공간 및 건축문화진흥은 19년 예산의 20%를 감축하도록 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유: 정부정책 방향의 발표 등에 따른 사정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및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문체부의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감축규모를 축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 - 스마트시티기반구축

○ (기존 평가결과, '19년 실시) 감축(360백만원): 사업목표에 비해 재정 지원규모가 과다하고,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내역사업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핵심인재 450명 양성의 타당성 및 산학연계프로그램 지원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재평가 결과) 사업방식변경: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교육인원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사업의 적절한 관리집행을 통해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유: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19.5)에 따라 유사중복성이 해소되었으며, 대체사업이 없어진 점을 인정함.

□ 농림축산식품부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 (기존 평가결과, '19년 실시) 감축(2,500백만원)·사업방식변경: 실질적 수혜자에 비해 재정지원 규모가 과다하며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공영도매시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시장 도매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평가 결과) 사업방식변경: 신규 사업추진 시 사업집행에 관한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보조율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사유: 연차별 소요가 정해진 총사업비 대상사업으로, 단년도 사업비 감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지원을 지연시키는 등 평가결과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

□ 통일부 - 이산가족문제해결지원

○ (기존 평가결과, '19년 실시) 감축(50백만원): 사업의 목적과 내역사업의 적절성, 사업성과, 사업집행 관리 전반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여, 내역사업과 예산편성 재조정, 사업관리 등의 불필요한 내역사업을 검토 축소하고 사업방식 변경이 전폭적으로 필요하여 감축과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 (재평가 결과) 사업방식변경: 위탁단체 선정 규정 및 근거 등 사업의 집행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개선이 절실함.

- 사유: 정부정책 및 예산운용기조를 감안하고, 사단법인의 정기총회 및 단순 해외지회 지원 등 자체 고유사업 배제 등의 일부노력을 인정함.

□ 행정안전부 -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

○ (기존 평가결과, '19년 실시) 감축(29백만원)·사업방식변경: 현행 예산 투입 규모에서 성과를 보다 제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흡한 성과관리 방안이 지속된다면 현재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명분이 약해짐.

○ (재평가 결과) 사업방식변경: 성과관리를 위해 마련된 체계적이고 기속성 있는 추진계획을 충실하게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유: 과거 성과 및 현재 환경분석,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등을 충실히 마련한 점을 인정함.

<표 3-1> 보조사업 재평가 사업별 결과

소관	세부사업명	평가 연도	평가결과 (점수)	평가시 지적사항	재평가 내용
고용노동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2019	감축 사업방식변경	·감축(20년 100백만 원) 및 사업방식변경 ·최근 3년 실집행률이 약 65%에 머물고 있으므로 19년 예산 대비 35%에 해당하는 100백만 원을 감축 ·낮은 성과에 대한 원인 파악 등 사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검토할 데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 ·제주도 지역의 일자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원안유지>** ·유사사업 폐지에 따라 풍선효과 우려가 있다고 하나, 이를 보조 사업평가에서 반영할 근거가 부족함. ·올해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의 명확한 폐지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검토하여 타 사업의 결과를 조정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기반구축	2019	감축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은 '감축('19년 360백만원)'을 권고함 ·사업목표에 비해 재정 지원규모가 과다함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내역사업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핵심인재 450명 양성의 타당성 및 산학연계프로그램 지원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또한 향후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교육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향후 사업진행의 면밀한 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요구됨	**<평가결과 조정>** **<사업방식변경>**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교육인원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사업의 적절한 관리집행을 통해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유: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중소벤처 기업부의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19.5)에 따라 유사중복성이 해소되었으며, 대체사업이 없어진 점을 인정함.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2019	감축	·감축('20년 예산 4억원 감축. '19년 내역사업(채소가격안정) 예산은 15,137백만원) ·예산불용액('16년 87.8%, '17년 68.6%)이 높기 때문에 사업비의 약 3%인 4억원을 감축하여 운영함(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인해 불용액에 비해 소액 감축하고, '19년 1/4분기 배추, 양파가격 폭락을 감안함)	**<원안유지>** ·사업비의 성격, 구조 상 불용 또는 부족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은 평가에서도 인정함. ·다만, 지속적 실집행률의 부족은 정부 전체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일정부분의 감축 운영은 필요함.

소관	세부사업명	평가 연도	평가결과 (점수)	평가시 지적사항	재평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2019	감축 사업방식변경	·25억원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늘리거나 융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점검 등의 결과가 사업 집행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	**<평가결과 조정>** **<사업방식변경>** ·신규 사업추진 시 사업집행에 관한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자립도에 따른 차등 보조율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사유: 총사업비 대상사업으로, 단년도 사업비 감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지원을 지연시키는 등 평가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
농촌진흥청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2019	감축 사업방식변경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는 농업 정보 자료 조사 및 입력과 같은 필수 사업이 아닌 간접 사업으로 사업비의 감축과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정보화 경진대회 중 정보화와 관련이 없는 식대, 학술행사, 홍보용품 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경진대회 시상금 및 우수사례 보급 교육에 예산을 사용하길 권고함 (2017년 예산기준 내역사업 정보화 경진대회 예산 175백만원 중 식대, 학술행사, 홍보용품 등 행사성 예산 54백만원 감축)	**<평가결과 조정>** **<감축 21.6백만원, 사업방식변경>** ·정보화 경진대회 중 정보화와 관련이 없는 식대, 학술행사, 홍보용품 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경진대회 시상금 및 우수사례 보급 교육에 예산을 사용하길 권고함(내역사업 정보화 경진대회 예산 70백만원 중 식대, 학술행사, 홍보용품 등 행사성 예산을 약 30%에 해당하는 21.6백만원 감축) - 사유: 감축의 기준이 된 175백만원은 지자체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국고지원만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재산정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및공간문화진흥	2018	감축	·공공디자인진흥 및 건축문화진흥은 사업의 성격이 애매하고 반드시 국고보조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19~21년 단계적감축(36.5억)	**<평가결과 조정>** **<감축(건축문화진흥 20% 감축)·사업방식변경>**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은 19년 예산을 유지하되, 공간 및 건축문화진흥은 19년 예산의 20%를 감축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방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유: 정부정책 방향의 발표 등에 따른 사정 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및 대한민국공간 문화대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문체부의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감축규모를 축소하도록 함.

소관	세부사업명	평가 연도	평가결과 (점수)	평가시 지적사항	재평가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생활문화진흥	2019	감축 사업방식변경	·감축(4 억), 사업방식변경 ·사업의 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지 않음 ·2005 년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효과를 측정할만한 적절한 성과지표가 부재함 ·성과를 검증할만한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원안유지>** ·감축의 근거는 불용액 과다가 아닌 성과지표 부재에 따른 성과검증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정근거에 오류가 없음. ·평가결과 이후 별도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평가결과 변경 근거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육성	2019	감축 사업방식변경	·감축(6 억), 사업방식변경 ·사업의 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지 않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업 성과가 동 예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우며,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원안유지>**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미흡에 따른 감축결과는 타당하며 오류는 없음. ·평가결과 이후 별도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평가결과 변경 근거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 지원	2019	감축 사업방식변경	·2019 년 예산을 기준으로 10% 수준에 해당하는 20 억 원을 감축하도록 함 ·전기 평가에서 10% 감액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보조금액을 16 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있는데 학교밖 프로그램은 승마, 골프, 볼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감축이 불가피함 ·사업수행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거나 대한체육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에 대한 수요를 감안했을 때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적용을 통한 보조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안유지>** ·평가결과 판정 근거에 오류가 없으며, ·평가결과 이후 별도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평가결과 변경 근거 없음

소관	세부사업명	평가 연도	평가결과 (점수)	평가시 지적사항	재평가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2019	감축 사업방식변경	·중요한 수요자인 학부모 만족도는 3년 연속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이는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2억 4천만원을 즉시 감축하는 것을 제안함	<원안유지> ·효과성 검증을 하는데 있어 사업목표에 따른 수혜자인 학부모의 표본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므로 미흡한 것이 맞음. ·평가결과 이후 별도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평가결과 변경 근거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2018	감축 사업방식변경	·해당 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편익이 대부분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공익적 혜택이 크지 않아 사업의 국가경제적 타당성이 높지 않음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송출비를 할인해주는 유사 사업이 이미 존재	<원안유지> ·평가결과 판정 근거는 광고주 사적수익으로 실현되어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경제적 타당성이 높지 않다는 점으로서 평가결과 근거에 오류는 없음. ·평가결과 이후 별도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평가결과 변경 근거 없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	2019	감축	·사업 본래의 목적은 매우 양호하나 운영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매우 다양한 사업들의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 운영성과나 지출구조, 인력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측면, 즉 국가예산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3% 감축 권고함 ·향후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여부, 성과평가지표 다양화 등을 통해 사업들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 내에 내역사업 없이 단순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소 산만한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들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본 세부사업 하위에 내역사업들을 두고 그 내역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원안유지> ·평가결과 판정 근거에 오류가 없으며, ·평가결과 이후 별도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평가결과 변경 근거 없음

소관	세부사업명	평가 연도	평가결과 (점수)	평가시 지적사항	재평가 내용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2019	감축	·기관 본연의 목적은 타당하지만 운영방식이나 지출구조, 인력운영의 효율성 재검토 차원,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 감축 권고함 ·19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최근 2년간 인건비만 약 6억여 원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거의 동결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봐도 실제로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적시 상담과 복지지원이 이루어졌고, 위기청소년들은 상담결과 무엇을 더 원하고, 상담사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여부 등 사업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원안유지>** ·평가결과 판정 근거에 오류가 없으며, ·평가결과 이후 별도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평가결과 변경 근거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저변확대	2019	감축	·감축(2020년 1,700 백만 원). ·부정수급 사례가 '스마트 창작터' 사업에서 발생한 바, 정상적 모니터링 과정이 아닌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난 바 있음. ·2019년 예산 기준 실전 창업 교육과 기업가정신 확산 내역사업 예산 기준 10%에 해당하는 1,700 백만 원을 2020년 감축 판정함. ·향후 성과관리를 주관적 만족도 중심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창업역량의 제고를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성과관리 필요함.	**<원안유지>** ·평가결과 판정 근거에 오류가 없으며, ·평가결과 이후 별도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평가결과 변경 근거 없음
통일부	이산가족문제해결지원	2019	감축	·내역사업과 예산편성 재조정, 사업관리 등의 불필요한 내역사업을 검토 축소하고 사업방식 변경이 전폭적으로 필요하여 감축과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내역사업 전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2019년도 사업 전체 예산 중 5천만원 감축 운영이 필요함	**<평가결과 조정>** **<사업방식변경>** ·위탁단체 선정 규정 및 근거 등 사업의 집행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개선이 절실함. – 사유: 정부정책 및 예산운용기조를 감안하고, 사단법인의 정기총회 및 단순 해외지회 지원 등 자체 고유사업 배제 등의 일부노력 인정함.

소관	세부사업명	평가 연도	평가결과 (점수)	평가시 지적사항	재평가 내용
통일부	사회통일교육내실화	2019	감축 사업방식변경	·감축(10% 감축), 사업방식 변경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선진화」,「지역통일교육센터 사회교육통일교육 허브화」 예산안 산출근거 및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와 실적 등이 운영시스템 선진화나 통일교육 허브화를 달성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다고 사료됨. ·본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 지에 대한 평가 지표 미흡	**<원안유지>**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결과 근거에는 오류가 없음. ·평가결과 이후 별도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평가결과 변경 근거 없음
행정안전부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 경감	2019	감축 사업방식변경	·감축, 사업방식변경 ·현행 예산 투입 규모에서 성과를 보다 제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성과에 그치고 있는 것은 개선될 필요. 현재의 미흡한 성과관리 방안이 지속된다면 현재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명분이 약해짐. 이를 고려해 2천9백만원('19 예산대비 10%)의 감축할 것을 권고함	**<평가결과 조정>** **<사업방식변경>** ·성과관리를 위해 마련된 체계적이고 기속성 있는 추진계획을 충실하게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유: 과거 성과 및 현재 환경분석,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등을 충실히 마련한 점을 인정함.

제3부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대법원

본부운영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대법원
사 업 명	본부운영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0.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20년 예산부터 40백만원 예산 감액) 및 사업방식 변경 권고 ·일부 내역사업의 수혜범위 및 효과성이 제한적이고 국고보조의 타당성이 낮음 ·한국법학원 사업의 수혜범위 및 효과성이 타 보조사업 대비 제한적이고 학술지(저스티스) 발간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 일부 운영비용은 여타 유사 민간학술단체와 같은 방식으로 자체 조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비용을 '20년부터 감액하고, 보조금 이외 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를 낮출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내역사업들이 가지는 목적과 상위 세부사업의 목적 간 부합성이 불명확하므로 관련성 높은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변호사법」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및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한국법학원육성법」 제2조(보조금)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변호사법」 제88조는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이라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89조의3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한국법학원육성법」 제2조는 한국법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①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과 ②한국법학원 운영지원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일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비용 지원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됨

-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이 「변호사법」 제88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동법 제89조의3에 해당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제시됨

- 반면, 한국법학원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근거 법령에 한국법학원의 육성 목적으로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법학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보조금 지원의 범위, 내용 및 규모에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은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 및 법조윤리 확립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최근 변호사의 수적 급증에 따른 경쟁의 증가와 윤리의식 저하 등의 이유로 법조윤리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고, 특히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의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및 기능은 사법제도개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 및 법조윤리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는 광범위하고 전달되는 혜택도 간접적 편익이지만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한국법학원 운영지원의 경우,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됨

- 다만, 한국법학원의 업무 및 기능의 범위를 볼 때 법조분야 종사자에게 전달되는 직접적인 혜택은 명확하나, 그 범위를 넘어 국민 전체에 전달되는 혜택은 상당부분 간접적이고 불명확하여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음

○ 한편, 동 보조사업은 평가대상 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판청구권 실현(단위사업)-재판일반경비지원(세부사업) 내에 편성되어 시행되었고, 2019년부터는 사법운영지원(단위사업)-본부운영지원(세부사업) 내에 편성되어 시행될 계획인데,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이 가지는 목적과 상위 세부사업의 목적 간 부합성이 상당부분 불명확하므로 관련성 높은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①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과 ②한국법학원 운영지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내역사업들의 목적 및 내용이 상이하고 동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한 상호 연계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 부합성 측면에서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핵심 기능과 관련한 내용과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그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외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인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해서는 업무 실적 및 성과가 미비하여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음

○ 한국법학원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법학논문상 시상 등 통상적인 민간 학술단체의 업무 내용 및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해당 업무를 통해 근거 법령에서 정한 한국법학원 육성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연계성 또한 미약함

○ 성과계획서 상 특정 및 공직퇴임변호사 징계개시 및 수사의뢰 건수, 한국법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 논문 피인용지수 등의 성과지표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목표치가 부재하여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현행 성과지표가 사업목표를 적정하게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현행 성과지표는 단순한 업무처리건수에 불과하므로 동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정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 내역사업 중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의 경우 민간시장에서 수행하거나 특정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보다는, 독립적인 기구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한 수행이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중복성을, 조정 및 통합가능성이 있는 타 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 근거 법령에서 정한 법조윤리 관련 법령을 위반사항 적발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어 해당 업무 추진과 관련한 보조사업 연장 사유는 충분함

○ 동 보조사업 내역사업 중 한국법학원 운영지원의 경우 통상적인 민간 학술단체의 업무 내용 및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법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민간 단체들도 다수 존재하는 바,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이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관련 부처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한 수행 또는 민간에 의한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치 않고, 사업 폐지가 된다할지라도 각 법률기관 상호

간의 관계와 소통, 법조계와 법학계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볼 근거도 없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인 보조금 규모에 비해 행정비용의 비중이 크고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조사업자의 내부인건비, 사무공간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에 투입되고 있어, 보조금 규모 측면의 사업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일부 내역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중 재정지원 규모가 과도하거나 사업목적 달성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 감축이 필요함

- 한국법학원 사업의 수혜범위 및 효과성이 타 보조사업 대비 제한적이고 학술지(저스티스) 발간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 일부 운영비용은 여타 유사 민간학술단체와 같은 방식으로 자체 조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비용(40백만원)을 '20년부터 감액 필요함

- 한국법학원이 매년 수행하는 여러 건의 연구용역 결과물이 사업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다는 근거가 미약하며, 격년으로 개최되는 한국법률가대회가 과거 민간 한국법학교수회가 주관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한국법학원이 주관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미약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이외 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근거 법령에 따라 동 보조사업의 사업자는 법조윤리협의회와 한국법학원이 되며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100% 보조율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변호사법」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및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한국법학원육성법」 제2조(보조금)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 및 한국법학원을 보조사업자로 적정하게 선정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라서 교부결정 신고서를 접수받고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하고 있음

○ 변호사법시행령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의 재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및 그 밖의 재산, 정부의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재원 마련 노력을 통해 보조율을 낮출 여지 있음

○ 한국법학원의 경우에도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부담율 제고, 관련 단체 후원금 확보 등으로 국고보조율을 낮출 여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제16조 및 17조, 18조, 19조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교부결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하고 있음

○ 매년 초 또는 수시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고, 법조윤리협의회 개최 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실행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법조윤리협의회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 실적을 조사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체계적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법학원은 한국법학원육성법 제4조에 따라 법무부의 관리·감독하에 보조사업 집행을 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받는 등 적절한 집행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는 대법원/법무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법조윤리협의회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사업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며, 결산감사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에 의하고 있으므로 사후 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음

- 아울러 법조윤리협의회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 실적을 조사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법학원은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고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대법원/법무부에 제출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조윤리협의회와 한국법학원은 대법원과 법무부의 관리감독과 자체 감사를 통하여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의 포괄적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일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비용 지원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됨

○ 한국법학원의 업무 및 기능의 범위를 볼 때 법조분야 종사자에게 전달되는 직접적인 혜택은 명확하나, 그 범위를 넘어 국민 전체에 전달되는 혜택은 상당부분 간접적이고 불명확하여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내 내역사업들의 목적 및 내용이 상이하고 동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한 상호 연계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 부합성 측면에서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 법조윤리 위반사항 적발이라는 법조윤리협의회의 핵심기능 이외에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업무에 관한 실적 및 성과가 미비하여 그 효과성이 미흡하고, 한국법학원의 세부 사업내용을 통해 근거 법령에서 정한 한국법학원 육성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연계성 또한 미약함

○ 소규모인 보조금 규모에 비해 행정비용의 비중이 크고, 일부 내역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중 재정지원 규모가 과도하거나 사업목적 달성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 감축('20년부터 40백만원 감액)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이 가지는 목적과 상위 세부사업의 목적 간 부합성이 상당부분 불명확하므로 관련성 높은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성과지표는 단순한 업무처리건수에 불과하므로 동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정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 개선된 성과지표에 부합하고 동 보조사업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세부사업 발굴 노력 필요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 상향, 보조금 이외 재원의 다변화 등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 업 명	자문위원 역량강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본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관리의 적절성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됨 ·그러나 사업의 목표, 성과, 내역사업의 방향 등을 설정한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제안됨 ·사업수행기간동안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통해 성과지표 달성이 필요하며, 국고보조 지원 이외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조문화되어 있으며, 예산에 대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청년층 및 여성층 인사의 적극적 통일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세대·계층별 통일공감 강화 및 통일리더십 제고(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하고, 지역별·대상별 자문위원 연수를 통한 자문위원의 통일현안 인식과 정책건의 역량 제고(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제한적이나, 효과적인 자문건의나 일반시민 대상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넓은 의미로 국민도 수혜자로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지역별·대상별 자문위원 연수를 통한 자문위원의 통일현안 인식과 정책건의 역량제고, 청년 및 여성층 인사의 통일 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통일 공감 및 통일리더십 제고의 목적을 갖고 있음.

○ 청년 여성위원 역량지원 및 지역통일 역량강화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성과지표인 국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89점으

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자문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80점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통해 성과지표 달성이 필요해 보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광범위한 통일역량을 강화한다는 사업추진의 목적은 매우 바람직하나, 국고보조 지원 이외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하는 방안(지자체 자체 지원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재부와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집행 내역을 감안해서 산출내역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내역사업의 산출내역의 근거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을 제시하였으나, 좀더 전체 국민들에게 사업의 영향력을 파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사업비를 민주평통 자체시스템과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사업비 집행에 사업비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집행 감독하고 있음을 확인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잔액과 미추진시 환수규정은 마련되어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이 사업은 평화통일 위해 민간인인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국고보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문위원의 통일현안 인식과 정책건의 역량제고 목적과 관련하여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됨

○ 사업비 집행 규정,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사전, 사후 통제방안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적절함

3-2 정책 제언

○ 이 사업은 국가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해 자문위원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 사업의 형태로 매년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예산 편성 과정을 고민하거나 사업구조 방식 변경을 통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사업의 목표, 성과, 내역사업의 방향 등을 설정한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는 사업방법이 제안됨

○ 사업수행기간동안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통해 성과지표 달성이 필요하며, 국고보조 지원 이외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 업 명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도 적절함 · 본 사업은 사업의 목표, 성과, 내역사업의 방향 등을 설정한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사업수행기간동안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 29조에 근거 지역협의회를 둘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령 25조의 2에 그 활동과 기능, 시행령 30조의 2에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2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25조의 2

제25조의2(기능 등) 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 사업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인정되며,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단위의 광범위한 통일 활동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016년 보조사업평가 결과에 대해 일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있었음

- 2016년 보조사업평가결과에서 “동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협의회운영사업과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유사·중복성이 있어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내용이 목표달성에 미흡한 측면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2017년 예산 편성 시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사업을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으로 통·폐합하였으며, 2018년 예산 편성 시 ‘지역협의회 운영’사업명칭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으로 변경함. 2019년 예산 편성에서 ‘평화통일 원탁회의’를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기존 사업 중 일부사업(청소년 통일공간 사업 등)을 구조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사업의 추진방식이나 사업 내용 등에 근거할 때, 민주평통 지역조직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보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이 사업은 비공모 사업이며, 지역회의(17개 시·도) 및 지역협의회(228개 시·군·구)에서 사업비 요청 시 사무처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임.

○ 사업 규모, 사업 당 예산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하고 있으나, 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거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부분에 부합한다고 제시하였으나, 국민들이 민주적 평화통일 추진과정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과 참여대상 범위의 확대 등의 사업내용 방식 변경이 필요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역회의, 지역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으로, 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민간인 자문위원과 협의회 사무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설 초기부터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예산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에 교부하는 방식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민주평통의 자체시스템인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를 하며, 예산지출 처리에 대해 집행, 감독 실시함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비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잔액과 미추진시 환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2016년 보조사업평가결과에 대해 일부 사업에 대해 통폐합, 명칭변경, 구조조정, 신규사업 개설 등의 개선의 노력을 보임

○ 국가기관의 성격이지만, 민간인인 자문위원과 사무보조의 비정규직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으로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에 교부되고 있음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설정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신규사업이나 구조조정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목표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사업의 목표, 성과, 내역사업의 방향 등을 설정한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매년 외부의 평가나 지적 등에 의해, 그리고 기재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사업내용이나 사업명칭이 변경되고 있으나, 일정한 기준과 목표, 지표에 근거해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사업 내용 결정 및 예산범위가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기간동안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공공기관갈등관리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 업 명	공공기관 갈등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공공기관갈등관리 사업은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정상추진하도록 함 ·동사업은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하며 사업시행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함. 소액사업으로 예산규모가 작아 사업성과가 크지 않으나, 공공갈등관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seed 사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됨 ·다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갈등관리 기본법]을 통해 갈등관리교육을 의무교육화하거나, 적어도 자치단체 혹은 중앙부처 자체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본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갈등관리 전문성 제고' 및 '직접적인 갈등문제 해결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과「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5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에 사업의 추진과 내용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를 둠

○ 공공기관갈등관리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에 근거를 두는데, '국무조정실장은....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강제규정은 아님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갈등관리 교육과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로 구성되는데, 이는 모두「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명시된 갈등연구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공공기관갈등관리 사업의 목적은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원의 갈등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실제 당면한 갈등현안 해결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나,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국정과제는 아님

※ ~ '18년 사업목표: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원의 갈등관리 능력을 제고'

○ 보조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관('18년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학교 갈등분쟁해결연구센터)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간접적 수혜자는 갈등관리교육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으로 연간 교육대상자의 규모가 크지 않아 수혜자의 범위가 넓지 않음

- 본 사업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갈등관리 담당자들의 갈등관리 역량이 강화되어 사회 전반의 갈등이 완화·해소됨으로 일반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부효과를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갈등관리 교육'과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로, 교육대상자와 교육내용에 따라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는 명확히 구분되나,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음

※ 내역사업별 목표와 내용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갈등관리 교육': 갈등의 순기능을 이해, 갈등관리의 기본원칙, 요소, 구체적인 협상 및 조정 기술 습득 등 갈등관리 역량 강화 등
-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갈등관리 성공·실패사례 공유, 전문가와의 협력적 관계 강화 등을 통해 갈등관리 전문성 제고 등

- 두 내역사업의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고,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사업의 목표는 '갈등관리 성공·실패사례 공유, 전문가와의 협력적 관계 강화 등을 통한 갈등관리 전문성 제고'이므로, 교육방식과 교육내용구성의 개선을 통해 기초적인 교육보다는 사례공유, 전문성 제고 교육의 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지표는 '교육만족도'로 2017년에는 2014-2015년 두 해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017년 목표를 100.8% 달성하였는데, 이는 목표치를 4.3에서 4.0으로 하향조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다만 2016년 이후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고 있음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저)
교육만족도 (단위 : 점)	목표	4.3	4.3	-	4.0	-	∑개인별 응답 만족도 점수/n (총 응답자수)	교육 만족도 조사 (5점 만점)
	실적	4.27	4.14	4.13	4.19	4.23		
	달성도	99%	96%	-	108 %	-		

- 현재의 성과지표인 교육만족도로는 보조사업의 목표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원의 갈등관리 능력 제고' 및 '실제 당면한 갈등현안 해결을 직접 지원' 성과를 판단하기에 불충분함

- 두 보조사업자가 진행하는 교육만족도 조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단국대 5점 척도, 한국행정연구원 7점 척도 사용)

○ 교육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2016-2018) 이수인원은 2,839명임. 중앙부처공무원 및 자치단체공무원 수를 고려하고,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을 보유한 지자체가 10개이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보직 순환에 따라 갈등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교육이수인원으로 보조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교육인원: ('15년) 1,891 →('16년) 2,616 → ('17년) 2,979

○ 동 사업은 소액사업으로 예산규모가 작아 사업성과가 크지 않음. 다만 공공갈등관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seed 사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됨(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갈등해결 자문, 갈등관리매뉴얼 보급, 갈등관리 DB 구축, 관련분야 연구 등)

-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갈등관리 기본법]을 통해 갈등관리교육을 의무교육화하거나, 적어도 자치단체 혹은 중앙부처 자체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본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갈등관리 전문성 제고' 및 '직접적인 갈등문제 해결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2022년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성과 향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높으나(2015년 OECD국가 중 5위) 사회적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고, 갈등관리의 주요 당사자인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는 민간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음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이 크지 않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10억 이하 소액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017년 130백만원, 2018년 120백만원, 2019년 120백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음

-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임(행정연구원의 경우 50% 내외)

○ 실집행율은 2016년 96%, 2017년 96%, 2018년 94%로 3년 평균 95%이며, 내역사업별로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갈등관리 교육'이 97%과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가 94%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갈등관리 교육	98% (44/45)	100% (60/60)	93% (56/60)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94% (66/70)	93% (65/70)	95% (57/60)
연도별 평균	96% (110/115)	96% (125/130)	94% (113/120)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근거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민간기관을 지정하고 국고보조 100%로 진행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⑪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과 '⑫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간접적으로 관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는 이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 분할교부함

-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에 대해서는 제6조와 제7조, 지원 및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제8조와 제9조, 수행 일정에 대해서는 제10조 근거규정에 따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신청) ①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사실의 통지)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기간) ①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무조정실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적합성 및 적정성을 준수하여 재원 집행

○ 관련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착수 前, 지원사업 추진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함

○ 현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개별 집행 내역을 월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월말 점검 및 수시 점검

○ 주기적인 점검 및 내역 요구와 관련된 규정과(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규정을 둠(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관리 및 정산, 회계감사 등 수행

- 중요재산 관리 및 정산은 제11조, 보조금 반환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는 제12조, 제13조에 근거규정을 둠

○ 매년 실적보고서와 정산내역서를 제출받아 집행잔액을 환수하고,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

○ 관련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 및 내역 요구를 통해 부정수급방지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발생 사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공공기관갈등관리 사업의 목적은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원의 갈등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실제 당면한 갈등현안 해결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넓지 않고 국정과제는 아니나,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갈등관리 교육'과 차별화된 소기의 목표('갈등관리 전문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방식과 교육내용 구성의 개선을 통해 기초적인 교육보다는 사례공유, 전문성 제고 교육의 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여야함

○ 동 사업은 소액사업으로 예산규모가 작아 사업성과가 크지 않으나, 공공갈등관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seed 사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됨. 다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갈등관리 기본법]을 통해 갈등관리교육을 의무교육화하거나, 적어도 자치단체 혹은 중앙부처 자체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본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갈등관리 전문성 제고' 및 '직접적인 갈등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성과 향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보조
통상연계형경협사업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기획재정부
사 업 명	국제금융센터보조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국제금융센터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국제금융센터의 보조사업은 그 당위성을 인정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다만, 보조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동 보조사업의 예산이 국제금융센터의 일반적인 사업 및 업무영영과 겹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외국환 거래법에 보조사업기관 지정이 가능함이 제시되어 있음.

○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에 “외환정보분석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이 제시되어 있으며,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에 “국제금융센터”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운영규정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EWS),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글로벌 금융불안 대응 및 정책 지원, 공공 및 민간부문 국제금융업무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 운용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지표를 1억 원당 보고서 제공건수와 만족도 조사로 설정하였음.

- 보고서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단순 실적 집계가 아니라 보고서의 종류와 성격을 감안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당 사업은 그 성격과 규모면에서 볼 때,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님.

○ 현재의 업무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 정책결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외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센터의 규모와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구성 내역은 정보수집, 전신시스템 및 사무실 유지비, 해외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특별한 내용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제금융센터는 관련 법령(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규정,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운영에 관한규정)에서 외환정보 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필요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이 규정되어 법적은 근거에 의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국제금융센터의 2019년 총사업비는 96.9억 원이며, 국고보조금(21억 원), 한은(21억 원), 사원기관(38.4억 원)이 재정을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기타수익(16.5억 원 : 후원금, 이자수익,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기재부 자체 평가결과 적정성 및 투명성을 인정받은 것은 바람직함.

○ 교부금 지급시 및 수시로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는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교부에 있어 관련 법령 준수, 보조사업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별도 계정 운영, 추진계획 준수, 집행내역 변경 관리, 보조사업정산, 중요재산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외부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위탁하여 업무 전반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국제금융센터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있음.

- 다만, 고객만족도 및 평가가 국제금융센터 사업에 어떻게 feedback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다양하게 생성되는 보고서를 이용기관(이용자)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사례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 정산 이후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 실시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제금융센터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국제금윤센터의 보조사업은 그 당위성을 인정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나, 보조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의 예산이 국제 금융센터의 일반적인 사업 및 업무 영역과 겹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기획재정부
사 업 명	통상연계형경협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은 그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가고 국정방향과고 부합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기 선정된 사업 내역을 보면 동 사업이 기존의 ODA와 KSP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음. ·통상연계형경협사업의 종류와 수요를 발굴하여 종합추진계획(로드맵 등)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예산 계획 수립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아님.

-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의결되고 베트남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한-베 FTA에 따라 경제협력사업(총 500만불 규모) 공동추진을 규정하는 경제협력 이행약정 체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한국과 베트남은 FTA('15. 12월 발효) 협상 시 경제협력사업(총 500만불 규모) 공동추진을 규정하는 경제협력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7년부터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옴.

- 이행약정을 통해 경제협력 활동비용을 미화 500만불로 추산하고 양 당사국이 발전 및 역량이 상이한 수준을 고려하여 분담하고 추가적인 비용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명시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사업 목적은 국정방향과 일치함.

- 신흥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경제협력사업으로서 그 효과가 민간사업자에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으며 협력대상국가와 우리나라 전반에 나타남.

- 직접 수혜 대상은 협력분야별 협력대상국의 정부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임.

- 간접 수혜대상은 협력대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협력대상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음.

○ 기 실시된 사업 내용을 보면, 한-베트남 양식수산물 안전성 개선사업, 베트남 무역구제청 예보시스템 운영 역량강화 사업 등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통상현안을 대응하고자 하는 단기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시행되는 사업이 여건에 따라 매년 달라짐.

○ 그간의 사업 시행 내역을 보면, 당초 사업목표에서 표방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과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먼 사업들로 선정되어 운영되었음.

- 다만, 본 사업은 추진 초기단계에 있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취지, 기선정된 사업내역 들을 보면 민간에서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업들로써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타당함.

○ 그러나 기선정된 사업내역을 보면, ODA와 KSP프로그램과 일부 중복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19년 예산 내역>

< 한-베 양식수산물 안전성 개선 사업 : 300백만원 >

▸ 베트남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 컨설팅: 110백만원
  - 베트남 양식 현황 및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한 현행 규정 개선
  - 원산지증명, 한-베 간 품질인증 공통표준 적용 방안 제시
▸ 한국의 어병연구 및 관리기술 공유 국내 초청연수: 65백만원
▸ 관련 정보·기술교환을 위한 현지행사 개최: 90백만원
  - 컨설팅 결과 공유 보고회 및 정보교환 세미나
▸ 사업관리비(코트라) : 35백만원
  - 수행사업 관리(사업일정 등 사업추진 전담관리)

< 베트남 무역구제청 예보시스템 운영 역량강화 사업 : 220백만원 >

▸ 베트남 무역구제 예보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컨설팅: 85백만원
  - 고수익 수출품목, 타깃시장 분석·컨설팅을 위한 분석툴 개발
  -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익창출 모델 마련
▸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국내 초청연수: 20백만원
▸ 공무원, 기업인 대상 정보교환 현지행사 개최: 80백만원
  - 컨설팅 결과 공유 보고회 및 정보교환 세미나
▸ 사업관리비(코트라) : 35백만원
  - 수행사업 관리(사업일정 등 사업추진 전담관리)

○ 한-베 FTA에 따라, 총 500만불 규모의 경제협력사업 공동추진을 규정하는 경제협력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협력분야와 협력형태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유동적임.

- 사업 성격으로 볼 때, 국고 보조율 100%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600백만원	600백만원	520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600백만원	600백만원	520백만원
	100%	100%	100%

1-6. 사회적 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 10조, 13조에 정부로부터 필요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이 규정 됨.
- '14.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KOTRA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함.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교부신청·결정·교부액 지급, 실적 점검· 관리 감독 관련 절차 적용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점검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신청, 교부결정, 교부금 지급, 사후 실적관리에 있어 관련 절차 및 기간 준수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는 연 2회로 분할 지급하며, 교부금 지급 시와 수시(서면, 현장)로 집행실적 점검 등 관리· 감독하고 있음.

- KOTRA는 전체예산을 사업계획과 전년도 결산 등 주요사항을 참고하여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토(검증보고서)를 실시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준용하고 있음.

- 관련 법령 준수, 보조사업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별도 계정 운영, 추진계획 준수, 집행내역 변경 관리, 보조사업정산, 중요재산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을 교부조건으로 통보하고 있음.

- 미이행 시 교부결정 취소, 반환 등 법령 및 조건에 따른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은 그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가고 국정방향과 부합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됨.

○ 하지만, 기 선정된 사업 내역이 기존의 ODA와 KSP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음. 당초 사업목표에서 표방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과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먼 사업들로 선정되어 운영되었음.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은 현안에 따라 사업 내용도, 예산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현안에 대응하는 즉흥적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커서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음. 따라서 협력형태와 분야로 다양화 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사업 차별성 확보가 필요함.

○ 통상연계형 경협사업의 종류와 수요를 발굴하여 종합추진계획(로드맵 등)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예산 계획 수립이 필요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교육부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
고등교육및대학재정정보분석시스템
국가진로교육센터운영지원
글로벌교육지원사업(ODA)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대입전형자율화지원
대학구조개혁지원
이러닝세계화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학생정신건강센터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9.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 추진. ·선정 대학 지원 및 사업관리운영 등 2개 내역으로 구성된 본 보조사업은 근거 법령의 받침을 받고 있고, 내용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됨. ·목적성 보조사업으로서, 본 보조사업은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추상적 명칭과 실제 사업 내역의 구체적 내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 ·향후, 보조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실제 보조사업이 대학입시 전형을 관리하여 고교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내포하도록 재정리할 필요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2페이지 이상 작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은 대학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대학과 정부의 운영 방향 및 지원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7조에 국가가 학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 존재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은 선정 대학 지원 및 사업관리운영비로, 전체 근거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됨

「고등교육법」[법률 제15552호]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22호]

제31조(학생의 선발) ①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4.4.29.>
②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국정과제(50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의 주요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국정과제의 이행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사료됨.

○ 수혜자는 중/고교생 및 학부모, 고교 및 대학으로 수혜자 범위가 광범위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 것으로 평가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관리운영비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업 목표 달성에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여대학 지원은 대학입학전형을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국고보조금 지원한 사실 확인됨('16년 60개교, '17년→62개교, '18년→68개교 확대 지원)

- 사업관리 운영비는 평가를 통한 사업 선정·관리, 지원사업 설명회 등 관련 행사 및 교육 운영,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내용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내용은 단순하고 명확하나, 보조사업 명칭과 괴리가 있어, 명칭을 기반으로 할 경우 보조사업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있음.

○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조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위해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됨. '14-17년 학생부위주전형 도입, 고른기회(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논술전형 및 특기자전형 규모 감소,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등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방향 인정됨.

대입전형 개선	'15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논술위주전형 비율 감소	3.98%	4.20%	4.18%	3.72%
특기자전형 비율 감소	2.20%	2.07%	1.80%	1.57%
기회균형선발전형 비율 증가	8.02%	11.04%	11.00%	11.44%

○ 최근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운용되어 왔는데, 성과지표가 연도별 변동이 심하고 지표 사이에 차별성이 적어 혼돈 가능성 존재함. 예컨대, 2014년도의 '학생부 중심 전형 비율(%)'과 2016년 '학생부위주전형 선발 비율(%)'은 미세한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 인정됨. 법령상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대학으로 하여금 정부의 대입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점 인정됨.

○ 2022학년도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방안('18.8)에 따른 안정적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대입전형 개선 연구 및 대입전형 운영 과정상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원 필요성 인정됨.

○ 대학 자율사항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대입전형을 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종합적인 대입 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사업으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됨. 사회적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전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속에서 공정성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대학의 대입전형 종합적인 개선을 유도하며, 다양한 대입전형 안내 및 중고교-대학 연계 활동을 지원하기에 대체적으로 적정한 지원 규모임.

- 다만, 고등학생 수의 감소와 대학생 수의 감소, 그리고 고교와 대학 수의 감소에 따라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는 크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2016년 이후 연속 선정 대학 수를 확대하여 왔으나, 선정 대학 수의 확대를 지양하고 정책의 운용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 기존에 대학 부담 없이 100% 국고에서 보조하였던 방식을 '15년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해 대학의 예산 지원 요구액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17년 지원사업부터 국고지원금의 10% 이상을 대학이 필수 대응 투자하도록 자기부담금 조건을 부가하는 실정인데, 대학의 자기부담금을 상향시키고 국가의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방법 고려할 필요 있음.

-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18년 예산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유도함.

- 고른기회 전형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만학도, 지역인재 등으로 확인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2페이지 이상 작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정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간접보조사업자인 지원 대학을 경쟁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선정 및 평가 기준이 제시되며, 이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총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부조건 충족 여부 검토를 비롯하여 대입전형 개선 노력, 대입전형 운영 여건, 대입전형 안내 및 중고교-대학 간 연계 활동 계획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대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되어 법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지원대학의 경우는 경쟁 공모 방식으로 지원을 접수하고,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불인증 대학은 사업 신청 자격을 배제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이 확인됨.

- 18년 사업기본계획, 사업관리・운영 계획(세부 예산집행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계획 등), 사업협약서 등에 관리・감독 등을 위한 체계와 규정 존재함.

○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법령 및 사업관리·운영 계획 위반 시 사업비 환수, 차년도 선정평가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계획 등 사후관리 절차와 규정을 사업기본계획, 사업관리·운영 계획, 사업협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법령 및 사업관리·운영 계획 위반 시 불이익 조치 계획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대교협은 교육부에 결과보고서 및 외부회계법인 결산 관련 정산보고서 제출(~'18.3월)하고, 대학은 대교협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하는 체계임. 대학은 정산보고서 제출 후 보조금 반납(잔액 및 예탁계좌 발생이자) 및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정산검증결과, 감사지적사항,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결산서 등을 정보공시 하여야 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됨.

- 선정평가 시 신청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며 집행 중에는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집행 완료 후에는 결산 검토를 통해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사업비 환수, 차년도 선정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므로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 상시점검을 통해 사업비 집행 적절성 검토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실시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선정 대학 지원 및 사업관리운영 등 2개 내역으로 구성된 본 보조사업은 근거 법령의 받침을 보유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됨.

○ 보조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실제 보조사업이 대학입시 전형을 관리하여 고교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리할 필요 존재함.

3-2 정책 제언

○ 본 보조사업으로써 '고교교육 정상화'를 이루는지 평가하기 곤란하고,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하여는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명칭을 실제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9.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5**
1-1.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 추진. ·고등교육의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인정됨. ·다만,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성과지표 보완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성과지표가 2016-18년 기간 동안 계속 바뀌어 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왔음. ·향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의 안정화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2페이지 이상 작성)

1-1 보조사업 법적 근거의 명확성

○ 대학재정정보 공시에 관하여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위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8항, 사립대학 예·결산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교지·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타 주요 법령 근거는 아래에 요약함.

「사립학교법」 제31조(2005.12.29. 개정)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2013.3.23. 개정)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48조(1990.4.7. 개정)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7조(2017.11.28. 재정)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고등교육의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명확한 목적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또한 대학 재정정보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은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국가적 관점에서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 대학 재정정보 및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를 집계·분석·공시하여 고등교육 정책 수립 지원 및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사업 내용으로 평가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대학재정정보 공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이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 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혜택이 사회적으로 퍼지는 외부효과(spill -over effect) 존재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각 내역사업 및 기간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및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승인 검토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루틴한 업무 성격으로 사료됨.

○ 목표와 내용으로 대학 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대학재정정보 사후관리를 통한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된 것으로 인정됨.

○ 성과지표가 2016~18년 기간 동안 해마다 바뀌어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고, 특히 2018년도 성과지표 '고등교육 재정정보 통합서비스 이용 건수(천 건)'는 실제 운영 주체인 교육부의 노력과 역량을 반영하는 수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성과지표로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성과지표의 보완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대체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예컨대, 대학재정정보(예·결산 및 기본재산, 대학교육시설현황) 집계·분석·공시의 적시공시 실적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구 분	2018년 접수·집계·공시 실적 현황	공시일
예·결산	공시 336교 / 대상 341교(98.5%)	'18.6.29.
산단 예산	공시 334교 / 대상 344교(97.1%)	'18.8.31.
산단 결산	공시 342교 / 대상 348교(98.3%)	'18.6.29.
수익용기본재산	공시 342교 / 대상 349교(98.0%)	'18.8.31.
시설현황	공시 294법인 / 대상 298법인(98.7%)	'18.10.31.
기숙사 운영현황	공시 417캠퍼스 / 대상 420캠퍼스(99.3%)	'18.10.31.

- 사학기관 실태점검을 수행('17년 50개교 → '18년 40교)하였으며, 1교당 16.9건의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이행관리를 통해 사립대학 재무·회계 투명성 증대 및 신뢰도 제고 유도 노력이 인정됨.

-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대상교('18년 10개교, 전년 동일) 중 대규모 산학협력단 점검 대상교를 확대('17년 0개교 → '18년 5개교)하였으며, 1교당 10건의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여 이

에 대한 이행관리를 통해 산학협력단의 재무·회계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증대 및 신뢰도 강화 유도 인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과지표는 사업주체의 활동지표에 해당하고,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실제 재정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및 부정사례 감소에 대한 성과 및 효과는 측정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현재로서는 보조금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민간에서 자체 수행은 어려운 실정임. IT시스템, 회계전문가, 관련 지식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위탁사업 필요성 인정됨.

○ 상기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존재하며 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사업임.

- 국정과제 76-2. 교육 민주주의 회복(사학비리 근절)
- 국정과제 49-5. 대학 등록금 및 주거 부담 경감

○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이 법령에 의해 매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 그것을 위한 행정행위를 재단에 위탁하여 하는 실정임. 따라서, 이 기능의 중단은 간접적 비용을 사회적으로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현재 필요한 행정행위를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 규모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내역과 지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정함.

○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사업은 법령 및 규칙에 근거한 교육부 위탁사업임에 따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부분은 미약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보조사업자 자부담 0%)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관련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 제8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6조)에 근거한 사업수행 적격과 충분한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보유하여 보조사업자로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내역 보고 등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시행하는 사실 확인됨. 관리체계는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에 통보 → (보조사업자) 세부추진계획 작성 및 제출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시행 → (보조사업자) 사업 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 작성 및 제출 → (교육부) 집행 결과 검토로 이루어져 있음.

- 국고보조사업 점검을 통해 집행내역에 대한 점검 실시는 ‘17년 국고보조사업 현장 점검 실시 ’17.11.02~11.03., 18년 국고보조사업 서면 점검 실시는 ’18.10.25~10.29. 에 시행됨.

○ 집행 투명성 측면에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기재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관리를 하고, 국고보조사업 운영 관련 예산 내 비목 및 세목 변경 시 교육부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사실 인정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이 인정됨.

- 분기별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및 최종 사업 결과 보고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음.

- 매년 외부회계법인 정산보고 검토 및 회계감사 수행하고 있음.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는 사실 인정됨.

- 사업종료 후 회계말 정산보고서 검토, 집행 잔액 및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발생 사례 없음.

-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자 내부 감사실의 감사시스템을 거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실집행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공공기관으로 클린카드 의무사용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17년부터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 실집행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부정수급방지 대책으로 교육부는 분기별 집행결과 검토 후 차분기 사업비 교부, 현장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하고,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집행률 및 세부 집행내역 보고, 회계감사 수행하는 사실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1페이지 이내 작성)

3-1 종합 평가

○ 고등교육의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명확한 목적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고, 국정과제와 연관된 사업임.

- 사업의 전체적 타당성과 필요성 모두 인정됨.
- 다만, 사업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보완과 관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2 정책 제언

○ 성과지표를 보조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성과지표가 2016~18년 기간 동안 계속 바뀌어 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어, 성과지표의 안정화와 개선을 통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국가진로교육센터운영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국가적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정과제 <52. 평생·직업교육의 혁신>과의 연계성도 확인되며, 그간 비교적 적정하게 예산계획 및 사업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국가진로교육 정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보조사업의 수요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함 ·국가진로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의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적정한 사업범위 및 예산규모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법에는 교육부장관이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①진로교육현황조사, ②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③성인 진로교육 지원 방안 연구 및 개발, ④국가-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네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내역 사업의 내용은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 사항에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진로교육법 15조 2항 >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①진로교육현황조사 및 ③성인 진로교육 지원 방안 연구 및 개발 내역사업은 상기 업무사항 8 및 6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며, 특히 진로교육현황조사의 경우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에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②진로교육 관계자 연수와 ④국가-지역 협력체계 구축 내역사업의 경우 상기 업무 사항 10에 근거하여 소관부처에서 수립한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수행되고는 있으나, 직접적 연계성을 가지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업무 사항 7과 9와는 그 대상 및 범위에서 연계성이 다소 미약하므로 현재 소관부처에서 계획 중인 법개정 시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법적 연계성을 보완할 필요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근거 법령에 따라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중앙-지역-관련기관 및 부처와 연계하여 진로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관점에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가적 관점의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 <52. 평생・직업교육의 혁신>과의 연계성도 확인됨

- 동 국정과제는 개인의 소질, 흥미, 적성, 경력, 경험 등을 기초로 한 평생 진로개발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진로변경을 경험하게 될 성인의 탄력적 대응역량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연구 및 방안 개발·보급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동 보조사업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진로교육교사, 진로교육 정책입안자 등이며, 간접적인 수혜자는 진로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학생 및 평생학습자로서 그 수혜범위가 국가적으로 광범위하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는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진로전담교사 교육,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등이며, 동 보조사업의 각 내역사업은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수행과 연계되어 있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각 내역사업의 내용은 명확한 반면, 해당 내역사업의 목표가 사업수행 관련 활동건수 또는 실시 여부(예: 현황조사 실시, 기초연구 실시, 포럼 개최 등)와 같이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만 설정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상위 목적 달성에의 연계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의 하위목표를 재설정할 필요 있음

○ 현행 성과지표인 국가진로교육센터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만족도는 대표 성과지표로서 적정하기는 하나 동 보조사업 전체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진로교육현황조사, 성인 진로교육 지원 방안 연구 및 개발, 국가-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다른 내역사업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개발할 필요 있음

- 근거 법령에서 정한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 중 하나가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임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를 통해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적 수준의 진로교육정책 관련 연구 기능 및 정책 수립 지원 기능을 정부가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국고보조를 하는 방식은 민간시장에서의 수행 또는 자체수행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것으로 판단됨

○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는 사업은 동 보조사업이 유일하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음

○ 국가진로교육 정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 동 보조사업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9년 예산 425백만원 중 인건비(140백) 및 운영비(50백)에 들어가는 비용은 190백만원으로 보조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비용이 44%에 이르러 소규모인 보조금 규모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가진로센터 운영 유지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의 실효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업무는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된 전담기관에 법정 위탁되어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100% 보조율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에서 취약계층(특수, 다문화, 탈북 학생 등) 진로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간접적으로나마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해당 국민에 대한 진로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정되는 전담기관으로 전국 1개소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장(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요구하는 공모 대상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적 역량이 있는 기관 선발을 위해 공모를 통하여 지정절차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은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공고에 따른 법적 기준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사업자 지정 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 및 주기적인 사업성과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교부하고 있음

○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적 수준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력·시설 및 자체 연구역량을 지닌 기관 중에서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

- 선정 과정을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후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하여 최고득점 기관을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시 보조금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1회 담당자 2인이상의 점검단이 계획 대비 사업 추진 현황, 보조금 부정수급 및 교부 목적외사용 등 부당집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사업현황 및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 시「보조금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달 실집행 현황을 확인하여 연초 제출한 집행계획대로 집행하도록 점검하고 있음

- 매달 보조사업자의 집행 담당자와 유선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과정을 확인하고 있으며, 연1회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계획 대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확인 중임

- 사업 공모 및 예산 교부 시에, 사업수행이 미진하거나 법령 및 지침 위반 등을 통해 예산을 부정 집행할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기간 만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교부 및 점검 시에 「보조금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함

- 사업수행이 미진하거나 법령 및 지침 위반 등을 통해 예산을 부정 집행할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고 회계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사업기간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를 검토 후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반환하도록 안내하여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정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사업종료 후 회계말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부정수급 및 회계집행 현황을 검토하며, 집행잔액 및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낮음

○ 보조금 교부 시에 「보조금법」등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첨부하여 보조금 집행투명성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시 법령에 따라 반환조치 및 지정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림

- 회계시스템을 통해 교부 및 집행과정을 관리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기관 자체 현장 점검(연1회이상, 담당자 2인 이상)을 실시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각 내역 사업의 내용은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 사항에 보조금 지금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국가-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법적 연계성이 다소 미약하므로 향후 법개정 시 업무위탁 범위 확대로 연계성을 보완할 필요 있음

○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관점에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가적 관점의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되며, 국정과제 <52. 평생·직업교육의 혁신>과의 연계성도 확인됨

○ 직접적인 수혜자는 진로교육교사, 진로교육 정책입안자 등이며, 간접적인 수혜자는 진로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학생 및 평생학습자로서 그 수혜범위가 국가적으로 광범위함

○ 각 내역사업은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수행과 연계되어 있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보조사업의 상위 목적 달성에의 연계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의 하위목표를 재설정할 필요 있음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고, 국가진로교육 정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 동 보조사업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현행 성과지표인 국가진로교육센터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만족도는 대표 성과지표로서 적정하기는 하나 동 보조사업 전체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국가진로교육에 관한 정책 수행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의 환류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적정한 사업범위 및 예산규모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글로벌교육지원사업(ODA)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2021년 300백만원) 및 사업방식 변경 ·일부 내역사업의 수행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 예정으로 자연 감축이 발생하며, 일부 내역사업은 사업수행기간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한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음. ·UNESCO BEAR-1 사업은 ODA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2020년 12.31.까지 시행 후 2021년 예산 300백만원 감축함. ·한-다문화가정 교육교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통합 인식 제고의 목적이 있으나, 초청 교원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의 변화는 크지 않음(3.7점/100점). 또한 파견 사업 역시 단순히 '우수 교사'에 대한 해외 연수가 되지 않도록 성과 관리방식 변경 필요함(교원의 선발, 파견 국가에서의 역할 및 실질 교수업의 최저 기준 제시 등).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급 근거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일부 미흡함.

- 「교육기본법」 제29조①국제화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 역시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함.
- 반면,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육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 지원이라는 법적 취지와 우수 교원의 해외 연수 간 연계는 미흡함.

<교육기본법 제29조>

④ 국가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개발협력 등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단이 타당하지 않음.

- 유네스코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며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됨.
-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통합을 돕겠다는 사업목적은 타당하나, 현지 교사 초청 및 해외 교사 파견을 통해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이것이 (학생의) 사회통합인식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성과는 명확하지 않음.

○ 동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는 수혜국가의 학교 및 학생이나,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외의 교

육교류는 교류에 선발된 '교원'이 일차적 수혜자이고, 선발된 교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통해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 아동이 잠재적 수혜자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 구성은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보조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음.
- 사업의 성과지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으며, 다수의 언론에서도 사업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제교류의 특성상 보조금 방식이 적절하나, BEAR Ⅰ지속성 강화사업은 사업의 연장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음.

-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은 없으며, BEAR Ⅰ지속성 강화사업은 당초 계획된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것이 적절함.
- 20년 이후 사업 수행 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고유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내역 사업은 대부분 역량 강화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네트워크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고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함.

-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하며, 사업비는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내역 사업별로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작성하였으나, 유니트윈 사업과 한-다문화가정 제출내역 중 1건을 인정하여 3점 인정함.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는 1건 인정, 세계시민교육은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인정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지 않음.

- 사업자 선정은 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기관 혹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함.

○ 보조사업자의 선정기준이 명확하며, 보조금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지 않음.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 계획, 단계별 집행점검 등의 절차를 준수함.

○ 보조사업은 반기별로 교부하며 사업집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아프리카 브릿지의 경우 사업 집행 여부에 적정성 판단을 위해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 사후관리 중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부 개발협력사업 사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은 제출하지 않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적발 사례 없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 실적은 제출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법적 근거 및 국가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일부 내역 사업의 법적 근거는 미흡함.

- 한-다문화 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 교원에 대한 연수 및 현지 교사의 파견에 대한 필요성은 제시되지 않음. 다만, 다문화 아동에 대한 사회통합의 이해를 넓힌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한 '우수 교원 해외 연수'와 다른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화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위한 별도의 관리 규정은 미흡함.

-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절차의 준수 및 관리 등의 실적은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사업 관리의 노력이 엿보임.

○ 2020년 종료되는 사업(UNESCO BEAR-1)의 예산을 감축함.

- UNESCO BEAR-1 사업은 1단계 사업종료 후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종료 시점인 2020년 이후 감축(300백만원)하는 것이 적절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에 대한 효과성 제고 및 성과관리 방안이 필요함.

- 7개국 180명 교원 선발 기준과 초청 교사의 학교 내 수업 방식(언어, 교재 등) 등에 대한 관리 및 성과 관리의 측정 방식을 정교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교류 자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중 및 한국의 교육제도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을 판정함. ·취약계층의 경우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파란사다리사업의 경우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해외여행 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어 사업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파란사다리사업은 단기 해외경험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나, 약 4주 가량의 초단기 해외연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임. 동 사업 담당자의 설명처럼 국제화 역량이 극도로 취약한 취약계층 출신 대학생들이 최소의 국제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타 사업 참여자 선정 시 파란사다리사업 참여자를 우대하는 등 청년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역량 강화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현재 만족도조사라는 주관적인 평가방법 이외에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일률적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매칭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 재정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분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교육기본법 제29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 고등교육법 제22조제2항 등을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29조는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룰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볼 때 동 사업의 근거조항으로 작용함.

-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 조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서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법 조항들이 국가가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교육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동 사업의 각 내역사업인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미대학생연수(WEST), 파란사다리 등의 공통 근거로 작용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동 사업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각 내역사업 모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대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경험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위한 사회보장 차원으로서 국가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심사를 통해 대학에서 선발되는 학생들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접·실질적 수혜자로서, 전국적으로 선발되고 수혜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2017년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면 비교적 고르게 배분된 권역별, 전공별 선발 결과에 비해 남녀 성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여성비율 71.8%).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미대학생연수(WEST), 파란사다리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은 대체로 동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인재 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만으로 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만족도조사를 통한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대학생들의 글로벌역량이 강화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참여자가 사업 참가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외취업연계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보다 객관적으로 글로벌역량 강화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조사방법 개발이 필요함.

○ 다만, 파란사다리 사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해외 연수 경험을 통해 진로 개발 및 외국어 집중 교육,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인데, 4주 정도의 기간으로 문화 체험 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단기 해외경험 제공이라는 부분 이외에 어떻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각 대학이나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충분한 사업임. 보조금 외에 융자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동 사업의 내역사업과 유사한 내역사업을 민간에서 수행하게 할 요인은 존재함.

- 대학의 경우 각종 대학평가에서 글로벌지수를 중요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및 학점교류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민간에서도 기업이나 공익재단 등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단, 취약계층의 경우 의지가 있어도 여건상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다소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WEST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중(64.6%)이 높으나,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10.4%),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17.9%)의 경우 저소득층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인건비 등 운영비(2.46억원)가 사업비(65억원) 대비 매우 낮아 실제 사업예산 비중이 높음.

○ 각 내역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향후 취약계층 참여 확대 등 필요를 고려할 때 현 지원규모 총액 유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대학의 경우 50%, 전문대학의 경우 30%를 대응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과 전문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일률적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매칭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 재정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분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

○ 개별 내역사업들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선정되고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장(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요구하는 공모절차 규정, 사업자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구성인력, 보조금 교부기준, 절차 등을 준수하여 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고하였음.

- 내역사업 중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파란사다리는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내

용·절차에 따라 공모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음. 특히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학 진로교육 및 대학 해외연수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은 보조금법 제16조제3호에 의하여, 국가 간의 협약에 따른 특수한 사업성격으로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이 자체 수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담됨.

-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e나라도움을 통해 지속 관리하며 이를 통해 선정, 집행, 정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8년 국고보조사업 자체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담됨.

- 글로벌 현장학습 및 파란사다리 협약서에 의하면, 전문대교협은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법규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시행하고 있음.

- 대학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해당대학별 점검결과 및 권고사항을 통보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없음.

- 선발 대상자가 명확하고 각각 보조금 사용에 대한 확인이 용이(출입국기록 확인 등)하며, 대학 현장점검을 통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바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목적은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있으며,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미대학생연수(WEST), 파란사다리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각 대학이나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융자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동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민간에서 수행하게 할 요인은 존재함.

-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파란사다리사업은 단기 해외경험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나, 약 4주 가량의 초단기 해외연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동 사업 담당자의 설명처럼 국제화 역량이 극도로 취약한 취약계층 출신 대학생들이 최소의 국제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파란사다리사업은 청년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과 한미대학생연수 참가자를 선발할 때 파란사다리사업 참가 경험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취약계층 대학생들이 단계별 해외진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K-MOVE, 대학생 해외봉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노동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참가자 선발시 파란사다리사업 참가 경험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의 경우 글로벌 역량 강화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현재 만족도조사라는 주관적인 평가방법 이외에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에서 학생 선발시 전공별, 권역별, 수도권-비수도권 등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남녀 성별에 따른 편차가 현저히 심한 편임.('17년의 경우 여학생 74.8%, 남학생 28.2%) 지원자 수 자체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지원율을 보다 끌어올리고 성별에 따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WEST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학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한 바 있음.

○ 대학의 경우 50%, 전문대학의 경우 30%를 대응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과 전문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일률적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매칭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 재정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분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1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9.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을 판정함. ·동 사업의 명칭과 사업의 실제 내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 ·동 사업이 내걸고 있는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보다 실제 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이 바람직함. ·매년 사업비가 감축되어온 만큼, 필수 업무 위주로 수행하고 현재 재정지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대입전형의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고, 각 대학이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입전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임.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의 업무주체로 '학교협의체(대교협)'를 명시하고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는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및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를 대교협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9조는 대교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상기 세 조항에 따르면 동 사업 수행을 위해 대교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의무적 구속력을 부여하였다기보다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제35조, 제42조 등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음. 이는 동 사업의 주된 목적인 '대입전형 자율적 운영 지원'과는 오히려 상충되는 규정으로서 법적근거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할 것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정과제인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강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입기회 보장, 학력차별 철폐 등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동 사업의 명칭인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음.

○ 동 사업이 직접적으로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모집일정, 전형방법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수험생(학부모) 및 고교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하는데, 오히려 후자가 동 사업의 주된 업무로 수행되고 있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임. 즉 1차 적(직접적) 수혜자와 2차적(간접적) 수혜자가 뒤바뀐 모양새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①대입 사전예고제 추진 ②대입전형 자율적 운영 지원 ③대입지원위반 제재 및 정보의 사전 제공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대교협이 각 대학과 함께 대입 사전예고제(기본사항/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대입 예측성을 높이고, 사전에 대입정보를 학교현장에 적시 제공하여 교사의 진로지도 참고 및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수시모집요강 기한 내 발표율이 3년 연속 100%를 달성하는 등 사전 공표된 대입정보를 학교 현장에 적시 배포하여 수험생 등의 대입 준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목표달성의 효과성은 높게 평가함.

- 다만, 대입전형 자율적 운영 지원은 사전예고제에 기반하여 미리 정해진 틀 안에서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 가진다고 볼 수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08년 이전처럼 정부주도로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지 않고, 법령에서 대교협에 그 권한을 이관한 이상, 업무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는 있음.

○ 다만, 대입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이 아닌 여타의 재원 확보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대입전형 관련 업무가 대교협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라면, 특정 하나의 업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대교협의 다른 사업들과 통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대입전형 관련 사업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의 2018년 예산 5.8억원 중 약 60.5%에 해당하는 3.51억원이 인건비임.

-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사업의 총 예산이 크기 않기 때문일 수 있음. 동 사업의 필수 내용은 결국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사전 공표인 것으로 현재 재정지원 규모로 동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예산규모 확대 필요성은 적다고 봄.

○ 대입정보 사전 제공 등을 위한 자료집 제작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님. 동 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국 2,300개 고등학교에 자료집 형태 제공을 대폭 늘리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방법보다 정보 활용성이 월등히 더 높은 것인지 의문임.

1-6 사회적가치 실현

○ 동 사업은 대입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 대입 기본정보를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에 일부 의미가 있으나, 동 사업의 주된 목적인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은 실질적인 성과가 낮고 수혜대상자인 대학에게 어떤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선정되고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주체인 '학교협의체'의 업무 수행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모절차를 요하지 않음.
- 보조사업자인 대교협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에 의해 교육부의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담됨.

- 부정수급 방지, 집행현황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후 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e나라도움 상시점검 등을 실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 이후 상/하반기 2차례에 나누어 교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

○ 계속되는 사업비 축소로 '사전예고제'관련 필수업무 위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장(보조사업 집행관리)에 준수하여 연도별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검증결과에 대한 오류 및 누락결과, 조치결과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e나라도움 상시점검 및 사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한 후 외부 회계법인을 활용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
- 2017년 사업정산보고서(우리회계법인 시행) 확인함.
- 2018년 사업 정산 보고서는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후 '19.2월말까지 제출받을 예정으로 차후 최종 자료 제출받은 후 확인 예정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대교협 단독사업자로 공모단계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현장점검 및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바, 점검 결과 부정수급 발생 건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관련 법 조항들이 교육부를 의무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사전공표의 주체로 대교협을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지원의 법적 근거는 갖추고 있다고 하겠음.

○ 동 사업의 명칭과 실제 내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

- 동 사업의 주된 내용은 대입전형정보의 사전 공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대입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 동 사업을 통해 “정부주도의 대입에서 벗어나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대입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관련 법령에서 대입전형의 기본사항을 이미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교협에서 사전 공표하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대입 예측성을 높이고 사전에 대입정보를 학교현장에 적시 제공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측면이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의 명칭인 ‘대학입시 자율화 지원’은 사업의 실제 내용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임.

-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또눈 ‘대입 예측성 및 입시공정성 확보 지원’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목적에 부합한 사업명이 아닐까 생각됨.

- 이미 2016년 당시에도 사업의 명칭(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과 내용의 괴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현재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예고제 관련한 필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대입예측성을 높이고 수험생 및 학부모의 대학입시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이 바람직함. 정부 정책에 대한 대전환 없이 동 사업이 내걸고 있는 ‘대학입시 자율화’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생각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대학구조개혁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감축으로 판정함 ·본 사업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향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19년), 편제완성 후 미도래 대학으로 18년 진단 제외되었던 대학에 대한 추가 진단을 실시('19~'20년), 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86개교) 대상 보완평가 실시('20) 및 차기 진단 사전 준비 등이 필요하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고, 사립대학 폐쇄조치 지원은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여 두 내역 사업의 5,990백만원의 5%정도에 해당하는 3억원을 감축하여 편성하되, '21년에는 차기 진단을 실시함으로 '18년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사업추진시 대학관계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도 차이가 있으며 법적 근거의 명확성도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

-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및 제7조(교육재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및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에 근거하고 있으나 지원의 근거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

-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는 대학의폐쇄 시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임

○ 본 사업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폐쇄(폐지) 대학의 학적부 등 관련서류 관리 및 재적생의 특별편입학 지원 등 원활한 후속조치를 통해 폐교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세금으로 지원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대상 대학 및 제한 대학 선정기제를 확보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부실한 학사 운영, 비리·횡령, 경영난 등으로 대학이 폐쇄된 경우 학생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됨에 따라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며, 폐쇄되는 대학의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 특별편입학 지원 등은 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목적은 있음

- 또한 과잉공급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교원양성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직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적절한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관리가 필요함

○ 본 사업의 수혜자는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의 경우에는 대체로 명확하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진단 결과 제공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학 선택을 지원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경우는 교원양성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예비교원의 교직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간접적·잠재적 수혜자인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것임

< 2018년 폐교대학 특별편입학 현황('18.10.기준) >

구 분	대상자수	편입학생수	기타*	편입비율
서남대	1,591	1,311	280	82.4%
한중대	698	519	179	74.4%
대구외대	309	247	62	79.9%
합계	2,598	2,077	521	79.9%

* 기타 : 학업포기자, 일반편입학 및 신입학 학생, 연락두절자 등

※ 증명서 발급 현황 : ('16) 6,205건 → ('17) 5,474건 → ('18.11) 16,167건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역사업 구성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고등교육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대학의 폐교 조치와 동시에 해당 대학의 모든 교육정보가 이전과 동일 혹은 이상 수준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하여 폐교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 권고와 정보 제공을 통한 학생의 선택을 병행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음

※ 자율개선대학(207교), 역량강화대학(66교), 재정지원제한대학(20교) 선정

- 폐교대학의 학사 관련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전담기관 운영이 필요하며, 폐교(지)대학 학적부 등 관련 서류 이관·관리, 통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지원, 재적생 특별편입학 지원 등으로 원활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있음

- 다만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중 '18년 추진 일정에 따라 대학 전체가 교원양성기관인 대학(교육대 10교 및 한국교원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정원 감축 등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음

○ 보조사업은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원감축, 폐교대학 학생 지원 등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0년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이 없으나 '18년 진단 후속 보완평가(86개교), 편제 도래 대학 진단, 차기 진단 준비, '19년 사업부터 강조된 진단 결과 분석·활용, 진단 성과관리 및 환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업기한의 연장으로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이나 '19년 예산에서 간접비가 936.55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전체 예산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 보조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진단 실행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예상되며, 진단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출연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15년부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98년부터 위탁 수행중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있음

- 학적부 등 서류의 보관 및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은 교육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장(민간위탁사항) 제45조제8항제4호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 것은 적절함

○ 본 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가능성은 없으며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향후의 계획을 보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19년), 편제완성 후 미도래 대학으로 '18년 진단 제외되었던 대학에 대한 추가 진단을 실시('19~'20년)하나 '18년에 비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19년에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20년 역시 보완평가와 차기진단 준비 등에 대해 그 규모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예산 조정과 논의가 필요하나, '21년에는 차기 진단을 실시함으로 '18년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는 '19년에 폐교되는 대학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대학의 폐쇄를 대비한 예산 반영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예비비적 성격이므로 일부 감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5주기 진단을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15년)와 이행점검 실시('16~'17년)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향후 계획에 비추어 내역사업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폐쇄대학에 대한 구성원의 학사 DB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 재적생 특별편입학 업무 지원 등의 관리적 기능의 수행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폐교대학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므로 예산규모의 정확한 추계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보조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액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모를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실현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대학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보조사업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년간의 평가경험 및 양질의 인력 활용이 가능한 한국교육개발원에 사업을 위탁.)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폐교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사업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장(민간위탁사항) 제45조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관련 법령, 사업운영 경험 및 인력활용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협약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부조건, 교부신청 및 결정, 교부결정의 통지 등 관리체계 구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연 2회 분할교부하고 있으며, 최종 교부 전 1차 교부금에 대해 집행점검 실시 후 2차 교부를 실시하는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대학기본역량 진단 : '18년 1차 현장점검(6.12.) 및 2차 서면점검(11.27~11.29.)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 '18년 집행점검(10.16.) 실시 결과 적발사항 없음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사업 국고보조금 현장 점검 실시 ('18.11.6.)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예산집행 적절성 여부 등 점검(e-나라도움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기도 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인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기관 내에 자체적인 운영기준을 보유하고 있어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사업은 법령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사업 집행에 따른 외부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조달청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 진행 시 계약업무와 실제 업무 용역 사업자를 관리하는 부서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음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및 제7조(교육재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및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에 근거하고 있으나 지원의 근거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

- 향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19년), 편제완성 후 미도래 대학으로 18년 진단 제외되었던 대학에 대한 추가 진단을 실시('19~'20년), 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86개교) 대상 보완평가 실시('20) 및 차기 진단 사전 준비 등이 필요하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고, 사립대학 폐쇄조치 지원은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여 두 내역사업의 5%정도에 해당하는 3억원을 감축하여 편성하되, '21년에는 차기 진단을 실시함으로 '18년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2 정책 제언

○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본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고등교육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대학 및 교직원, 학생 등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한 추진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이러닝 세계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5.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4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8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8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이러닝 세계화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이 필요 ·동 사업은 다양한 내역사업의 수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속사업과 같은 경향이 발생 ·개별 내역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논리가 미흡하고, 특정 내역사업의 경우 존속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부정수급 관리대책에 대한 추가적 개선이 필요 ·특정 내역사업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특정기간 내에서만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사업 구조개편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내역사업은 '20년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여부에 따라 내역사업의 존속 여부를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함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집행 및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교육부의 '이러닝 세계화' 사업은 「교육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중요 법적 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국제교육)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교육기본법」 제29조에서는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국가 교원 연수,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등 동 사업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도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함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가 타당함을 확인하였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이며, 개발도상국의 이러닝 교원 연수 및 ICT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사회 기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 보조사업으로서의 목적은 타당함

○ 동 사업은 내역사업별로 교류협력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CT 기반 학습환경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학습성취도 제고 등 다양한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ICT 기자재 지원 및 교원 연수 등과 관련되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음

- '19년 기준 내역사업은 'ICT 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개발도상국 정책가·학생 ICT 역량 강화', '에듀테크 통합행사',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국제사회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며, 2018년 내역사업 간 정비를 추진하여 유사 구조의 사업을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재편하였음

- ICT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현지 교원을 연수하는 사업은 'ICT 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내역사업으로 통합
- 개발도상국의 ICT 인적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개발도상국 정책가·학생 ICT 역량 강화' 내역사업으로 통합
- 국제컨설턴트 양성사업은 '19년 폐지되었으며, 국제행사의 경우 '에듀테크 통합행사'로 통합 개최 추진

○ 다만, 개별 내역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및 향후 구조개편에 대해선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동 사업의 내역사업들은 매우 복잡다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교원 연수뿐만 아니라 기자재 지원, 세계대회·컨퍼런스 개최, 이러닝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별 내역사업 구조가 전체 사업목표에 충분히 기여하는가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됨
- 사업소관부처 차원에서 개별 내역사업들이 산재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도록 '19년 내역사업을 개편한 것은 타당성이 일부 인정되나, 내역사업 내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실제 지속되어야 하는가 여부는 향후 로드맵 수립을 통해 즉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동 사업은 성과계획서 상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ODA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추진이 인정되며, 전문성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보조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동 사업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내역사업은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사무총장이 한국에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을 건의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추진된 사업임
- 그러나 재원 조달 및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역량 부족 문제로, '20년까지 CLMV 역량을 강화하고 '20년에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변경된 바 있음
- 즉 '20년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여부에 따라 동 내역사업의 존속 여부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20년 아세안사이버대학의 설립이 결정되는 경우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내역사업은 종료하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설립 미추진 시 사업 종료와 관련하여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 담당 과에서는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결정을 위한 3개년 정책연구('17~'19)를 추진 중

○ 동 사업은 ODA사업으로서 실제 수원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수원국의 수요와 동 사업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동 사업 폐지 시 교류협력국에 대한 신뢰관계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 관련 예산은 사업소관부처에서 전년 예산 및 물량 단가를 통해 책정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비, 전문가 활용비, 컨설턴트 운영, 통·번역비' 등 산정 근거의 존재 유무 및 적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였음

○ 동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유형의 사업은 아니며,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함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상 국고보조 100%의 타당성이 인정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함으로써 공동체의 이익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APEC국제교육협력원,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18년부터 제외) 등으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로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로, 교육정보화 전문기관이라는 전문성과 더불어 ODA사업의 특성상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달라질 경우 개발협력국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 다만, 개발협력국에 혼란을 주지 않는 국내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성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규정된 조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연2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중단·폐지하는 경우 사업소관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국고보조사업 특정감사를 통해 민간수익금 미반납, 교육 관련 부적정 지급 수당이 발견됨에 따라 현행 보조사업 집행 관리절차에 있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따라 사후관리가 추진됨

- 보조사업 실적보고, 정산보고서 검증, 회계감사 등을 규정화하고 있음

○ '17년 보조사업자 사업비 집행 점검 결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관련 사업자를 보조사업자에서 제외하였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의 위반사례가 1회 발생하였음

○ 사업소관부처는 '18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발생방지를 위해 자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 연 3회(1·2·3분기) 국고보조금 점검, 사업비 10억 이상인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회계검증 실시 및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청렴교육 등을 실시함
- 부정수급 관리점검 전담인력 배치(사업담당자 2명) 및 교차점검(사업별 담당자 교차) 등의 부정수급 점검을 추진하고 있음

○ 부정수급의 문제점은 '16년 국고보조사업평가 시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음

- '16년 평가에서는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 집행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개별 보조사업자들에게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및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부처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음

○ '17년 감사를 통해 발견된 부정수급 사례에 따라 소관부처는 정기적 관리 감독 실시 및 부처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대책을 수립 실시 중임

- 그러나 동 사업 소관부처의 대책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추가적인 부정수급 대책 개선을 통해 사전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차단하는 것이 요구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이러닝을 통한 국제사회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내역사업 내 복잡도가 높음에 따라 개별 내역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요구됨

3-2 정책 제언

○ 개별 내역사업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특정 기간 내에서만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사업 구조개편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내역사업은 '20년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여부에 따라 내역사업의 존속 여부를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함

- '20년 아세안사이버대학의 설립이 결정되는 경우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내역사업은 종료하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설립 미추진 시 사업 종료와 관련하여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 '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조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학술대회의 항공료 지원 비율 100%→67%)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사업의 구성이 시스템 관리 및 유지 비중이 높고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 및 행사로 한정되어 있어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체감도가 제고되지 못함. ·교육자 학술대회 참가 비용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율을 조정하고, 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은 지원 내역(항공료 100%, 문화체험비)을 유지함. ·향후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학습방식에 초점을 맞춘 내역 사업의 구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술대회 및 연수프로그램의 성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향후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국가책무),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의 근거가 명확함.

- 내역사업 중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은 국가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양해각서 및 공식 요청(공문) 등게 근거하고 있으나 '재외 한국어교육자 학술대회' 등은 법적 근거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교육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재외 동포에 대한 모국어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의 목적은 타당함.

- 교사에 대한 지원과 교무업무시스템의 구축, 교과서 및 교재개발·보급 등은 보조사업의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된 내역사업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는 재외 국민, 재외 한국학교, 교사이며, 사업의 구성이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수의 사업이 한국학교의 교무업무시스템(NEIS), 재외동포교육지원 포털시스템, 재외교육기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됨.

- 보조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나,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의 구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전 세계 70만 재외동포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에 관해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지원하는 보조사업 본래의 정책 목적 달성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외 한국학교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교과서 및 교재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종사자 격려 등을 위한 행사성 경비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의 경비 중 참가자 확대에 따른 예산의 증가는 인정되나, 학술대회 참가자의 항공료 지원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자에 대한 항공료 지원(100%) 및 문화체험비 등은 필수 경비로 인정됨.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보조사업자가 전문성 및 기존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함.

- 재외동포교육지원 포털시스템 구축의 보조사업자는 2회의 공모 및 선정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점수 미달로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여 지정하였음. 이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모두 추진한 뒤 지정으로 전환한 방식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관리함.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안내를 포함하고, 보조금을 2회에 나누어 분할교부하면서 2차 교부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으므로 집행은 적정함.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하는 등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사후관리는 실행되지 않았음.

- 보조금 교부 결정시 목적 외 사용, 허위 신청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총 4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필요하나, 계획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실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공간적 제약 때문에 정산보고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성과보고서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는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완료 보고서는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결과 보고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부정수급이 발생한 적이 없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에 따른 결과는 아님.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나,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성에는 한계가 있음.

- 최근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이용되고 있음. 이에 비해 오프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행사 등을 지양하고 다양한 전달체계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함.

○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집행-사후관리-부정수급 관리 등의 지침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미흡함.

-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계획으로만 제시되고 실제로 집행되지 않음.
- 부정수급이 발생한 적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는 않음.

3-2 정책 제언

○ 오프라인 교육 수혜자의 만족도가 몇 년째 변동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e-learning 등의 프로그램 다각화 필요함.

- 학교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사업의 내용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어, 한국문화 등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재외 동포에 대한 교육자 학술대회 및 교육관계자 연수프로그램이 단순한 친목 도모로 소모되지 않고 한국어 보급 및 한국어 교과과정 채택이라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외 한국어교육자 학술대회' 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학술대회를 기준으로 본인 혹은 기관 부담을 고려하여 보조율(100%→67%)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지 교육관계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항공료 및 문화체험비 100%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학술대회 및 연수프로그램의 성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3.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9.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3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2의 경력 창출' 지원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 변경 필요함. ·지자체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조응하여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해야 함. 평생학습은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퇴직 중장년 등이 제2의 경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학습으로만 그치고 있어 사회적 경제 활동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필요함. ·사회 활동 연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기준 변경 등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①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②평생학습도시 조성(시·군·구), ③행복학습센터 운영(읍·면·동) 등 지역 평생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2017년에 종료되었음.

○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15조에 국가는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 밖의 사업은 제16조에 경비 보조 근거가 있음.

> **평생교육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
>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함.

○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속 확대(국정과제 26-2)' 관련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임.

- 평생학습도시(기초지자체) 를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관련 자발적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발적 학습모임을 사회적 경제 학습모입으로 육성하고, 컨설팅 및 초기창업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취지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시·군·구가 지역의 여건 및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 대상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임. 해당 교육은 시·군·구 단위 '학습공동체'와 '학습형 일자리' 및 지역 단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퇴직 중장년 등을 위한 제2의 경력 창출을 지원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

- 최근 3년간 평생학습 참여 후 사회환원 활동 참여자 시군구 평균 인원(2017년 100명, 2018년 102명, 2019년 106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전체 학습 참여자 중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는 14.0%, 학습자 경제활동 참여자는 2.8%로 평생학습 인프라의 확대와 추진실적에 비추어 '제2의 경력 창출 지원' 활동으로서의 효과가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물론,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 비율은 25세 이상 한국인 자원 봉사율이 11.9%(통계청 사회조사, 2017)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임.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해서는 2017년 학습자 경제활동 목표 1,405명 대비 달성률 95.8% 수준으로 제2의 경력 창출 지원 기능이 확대될 필요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은 특히 성인기에 발생하는 직업, 여가, 시민참여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배움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것으로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임. <평생교육법>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점에서, '18년 예산편성 시 지자체 직접 수행 가능한 내역사업(시도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이미 종료하였음.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으나, 우수 학습모임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이 되는 신규 지정 평생학습 도시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평생학습 도시 모두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준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100% 이상 지방비 대응투자를 지원조건으로 적용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은 마을 단위 풀뿌리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자발적 학습모임(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알권리,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은 물론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특성화 사업 역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형태의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근거하여 사업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육부 담당자는 물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담부서 인력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 집행관리에 관한 사업 및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파악 및 조치, 환류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기본계획에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이거나, 그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예산 지원 제외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운영지침에서 보조금을 사용한 자산취득이나 장기시설임차 등을 금지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외에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점검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치를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로서, 보조사업자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 운영 지침에 부정수급 시 조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만에 하나 있을 부적절한 사업집행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18.10.1~4) 부정수급 발생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1페이지 이내 작성)

3-1 종합 평가

○ 2016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2018년부터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만 진행. '18년 예산편성 시 지자체 직접 수행 가능한 내역사업(시도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이미 종료함.

○ '평생학습참여 후 14.0%의 참여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고, 2.8%의 참여자가 학습자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제2의 경력 창출 지원' 활동으로서의 효과는 크지 않음. **'제2의 경력 창출 지원' 활동으로서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전환 필요.**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의 사업 추진 계획에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행복학습센터) 연내 운영 계획 또는 활성화 계획 또한 포함하여 인정 하는 등 지자체 직접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연계성 큼. 따라서,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평생학습 지정 사업 사업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3-2 정책 제언

○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속 확대(국정과제 26-2)' 관련 정책방향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업 방식 변경.

- 국정과제와 연계해 **중앙정부 추진 필요성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자발적 학습모임을 사회적 경제 학습모입으로 육성하고, 컨설팅 및 초기창업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취지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 추진 계획에는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300개 내외 시범 육성하고, 2020년 우수학습모임 50개 내외 사회적 경제조직 전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조치, 사회적 경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등의 사업 추진 필요. 해당 사업은 사회적 경제 사업과 협업 통해서 가능한 사업으로 협업 활성화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학생정신 건강센터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역과 참여가 불명확하고, 사업의 관리 운영이 미흡함. ·중앙부처의 사업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고 시도교육청 간 격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전달체계 간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부처에서 제시한 「자살예방법」 제4조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보건법」 제2조의 법적 근거는 명확함. 다만,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 및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들은 학교장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중앙부처 소관 사업의 법적 근거는 미흡함.

- 「자살예방법」에 근거하여 자살예방센터가 설치(7개 광역자살예방센터, 24개 기초자살예방센터)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이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동 사업의 법적 근거라고 보기 어려움.

< 학교보건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민 자살률의 감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나,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대상 학생의 관리 및 전문적인 기관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함.

-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함.

○ 동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는 학교와 교사이며, 나아가 학부모까지 포함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담당자와 교사에 대한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 수혜자는 학교와 교사임. 다만,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과 학부모가 잠재적인 수혜자가 되기도 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명확하며, 보조사업의 구성이 목표 달성에 합리적이나 사업의 수행 방식은 변경이 필요함.

- 동 사업의 인건비 지원은 전문직(의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직무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이 외부 전문가 및 퇴직 직원(석사급)에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살예방법」에 근거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근거하여 지역 내 다양한 전달체계를 운영 중이고, 학교 및 교사의 역할이 발굴 및 전문 기관 연계, 학생에 대한 관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개발된 보건복지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동 사업은 교사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학생 관리라는 측면에서 학교급별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함. 단, 프로그램 개발이 매년 동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연차별 혹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 개발 계획이 사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정신 건강과 관련한 직무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춘 전달체계의 활용과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 자료의 개발 및 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과 정신건강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지역 사회 자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재활 등의 업무는 광역자살예방센터(7개)과 기초자살예방센터(24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최근에는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16개)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222개)가 운영 중임.

-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나,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보건복지전달체계 및 시도교육청-학교 간 연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문가를 활용한 교사 및 교육청 컨설팅,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 등 직접적인 지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단위 학교의 교사에게 배포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콘텐츠의 개발과 교육의 재정 지원 규모가 큰 편임.

- 오프라인 교육(제주도 연찬회) 및 국제 심포지엄(아동 학대 전문가로 학교 교육과 관련 없음) 등 행사 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교사용 교육개발 자료의 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 지급한 원고료와 퇴직한 연구원 및 조교에 대한 지원은 적정하지 않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대형 재난 및 자살 등 학교 위기상황 발생시 학교에 직접 개입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며, 2017년 11건, 11474명이 수혜 실적 제출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선정을 위한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공개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없음.

-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서 심사기준(사업추진계획, 관련 분야 실적)을 제시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선정의 절차 및 심사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음. 별첨한 심사계획은 향후의 계획으로 실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 단계별 집행 관리체계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수행과 정산 등의 규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사후관리와 중요재산의 관리 및 주기적 보고를 명시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와 관련한 규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다만,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시 회

계검사보고서는 별도로 첨부되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교부조건에서 회계감사와 관련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회계규정과 담당자의 현장실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음.

- 교재교구의 개발에 참여한 명단과 비용의 지급 등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학교장'의 책무를 중앙부처의 업무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간 보조사업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교사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아동 복지 및 정신 보건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기관과 소속원의 업무가 충실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의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검사 결과의 분석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교재의 개발과 연수,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컨설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보조사업자가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으나, 선정 절차 및 사업 내용의 구성 등에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자의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 등 전반적인 관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뤄졌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타 부처 및 타 사업에서 별도의 관리 규정을 엄밀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관리 기제는 미흡함.

3-2 정책 제언

○ 민간 사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식과 성과관리의 엄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 내역과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사 연수를 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컨설팅으로 고유 업무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교사가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아동 및 교사를 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달체계 간 전문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CT전파자원선순환개발환경조성
공공SW사업선진화(정보화)
국제회의개최및국제기구활동지원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정보화)
산업생활주파수활용기반구축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
이용자전화사기대응체계구축
전파기반신산업창출및중소기업육성
정보격차해소지원(정보화)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정보화)
지능형초연결망인프라기반조성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제주)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지역지원)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K-ICT 전파자원 선순환 개발환경 조성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9.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4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8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공급, 활용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공성, 공정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보조사업은 인건비 등 행정비용의 비중이 약 77.7%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보조사업자 2개 기관의 인건비 격차가 상당한 규모이고,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인건비 지급 기준이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인건비 책정 방식이 현행 「ICT 기금 사업관리 지침(과기부 훈령)」 제6조(제6조(비목별 세부산정기준)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중략)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어서 규정에 의한 집행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행 예산 규모를 유지하되 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시 인건비 지원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전파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등에 전파자원의 이용효율 개선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공공공주파수 수급 계획 수립하고, 주파수의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할당방안 마련 등의 근거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보조사업의 시행 근거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인 '주파수 이용현황 분석고도화 및 활용기반 조성', '주파수 대역 정비 및 실행기반 구축', '주파수 수요자 기반시장 친화적 이용환경 조성',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평가 체계구축'은 각각 전파법과 시행령 등에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공급, 활용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중앙집권적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공정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자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물론 무선서비스 제공사업자,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자 등 수혜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017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전파자원의 선제적 확보,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파자원의 발굴 → 확보 → 공급 → 이용관리에 이르는 전파자원 이용의 선순환 단계에 따라 내역사업을 구성하여 수행되고 있음

○ 전파자원의 확보,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내역사업 구성의 합리성이 인정되나 각 내역사업의 상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내역사업들의 사업 내용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령 '주파수 이용현황 분석고도화 및 활용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약 30%에 불과하여 자원의 배분의 적절성이 파악되지 않음. 또한 '주파수 대역 정비 및 실행기반 구축'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비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전파 자원이 가지는 고도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특정 지자체 혹은 민간의 수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파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업무 수행의 객관성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 주파수 경매를 통해 수익은 국고로 환수되었으며 ICT산업 R&D에 재투자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주파수 관련 여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분석, 대역정비, 할당 및 경매방안 수립, 평가 등의 사업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ICT 분야의 국가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부정적 영향이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 비용 규모는 약 77.7%에 이르고 있어서 사업의 직접비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비의 예산 배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전파자원의 발굴, 확보, 공급, 이용관리의 전파자원 이용의 선순환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의 수행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비 편성의 관행적 요소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신속한 재난상황 방송을 위해 전파 혼간섭을 예방하고, 공공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여도가 일부 인정됨(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참조)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중 제4항에 의거하여 공모방식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불가피성은 인정이 되나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관리를 하고 있음

○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점검, 페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에 대한 환류 결과가 다소 부족함. 소극적인 점검이 아니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성과정보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환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 및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를 통한 정산결과 검증, 그에 따른 조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또한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정산보고서 작성), 제24조(정산보고서의 검증)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증결과에 대한 오류 및 누락 결과 및 조치결과 등에 규정을 준수하여 실행하였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수행기간(2년)동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적 점검이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2항에 의거하여 구성하며, 제33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34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의 규정을 준수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공급, 활용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중앙집권적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공정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전파자원이라는 자원의 특성상 보조사업자 뿐만 아니라 무선서비스 제공사업자,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자 등 수혜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본 보조사업은 인건비 등 행정비용의 비중이 약 77.7%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보조사업자 2개 기관의 인건비 격차가 상당한 규모이고,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인건비 지급 기준이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인건비 책정 방식이 현행 「ICT 기금 사업관리 지침(과기부 훈령)」 제6조(제6조(비목별 세부산정기준)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중략)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어서 규정에 의한 집행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행 예산 규모를 유지하되 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시 인건비 지원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점검, 페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에 대한 환류 결과가 다소 부족함. 소극적인 점검이 아니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성과정보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환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사업 시행 2년간 내외부로부터의 성과 점검 및 환류 결과가 부족하여 사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한 성과정보가 부족함.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성과 환류체계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공공SW산업 선진화(정보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지자체 단위나 민간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분야인 공공SW산업관련 지원이라는 매우 좋은 목적의 사업이지만, 초기의 이러한 사업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역사업들이 수행되어온 경향이 있음에 따라 정상추진 권고함 ·SW사업 분야가 급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전문성이나 인력, 정보 부족으로, SW기업은 이러한 공공기관 대상 용역 수탁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중앙부처인 과기부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의 이러한 한계점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내용이라고 판단되지만, 현재의 사업목적과는 다소 상이한 내역사업들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보임 ·이에 본 사업 목적의 명확한 추진을 위해 내역사업 중 SW기술자 경력관리 및 환경개선,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 사업은 공공SW사업 선진화와의 합목적성에 대해 재검토한 후 이에 대한 향후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성과측면에서도 몇 회, 몇 건, 몇 명 등 추진한 실적 외에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효과성 분석 등 결과의 환류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SW산업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특성상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전문성 저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발주단계에서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 즉, 국가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주기술 지원이나 발주자 역량강화, 최저가 낙찰이라는 단순 재화구입 형태를 탈피한 SW제값주기, 더불어서 중소 SW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임

○ 자체평가서에서는 본 사업의 법적근거를 매우 폭넓게 제시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규정들도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은 본 사업의 목적과는 관련 없는 법적 내용들이며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규정들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동법 제24조의 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동법 제24조의4(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등이 본 사업과 관련된 법적 근거들이라고 할 수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자체평가서에서 제시한 본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SW사업관련 국가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SW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관련 정보수집, SW사업 대가 산정, 발주기술지원 및 발주자 역량강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SW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등 선진화된 공공SW 발주환경 조성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공공파트의 SW산업 전문성 취약으로 인한 관련산업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매우 양호한 목적의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공공SW시장은 SW산업 성장의 마중물역할을 함에 따라 SW산업의 활성화 및 SW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SW시장에서부터 잦은 과업변경, 과도한 파견 근무, 민간시장 침해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의 근절을 위함임

○ 반면, 내역사업들은 이러한 세부사업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공공SW사업 발주기술지원 및 SW사업정보 관리, SW제도 적용 및 확산, SW기술자 경력관리 및 환경개선, ICT장비 수요예보조사 등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SW기술자 경력관리 및 환경개선, ICT장비 수요예보조사 사업은 굳이 세부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있음

- 수요예보조사 등은 본 사업의 목적면에서 볼 때 추진할 필요성이 약하며, SW기술자 경력관리 및 환경개선 또한 본 사업의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이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SW기술자 경력관리 및 환경개선과 ICT장비 수요예보조사 사업은 본 사업과는 관련성이 미흡함

- 추가 설명자료로 제시한 SW산업기반확충 성과계획서에서도 본 사업의 상위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중의 하나로서 본사업의 달성도 지표가 공공SW사업 선진화율로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 외에는 없음

○ 본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계획대비 달성도를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역사업별로 횟수나 인원, 등록건수 등을 나열했을 뿐 이들 각각을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무엇이 개선되었고,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본 사업의 실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궁극적으로 각각의 내역사업을 실시한 결과 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선진화된 공공SW 발주환경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성 분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SW사업 시장의 특성상 공공파트에서 사업을 발주시 전문성 취약으로 인한 민간 SW분야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관련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발주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SW사업 발주기술 지원 및 SW사업정보 관리사업의 경우 공공부문 SW사업정보 수집, 공공 발주자의 역량강화 지원, SW영향평가 수행 등 민간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어려움에 따라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SW제도 적용 및 확산 사업은 SW산업계의 현황과 의견을 수시로 제도에 반영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SW기술자 경력 관리 및 환경개선, ICT장비 수요예보사업은 본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필요성은 약하다고 판단됨

- 즉, ICT 수요예보사업은 공공SW사업 선진화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SW기술자 경력관리와 환경개선사업도 기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환경개선사업이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은 약하고 오히려 사업의 본래 목적을 흐리게 할 개연성이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9년 기준 본 사업의 총예산은 53억9천5백만원으로서, 이는 2018년 56억7천6백만원, 2017년 57억9천6백만원에서 매년 각 2억8천만원, 1억2천만원 감소한 규모임

-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공SW사업 발주기술지원 및 SW사업 정보관리와 SW제도 적용 및 확산 사업의 규모가 총 사업비의 약 90.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SW기술자 경력관리 및 환경개선과 ICT장비 수요예보조사 사업이 매년 10% 미만임

○ 이전 년도의 사업운영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2억6천만원(4.8%), 2017년에는 3억9백만원(5.3%)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총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축소가 불용액을 반영한 금액인지, 다른 환경요인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자체분석이 필요함

- 필드 즉, 지자체에서는 공공SW사업 발주를 위한 국가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지만 현재의 약 30여 억원정도의 예산으로는 이들 수요를 방어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즉, 사업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수요와 여건을 파악한 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사업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중 4번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정 등에 보장에 해당함

- 즉, 공공 SW사업의 발주제도를 혁신함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함

○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으로 원격지 SW개발로 고질적 파견근무 관행을 근절하고 SW개발자 근로환경 개선 및 SW기업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킴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3에 따라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내역사업들을 수행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동법 제24조의3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전담기관에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ICT기금 관리지침, ICT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정리하고 있는데 본질은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의 문제임

○ 자체평가서에서는 이러한 지침들을 바탕으로 상시 점검·관리회의 및 수행기관 방문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하반기 실태조사 및 중간, 최종보고서 검토, 사업종료 후 정산 및 회계보고서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자칫 이러한 절차들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 수 있으므로 점검회의 결과 도출된 문제 및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논의 및 개선내용 등이 정리되어 기록되어야 할 것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고투입에 따른 보조대상들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 따라 각 내역사업 내 추진사업별로 지자체나 SW기업의 애로사항, 만족도 등을 중간청취 후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다음 해의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임

○ 결과적으로 주무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보조사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후 결과들을 환류시켜서 기관 본래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이므로 각종 보고와 감사 등으로 현재의 3개 보조사업자가 과기부에 대해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은 없음

- 부정수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중간 추진주체나 수혜자 중에서 발생할 가능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즉,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업들 중 부정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피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지자체 단위나 민간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분야인 공공SW산업 관련 지원이라는 매우 좋은 목적의 사업이지만, 초기의 이러한 사업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역사업들이 수행되어온 경향이 있음에 따라 정상추진 권고함

○ SW사업 분야가 급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전문성이나 인력, 정보 부족으로, SW기업은 이러한 공공기관 대상 용역 수탁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관련 중앙부처인 과기부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의 이러한 한계점 극복을 위한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내용이라고 판단되지만, 현재의 사업목적과는 다소 상이한 내역사업들이 운영되어 온 부분이 있음

○ 따라서 본 사업 목적의 명확한 추진을 위해 내역사업 중 SW기술자 경력관리 및 환경개선,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 사업은 공공SW사업 선진화와의 합목적성에 대해 재검토한 후 이에 대한 향후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3-2 정책 제언

○ 선진화된 공공 SW발주환경 조성이라는 근본 목적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목적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 하나는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의 판단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의해 좌우될 것임

-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본 사업은 몇 회, 몇 건, 몇 명 등 추진한 실적 외에 사업의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효과성 분석 등 결과의 환류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9.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8.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6.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3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즉시폐지, 사업방식 변경 · 보조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사업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되어야 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 - 정보통신장관회의 지원, 국제기구활동 지원, 국제콘퍼런스 지원, ITU 텔레콤월드 지원- 은 사업성격상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보조사업의 즉시폐지와 사업방식 변경에 맞춰 보조사업 사업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 예산으로 변경되어 유지되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

< 전파법 제65조>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법 제97조>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7조>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 보조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들 -정보통신장관회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콘퍼런스 지원, 국제기구활동 지원, ITU텔레콤월드 지원 - 은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구체성이 미흡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의 목적은 ICT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유지 ·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 정책 자문 및 국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타당함

○ ICT 분야 국제기구 활동 및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의 해외진출에 기여함으로써 보조사업 수혜자가 정보통신 관련사업자, 협력 상대인 국제기구 및 회원국 정부까지 광범위하며, 보조사업의 정책적 영향이 ICT 분야에 확산되는 외부효과가 존재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정보통신장관회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콘퍼런스 지원, 국제기구활동 지원, ITU 텔레콤월드 지원으로 구성되어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됨

○ 4개 내역사업들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 지원은 주요 전략국가 고위급 인사, 의사결정권자들을 초청하여 정보통신방송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미래 산업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국가 간 협력, 교류 활성화를 강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민간기관은 참가국과 세부일정 조율, 항공 숙박, 차량지원 등 의전수행, 행사운영, 인사초청, 홍보활동, 통역, Reference Site 방문 등 부대행사 개최를 지원함

-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콘퍼런스 지원은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 최신동향, 미래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방안, 글로벌 비즈니스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함

- 국제기구활동 지원은 OECD, ITU, APEC, APT 등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회의참석·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정책의 국제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선진기술의 국제적인 선도를 통해 국제 리더십 강화를 위한 사업임

- ITU 텔레콤월드 지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정부연계(B2G) ICT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여 국내 선진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년마다 사업을 추진함

○ 정보통신장관회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콘퍼런스 지원, 국제기구활동 지원 등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성과목표를 달성함

- 다만, 내역사업의 성과지표가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 해외 정부대표 초청 국가 수, 신규비즈니스 채널구축 건수,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 콘퍼런스 개최 건수, 국제회의 의견제출 건수, 국제회의 의제대응 활동 건수 등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결과중심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기금 관리자로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기부 자체사업 또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기구 활동지원을 수행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글로벌 ICT 정책연구기관으로 설립 목적과 사업영역을 살펴볼 때, 내역사업인 '국제기구활동 지원'은 국가의 ICT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체 업무영역으로 볼 수 있음

○ 본 보조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음

○ 정보통신장관급회의 지원, 국제콘퍼런스 지원, 국제기구활동 지원, ITU 텔레콤월드 지원은 우리나라의 정책홍보, ICT 기술 전파, 국가 간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제 정책 환경을 유리하도록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수요가 존재함

○ 보조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보조사업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사업 또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은 정보통신장관급회의, 국제콘퍼런스 개최, 국제기구 활동지원, ITU 텔레콤월드 개최지원 등을 위해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보조금의 규모는 보조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갖춤

<사업예산 규모>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1,787백만원	1,744백만원	1,268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 본 보조사업은 내역사업별로 사업예산이 배분되며, 예산 규모가 적정하게 구성되었음

- 내역사업의 사업비 항목은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ITU 텔레콤월드 지원은 4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19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본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의 기준보조율을 적용 받지 않으며, 내역사업별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 경비를 사업비로 지원하는 정액 보조금 방식이 합리적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에서 ICT 기금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보조사업자 선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국제기구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나머지 내역사업들 - 정보통신장관회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콘퍼런스 지원, ITU 텔레콤월드 지원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교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기금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통해 재원을 적정하게 교부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ICT 기금사업 관리지침」에서 자체평가 실시, 계획평가, 진도점검, 최종평가, 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보조사업 집행을 위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음

○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실집행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며,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9조(사업비의 지급)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전월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기 교부된 사업비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월 보조사업비를 조정 교부하여 적절한 집행체계를 구축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에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 22조(사업비의 정산보고), 제 25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에 따라 정산업무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사업비 집행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이자발생, 불인정 내역 등 보조금 반환사항 발생 시 회계법인 합동으로 보조사업 수행기관 내역 확인을 거쳐 국고 반납 처리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짐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발생 건수가 없었으며,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함

○ 보조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매년 수행기관 및 위탁사업자를 대상으로 ICT 기금사업의 전주기 단계별로 부정수급 예방 활동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고 적정하게 관리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제회의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들 - 정보통신장관회의 지원, 국제콘퍼런스 지원, 국제기구활동 지원, ITU 텔레콤월드 지원 - 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의 사업목적은 국가적으로 타당함

○ 보조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며 내역사업들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었고, 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적정 규모로 편성됨

○ 보조사업에서 수행하는 내역사업들은 사업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방식이 아님

○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적정함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내역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구체성이 미흡함

○ 내역사업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결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통신장관회의 지원, 국제기구활동 지원, ICT 국제콘퍼런스 지원, ITU 텔레콤월드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사업 또는 민간위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즉시폐지 및 사업방식 변경에 맞춰 보조사업 사업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사업 예산으로 변경되어 유지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O	O	
총 평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을 보조사업의 법적근거로 가지나 수혜자의 범위와 각 수혜자 집단의 수혜의 크기가 명확하지 않음 ○ 시장에서 이루어질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의 성격이 강하며 점차적으로 감축해야할 내역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초기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되나, 장기적으로 정부의 직접 보조보다는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경쟁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직접지원보다는 공정거래를 위한 환경 조성 등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의 사업이 개편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사업 개편은 현재의 사업보다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10%감축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제24조(공정한 유통환경조성 등), 제25조(표준계약서) 등의 법률을 법적 근거로 가짐

○ 디지털콘텐츠 개발활성화, 디지털콘텐츠동반성장지원 사업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며 타당성을 가짐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사업의 목적은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통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인 디지털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로 볼 수 있음

○ 불확실성으로 민간 또는 지방에 맡길 시 지속적인 투자 부담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등 국가 경쟁력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

○ 디지털콘텐츠동반성장지원 사업에서 사물인터넷기반 생태계조성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나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투자지원이 필요함

○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환경조성 ’17년도 DC산업 유통실태조사 결과 디지털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경험률은 31.2%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 불공정 경험률 13%,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 경험율 22%와 비교하였을 때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건전한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사업은 디지털콘텐츠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체 산업의 기업과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관련 분야 전체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각 수혜자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그 혜택의 크기도 측정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들의 목적이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정됨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됨. 보조사업 내역사업의 경우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육성을 지원 하고 있음

○ 디지털콘텐츠인증활성화 사업의 경우 그 내역사업의 세부 내용은 구체적이고 그 구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각 세부 목적의 달성을 넘어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현재 디지털콘텐츠 산업 관련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산업의 특성상 융·복합화가 급격하게 일어나 시장환경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은 인정하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 형식이 아닌 민간에서의 수행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

- 각 내역사업의 성질이 달라, 내역사업별로 그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음

○ 첨단 ICT 융·복합 콘텐츠 분야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취·창업, 일자리창출 등 예비인재 양성에 적기임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점 존재여부

- 산업의 성격 상 시장 내에서의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100% 지원비율을 보여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위탁형 준정부기관'으로 사업비 전액을 정액 보조 하고 있음.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각 내역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조항에 준수하여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적절한 보조 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내역사업별로 보조사업의 실집행 현황 및 단계별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집행에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개선을 하고 있음

-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기업의 자금 집행현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관리 및 제재조치 여부 검색이 가능하며, 사업별 별도

의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집행내역 검토 및 소명절차, 경우에 따라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업비에 대하여 전액 혹은 일부 환수조치 및 동사업 참여제한 3년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사업기간 종료 후 기간 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및 전담 기관(KCA)의 지정 회계사를 통한 회계정산 완료, 잔여사업비 반납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이 외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가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디지털콘텐츠개발활성화사업 외 다른 내역사업의 경우 부정수급과 관련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다양한 부정수급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을 보조사업의 법적근거로 가지나 수혜자의 범위와 각 수혜자 집단의 수혜의 크기가 명확하지 않음

○ 시장에서 이루어질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의 성격이 강하며 점차적으로 감축해야할 내역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3-2 정책 제언

○ 초기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되나, 장기적으로 정부의 직접 보조보다는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경쟁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직접지원보다는 공정거래를 위한 환경 조성 등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의 사업이 개편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사업 개편은 현재의 사업보다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10%감축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산업생활주파수활용기반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정상추진**이 필요함 · 다만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알 수 있는 결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음 ·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국민입장에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 및 관리체계가 필요함 · 일부 성과지표가 국민입장에서 편익을 측정할 수 없는 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지표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 산업생활주파수 활용기반 구축(제도개선 반영률) =정책반영건수/정책 개선 요청 건 수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전파법 5조, 9조, 45조 및 동법 시행령 88조 등에 본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법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인 산업생활 주파수 생태계 조성,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기반구축,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 등은 전파법 5,6,9조와 시행령 88조에 간접적인 지급근거를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연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실현을 위해 전파자원의 신규분배·정비, 규제완화, 신기술·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므로 민간보다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는 내역사업에 따라 관련 기업체, 무선마이크 및 전화기 이용자, 사업 해당 지역 주민이나 간접적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여겨져 수혜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산업생활주파수 생태계조성, 주파수공동사용 활성화 기반구축,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사업의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 본 사업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ICT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과 기술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신규 주파수 공동사용 수요 및 기술동향 조사 등을 통해 주파수공동사용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비교적 명확함

○ 본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비면허 주파수 활용기반 구축율,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기반 구축

제도개선 반영률, 주파수 공동사용전파 환경표본조사율, 무선마이크 채널 정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함

- 산업생활주파수 활용기반 구축(제도개선 반영률(%)의 측정산식인 (정책반영 건수 ÷ 제도개선 방안 마련 건수)는 국민의 요청대비 정책개선을 알 수 있는 제도개선 요청건수 대비 정책반영 건수 비율로 바꿀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국가의 유한한 공공자원인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확보·공급·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전파 자원의 특성상 민간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임

○ 관련 유사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4차 산업혁명관련 5G망 보급등 전파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절하게 존재하고 있음

○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비면허 주파수 활용기반 마련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규모가 50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으로써 공유전파 활용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내역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이 큰 규모는 아니며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로서 과기부와 기재부의 협의와 국회의 예산심사를 통해 사업비가 결정되고 있음

- 향후, 적절한 사업규모 산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합리적으로 사업비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전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범위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작업반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 때문에 작업반 협회 차원에서 작업반 선정과 지원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을 통하여 보조사업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기금관리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사업관리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평가, 사업비 사용 및 관리실태 점검, 중간진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개선조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중요재산의 관리 및 보조금 회계정산과 반납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또한 'ICT기금사업 관리지침',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정산자료 제출과 검증, 보조금 반납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기금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시행하였고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PMS, pms.kca.kr)를 통해 협약, 협약변경, 집행증빙서류 관리, 중요재산관리, 보조금 반환 등을 투명하게 시행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전담기관(KCA)을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부정수급이 보고된 적이 없으나 작업반에 대한 대금 집행과 관리 과정에서 부정수급 발생가능성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전담관리기관(KCA)은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공유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정부 보조사업 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중요성 등을 볼 때 일부 개선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효과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위해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가 필요함

○ 작업반 단위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회의 작업반 지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리의 문제에 대응하여 보조금 선정, 집행, 부정수급 사후 관리 체계의 점검과 확인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3.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단계적 감축을 요구함(5%/년, 총2년) ○ 사업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영세한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되도록 세부내용 개선 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초기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되나, 장기적으로 정부의 직접 보조보다는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경쟁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직접지원보다는 공정거래를 위한 환경 조성 등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의 사업이 개편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사업 개편은 현재의 사업보다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예산의 감축이 요구됨. 다만, 당장 사업의 감축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의 계속성 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단계적 감축을 요구함(5%/년, 총2년)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을 들 수 있음

- 위 법률에 스마트콘텐츠 등의 디지털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및 유통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명시하고 있어 법령과 규칙의 구체성이 인정됨

○ 보조사업과 근거법령, 규칙 간 구체적인 연계성이 존재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스마트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지역 거점 구축, 해외진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생태계 강화를 통한 스마트콘텐츠 산업 진흥"으로 설정되어 있음

- 경제계획 3개년 계획 중 '스마트콘텐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거점을 확대(53, 콘텐츠산업활성화)'에 명기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 추진중

- 스마트콘텐츠는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확산추세에 따라 전방위 산업에서의 콘텐츠 수요의 증가 및 서비스(교육, 건강 등) 산업과 신산업(I○T, 웨어러블 등)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판단됨

-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직접적(실질적) 수혜자로 국내 우수 스마트콘텐츠 중소기업(개발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사업) 등을, 그리고 간접적(잠재적) 수혜자로 우수 스마트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를 접하는 대국민을 범위를 정하고 있음

- 기업과 개인이지만 최종적으로 콘텐츠 소비자라는 점에서 수혜자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콘텐츠 소비자가 광범위하다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특성 및 타 산업보다 큰 전후방 산업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지원 대상 기업의 직접적인 매출액 증대 및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앱/어플 다운로드, 유튜브 재생수 등을 통해 콘텐츠 소비자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스마트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지역 거점 구축, 해외진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생태계 강화를 통한 스마트콘텐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함

- 스마트콘텐츠개발역량강화, 스마트콘텐츠지역산업활성화, 스마트콘텐츠해외진출지원, 그리고 스마트콘텐츠융합형인재양성이 내역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음

○ 다양한 내역사업의 구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각 내역사업은 대상기업의 수가 많아 각 수혜기업 입장에서의 수혜금액의 크기가 작아 그 효과가 작을 수 있음. 다만, 스마트콘텐츠 관련 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작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등의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내역사업의 내용 및 지원내역을 보면 OUTPUT은 판단할 수 있으나 OUTCOME을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각 세부 목적의 달성을 넘어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스마트콘텐츠산업은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경쟁이 특징이나 국내 산업 구조는 기기·네트워크에 비해 플랫폼 · 콘텐츠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술확산에 대한 위험감수와 공익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보조금 형식이 아닌 민간에서의 수행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나 추진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점 존재여부

- 스타트업의 영세성, 플랫폼 및 대규모 수요처의 영향력이 매우 큰 스마트 콘텐츠 시장의 특성상 시장 내의 조정이 제약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성격 상 시장 내에서의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19년 예산은 12,189백만원임

- 사업 추진 기관은 '위탁형 준정부기관', 과정부 소관 비영리법인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고 있음
- 다수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사업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간 통합 및 조정 필요
- 각 내역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목표 달성에 적절하도록 내내역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및 통합적인 사업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준보조율 준수 또는 합리적 보조율: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의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과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음

- 지역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은 해당 사업의 피보조기관으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기금 교부절차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보다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 본 사업은 교부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하고 있음

- 선정 및 교부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 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 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정보통신·방송분야 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명기된 'ICT기금사업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4호)'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

-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해당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함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을 통해 집행단계별로 점검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반영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을 위해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및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함

-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지정하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및 검증을 받음

- 이 외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ICT기금사업 관리지침' 및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등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콘텐츠 개발역량강화 및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수행기관 내 관련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다양한 부정수급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목적은 “스마트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지역 거점 구축, 해외진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생태계 강화를 통한 스마트콘텐츠 산업 진흥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보조사업 타당성에 있어 법적 근거, 목적이 명확하지만 매출액, 고용창출 차원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미한 내역사업이 존재함
- 기업과 개인이지만 최종적으로 콘텐츠 소비자라는 점에서 수혜자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각 수혜자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내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사업 전체적인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내내역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및 통합적인 사업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사업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영세한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되도록 세부내용 개선 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초기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되나, 장기적으로 정부의 직접 보조보다는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경쟁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직접지원보다는 공정거래를 위한 환경 조성 등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의 사업이 개편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사업 개편은 현재의 사업보다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예산의 감축이 요구됨. 다만, 당장 사업의 감축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의 계속성 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단계적 감축을 요구함(5%/년, 총2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이용자전화사기대응체계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최근 전화사기 관련 기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미비함 ·현행 성과지표인 이용자 전화사기 예방 조치율은 단순한 업무처리건수(현장검사 건수)에 불과하므로 전화사기 피해 사전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의 달성 정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필요 있음 ·최근 들어 전화사기의 형태가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내용을 고도화할 필요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법령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여러 조치들을 명시하면서, 해당 조치들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가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기 업무를 주무부처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①번호변작 예방 및 대응 활동 강화, ②번호변작 신고센터 구축 운영 등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내역 사업은 상기 근거 법령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4호(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및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발신번호 변작 검사, 대응 시스템 및 변작 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전화사기로 인한 대국민 피해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 전화번호 변작 등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일련의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의 일부로서 동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국가의 관점에서의 중요성이 인정됨

○ 전화번호 변작 등을 통한 전화사기로 인한 피해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특정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특정 계층이나 소수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근거 법령 및 주무부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업무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①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여 검사하고, ②번호변작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이러한 업무범위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18년 기준, 213개 전기통신사업자 검사, 사칭 전화 624,978건 차단, 문자 도용 40,819,996건 차단, 발신번호 변작 신고 24,768건 및 서비스 중지 5,348건 등 전화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량적 성과를 양호하게 거둔 것으로 평가됨

○ 동 보조사업이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인 이용자 전화사기 예방 조치율 측면에서는 목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성과지표가 사업목표를 적정하게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18년 기준, 전기통신사업자 검사건수 계획 대비 초과 수행, 발신번호 변작 이용자 신고 중 변작 확인 건에 대한 전량 차단 수행 등 업무처리건수 측면에서는 목표 성과를 달성함
- 다만, 동 성과지표는 단순한 업무처리건수에 불과하므로 전화사기 피해 사전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의 달성 정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번호변작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여러 기술적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검사하고 이용자 신고를 접수하는 업무는 근거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국고보조를 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동 보조사업이 유일하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음

○ 최근들어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그 수법이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규모가 소규모이나 행정비용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업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의 실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 내역사업별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화사기 대응 시스템 유지보수비의 경우 추후 필요한 상면비 등을 단계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거 법령에 따라 동 보조사업의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법정 위탁되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100% 보조율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조치를 제도적으로 유도하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화사기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동 보조사업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판단됨

- 전기통신사업자 검사, 사칭 전화 차단, 문자 도용 차단, 발신번호 변작 신고 및 서비스 중지 등 전화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한 바, 이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조치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법정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적정하게 선정하고 있음

○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보조사업자 선정)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및 교부 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으로 매월 국고보조금 신청하면 이를 과기정통부가 승인하는 등 적정한 보조금 교부절차를 따르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련 제3호, 2017.8.24. 개정) 제4장(보조사업 집행관리) 內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주기적으로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또는 보조사업자로 부터 집행 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보조사업 집행점검)에 근거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집행 점검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2항에 근거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제한 및 관련자 처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제8장(보조사업 사후관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련 제3호, 2017.8.24. 개정) 제4장(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제5장(보조사업 사후관리)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제22조(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제23조2(정산보고서 작성), 제24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0조(재산 처분의 제한)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장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 內 '부정수급심의의원회'를 두어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심의하고 있음

- 동 규정 제33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 제34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및 제35조(과오납의 환급)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가 결정 및 납부 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전기통신사업법」제84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각 내역사업도 주무부처 고시 및 세부지침 등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 전화사기로 인한 대국민 피해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보조사업의 목적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특정 계층이나 소수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함

○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인 이용자 전화사기 예방 조치율 측면에서는 목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성과지표가 사업목표를 적정하게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각 내역사업별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화사기 대응 시스템 유지보수비의 경우 추후 필요한 상면비 등을 단계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이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인 이용자 전화사기 예방 조치율은 단순한 업무처리건수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전화사기 피해 사전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의 달성 정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 최근 들어 전화사기의 형태가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단순 번호변작 방지를 넘어 사업내용을 고도화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8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8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 활성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랩 운영지원, 전파산업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기금의 지원근거로 제시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과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또한 오히려 기금사업으로 적정한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 활성화 사업은 2018년 대비 7억원 감액됨에 따라, 본 기금사업으로 적절치 않은 3개 내역사업의 재원 재모색을 위해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국고보조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 즉,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재원인 기금사업임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효과성이나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직접 수행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탁기관에 대한 수시 점검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토록 하고 개선조치 노력을 독려토록 하여 사업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의 법적근거는 전파법 제3조, 제8조, 제62조이고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인데 이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서 용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26조(기금의 용도)에는 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자체평가서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1항 4호(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와 16조(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1항 13호~14호의 전파법 제7조 제1항 손실보상금과 제5항 주파수할당 대가에 대한 지원 규정 외에 본 사업의 법적근거인 전파법 제3조, 8조, 62조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음

- 즉, 방송통신발전기금회계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향후 사업의 재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 활성화 사업 외에 나머지 3개 사업은 기금의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즉,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랩 운영지원, 전파산업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은 기금의 지원근거로 제시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과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다만,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인식 제고 등이 목적임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인프라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전파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며 민간분야

EMP(Electro Magnetic Pulse) 방호 확산 및 국내 방호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전문가 육성 등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상인만큼 민간이나 지자체보다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 수혜자의 경우도 1차 수혜자는 중소기업이지만 2, 3차 수혜자를 고려했을 때 사업분야의 특성상 그 수혜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타당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나 그 운영결과를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효과성 측면에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전파산업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누적 지원금대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3년(0.02배), 2014년(1.06배), 2015년(2.39배), 2016년(4.03배), 2017년(5.92배)로서 시제품의 상용화 기간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3억6천만원으로 총 78건을 지원했는데, 이처럼 많은 건수 대비 지원액의 적정여부(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EMP 방호기반조성사업의 경우, 2018년 성과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 5개 중 5개 모두가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성과목표의 설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성과평가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여부는 향후 검증해야 할 부분임

○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은 양호하나,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에서의 객관성을 검증해보일 필요가 있고 위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점검 등을 통한 문제점 분석이나 개선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 주무 부처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는 규제개선이나 R&D 지원보다는 자금문제나 인력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에 동감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디어는 있으나 기술개발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고출력전자파 침해대응을 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파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고출력전자파 방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은 이윤창출이 쉽지 않으므로 민간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40억6천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4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지만 내역사업은 5개에서 4개로 감소하였고 폐지된 사업비는 계속사업인 전파산업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사업에 추가지원되었음

- 즉, 2018년도에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 활성화와 밀리미터파 적합성 평가 시험시설 구축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 또한 2017년대비 24억3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신설되었던 밀리미터파 적합성 사업은 이관되고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사업은 7억이 감액되었음

○ 이관된 3억 3천만원 외에 감액된 7억원이 대부분 플레이그라운드 구축사업으로 증액되었는데 신설된 내내역 사업은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

- 크게 증액된 전파산업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도 소규모이나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오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수혜자수도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기준보조율 또한 현재의 100%는 적절하지 않으며 자체평가에서 제시한 인건비 포함 약 7:3의 비율은 옳지 않은 표현으로서 인건비나 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사업비이며 전체 사업비의 약 30% 정도는 자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

○ 자체평가 결과,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2번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3번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제시하였으니 3번인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에는 해당하지 않음

- 3번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한다는 내용으로서 전파산업 지원을 보건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그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민간단체인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해서 수행해 오고 있는데 사업의 특성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토록 함에 따라 두 단체의 경우도 공모없이 선정되었음

○ 또한 실제 내역사업별로 중소기업이나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제품을 선정하는 공모절차는 두 협회가 대리하여 진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준수 여부가 명확해져야 할 것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을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한국방송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중소기업을 공모하거나 지원할 제품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운영실태 점검이나 개선조치 등도 ICT기금 사업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음

○ 수행결과를 살펴보면 실태점검은 연 1회 실시하나 결과가 미통보되었고, 진도점검의 경우 상반기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에는 99% 이상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즉, 2018년도의 경우 내역사업별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조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추진과 점검이 모두 위탁됨에 따라 위탁기관 대상 중간점검, 결과조치, 반영여부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는 하나,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과 관리를 모두 산하기관에서 수행함에 따라 사업계획서 외에 점검보고서부터 최종보고서까지 위탁기관에서 모두 작성하여 모든 사업이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 EMP 방호기반 구축을 제외한 3개 내역사업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연간 사업운영상의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노력을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고 사업진행 경과와 성과목표 달성도, 향후 계획만이 담겨져 있음

- 추가로 제출한 자료의 경우 자체평가위원 5명이 개괄적 평가지표 5개에 대해 평가한 부분의 실효성 여부, 재정사업자율평가나 기관내 운영위원회는 본 사업들의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 분석이나 개선조치 등 사후관리와는 다른 차원으로서, 재정사업자율평가는 본 사업의 사업부서가 아닌 좁게는 과기부 기획재정담당관, 넓게는 모든 중앙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해 같은 평가지표로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의 경우도 본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회의는 아님

- 즉, 사업별로 그 목적이나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기재부에서 진행하는 일괄적 평가지표가 아닌 본 사업의 특성을 위한 다른 기준의 평가지표를 말하는 것임

○ 향후 과기부의 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위탁기관의 사업운영상황을 수시로 검토하여 공모절차나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집행현황 및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관리도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달받아서 즉시 조치 필요한 사항들을 직접 챙기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 본 사업이 시작된 2013년 이래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이 선정되므로 부정수급의 가능성은 제거되었다고 하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대책으로 적절한지 의문시됨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 제5조에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지원금 지급 및 환수, 협약의 해약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위원회와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부정수급이 관리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 부정수급 근절은 이에 대한 관리의지를 가지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지에 대한 홍보 등 적극적인 관리노력을 통해 가능해질 것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고보조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 즉,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재원인 기금사업인데,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 활성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랩 운영지원, 전파산업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기금의 지원근거로 제시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과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또한 오히려 기금사업으로 적정한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 활성화 사업은 2018년 대비 7억원 감액됨에 따라, 본 기금사업으로 적절치 않은 3개 내역사업의 재원 재모색을 위해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효과성이나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함

- 전파관련 아이디어를 가진 10인 이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고출력 전자파 침해 대응산업을 활성화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양호하고,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의 경우도 각 사업별 목적과 지원내용이 명확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성과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90%를 상회한다고 하지만 보조사업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할 수 없는 점 등 관리 및 사업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남

3-2 정책 제언

○ 약 1,000개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들 중 많은 사업들이 초기 사업추진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관리가 잘 안되어 그 효과성이 저하되어가고 있음

- 본 사업의 경우도 보조사업의 적정성 항목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관리의 적정성 부분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직접 수행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탁기관에 대한 수시 점검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토록 하고 개선조치 노력을 독려토록 하여 사업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관리점검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실시 단계만큼 결과관리도 환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관리점검 기관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과기부가 직접 관리하고 챙겨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정보격차해소지원(정보화)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6.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6.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9.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7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20년 2억, 21년 2억) 및 사업방식 변경** – 19년 중고PC보급 내역사업 6억 원 중 20년에 2억 원 감축, 21년에 2억 원 감축 · 모바일 중심 시대라는 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사업 방향의 질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PC보급 사업은 타당하지 않으며, 고령층 정보화 교육의 경우 유사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실효성이 약한 중고PC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낭비적 요소가 있으며,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고,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이 연계되지 못한 채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협력, 세대 간 교류 확대 등 디지털 소통 교육 활성화, 무인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도입 등 사업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방통위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환경조성” 사업과 연계 및 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등에 제시되어 있어, 명확하고 타당함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내역사업은 크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의 경우 법적 근거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와 제34조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 >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정보화교육사업의 법적 근거는 동법 제35조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목적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보편적인 정보접근 기회 및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신정보격차해소 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자치단체에 치우치지 않는 전국 단위의 사업이며, 장애인 및 고령층 등 전국의 정보취약계층을 직접적인 수혜자로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랑의 그린PC 보급, 장애인정보화교육, 고령층 정보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모바일 중심 시대로 바뀌는 상황에서 PC 지원 및 사용 능력에 초점을 두는 사업을 축소하고, 모바일 기기 지원 및 사용 능력에 초점을 두는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함

<정보격차해소 보조사업 사업목표 및 사업 내용>

사업목표	사업명	사업내용
정보접근성 제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시각·청각·지체 등)보조기기(예: 지체장애인용 특수마우스) 및 S/W 구매 바용을 지원(제품가격의 8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제품가격의 90% 지원
	사랑의 그린PC 보급	· 경제적으로 PC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으로 기증 받은 중고 PC를 정비한 '사랑의 그린 PC'를 무상 보급
정보역량 제고	집합정보화교육	· 시·도별 장애인·고령층 대상 집합 정보화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보화 기초·실용 교육 무료제공

○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실적은 충분하나, 성과지표로 제시된 내용이 교육 실적 및 만족도에 한정되고 있어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3년간 내역사업별 실적>

내역사업명	'16년		'17년		'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4,000대	4,256대	3,200대	3,483대	3,200대	3,296대
사랑의그린PC 보급	10,000대	11,984대	7,500대	9,929대	7,500대	8,604대
정보화교육	55,610명	91,712명	53,210명	95,643명	53160명	82,862명

○ 한정된 자원 내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결합할 필요가 있음

○ 통신사, 포털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취약계층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교육, AI 스피커 보급 및 활용방법 교육 등의 사회공헌 캠페인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 민간 기업의 사내 봉사단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모가 크지 않지만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모바일 중심 시대에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방향의 전환이 요구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국가의 보조금 역할이 인정되지만 유사한 사업을 민간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무부처는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의 경우 읍면소재 복지관 교육이라는 점에서 시·도 단위로 추진되는 동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교육장소만 다를 뿐 참석 대상은 중복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과의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함

○ 정보화격차 해소 사업의 대상으로 장애인(255만 명), 고령층(55세 이상, 1,660만 명)을 제시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주장하나, PC 보급 및 PC 활용에 초점을 교육 사업의 수요라고 보기 어려움

○ 지자체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동 사업이 폐지될 경우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는 하나, 사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보조금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민관 협력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률보조율(50%)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 방향의 전환을 고려하여 재정 규모 감축이 필요함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부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각 사업별 특성에 따른 지역별 사업대상자 수 등 사업수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그간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개 시·도별 보조금 지원규모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은 적정함

< 사업별 예산배정 기준 >

사업 구분		배 정 기 준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인구 수(50%), 전년도 신청건수(30%), 재정자립도(20%)
중고PC 보급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인구 수(50%), 최근년도 실적(30%), 재정자립도(20%)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장애인	장애인 인구 수(70%), 재정자립도(30%)
	고령층	55세 이상 고령층 인구 수(70%), 재정자립도(3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내역사업별 사업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 집행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후관리도 적정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도 적정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목적도 타당하나, 모바일 중심 시대라는 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사업 방향의 질적 전환이 요구됨

- 신정보격차 해소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PC 보급 및 PC 활용 능력 제고에 맞춘 정보화 교육에 초점을 둔 사업 방향을 모바일 시대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통신사, 포털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통신요금 지원 또는 인하 등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 사업 추진 필요

○ 사업 방향 전환 및 유사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내역사업(중고 PC 보급)을 중심으로 예산 감축이 필요하며, 19년 예산 대비 20년 2억 원, 21년 2억 원 감축

3-2 정책 제언

○ 사업 방향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방안 추진 필요

○ 실효성이 낮은 집단 교육의 비율을 낮추고 찾아가는 1:1 교육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세대 간 교류확대 등 디지털 소통 교육의 활성화 필요

○ 단순한 정보기기 활용 차원에서 벗어나 무인시스템(키오스크)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방통위의 “방송통신이용자 보호환경조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자 역량강화, 피해예방 교육의 대상자와 중복되므로, 이 사업과 연계 및 협력하여 사업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수혜대상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국가의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14년도부터 추진된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품질인증 수요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최소한의 정부지원 필요한 점이 인정됨. 다만 추후 단계적으로 인증비용 유료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포함한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ICT기반의 전 산업영역에 걸친 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보급한다는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역사업도 이에 부합하게 설정되었으나 산업활성화지원(컨설팅, 홍보 등) 등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수행방식의 조정 등 효율화의 노력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ICT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해 국제적인 시험인증 지원 및 통합 인증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에 따른 보조사업의 근거가 명확하며, 동법 시행령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1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인증 지원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국내 ICT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통합지원체계구축(국내 ICT중소기업 융합제품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품질시험·인증체계 지원)으로 관련 법령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1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이 높음

- 변경된 사업목적인 통합지원체계구축(국내 ICT중소기업 융합제품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품질시험·인증체계 지원)의 연계성과 정합성도 적절한 편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ICT융합분야 경쟁력 제고 및 ICT융합기반 4차산업 성장환경 마련을 위해 국내 ICT관련 중소기업 융합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인증체계 지원'으로 국내 IC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ICT융합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이후 고가의 다양한 시험장비 도입과 시험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자체검증환경을 구축하지 못하거나 공공시장 진출이 어려운 국내 ICT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융합제품을 대상으로 품질향상 지원, 인증정보 제공, 판로지원 등 종합적 품질시험·인증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 수혜대상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국가의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14년도부터 추진된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품질인증 수요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최소한의 정부지원 필요한 점이 인정됨. 다만 추후 단계적으로 인증비용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사업의 수혜자는 고가의 다양한 시험장비 도입과 시험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자체검증환경을 구축하지 못하거나 공공시장 진출이 어려운 국내 ICT 중소업체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음

- 수혜자에게 중소기업 융합제품 품질향상 및 시장진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8년도의 경우 제품인증 7건 및 인증컨설팅 15건 등을 지원하는 등 ICT융합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기업 인지도 제고 등의 기회를 얻음

- 수혜자에게 귀속되는 혜택은 명확하나, 예산규모의 제한으로 수혜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으며 선택적으로 귀속되는 보조사업의 혜택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목적 및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국내 ICT중소기업의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국제 수준의 시험인프라 구축 및 ICT융합 기술·서비스 및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험규격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는 내역사업을 적절하게 구성하였음

- 정책외부환경(과방위 지적사항) 및 사회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18년까지 시험인증인프라구축(내역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종료하고 '19년부터 통합지원체계구축(내역사업, 국내 ICT중소기업 융합제품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품질시험·인증체계 지원)을 확대한 점도 긍정적인 대응이라 판단됨

○ 국내 ICT관련 중소기업 융합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인증체계 지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ICT기반의 전 산업영역에 걸친 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보급한다는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역사업도 이에 부합하게 설정됨

- 국내 우수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출과 ICT융합 서비스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한다는 목표달성을 고려하여 품질인증기준 제정 및 산업활성화지원(컨설팅, 홍보 등)을 위한 구

체적인 세부목표가 설정되었음

○ 사업의 효과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나, 산업활성화지원(컨설팅, 홍보 등) 의 경우 사업수행 방식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16년도과 '18년도 ICT 융합품질인증 수요가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연평균 12.5건의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보급한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제품인증 건수, 인증컨설팅 기업수, 전시회 등 운영 횟수, 홍보용 브로슈어 수 등 지원사업과 관련런한 대부분의 성과가 단순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보조사업과 내역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출과 ICT융합 서비스 및 제품의 품질향상이라는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함. 정책수단의 전달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도식화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으로 인한 성과도 보다 구체적·실증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당 사업은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여 국내 ICT 중 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통합체계지원(국내 ICT중소기업 융합제품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품질시험·인증체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융합 제품 관련 품질인증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의 형태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 사업방식변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시험인증인프라구축(내역사업)을 종료하고 종합적 품질시험・인증체계 지원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존재하는 타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고유성이 충분히 인정됨

- ICT융합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융합기반 4차산업의 성장환경 마련을 위해 국내 ICT융합제품에 대한 종합적 품질시험, 인증체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 중단 시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ICT융합 제품의 품질검증이 어려워지며, 시험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ICT융합분야의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음

- 국내 ICT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공공시장 진출시 수요자로부터 검증 제품에 대한 도입이 요구되어 제품인증이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 중단시 국내 ICT 중소기업이 개발한 ICT융합 기술·서비스·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이로 인해 ICT중소기업은 공공시장에 적기에 진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ICT융합기반 4차산업의 성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인정됨

○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 필요하나 보조사업의 예산규모의 제한으로 직접적 수혜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은 점은 한계임. 다만, ICT융합품질인증 제품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기본요건에 편입됨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일정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 ICT융합분야 경쟁력 제고 및 ICT융합기반 4차산업 성장환경 마련을 위해 국내 ICT관련 중소기업 융합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인증체계 지원'의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검증할 경우(평균 2억원 내외) 매우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나아가 시험결과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개별 업체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ICT융합분야의 경쟁력 저하 및 이로 인한 공익적 손실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ICT융합 제품의 안정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해, ICT융합 품질기준 개발 및 인증제도 운영, 인증제품 홍보를 위한 비용만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그 실효성은 충분함

- 연평균 약 12.5건의 품질기준을 제정, 보급함을 고려할 때, 품질기준 개발(약2억~3억), 인증제도운영(약1억원), 인증홍보(약1억원) 등의 사업비가 산정되어 사업비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100% 국비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추후 사업의 성숙도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증비용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18년도에 종료된 사업이나 내역사업 중 국제적 인증을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을 통해 얻은 연간 수수료 수입(100억원 이상)을 재투자하여 국비지원을 경감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부처에서 제시한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사회적 가치 분류체계 상에서도 해당하는 영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음

- 구체적인 추진 근거에 기반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관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절차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다만,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불가

○ 구체적인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통지)와 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 집행 실태 조사, 회계정산 절차 등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업추진계획, 사업실적 보고 등을 통하여 정기적,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운영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관련 별도의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보조금 관리의 일반규정인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관리체계에 따른 사업추진을 제도화하고 있음

-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은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정산 및 회계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조치 후 보조사업 전담기관(과기정통부)에 통보 후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실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없기는 하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 부정수급 관련 별도의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 등의 관리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ICT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해 국제적인 시험인증 지원 및 통합 인증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며, 내역사업도 관계 법령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이 높음

○ 본 사업의 목적은 'ICT융합분야 경쟁력 제고 및 ICT융합기반 4차산업 성장환경 마련을 위해 국내 ICT관련 중소기업 융합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인증체계 지원'으로 국내 IC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수혜대상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국가의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14년도부터 추진된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품질인증 수요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최소한의 정부지원 필요한 점이 인정됨. 다만 추후 단계적으로 인증비용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혜자에게 귀속되는 혜택은 명확하나, 예산규모의 제한으로 수혜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으며 선택적으로 귀속되는 보조사업의 혜택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함

○ ICT기반의 전 산업영역에 걸친 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보급한다는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역사업도 이에 부합하게 설정되었으나 산업활성화지원(컨설팅, 홍보 등)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방식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제품인증 건수, 인증컨설팅 기업수, 전시회 등 운영 횟수, 홍보용 브로슈어 수 등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성과가 단순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보조사업과 내역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출과 ICT융합 서비스 및 제품의 품질향상이라는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함. 정책수단의 전달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도식화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으로 인한 성과도 보다 구체적·실증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 필요하나 보조사업의 예산규모의 제한으로 직접적 수혜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은 점은 한계임. 다만, ICT융합품질인증 제품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기본요건에 편입됨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일정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 개별 업체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ICT융합분야의 경쟁력 저하 및 이로 인한 공익적 손실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임

○ 해당 사업은 ICT융합 제품의 안정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해, ICT융합 품질기준 개발 및 인증제도 운영, 인증제품 홍보를 위한 비용만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그 실효성은 충분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효과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나, 산업활성화지원(컨설팅, 홍보 등) 의 경우 사업수행방식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제품인증 건수, 인증컨설팅 기업수, 전시회 등 운영 횟수, 홍보용 브로슈어 수 등 지원사업과 관련런한 대부분의 성과가 단순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보조사업과 내역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출과 ICT융합 서비스 및 제품의 품질향상이라는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함. 정책수단의 전달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도식화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으로 인한 성과도 보다 구체적·실증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산업활성화지원(컨설팅, 홍보 등)의 경우 단순 이벤트성 사업에 그칠 수 있는 등 사업수행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이라도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해당 사업은 100% 국비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추후 사업의 성숙도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증비용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관련 별도의 내부규정을 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위원회나 제재방안 마련 등 보다 체계적인 제도화의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 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세부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초연결망 신기술에 대한 수요 및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당초 기획된 26개의 신기술 및 24개의 실증모델에 대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미수행한 신기술 중 선도테스트 및 모델적용을 통하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에 한하여 '20년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수행한 컨소시엄('17년 2개, '18년 5개)별 시설투자비용 절감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적용 가능영역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계치를 분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판단) ·본 사업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사업에 해당되는 바, 보다 엄격한 성과관리와 더불어 신기술에 대한 수요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향후 3년 간의 기획안을 재수립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법령>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세부사업은 선도테스트 기반 구축, 공공·민간분야 선도적용 확대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사업에 해당됨

- 선도테스트 기반 구축을 위해 오픈플랫폼 개발 및 구축, 서비스 상용화 개발을 수행하며, 공공·민간분야 선도 적용 확대를 위해 인프라(컨트롤러/서버/스위치)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총괄·제어관리 개발을 수행함
- 본 세부사업은 다양한 기종 간 연계와 서비스 트래픽 수용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가 유연하고 안전하게 구현되도록 고도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와 관련성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 33번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33-3번 '5G-IoT 데이터 활용 기반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관련성이 높으며, 국가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공공·민간분야 선도 적용 확대를 위해 관련 핵심 신기술 개발(26개)과 선도 적용모델(24개)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짐

○ 본 세부사업의 수혜자는 통신사 및 정비사, 서비스 개발 벤처, 중소기업 등 사업 수혜자에 한하며, 광범위한 수혜자는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17년 6개, 18년 9개 기업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은 '17년부터 '20년까지 연차별로 핵심기술 및 공공·민간분야 선도적용을 통한 실증을 계획하고 추진 중임

- 지능형 초연결망 관련 연차별 필수 핵심 신기술 내역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개	5개	8개	10개
중소·벤처기업의 **SW기반 네트워크 신기술 개발** (필수 신기술 **26개**)	① 가입자망 ② vFirewall ③ 웹방화벽	④ Switch ⑤ Router ⑥ 인터넷백본 ⑦ 데이터센터 ⑧ POTN	⑨ 백홀 ⑩ ROADM ⑪ LTE백본 ⑫ eNB ⑬ SPGW ⑭ SGSN ⑮ OLT ⑯ IPS	⑰ APT ⑱ MSPP ⑲ CSCF ⑳ IBCF ㉑ MME ㉒ UTM ㉓ vDPI ㉔ CMTS ㉕ NAT ㉖ SBC

○ 지능형 초연결망의 선도사업 적용으로 기존 네트워크 구축(외산/고가 장비 및 솔루션 적용) 대비 시설투자비용(CAPEX)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20년까지 네트워크 관련 장비 등 시설투자비용(CAPEX)을 30% 절감할 것으로 기대함

※ 절감효과 : [(기존장비 도입비용-개발장비 도입비용)/기존장비 도입비용 x 100]

○ 본 세부사업은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 실증으로 기존 네트워크 구축비용(고가장비 및 솔루션 적용)의 절감율을 '18년 25.6%(목표 20%)를 달성함

- 상용화 및 시제품화 10건,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61건, 일자리창출 13명 등의 성과를 달성함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CAPEX 절감 목표비율/실적 (사업추진 실증 도출)	**15% /16.3%**	**20% /25.6%**	**25%**	**3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세부사업은 선도기술에 대한 시험·검증을 통한 상호 호환성과 기능, 성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나 민간이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됨이 타당함

○ 본 세부사업은 신기술 및 선도기술인 SW기반 네트워크에 대한 장비와 기술, 솔루션을 선도시험 및 검증, 실증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중복 및 통합 가능성이 없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부합성 및 지원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및 타 기금사업과의 중복성을 배제함

○ 본 세부사업은 '19년 예산 확보 시 당초 계획된 예산의 절반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기획된 신기술 및 실증모델을 계획대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 지능형 초연결망 신기술에 대한 수요 및 환경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미수행된 신기술 및 실증모델 중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술 및 실증모델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장함

- 본 사업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사업에 해당되는 바, 신기술에 대한 수요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향후 3년 간의 기획안을 재수립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17년(2,000백만원), 18년(4,340백만원)에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19년에는 3,651백만원이 배정되어 당초 계획된 예산의 절반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함

- 본 세부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20년까지 목표한 26개 핵심기술 선도 테스트 및 모델 적용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19년에 당초 계획된 예산의 절반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내용도 크게 감소함(8개→4개의 신기술의 선도테스트 구축 및 공공민간 선도적용모델)

- '19년 4개 정도의 신기술 테스트와 선도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나머지 사업계획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신기술당 8-9억원 소요)

- 미수행한 신기술 중 선도테스트 및 모델적용을 통하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함

○ 본 세부사업은 출연기관(법적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민간경상사업으로 100% 국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세부사업 추진으로 11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예산에 비해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절차,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세부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ICT기금) 사업으로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 전담기관인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통해 분기별 자금 교부, 집행현황 점검, 정산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사업 추진기관에서 집행 시 2차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기금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을 준용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 방송통신발전기금(ICT기금)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에 보조사업 집행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ICT기금)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등에 따라 보조사업 실집행현황, 단계별 집행현황 점검, 성과관리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정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네트워크의 트래픽 및 복잡성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네트워크 신시장 선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SW기반 지능형 초연결망의 신기술 적용모델에 대한 “발굴→검증→선도적용→확산”하는 실증사업임

- 공공·민간분야 선도 적용 확대를 위해 관련 핵심 신기술 개발(26개)과 선도 적용모델(24개)을 연차별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함
- ’19년에 당초 계획된 예산의 절반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내용도 크게 감소함(8개→4개의 신기술의 선도테스트 구축 및 공공민간 선도적용모델)
- 본 세부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20년까지 목표한 26개 핵심기술의 선도 테스트 및 모델 적용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19년 4개 정도의 신기술 테스트와 선도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나머지 사업계획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신기술당 8-9억원 소요)

- 미수행한 신기술 중 선도테스트 및 모델적용을 통하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20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함

- 초연결망 신기술에 대한 수요 및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당초 기획된 26개의 신기술 및 24개의 실증모델에 대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최종적으로 본 세부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당초 기획안과 같이 26개의 신기술과 24개의 실증모델 중 미수행된 기술과 모델을 그대로 수행하기 보다는 신기술에 대한 수요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과 실증모델을 선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연차별 수행한 컨소시엄('17년 2개, '18년 5개)별 시설투자비용 절감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증모델별 적용 가능한 영역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계치를 분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본 세부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 본 사업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사업에 해당되는 바, 보다 엄격한 성과관리와 더불어 신기술에 대한 수요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향후 3년 간의 기획안을 재수립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 제주)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3.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제주 총 9개의 IT/SW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애로 해소 컨설팅 연계로 (주)캐치잇플레이의 경우 5억원의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는 등 제주지역의 SW중소기업에 보조금의 지원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제주도의 경우 자체 기업특성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마케팅 분야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사업비도 마케팅 분야에 총 사업비의 71%를 지출하고 인력양성과 네트워크 부문에 29%만을 지출한 것으로 보임 ·이에 본 사업의 추진목적인 제주지역의 중소SW기업을 기초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마케팅, 기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업방향이라고 생각됨 ·궁극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축적하고 마지막에 제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 ·제주계정의 경우 수치화된 효과성이 있으나 성과관리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는 바, 향후 본 계정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실질적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달성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3항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여건 개선,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토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어 정액 지급기준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06년부터 '18년도까지는 지방비를 60% 이상 의무매칭하되,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역만 50%를 국비지원했으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적에 따라 국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본 사업은 균특법에 따라 그 추진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광역지자체(제주계정 별도)를 대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SW기업 창업, 성장, 마케팅, 제품 국산화, 해외 진출 및 산업기반 인프로 지원 등을 통해 SW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됨

- 특히, 제주지역 재학생 취업과 맞춤형 재직자를 교육하는 인력양성, 기업성장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컨설팅, 성능분석 및 인증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구체적이라고 판단됨

○ 사업의 수혜범위를 살펴보면 제주도내 중소 SW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으로서 그 수혜범위가 세부사업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임

- 즉, 인력양성과 마케팅 지원부분은 수혜범위가 제주도에 한정될 것이며, 기술과 마케팅 지원은 그 파급효과가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혜택이 갈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4개의 중점분야로 나누고 있으나 내역사업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

○ 사업의 목적은 중앙에서 제시하고, 목표관리제를 통해 제주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후 그 목표달성도를 제출하는 사업운용구조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 공동의 사업목표는 매출증가율, 신규 고용 창출, 예산집행률, 지자체의 산업육성노력(지방비 매칭 이행률), 사업담당자 전문교육 이수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측정토록 함

- 2017년도 제주지역 MBO대비 세부사업 달성실적은 87.87%로 나타남

○ 제주도의 자체 기업특성조사를 바탕으로, 제주도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마케팅 분야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사업비도 마케팅 분야에 총 사업비의 71%를 지출하고 인력양성과 네트워크 부문에 29%만을 지출한 것으로 보임

○ 제주 총 9개의 IT/SW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애로 해소 컨설팅 연계로 (주)캐치잇플레이의 경우 5억원의 투자유치를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자체평가서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SW산업의 육성은 지역의 SW생산 규모와 SW기업 수 등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광역지자체에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단위에서도 첨단 SW산업이 자리잡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됨

○ 과기부 자체분석 결과 '17년의 경우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SW기업 11개사 지원, 기업매출 129억원, 신규고용 9명, 특허 1건, 프로그램 등록 1건, 기타인증 2건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남

○ 이상과 같이 지역SW사업진흥지원 제주계정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예산은 2018년도 기준 2.24억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1.79억원으로 축소되었음

○ 본 사업은 지역별 MBO 방식을 통해 공통 목표와 지역별 목표에 따라 추진 후 성과를 측정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내기 어려움에 따라 지역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제로 지역의 산업에 도움이 되는 세부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균특회계에 별도의 제주계정을 두고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음

○ 매년 정량평가지표와 정성지표를 통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와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의 선정 및 교부절차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 지자체에서 과기부에 예산신청 단계부터 보조사업 금액확정 통지까지 이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집행, 관리 감독 등의 점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3조(협약의 체결), 제25조(협약의 해약)~제33조(사업결과의 보고), 제34조(사업결과의 평가)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도 동 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보조금 실집행 현황 및 단계별 점검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 분석, 부정수급 의심 건 등을 보고토록 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고투입에 따른 보조대상들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

○ 본 사업은 균특회계사업인데, 균특회계사업의 특성은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국가지원을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가이드라인을 주기보다 제주도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되 자율성 내에서 오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구분해 낼 수 있는 평가지표 등을 찾아내는 것이 과기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필요한 SW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제주도이므로 제주도가 과기부에 대해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은 없음

- 부정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 추진단계나 수혜자 중에서 발생할 가능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제주도가 운영하는 사업들 중 부정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피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제주 총 9개의 IT/SW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애로 해소 컨설팅 연계로 (주)캐치잇플레이의 경우 5억원의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는 등 제주지역의 SW중소기업에 보조금의 지원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 본 사업은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지역간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임

○ 제주도의 경우 자체 기업특성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마케팅 분야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사업비도 마케팅 분야에 총 사업비의 71%를 지출하고 인력양성과 네트워크 부문에 29%만을 지출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사업의 추진목적인 제주지역의 중소SW기업을 기초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마케팅, 기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업방향이라고 생각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목적과 궁극적으로 공익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축적하고 마지막에 제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

○ 본 사업 제주계정의 경우 수치화 된 효과성 입증을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 측면은 다소 약한 부분이 있는 바, 향후 본 계정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실질적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달성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추진방식에 있어서 예산규모 대비 지나치게 사업이 분할되어 있음에 따라 지원범위를 좁히되 지역특성을 좀 더 파악한 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본 사업은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의 중소SW기업을 기초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마케팅, 기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매우 중요한 사업내용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사업의 효과성부분은 많은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질성 측면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사업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함 ·본 사업은 많은 조사와 분석을 제시하기보다는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나누어서 그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과 조사를 실시했고, 그 가운데 지자체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차별화했는지 등 좀 더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3항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여건 개선,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토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어 정액 지급기준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06년부터 '18년도까지는 지방비를 60% 이상 의무매칭하되,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역만 50%를 국비지원했으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적에 따라 국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본 사업은 균특법에 따라 그 추진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SW기업 창업, 성장, 마케팅, 제품 국산화, 해외 진출 및 산업기반 인프로 지원 등을 통해 SW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됨

- 특히, 재학생 취업과 맞춤형 재직자를 교육하는 인력양성, 기업성장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컨설팅, 성능분석 및 인증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구체적이라고 판단됨

○ 사업의 수혜범위를 살펴보면 지역내 중소 SW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으로서 그 수혜범위가 세부사업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임

- 즉, 인력양성과 마케팅 지원부분은 수혜범위가 지역에 한정될 것이며, 기술과 마케팅 지원은 그 파급효과가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혜택이 갈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4개의 중점분야로 나누고 있으나 내역사업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

○ 사업의 목적은 중앙에서 제시하고, 목표관리제를 통해 12개 지역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후 그 목표달성도를 제출하는 사업운용구조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 공동의 사업목표는 매출증가율, 신규 고용 창출, 예산집행률, 지자체의 산업육성노력(지방비 매칭 이행률), 사업담당자 전문교육 이수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측정토록 함

○ 지방비 매칭 포함해서 가군의 경우 약 6억원, 나군 약 5억원, 다군 약 2.5억원이 광역지자체의 사업비로서 '17년 지역별 MBO대비 세부사업 달성실적은 지역 전체 평균 92.6%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성과지표에 의한 달성도는 본 세부사업이 아니라 상위의 단위사업기준으로 신규일자리와 수혜기업 만족도, SW지원기업 매출증가율 지표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지역별 목표명인 매출증가율, 신규 고용창출 등 5개의 지표로 효과측정이 가능한데 이 5개 지표가 본 사업의 본래 목적인 4개 범주 즉,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측정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가 있음

- 지역별로 차별화된 사업계획 작성, 만족도 조사, 시도별 실태조사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시도별로 시급한 범주에 우선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인력양성 등 4개 범주 모두 운영, 3개, 2개 범주를 운영한 지자체의 지원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많은 범주의 사업들을 운영한 지자체일수록 지원규모가 큰 경향을 보이고 있음

○ SW분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불과 몇 억원의 예산으로 이렇듯 많은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전반적으로 서류작업들이 많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마켓팅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한 두번의 마켓팅 지원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인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컨설팅은 누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실시한 것인지, 만족도 조사결과가 매우 높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모집단은 무엇이고, 어느 기간동안 실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수많은 도표와 그래프, 시도별 현황 및 지원내역을 나열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 등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자체평가서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SW산업의 육성은 지역의 SW생산 규모와 SW기업 수 등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광역지자체에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단위에서도 첨단 SW산업이 자리잡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됨

○ 과기부 자체분석 결과 '17년의 경우 47,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개 기업 402개사 지원, 기업매출 7,530억원, 신규고용 1,165명, 인증 130건, 특허 217건, 프로그램 등록 98건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남

○ 이상과 같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진방식의 재고의 여지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예산은 2018년도 기준 41억3천만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28억3천만원으로 축소되었음

- 이는 2016년도 보조사업평가 결과, 지역간 사업연계로 국비 지원을 낮추라는 의견에 대해 이행한 결과임

○ 결과적으로 지방비 50% 매칭할 경우 12개 지자체가 평균 약 4.6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각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본 사업은 지역별 MBO 방식을 통해 공통 목표와 지역별 목표에 따라 추진 후 성과를 측정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내기 어려움에 따라 지역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제로 지역의 산업에 도움이 되는 세부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음

○ 매년 정량평가지표와 정성지표를 통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와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의 선정 및 교부절차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 지자체에서 과기부에 예산신청 단계부터 보조사업 금액확정 통지까지 이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집행, 관리 감독 등의 점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3조(협약의 체결), 제25조(협약의 해약)~제33조(사업결과의 보고), 제34조(사업결과의 평가)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도 동 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보조금 실집행 현황 및 단계별 점검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 분석, 부정수급 의심 건 등을 보고토록 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고투입에 따른 보조대상들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

○ 본 사업은 균특회계사업인데, 균특회계사업의 특성은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국가지원을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가이드라인을 주기보다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되 자율성 내에서 오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구분해 낼 수 있는 평가지표 등을 찾아내는 것이 과기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SW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과기부에 대해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은 없음

- 부정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 추진단계나 수혜자 중에서 발생할 가능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들 중 부정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피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추진방식에 있어서 예산규모 대비 지나치게 사업이 분할되어 있음에 따라 지원범위를 좁히되 지역특성을 좀 더 파악한 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 본 사업은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지역간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의 중소SW기업을 기초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마케팅, 기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매우 중요한 사업내용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사업의 법적 근거부터 목적, 필요성 등은 인정되지만 사업의 효과성부분은 많은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질성 측면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실태조사나 분석 측면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성과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전술했던 상위 단위사업 단계에서의 달성도만으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많은 조사와 분석을 제시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업들을 내역화 해서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과 조사를 실시했고, 그 가운데 지자체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차별화했는지 등 좀 더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이 요구됨

○ 특히, 지자체별로 SW산업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매우 기초적인 지원부터 고도화된 부분까지 상당히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7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세부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국정과제인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하나, 내역사업별 예산 규모가 큰 사업임을 감안할 때 성과지표 관리가 미흡함 * 데이터산업 활성화전략('18.6월), 데이터·AI경제 활성화계획('19.1월) 등 ·세부 내역사업 단위로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관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차년도 예산계획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성과관리 체계화 필요) ·내역사업 중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데이터 부문에 특성화된 대규모('19년 853억원) 사업임을 고려할 때, 본 세부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사물인터넷 신산업육성 선도, 차세대 웹 기술 HTML5 이용 활성화, O2O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사물인터넷 신산업육성 선도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시책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의 설립 및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차세대 웹 기술 HTML5 이용활성화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

- O2O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위의 관련법에서 명시하는 조항은 4개의 내역사업과 관련성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사업명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 33번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과 관련되며, 국가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내역사업은 33-3번 '5G·IoT, 데이터 활용 기반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18.6월, 4차위),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18.8월, 기재부)에 빅데이터 분야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됨

- 사물인터넷(IoT) 분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기술이며 국정과제 33-3과 관련성이 높음

- 차세대 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는 국정과제 33-2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 규제개선'과 관련되며, '21년까지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90%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음

- O2O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은 O2O 서비스 활성화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업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이 필요함

○ 본 세부사업의 수혜자는 데이터 기반으로 창출된 비즈니스의 중소기업·스타트업·예비 창업자, IoT 제조·서비스업체 및 일반 이용자가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의 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사물인터넷 신산업육성 선도, 차세대 웹 기술 HTML5 이용 활성화, O2O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4개의 내역사업 목표에 부합하도록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내역사업은 빅데이터 선도 및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플래그십, 빅데이터 센터 운영 및 확충, 빅데이터 안전한 활용 지원으로 사업을 구성하며, 빅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K-Global 데이터 글로벌, 본인정보 활용 지원,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구성하며, 데이터 기반 전략 기획 및 정책 지원을 위해 데이터 기반 전략 기획 및 정책 지원,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구성됨

-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 선도 내역사업은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IoT 제품·서비스 검증·확산, IoT 개발환경 조성·보급, 안전한 IoT 이용기반 조성사업으로 구성됨

- 차세대 웹 기술 HTML5 이용활성화는 국내 웹 산업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확보를 위해 비표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과 HTML5 기술지원센터 운영, 차세대 웹 표준 선도서비스 발굴 사업으로 구성됨

- O2O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내역사업은 국내 O2O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O2O 실태조사, 상생 협의체 운영 등 지속성장 기반 조성사업으로 구성됨

○ 4개의 내역사업별 사업의 내용이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혁신성장전략 중 데이터 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됨

○ 본 세부사업은 재정평가를 위해 4개의 성과지표(2개의 성과지표는 19년 신규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18년 사업에 적용된 2개의 성과지표(빅데이터 지원 인프라 활용 수, 웹 호환성 준수율)는 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 선도 내역사업은 ICT 기금사업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 받았으며, 차세대 웹기술 HTML5 이용 활성화 내역사업은 국내 민간 1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 X를 17년까지 89.1% 감소시킴

- 단, 본 세부사업은 사업비가 103,152백만원으로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며,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세부사업은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함

- 내역사업 중 '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사업과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18.6월, 4차위),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18.8월, 기재부),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19.1월, 관계부처 합동) 등

- 데이터 부문에 특성화된 사업의 특성과 규모('19년 853억원) 등을 고려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한 보다 효율적인 성과관리와 실적점검 등을 위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되, 추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사업'과 통합 운영할 것을 권장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의 양산, 사물인터넷 기술의 개발수요 증대, 실행파일이 증가함에 따른 액티브X의 증가, O2O 서비스의 산업화 등을 감안할 때 4개의 내역사업은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 본 세부사업이 폐지될 경우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빅데이터 산업, IoT 산업, 차세대 웹기술, O2O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내역사업별 19년 예산의 배분을 보면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내역사업이 85,294백만원(18년 11,245백만원),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 선도 내역사업이 14,938백만원(18년 16,860백만원), 차세대 웹기술 HTML5 이용 활성

화 내역사업이 2,660백만원(18년 3,260백만원), O2O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내역사업이 260백만원(18년 260백만원)으로 구성됨

- '18.06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내역사업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3개의 내역사업은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이 일부 조정됨

-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강화 내역사업의 경우, 19년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업내용을 충실히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본 세부사업의 내용이 국정과제에 해당되어, '18년 대비 '19년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내역사업별 성과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세부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별 목표 및 실적관리에 기반하여 차년도 예산규모 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16년 94.3%, '17년 97.2%, '18년 95.4% 수준임

- 내역사업별 단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바, 단기성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성과관리를 통하여 중기 예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세부사업은 출연기관(법적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민간경상사업으로 100% 국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절차,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세부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ICT기금) 사업으로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 전담기관인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통해 분기별 자금 교부, 집행 현황 점검, 정산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사업 추진기관에서 집행 시 2차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기금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을 준용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 방송통신발전기금(ICT기금)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에 보조사업 집행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ICT기금)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등에 따라 보조사업 실집행현황, 단계별 집행현황 점검, 성과관리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정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산업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웹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O2O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 선도, 차세대 웹 기술 HTML5 이용 활성화, O2O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내역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혁신성장전략'의 핵심사업에 해당됨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18.6월, 4차위),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18.8월, 기재부),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19.1월, 관계부처 합동) 등

- 본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국정과제인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하나, 내역사업별 예산규모가 큰 사업임을 감안할 때 성과지표 관리가 미흡함

- 세부 내역사업 단위로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관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차년도 예산계획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성과관리 체계화 필요)

- 내역사업 중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85,294백만원)' 사업은 데이터 부문에 특성화된 대규모('19년 853억원) 사업임을 고려할 때, 본 세부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3-2 정책 제언

○ 단기성 성격의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역사업별 연차별 성과평가에 기반하여 사업의 지속성 여부 및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7.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역할을 잘못 설정할 경우 민간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상증강현실산업과 같이 매우 유망한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가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 제작의 선정 분야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사업 추진 시 정부 지원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성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지원에 대한 대략적 시점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현재 내역 사업 구성의 근거와 재정추계가 부재함에 따라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예산당국이 인정한다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관리를 각별히 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9조, 제12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2조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정부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시행 근거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인 ‘컴퓨터그래픽산업육성’, ‘가상증강현실산업육성’, ‘시장창출형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실감콘텐츠인프라구축’, ‘전략시장 해외진출 지원’,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ICT융합스포츠콘텐츠개발’, ‘혼항현실콘텐츠실증확산’, ‘차세대 교육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등은 주로 특별법 제21조 및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은 국정과제(33-7)에 해당하며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사업의 수혜 범위는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자와 민간 업체로 파악되나 국민들로 확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다고 하기 어렵고, 사업의 효과성의 여부에 따라 외부효과의 크기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분야별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총 10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콘텐츠 제작 관련 내역사업의 경우 선정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제작, 인프라,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의 내역 사업 구성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 일자리 창출효과,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육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목적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의 효과성이 인정됨. 그러나 일부 내역 사업(스포츠콘텐츠 개발, 차세대교육콘텐츠개발및서비스 등)은 국고 보조의 시급성이 보이지 않고, 타부처(교육부)의 영역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장에서 선투자 개념의 정부지원 필요성이 다소 인정되나, 민간의 투자사(venture capital)의 역할을 국가가 어느정도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경기 변동성, 성장 투자 전략 등에 따라 국가의 투자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사업 계획에서는 그러한 전략성이나 유연성 등이 확인되지 않음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역할을 잘못 설정할 경우 민간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상증강현실산업과 같이 매우 유망한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가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산업 육성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 산업계의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콘텐츠 제작의 선정 분야에 대한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며, 보조사업 추진 시 정부 지원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 제작 관련 내역사업이 7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분절적으로 가져간다면 각각의 행정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재정추계 결과 '19년부터 투입 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2016년도 보조사업 평가에서 5% 감액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보건복지,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여도가 일부 인정됨(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참조)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의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에서 사업을 추진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9조(보조사업자 공모), 제10조(보조사업자 공모), 제11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제12조(현장조사),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4조(교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간접사업자가 민간기업 지원 시 민간기업도 약 50% 내외의 자기 출자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의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조항에 준수하여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관리를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2조(기금의 회계처리), 제14조(기금의 지출), 제19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23조(기금 지원금의 관리), 제23조(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제34조(수행상황보고), 제35조(사업결과의 평가), 제38조의2(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하위규정으로는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8조(사업비의 산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제20조(사업비의 관리), 제21조(사업비의 사용) 등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비 집행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진행하며, 해당 시스템과 연계된 클린기능이 탑재된 법인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 계좌이체, 송금 등의 방법으로만 집행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그러나,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점검, 페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에 대한 환류 결과가 다소 부족함. 소극적인 점검이 아니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성과정보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환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0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하위규정으로는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2조(사업비의 정산보고), 제23조(사업비의 정산), 제24조(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제25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제27조(기금사업 최종보고 및 평가), 제29조(콘텐츠 관리)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수행기간(2년)동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적 점검이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2항에 의거하여 구성하며, 제33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34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의 규정을 준수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기간 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및 전담 기관(KCA)의 지정 회계사를 통한 회계정산 완료, 잔여사업비 반납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은 국정과제(33-7)에 해당하며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역할을 잘못 설정할 경우 민간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상증강현실산업과 같이 매우 유망한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가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 제작의 선정 분야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사업 추진 시 정부 지원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성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지원에 대한 대략적 시점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현재 내역사업 구성의 근거와 재정추계가 부재함에 따라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관리를 각별히 할 필요가 있음

○ 재정추계 결과 '19년부터 투입 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2016년도 보조사업 평가에서 5% 감액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3-2 정책 제언

○ 내역 사업 구성의 근거와 재정추계가 부재함에 따라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비 편성의 관행적 요소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으로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부정수급 방지 전략 외에 성과 환류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의 경우 효과성 검증이 매우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0.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7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세부사업은 '정상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서비스 적용 확대를 통한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운영의 안정화와 보안 서비스의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클라우드 침해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전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임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목표 및 성과관리, 예산계획 수립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목표와 실적 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예산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해당되나, 내역사업별로 사업목표 및 내용(단기성 사업 여부), 연차별 성과평가 등에 기반하여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예산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장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국가와 지자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촉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도록 명시함

- 본 법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의 기반 조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조항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됨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부과제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 33번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과 관련성이 높음

- 공공 및 민간분야에 클라우딩컴퓨팅 도입을 확산하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 정보 유통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 4차산업 혁명의 기반 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이 OECD 가입국인 33개국 중 27위(16년 기준)로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미흡한 수준임
- 국내 IT 전문기업과 SW기업 중심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본 세부사업의 수혜자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지원을 받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서비스 기반의 정보 이용자도 간접적인 수혜자로 정의됨

- 본 사업은 수혜자 그룹을 직접적/간접적, 민간분야/보호분야/공공분야로 구분하여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분야, 보호분야, 공공분야로 구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됨

- 산업분야는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로 구분하고 보호분야는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공공분야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과 관련되는 내역사업을 구성하고 있음

○ 3개 분야의 내역사업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높으며, 사업의 수행내용 또한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되어 있음

○ 본 세부사업의 재정평가를 위해 관리중인 총 7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서비스 평가 건수'만 제외한 모든 실적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건수, 국내 클라우드 시장 매출액,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수, 클라우드 보안 인증 서비스 평가건수, 클라우드 보안 실증 및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만족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공공기관 수, 클라우드 스토어 이용실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함

- 본 세부사업은 14개의 세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3개의 전담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세부 내역사업별로 연도별 사업목표와 추진실적 관리가 잘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세부사업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기술 개발 및 육성,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기업의 해외진출, 정보이용자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 클라우드서비스 유통 등 산업육성을 위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 주도의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됨이 타당함

- 현재 민간기업의 클라우드서비스 사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가 글로벌 사업자에게 잠식될 것으로 전망됨

- 클라우드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마련, 공공분야 마중물 창출 등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시책이 요구됨

○ 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사용률이 12.9%에 불과하고 클라우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을 연장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 내역사업의 특성 상 단기성 사업이 존재함에 따라 내역사업별 사업의 성과관리 및 수요조사 등에 기반하여 향후 연차별로 내역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회의(VIP 주재)에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8.31)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기존 공공기관(467개)에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1,240개)으로 확대되어 약 3배 증가함

- 세부 내역사업 중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21년 종료 예정),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 지원,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과제 발굴/지원,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확산 지원 등의 사업은 단기성 과제로 판단되며, 목표 대비 실적의 성과관리를 통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연차별 사업의 추진실적, 중장기 계획 등과 연동하여 연차별 사업예산이 적절히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 최근 2년간 예산 실집행률을 보면, '17년 84.9%, '18년 94.6% 수준임

- '17년 예산 미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불용처리된 '클라우드 통합 보안관제 체계 구축' 사업을 제외하면, 낙찰차액 발생 및 인건비·경비 절감에 따른 미집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21,505	21,505	19,005	19,005	-	19,005	18,264	-	741	84.9
2018.12	22,301	22,301	22,301	22,301	-	22,301	21,098	-	-	94.6

○ 본 세부사업은 출연기관(법적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민간경상사업으로 100% 국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본 세부사업은 총사업비가 27,996백만원으로 대규모사업에 해당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재정계획에 '22년까지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내역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개괄적인 중장기계획으로 평가됨

- 중기재정계획 상의 재정 추계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	'22	연평균 증가율
'18~'22 (증가율)	21,505 -	22,301 (3.7)	27,996 (25.5)	27,996 (-)	27,996 (-)	27,996 (-)	5.0

- 세부내역사업별 사업 확장계획, 단기성 사업에 대한 종결 등을 감안한 중장기계획 및 재정 추계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세부사업은 신산업분야인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였으나, 본 사업의 직접적 가치 실현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 ⑥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도입 지원,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SW개발환경 제공 등을 추진 사업으로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함

- ⑬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대기업(선도기업)과 중소기업간 파트너십을 통해 SaaS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함

  * NBP, KT, AWS 등 국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 매칭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여 총 매출 28.1억원 발생(미국, 일본 등 해외 매출 8.26억원 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절차,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세부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ICT기금) 사업으로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 전담기관인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통해 분기별 자금 교부, 집행 현황 점검, 정산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사업 추진기관에서 집행 시 2차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기금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을 준용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 방송통신발전기금(ICT기금)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에 보조사업 집행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ICT기금)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등에 따라 보조사업 실집행현황, 성과관리 점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방송통신발전기금(ICT기금) 전담기관(KCA)에서 정하는 규정인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등에 근거하여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털티 적용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기간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및 전담 기관(KCA)의 지정 회계사를 통한 회계정산 완료, 잔여사업비 반납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총 1건이 발생하였으며,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온넷 참여 배제 및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조치 후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클라우드서비스 적용 확대를 통한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운영의 안정화와 보안 서비스의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클라우드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전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정상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

- 3개 분야에 대해 3개의 전담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며, 1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단,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에 사업목표 및 성과관리, 예산계획 수립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목표와 실적 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예산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해당되나, 내역사업별로 사업목표 및 내용(단기성 사업 여부), 연차별 성과평가 등에 기반하여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예산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장함

- 특히, 단기성 성격의 내역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성과관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외교부

국제평화재단및제주포럼지원
동북아지역국가와의교류협력강화
인도적지원(ODA)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외교부
사 업 명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1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2020년: 5% 감축, 2021년: 10% 감축), 사업방식 변경

·자체수입 확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지원의 확대를 통해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 : 2016년 20%, 2017~2019년 매년 10% 단계적 감축
- 2016년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 : 보조비 감축 및 자체수입, 제주도 지원 확대 필요

·3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양적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를 권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과 제주국제연수센터(국제평화재단 부설기관)의 국제평화 및 협력에 관한 연구활동, 유엔 및 아태지역 개도국 등과의 협력사업 수행,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제주포럼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②항에 의하면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 연구소 설립, 국제회의 유치 등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토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또한 동 법 제④항에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주도를 국제평화의 섬으로 지정·육성하는 특별법을 근거로 본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 및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협력에 관한 정책연구활동, 유엔 및 아태지역 개도국의 연수사업 수행,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제주포럼 개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목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를 수행한 연구과제의 논문편수+결과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 개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연구사업, 제주포럼,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교부와 제주도 출연을 통해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정부와 지자체 사업비 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국제평화재단'의 세부 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으로 제주평화연구원('06.3월) 및 제주국제연수센터('10.10월) 설치하였고 이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함.

○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정착하고 공공외교 확대를 통한 국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다만,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는 약 2억원으로 전담연구인력 2명이 있어,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수도권 내의 유사 연구원과의 업무 교류 또는 파견 등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객원연구위원 제도 및 3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의 노력은 엿보이나, 가시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미흡함.

○ 또한, 제주국제연수센터는 국제연수사업에 있어 교육 내용이 문화관광, 지속가능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제연수센터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국제연수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와 중장기 로드맵, 최종 성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국가 뿐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중앙정부 역할의 축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2015년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 : 2016년 20%, 2017~2019년 매년 10% 단계적 감축
- 2016년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 : 보조비 감축 및 자체수입, 제주도 지원 확대 필요

2016년 보조사업 평가 결과

·평가결과 : 감축
·주요지적사항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보조사업 규모는 축소되고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전환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장기적으로 자치단체보조에 기반을 둔 제주포럼 개최의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기초하여 자체수입 확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심과 예산지원의 확대가 도모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업의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과 접근을 통한 관리가 요구됨

○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연구원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수탁과제 등에 의존할 경우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사업에 해당하며, 보조사업 수행은 국제평화재단(제주평화연구원)을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보조사업자를 매년 별도로 선정하는 과정은 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민간경상보조금(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의 경우 'e나라 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관리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국제평화재단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으로, 관련 보조금 집행 규정에 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교부 취소, 환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포럼의 경우 사업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포럼계획 및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집행위원장: 제주평화연구원장

대주제 선정 (9월)	⇨	세션신청 (11월)	⇨	세션주제 심의·조정 (대주제 부합여부) (1월)	⇨	
의제선정자문위원회		참여기관		의제선정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		
포럼기본계획수립, 도의회보고 (2월)	⇨	포럼실행계획 수립 (4월)	⇨	포럴 개최 (매년5월 중)	⇨	포럼평가 및 발전계획수립
조직위원장 (제주자치도)		조직위원장 (제주자치도)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 집행위원회

○ 공식초청인사(기조연설자, 세션 사회자·발표자 등)에 대한 항공편 및 숙박, 사례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자료가 미흡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성과 및 결산 내역을 제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및 상세 집행내역 주무부 검토 결과 부정수급사례는 없었음.

○ 관계 법령 및 규칙에 따른 자료제출 이외에도 재단 감사와 제주평화연구원 내부감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본 사업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평화 및 협력에 관한 정책 연구활동, 유엔 및 아태지역 개도국의 연수사업 수행,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제주포럼 개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지금까지 수행해 온 유엔 및 아태지역 개도국의 연수사업, 국내외 학술회의 등에 대한 양적이고 질적인 효과를 평가하여 중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국제자문위원회, 의제선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제와 참여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 관련 학계 등을 통하여 의제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한 의제 발굴 선행이 필요함.

○ 자체수입 확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지원의 확대를 통해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2020년:5% 감축, 2021년: 10% 감축).

3-2 정책 제언

○ 본 사업비로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사업별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평화재단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재단의 매년 운영계획 및 중점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외교부
사 업 명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모국 방문시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함. - 국고보조 반환금(약 8백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한국문화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의 집행율(85.7%, '17년기준)을 높여서 보다 내실있게 문화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은 사할린한인 1세 영주귀국에 따른 사할린한인 2-3세와의 이산가족 문제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2페이지 이상 작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사할린교포 관련 업무 위임(1990.1.11., 영재20804-70)에 근거하여 사할린한인 1세 영주귀국에 따른 사할린한인 2-3세와의 이산가족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할린한인 관련 사업을 '영재20804-70호(1990.1.11.)'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사할린한인 1세 영주귀국 사업'을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수행 근거가 명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97~'15 간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한 사할린한인 1세 영주귀국사업에 따라 발생한 이산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소가 필요하고, 사업 수혜자의 고령화로 사업 수행이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고, 수혜자도 계획 대비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수혜자 연도별 통계

연도	계획	실적
2017	250명	319명
2018	270명	309명
2019	270명	-

대상자 선정기준
- 고령자 및 신체부자유자(비행기 탑승이 어려워 2-3세 친지를 초청해야 하는 자) - 인도적 차원으로 부득이하게 2-3세 친지를 초청해야 하는 자 - 사할린 한인단체 및 국내 노인회의 추천서를 받은 자

○ 사업 목적이 매우 명확하며, 이를 위한 사업 내용도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할린한인 관련 사업을 '영재20804-70호(1990.1.11.)'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하였으며,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할린한인2-3세 모국방문사업 또한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사할린한인 1세 영주귀국사업에 따라 발생한 이산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적 차원에서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예산은 400백만원으로 250명의 모국방문에 대한 예산으로 적정함.

○ 다만, 국고보조 반환금 약 8백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한국문화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의 집행율(85.7%, '17년기준)을 높여서 보다 내실있게 문화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실적이 319명이었으므로, 향후 계획은 2017년의 실적에 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⑫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사할린한인 1세 영주귀국에 따른 사할린한인 2-3세와의 이산가족 문제 해소'가 주요 목적
- 이산가족 문제 해소를 통해 사할린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아울러, 재외동포에게 한국에 방문하여 가족과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재외동포의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할린한인 관련 사업을 '영재20804-70호(1990.1.11.)'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하였으며,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할린한인2-3세 모국방문사업 또한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e나라도움 및 디브레인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년 2월경 교부하고 있고, 정산보고를 통하여 점검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복지운영위원회(연2회*) 참석 및 수시 상황 공유를 통해 사업 점검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없었으며, 기재부 재정성과평가과 주도로 '보조금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점검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사할린한인 1세 영주귀국에 따른 사할린한인 2-3세와의 이산가족 문제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모국 방문시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외교부
사 업 명	인도적 지원(ODA)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3.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만성적 재난의 경우, 유엔이 매년 초 발표하는 인도적 지원 요청 금액을 바탕으로 공관/지역국과 협의 하에 국가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미흡하며, 현재 제출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재검토하여 사업 효과를 추론할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동 사업의 수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투명성 수준이 미흡한 상태를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의 가시적 성과를 토대로 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함. ·KOICA 사업계획서의 심의(과정)을 강화할 것을 권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2페이지 이상 작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재난구호 등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다음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3.29. 제정, 2018.10.16.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 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국제협력단법(1991.1.14. 제정, 2018.10.16. 일부개정)
- 제7조(사업)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0.10. 제정, 2017.7.26. 타법개정)
-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7.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긴급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하에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 목적의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해외재난(분쟁,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 물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 실시(구호대 파견, 구호물자 또는 구호금 지원)
- 해외긴급구호체제의 효율성 및 전문성, 민관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총체적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역량 제고
-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분야 국제협력 강화

○ 2018년 라오스 홍수, 인도네시아 지진 등 급박한 긴급 재난 발생시, 국가·재난별 인도적 수요를 고려하면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 등 즉각적·선도적 인도적 지원 실시하고, 인니 술라웨시 섬 지진 발생에 따라 우리 군수송기가 현장에서 40일 이상 주둔하며 구호품을 피해 현장으로 수송하는 등의 지원 물품이나 재건복구 활동을 통하여 피해 지역의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매년 난민 지원 등 만성적 재난에 80%를, 자연 재해 등 긴급재난에 20%를 배분하여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으로 인하여 인도적 위기 현황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집행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음.

○ 만성적 재난과 긴급재난 예산 배분에 대한 근거와 만성적 재난을 통한 사업의 효과 또는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함.

○ 원칙적으로 인도적지원 국제기구(UNHCR, UNICEF, WFP 등)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현지 사정상 지원 대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성이 높다는 공관 등의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경우, 양자 차원의 현금/현물 지원하고 있으나, 심의과정 및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음.

○ 보조사업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있으나, 우선순위에 대한 항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보조사업 지원 우선순위
- 지역, 대상, 분야별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지원
  - (지역 우선순위)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한 위기로 인정한 Level-3* 국가(시리아, 예맨, DR콩고)와 재원 부족을 겪고 있는 잊혀진 위기(forgotten crises) 지역에 우선순위
  - (대상 및 분야 우선순위) 가장 취약한 계층(아동, 여성, 난민 등)을 중심으로, 우리의 개발 분야 비교우위(보건, 교육, 직업훈련 등)를 활용한 효과적인 지원 추진

○ 만성적 재난의 경우, 유엔이 매년 초 발표하는 인도적 지원 요청 금액을 바탕으로 공관/지역국과 협의 하에 국가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미흡함.

○ 보조사업 지원 고려사항
- 국가별 유엔 지원요청 규모, 재난의 심각성,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우리의 인도지원 중점 추진 분야(여성 및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건 지원)와의 부합성, 정무적 필요성 등

○ 인도적 지원 가시성 제고 실적을 위한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우리측 지원 건수 대비 현지 언론보도+국제기구보고+각종회의 계기 감사의향 전달 건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가시성에 국한한 내용이므로, 사업 효과를 추론할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내실있는 재검토가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국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인력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높음.

○ 현재 외교부 차원에서 관계부처(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협업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OECD 여타국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지원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기초조사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OECD DAC 중위권 국가들의 인도적 지원 실적(2016년 확정통계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높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지원액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지원규모는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벨기에 2억 4,100만불(11위), ▲이태리 1억 7,200만불(12위), ▲프랑스 1억 5,300만불 (13위), ▲호주 1억 4,800만불(14위), ▲아일랜드 1억 1,200만불(15위), ▲핀란드 8,080만불(16위), ▲우리나라 6,520만불(17위)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42억원)의 근거 및 지원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함.

③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 4,200백만원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NGO자금지원, 네트워킹, 역량강화 등) 4,140백만원

▸(NGO 자금지원 사업) 12개 단체 36.6억원 규모, 1개 단체당 최대 3억원 규모로 편성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사업) 4.8억원 규모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전체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및 M&E 비용 편성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사업예산 추이 : 2,248백만원('13년)→2,540백만원('14년)→3,000백만원('15년)→3,000백만원('16년)→ 3,000백만원('17년)→ 4,080백만원('18년)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타 : 60백만원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모니터링 : 24백만원 (자금지원사업 모니터링 4회x4.5백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모니터링 2회x3백만원)

▸ 민관협력사업 추진방향 등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실시 : 16백만원 (단체대상 사업관련 간담회 4회x2백만원,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2회x4백만원)

▸ 인도주의 관련 교육 및 행사 추진 : 20백만원 (민관 공동캠페인 1회x5백만원, 민관협력사업 실무자 대상 교육 2회x7.5백만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 특성상 공모방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 보조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험 및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단순히 물자조달의 차원이 아닌 ODA에서 비교우위를 두고 있는 보건의료의 경우에 타기관의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한다거나, 교육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등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검토하여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 교부 시 '인도적지원 보조금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 '인도적지원 보조금 예산집행지침'에서 다음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사본 포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동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그리고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사업완료에 따른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사업내용에 대한 정책감사가 필요함. 외부 감사인에게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가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의뢰 절차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격으로 인하여 인도적 위기 현황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집행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기본적인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통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절차도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 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만성적 재난의 경우, 유엔이 매년 초 발표하는 인도적 지원 요청 금액을 바탕으로 공관/지역국과 협의 하에 국가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미흡하며, 현재 제출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재검토하여 사업 효과를 추론할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함.

○ 사업의 성격으로 인하여 인도적 위기 현황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집행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OICA 사업계획서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한국의 원조 투명성 수준 평가결과(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의 원조 투명성 제고 정책현황 및 수준과 향후 개선과제, 2019)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국제협력단의 원조 투명성 수준은 2011년 이후 '미흡'

- 정부기관 대상으로 한 투명성 수준은 19개국 중 16위 수준임.

[표 1] 한국 원조 투명성 수준 추이(2011-2018)

구분	점수	등급	포함기관
2011	28.5	미흡	한국국제협력단(37), 한국수출입은행(20)
2012	40.6	미흡	한국국제협력단(39.2), 한국수출입은행(41.9)
2013	27.9	미흡	한국국제협력단
2014	36.9	미흡	한국국제협력단
2016	26.1	미흡	한국국제협력단
2018	36.9	미흡	한국국제협력단

참고1: 연도별 점수는 측정항목과 비중 및 단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불가함
참고2: 2015년도의 경우에는 비교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PWYF 각 년도 Aid Transparency Index

[표 2] DAC 주요 회원국 원조 투명성 수준 비교(2018)

순위	국가	점수	포함기관
1	캐나다	79.3	외교부
2	스웨덴	70.9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3	네덜란드	69.9	외교부
4	미국	65.0	국방부(48.5), 새천년공사(86.8), 에이즈환자비상구호계획(63.2), 국무부(57.9), 미국대외원조청(68.6)
5	벨기에	63.1	개발협력청
6	영국	62.5	국제개발부(90.8), 외교부(34.1)
7	독일	59.1	독일국제협력공사: 독일경제협력개발기구(60.6), 독일국제협력공사: 독일재건은행(57.5)
8	호주	57.1	외교통상부
9	핀란드	53.8	외교부
10	스위스	50.7	스위스개발협력청
11	덴마크	49.1	외교부
12	프랑스	46.0	국제개발청(46.2), 유럽외교부(45.7)
13	이탈리아	45.3	개발협력청
14	노르웨이	43.1	외교부
15	아일랜드	41.8	아일랜드원조프로그램
16	**대한민국**	**36.8**	**한국국제협력단**
17	스페인	34.8	스페인국제개발협력청
18	뉴질랜드	30.9	외교통상부
19	일본	24.4	일본국제협력청(38.6), 외교부(10.1)

참고: PWYF 자료 중 DAC 회원국의 정부기관만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포함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국가별 평균으로 계산한 것임. 개별기관 점수는 괄호 안에 기재된 것임
자료: PWYF, Aid Transparency Index 2018, 자료 재구성

○ 본 사업의 특성상 공모방식을 시행하지 않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추진하는 것이 일부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투명성 수준 등에서 지속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투명성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은 인정되나, 보다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통일부

6.25전쟁납북자기념관운영
경협기반(무상)
구호지원
국내통일기반조성
민생협력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사회통일교육내실화
이산가족교류지원
이산가족문제해결지원
학교통일교육강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통일부
사 업 명	6.25전쟁납북자 기념관 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7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현재는 방문하는 사람 및 전시납북자 가족행사 등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산정하고 있으나, 기념관과 전시납북자 가족단체를 통한 기대효과와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은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며,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념관 운영'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기념관·추모탑 등 조성' 등에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법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전시납북자 기념사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념사업 및 행사 사업을 수행하는 전시납북자 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2010.3.26.)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하에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 목적의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시납북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전시납북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다양한 전시자료들을 소개, 납북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납북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 조성
- 납북자 가족 초청 및 방문 행사를 통해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위로하는 계기 마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개관(2017년 12월) 이후 일평균 76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향후 홍보 및 안정적 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함.

○ 해당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실제 방문으로 연계하여 납북자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전환이 마련되어야 사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세미나, 새해위로선물 등은 △납북자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문적 연구 △전시납북자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가 사업의 홍보 등의 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나, 사업 방식 등의 개선을 검토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기념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 지출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념관을 통한 기대효과와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산정하고 있으나, 기념관의 역할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기념관 운영을 통한 사회적 확산 및 기대효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

○ 납북자가족단체 보조금으로 1억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홍보 영상물 제작, 납북자 가족 증언기 발간, 가족회 소식지 발생, 납북자 가족행사, 홈페이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각각의 내역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본 보조사업의 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영역으로의 집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각 세사업의 효과 및 성격의 적정성 등)

- 전쟁납북교육 및 기념관 관람 : 1백만원
- 제7회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 30백만원
- 국제 특별재판부 연구용역 : 30백만원
- 연구 자료집 발간 : 10백만원
- 소셜미디어를 통한 납북관련 콘텐츠 제작 : 2백만원
- 국제 세미나 : 14백만원
- 전시납북자 가족대상 새해위로선물 : 13백만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납북자가족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절차가 별도로 없으며, 현재 인가를 받아 활동 중인 납북자가족단체는 해당 단체가 유일하여, 일정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통일부 자체적으로 정한 보조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있고, 일반적인 민간단체 보조사업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기본적인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통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절차도 마련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긴밀한 관리감독으로 발생 가능성 없었다고 제시하고 있음.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정기적 및 수시로 점검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있음.

- 1년에 2회 불시 방문 점검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수시 방문, 행사 참여 및 사업 시행 시 통일부 담당자 입회, 보고서 점검 등으로 관리 중

- 보조금 교부 후 매년 결산 및 정산을 진행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실지감사('17, 통일부 감사담당관) 실시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며, 전시납북자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인도적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현재는 방문하는 사람 및 전시납북자 가족 행사 등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산정하고 있으나, 기념관을 통한 기대효과와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기념관과 납북자 가족단체의 역할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기념관 운영을 통한 사회적 확산 및 기대효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통일부
사 업 명	경협기반(무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상추진 필요 ·본 사업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남북 당국간 합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사업, 농업·광업·수산업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남북간 경제격차와 통일비용을 줄이고,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라는 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다만, 본 사업의 최근 4년간의 실 집행율의 등락이 심하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집행율 관리에 대한 노력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본 사업은 남북 당국간 합의한 사업 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지원 함으로써,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이 일정부분 연계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남북 당국간 합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사업, 농업·광업·수산업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남북간 경제격차와 통일비용을 줄이고,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라는 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본 사업은 국정과제 90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본 사업의 직접적·실질적 수혜자는 남북 당국간 합의한 사업 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되나 직·간접적으로는 관련되는 국민이 2차 수혜자가 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이 동일하며,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사업, 농업·광업·수산업협력 등으로,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교류협력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구성되어 있으나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임

○ 본 사업은 남북 당국간 합의한 사업 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지원 함으로써,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나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다소 추상적임

○ 사업은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그 집행실적은 남북관계와 국내외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16년의 경우 집행율이 91.6%이르렀으나, '17년은 28.8%에 불과함. '18년의 경우,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집행실적이 증가하였으나(집행률 67.1%) 여전히 이·불용액이 많은 상황임

- 특히, 본 사업의 최근 4년간의 실 집행율의 등락이 심하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집행율에 대한 관리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실집행액>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39,634	39,634	2,115	-	-	-	41,749	6,561	16.6	15.7	259	34,929
2016	97,662	97,662	259	92	-	-	98,013	89,412	91.6	91.2	1,146	7,455
2017	138,921	138,921	1,146	-	-	-	140,067	40,370	29.1	28.8	24,669	75,028
2018	247,978	247,978	24,669	-	-	-	272,647	166,325	67.1	61.0	7,042	99,28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91년부터 추진해 온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의 추진 시기·내용·규모 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소요, 민간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부분 정부 지원이 필요함

○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등 주관부처인 통일부에서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한반도 미래를 위한 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 당국간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을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편성·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북한의 변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사업(SOC)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 시 시급히 재원을 조달해야 될 때 효용성이 있음

- 반면, 본 사업은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 및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예산의 이·불용액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사업 폐지시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도로 협력사업 등의 중단이 불가피하고, 남북 간 이질화 극복 및 신뢰구축을 위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남북당국간 협의를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의 가변성이 높고 예측 가능성이 낮은 편이며,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집행 규모는 매년 가변적임

○ 보조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7장(기타교역·경협사업지원) 제28조(기금지원), 제29조(지원금액·지원조건) 등의 보조율 결정 절차 등을 준수하여 보조율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사업은 남북관계 상황에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중기재정계획 규모를 향후 남북당국간 합의 및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18~'22 경협기반(무상)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예산	'20	'21	'22	연평균 증가율
'18~'22계획	309,281	315,453	337,453	345,786	
(증가율)	(24.7%)	(2.0%)	(7.0%)	(2.5%)	8.7%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지원 대상, 지원조건, 관련 절차를 따르고 있음

-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①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 ②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③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법적인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에서 목적과 기대효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을 기금수탁관리자로 지정·운영하는 등 구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 용도, 회계기관, 보고 및 환수, 감독 및 명령 등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점검 실시 후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간보조 사업자의 집행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어 타 사업에 비해 이·불용액이 많으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취소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남북 당국간 합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사업, 농업·광업·수산업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남북간 경제격차와 통일비용을 줄이고,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라는 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본 사업의 최근 4년간의 실 집행율의 등락이 심하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북 당국간 합의를 토대로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하는 예비적 성격 및 남북관계의 진전 등 정치적 요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1991년부터 추진해 온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의 추진 시기·내용·규모 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소요, 민간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부분 정부 지원이 필요함

- 다만,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어 타 사업에 비해 이·불용액이 많으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통일부
사 업 명	구호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해당 사업이 대북관계 등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전제로 정상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해당 사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 지원과 전염병·수해 등 각종 재난시 긴급구호에 필요한 지원물자의 구입, 수송, 모니터링 관리 비용 등 주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당국차원의 지원(식량 등)은 과거 북한에 지원해오던 평균 물량(쌀 30만톤)에서 대규모 재해 발생시 북한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된 만큼 현재의 예산 규모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됨. ·다만, 과거 지원 물량의 평균치 등과 같이 경험적인 접근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긴급구호의 경우에도 발생주기와 규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운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은 추후에 개선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해당 사업의 근거(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0장 제2절에 식량난 완화, 비료지원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자연재해 및 전염병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 등 그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과 비료지원 및 긴급 구호를 지원하는 순수한 구호활동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과 원칙과의 연계성이 높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은 식량 · 경제난 등으로 고통받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가의 중요시책중 하나로서 사업목적에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 현 정부의 국정과제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중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 검토, 당국차원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인적보호와 경제체력 강화를 통해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논거도 인정됨

○ 그러나, 집행과정의 특성상 해당 사업의 수혜자의 범위가 충분한지 및 전달되는 효과가 충분히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해당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식량·비료·긴급구호물품 등을 받는 북한 주민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그 전달범위가 광범위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것은 명확한 한계임

- 분배확인서 및 내역서 수령,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모니터링 등 분배투명성 확보 노력을 통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여전히 간접적인 확인이라는 한계는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목적 및 법령 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식량지원·긴급구호 지원)을 구성하였으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이 계속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인도주의적 지원과 민족의 신뢰회복이라는 목표가 명확하며, 이들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내역사업(식량지원·긴급구호 지원)의 효과성도 인정되는 바임

○ 사업의 효과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나, 남북한 미합의로 최근 수년간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하여 해당 사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남북한 미합의로 예산이 불용된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나 '15년도 및 '17년도의 집행율 0%, '16년도의 집행율 17%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을 위한 부처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임

- 다만, 해당 사업은 북한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 개선과 아울러 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부처의 의견은 인정됨

- 대북식량지원의 경우 북한의 식량난 완화라는 직접 효과이외에 국내산 재고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라는 간접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나 수년간 예산집행 실적이 미미하여 그 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수산유통공사 및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도주의 목적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민간기금으로 민간의 주도하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민간과 정부사업의 병행·연계되어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존재하는 타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고유성이 충분히 인정됨

○ 장기적·규범적 차원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수요가 충분히 인정되며,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나 남북간 미합의로 최근 수년간 예산집행 실적이 미미하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긴급구호의 경우 대북제재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상황은 아니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등으로 인해 성숙되고 있는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업폐지 시 북한에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대북정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당국차원 지원의 필요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된 내용이나, 사업의 특성 상 북한주민에게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보조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 지원과 전염병·수해 등 각종 재난시 긴급구호에 필요한 지원물자의 구입, 수송, 모니터링 관리 비용 등 주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당국차원의 지원(식량 등)은 과거 북한에 지원해오던 평균 물량(쌀 30만톤)에서 대규모 재해 발생시 북한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된 만큼 현재의 예산 규모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됨

- 긴급구호의 경우, 발생주기와 규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운 특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은 추후에 개선이 필요함

○ 최근 몇 개 년간 집행실적이 미미한 점, 그리고 향후에 대규모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사업규모 산출 및 중기재정소요에 대한 고려는 추후에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업은 북한의 식량·경제난을 경험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와 ⑫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에 해당하는 내용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시행령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인도적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음

○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몇 개년간 집행실적이 미미하여 재원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남북협력기금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계획, 집행 점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집행과 관련한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방안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이 미미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이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가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남북협력기금법 및 시행령,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이 미미하여 명문화되어 있는 보조금 반환 등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이 준수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원이 보조사업자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투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에 전달된 이후에 적절하게 분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점은 명확한 한계임

- 분배확인서 및 내역서 수령,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모니터링 등 분배투명성 확보 노력을 통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여전히 간접적인 확인에 그칠 수 밖에서 없어 모니터링 수단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보조사업자로서의 농수산유통공사 및 대한적십자사의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들이 수년 간 독점적으로 지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북한 내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 및 부정수급 발생 시 제재방안 등을 마련하기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한 한계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은 식량·경제난 등으로 고통받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가의 중요시책중 하나로서 사업목적에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 장기적·규범적 차원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수요가 충분히 인정되며,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업폐지 시 북한에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대북정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남북한 미합의로 최근 수년간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하여 해당 사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은 측면이 있음. 다만, 남북관계의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수요가 예상되므로 사업 예산은 지속 반영하되,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서 전향적인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예산미집행은 외부환경의 불확실성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부처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임

○ 또한, 집행과정의 특성상 해당 사업의 수혜자의 범위가 충분한지 및 전달되는 효과가 충분히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은 일정한 개선이 필요함

- 분배확인서 및 내역서 수령,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모니터링 등 분배투명성 확보 노력을 통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여전히 간접적인 확인이라는 한계는 있음

- 북한 내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 및 부정수급 발생 시 제재방안 등을 마련하기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한 한계임

3-2 정책 제언

○ 해당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처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당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는 지의 여부와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재정규모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특성상 북한 주민에게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적정소요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보조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 지원과 전염병·수해 등 각종 재난시 긴급구호에 필요한 지원물자의 구입, 수송, 모니터링 관리 비용 등 주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편성함으로써 향후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당국차원의 지원(식량 등)은 과거 북한에 지원해오던 평균 물량(쌀 30만톤)에서 대규모 재해 발생시 북한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된 만큼 현재의 예산 규모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됨.

○ 지원이 보조사업자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투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에 전달된 이후에 적절하게 분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점은 명확한 한계임

-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보조금 반환 등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이 준수되는 과정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함

○ 위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게 하는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전제로 정상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통일부
사 업 명	국내통일기반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예산자체는 유지하되 다수의 민간단체에게 보조사업 공모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필요성과 보조금 지원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됨. 향후 세부사업의 내용, 사업추진 주체의 선정,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확대여부를 결정 ·사업수행기간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혜자가 명확치 않고 가시적인 성과도 다소 부족. 대표단체에만 보조사업을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내역사업별로 공모화할 수 있는 사업 개발하여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하도록 함 ·2019년 예산이 상당액 증가하였는데 증가분에 대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봄.다수의 민간단체가 보조사업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별로 위탁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 ·보조사업 내역사업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민간주체들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법령에 따르면 직제, 시행규칙에 업무분장에 나오고 있으며 당 업무가 수행됨을 전제하고 있음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0호, 2018.9.28. 일부개정]
> 제10조(통일정책실) 제③항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3.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합의기반 조성
> 13의3. 통일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원·관리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8. 9. 28.] [통일부령 제100호, 2018.9.28. 일부개정]
> 제6조(통일정책실) 제⑧항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 조성
> 7. 통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당업무의 범주에 포함될 통일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가 국가에게 의무가 부과된 업무인지 재량적 업무인지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있지 않음
- 당업무에 대하여 업무소관을 법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업자체의 직접적인 규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보조금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사업의 존속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가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봄

○ 본 사업은 대표적 국내 통일운동 단체인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민족통일협의회 지원을 통해 민간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국민 통일의식 제고 및 통일정책 관련 국민합의 기반 조성하는 사업임

- 법령에 국민합의조성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분장은 있으며 사회단체를 통한 국민 여론 환기 및 사회적 합의 유도는 적당한 방식의 사업으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대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계성있는 사업이라고 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의 지원이 필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함

- 통일정책은 국가적 차원, 민족적 차원의 정책이고 이에 대한 여론, 사회적 논의의 장을 국가가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함

○ 보조사업 일차적인 수혜자는 다수의 통일운동 단체 중 두 개의 단체임

- 보조사업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국민, 국가공동체로 상정할 수는 있겠음
-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이 완수될 경우 이에 의한 편익의 범위는 전국가, 전민족공동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의 충실성, 사업의 질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이 좌우될 것임
- 수혜자의 범위가 충분히 크고 효과적일 경우 국고지원의 정당성 인정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볼 때 대표적이기 하나 민화협과 민통, 두 단체에게만 보조금 및 보조사업을 일임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내용이 민화협과 민통 외의 민간 통일운동단체의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향후 다양한 시민단체, 지역공동체 등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라는 목표와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국내통일기반조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보다 다양한 사회단체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봄. 대표성 있는 단체의 경우 사업공모과정에서 심사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국내통일기반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민통과 민화협의 활동의 내용이 대체로 인정되나 일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답습적인 성격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통일문예제전, 통일강좌, 청소년지도자양성, 통일문화축제 등의 개별 사업의 구성이 두 단체가 크게 다르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다 다양한 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민화협, 민통 두 단체에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개편을 유도하고 다른 단체와의 연계를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공모가 가능한 개별 내역사업의 경우 향후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적합한 민간사업단체를 선정하고 이를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

○ 개별 프로그램들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나 목표에 맞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이를 위해서 기존의 단체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

-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현재 두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개별 보조사업에 대한 공모방식의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방식의 변경, 사업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회적 토의와 담론을 위해서 정부의 직접적 활동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현재의 보조사업 진행방식에서 다양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임.

○ 통일정책 시민사회의 확산에 대한 요구는 당분간 유지해야 할 사회적 니즈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요구를 고려할 때 본 사업의 경우 기존의 단체의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할 수 있을 것임

- 예산규모 증가폭이 큰 상황임

- 매년 보조사업비가 1억5천만원 정도 증가하는 현황임

- 반면, 다양한 사회단체의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재구성이 요구됨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율 80%는 높은 편이며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보조사업의 목적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직접적인 기여 인정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내용, 파급효과, 참여범위 등을 개선하여 보다 사회적 기여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사업 대상] 민통, 민화협에 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봄

- 보조사업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도 민간보조사업자의 다양화 요구됨
-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이라고 할 때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일반적인 보조사업 관리 규정을 활용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활동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됨

○ 민화협, 민통이라는 두 단체에 보조사업이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구성, 두 단체에 의하여 진행되는 개별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을 고려할 경우 사업방식의 변경을 통해 보조사업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의 내용,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맞추어 사업내용과 지원규모를 결정할 필요

○ 2019년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3-2 정책 제언

○ 남북관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본 사업의 지원규모는 유지하되 사업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도 현 사회분위기에 맞게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양식을 반영한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사업내용의 경우도 가능한 범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중 공모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다양한 민간단체 참여 가능성을 여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통일부
사 업 명	민생협력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1.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남북관계 개선 및 민족공동체 회복은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있음 ·현재 예산 규모는 과거 지원수준, 사업배경, 북한 상황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된 것임.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불용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필요 시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면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규모, 남북간 합의에 따른 협력사업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실적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과「남북협력 기금법」제8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하고 있음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는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남북협력 기금법」은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 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 및 남북교류 협력을 증진하기위한 사업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7조와 8조는 기금의 지원 등의 절차,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는 기금에서 인도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재원의 우선순위, 지원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북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통일미래 세대 인적자원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축산 협력 및 산림복구, 환경, 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 중점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있음

○ 남북관계 개선 및 민족공동체 회복은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있음

○ 본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북한 주민이지만, 북한에 지원되는 물자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조달되므로 우리 국민이 간접적인 수혜대상이 됨.

- 또한 남북협력을 통한 관계개선, 통일 여건 조성 등은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산림환경 협력, 인도지원협력 체계구축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다만,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실제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이후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본 사업을 통한 지원실적이 없는 상태임

○ 최근 들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 분과회담이 개최되는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북한과의 합의 도출, 사업 진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방식이 가장 효과적임

○ 본 사업은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영양지원 및 북한 농업의 생산력 향상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국내에 유사한 사업은 없음.

- 특히 남북협력기금 이외에 북한주민 지원을 위해 편성된 다른 예산은 없어 유사 중복의 문제가 거의 없음

○ 본 사업은 장기적 민족적 관점에서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는 사업임. 또한 민간차원의 지원 및 교류 활성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시급한 사안임

○ 민생협력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게 되면 북한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의지 약화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 대북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현재 예산 규모는 과거 지원수준, 사업배경, 북한 상황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된 것임.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불용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필요 시 적시

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산 삭감 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의지 약화 및 대북정책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대북정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 관계에 따라 불용이 많고, 사업비가 이월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혹은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장기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예산은 과거 사업실적 및 남북간의 합의, 수요 예측 등에 근거하여 편성되고 있음

- 과거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례, UN의 대북지원사업 소요 예산, 북한 아동시설 100개소 영양지원, 10개소 시설현대화(이상 북한 영유아 지원), 남북보건의료 환경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2007.12) 합의 사업 위주 초기단계 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예산 (이상 보건의료협력), 남북 산림협력분과회담(2018.10) 합의 이행을 위한 사업(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 북한참가 국제행사지원 및 인도지원 협력 통합관리체계 운영(인도지원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근거를 갖고 편성되고 있음.

-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될 경우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규모, 남북당국 간 합의에 따른 협력사업 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것임

○ 본 사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100%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 인도적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기금은「인도적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에 의거 대북지원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북지원사업자는 제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한해서만 지정함.

- 기금지원 신청시에 △기금지원 신청서, △대북지원사업계획서, △기금사용계획서, △자체재원확보내역서,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규정(규정 제9조)하고, 기금지원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자격 및 능력, 목적 실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짐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남북협력기금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기금의 지원절차 및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지원결정은 주요 관계부처 장·차관급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또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규정(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하고 있음

○ 매 의결시마다 보조금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해 검증 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며, 기금 집행단계는 기금관리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민간단체의 기금집행신청서 접수와 관련서류 심사·평가를 통해 지원함

- 통일부에서는 사업 중간 및 사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의 성과, 사업목적 달성여부, 분배투명성 확보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남북협력기금법 제11조(보고 및 환수), 동법시행령 제18조(기금의 환수)에 보조금 반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 제7조, 제10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5조에 명시함

○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짐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근 수년 간 실 집행 실적이 없어 부정수급 사례 역시 보고된 바가 없음

○ 사업 전반에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남북관계 개선 및 민족공동체 회복은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있음

○ 현재 예산 규모는 과거 지원수준, 사업배경, 북한 상황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된 것임.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불용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필요 시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재정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 단, 국제정세, 대북제재, 남북관계 등에 의한 불용 가능성 역시 항상 존재하므로, 적정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될 경우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규모, 남북당국 간 합의에 따른 협력사업 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통일부
사 업 명	사회문화교류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상추진 필요 ·본 사업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2조~제18조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남북간 주민왕래와 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을 통한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지원이 필요함 ·사업 성과지표를 50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아닌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를 확대할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2조~제18조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본 사업은 남북 간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남북 주민 간 다방면의 접촉 유도 및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고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이 연계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남북간 주민왕래와 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본 사업은 국정과제 93번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본 사업의 직접적·실질적 수혜자는 남북 간을 왕래하는 자와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으며, 간접적·잠재적 수혜는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이라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교육·학술협력사업 지원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학술협력사업 지원과 인적왕래 및 기타협력사업 지원을 통한 접촉 활성화 및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왕래 및 기타협력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음

- 내역사업은 교육·학술·체육·종교·문화예술·문화유산·지자체 등 사회문화 분야별 다양한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학술협력사업 지원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단일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남북이 공동으로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서 겨레말을 통합·집대성하여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및 통일 준비를 위한 것임

- 인적왕래 및 기타협력사업 지원은 남북 간 접촉활성화를 통한 북한변화 유도, 협력사업 지원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다음 표와 같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음

<사업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인적왕래	국제체육대회·교환 경기 등 체육 분야
	교육학술·문화예술·종교·시민사회 등 분야
기타 협력사업	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 - 개성역사지구 공동발굴조사 -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발굴조사 - 문화유산 보존사업 - 유네스코 남북공동등재
	체육 분야
	종교 분야
	문화예술 분야
	지자체 등 기타

○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은 남북관계와 국내외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16~'17년의 경우, 북한 핵실험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상황이 지속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18년의 경우,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집행실적이 증가하였으나(집행률 77%) 여전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실집행액>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14,000	14,000	6,135	6,135	-	6,135	6,074	-	7,865	43.4
2016	16,279	16,279	2,303	2,303	-	2,303	2,280	-	13,976	14
2017	14,379	14,379	3,673	3,673	-	3,673	3,439	700	10,006	23.9

- 또한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문화교류 지원(인적왕래 지원) 의견수렴 반영 건수(단위 : 건)는 단순한 투입지표이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만족도(현재는 50명만 조사) 등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남북 주민간 다방면의 접촉을 유도하고, 남북간 이질성 극복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문화분야 비영리 교류사업으로, 보조금 이외 여타의 정책수단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사회문화 분야 교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타 부처의 사업들이 '통일을 대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내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남북한 주민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4.27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과 북한의 호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 간에 체육, 문화·예술, 학술, 지자체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 필요성이 있음

- 반면, 본 사업은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사업 시행이 가변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예산의 이・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사업 폐지시 단기적으로는 현재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 사회문화교류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간 인적왕래 지원 및 협력사업의 체계적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인적왕래 지원은 최근 남북교류행사에서 집행된 인적왕래비(숙박비, 식비, 수송비)의 단가를 기준으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단가 산정, 예상 왕래 횟수를 감안하여 차년도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협력사업 지원은 최근 남북교류행사 비용을 기준으로 예상 사업 횟수를 감안하여 차년도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 규모는 가변적임

○ 기준보조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상 지원조건 등을 준수하여 보조율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사업은 남북관계 상황에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합동훈련 및 단일팀 구성 지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을 지원 하는 등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과 연계되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지원 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 한도, 지원 관련 절차를 따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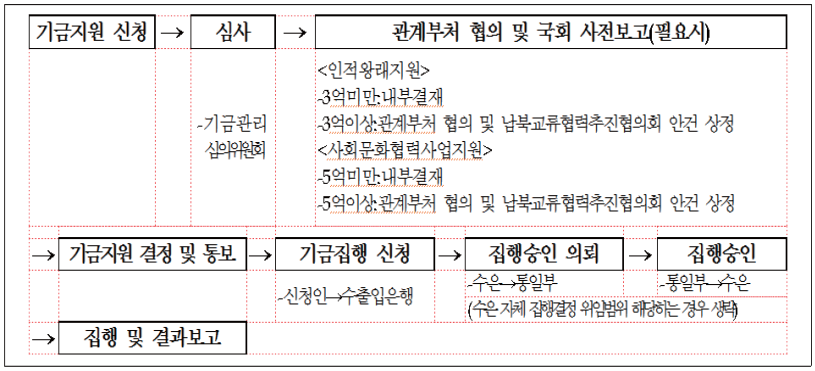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관련 법령, 교류사업의 성격에 따라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을 기금수탁관리자로 지정·운영하는 등 구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 용도, 회계기관, 보고 및 환수, 감독 및 명령 등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점검 실시 후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간보조 사업자의 집행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어 타 사업에 비해 불용액이 많으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취소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2조~제18조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남북간 주민왕래와 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지원이 필요함

- 다만, 남북관계 경색상화이 지속되어 최근 3년간 실 집행율은 50% 미만이었으나, '18년도는 77%로 상승하였으며 남북관계 개선 등을 감안하여 정상추진될 필요

3-2 정책 제언

○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4.27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과 북한의 호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 큰 만큼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 간에 체육, 문화·예술, 학술, 지자체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문화교류 지원(인적왕래 지원) 의견수렴 반영 건수(단위 : 건)는 단순한 투입지표이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만족도(현재 50명을 대상으로 조사) 등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통일부
사 업 명	사회통일교육내실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6.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7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10% 감축), 사업방식 변경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선진화」,「지역통일교육센터 사회교육통일교육 허브화」 예산안 산출근거 및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와 실적 등이 운영시스템 선진화나 통일교육 허브화를 달성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다고 사료됨. ·본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 지에 대한 평가 지표 미흡 ·시민의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센터별 성과를 비교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구축하고, 성과지표가 일정수준보다 미달인 센터에 대해서는 패널티 또는 차기 센터지정에서 배제하는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 ·(통일교육협의회) 일회성 사업수행을 방지하여 통일교육의 효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통일교육 지원법」 및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음.

□ 「통일교육 지원법」 및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o 제2조(정의)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3. 13.>

o 제6조의 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o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시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 통일교육협의회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통일교육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통일교육의 저변을 지속 확대
* 국민들의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에 기여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전국 18개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일회적인 체험 행사성 사업이 많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본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 미흡함

- 교육센터가 모두 대학교에 배치되어 있어 학회, 전문가 토론회 등의 학술적 행사에 치우진 경향이 있으며, 강연 장소 또한 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어 일반 시민에게 강연 홍보 및 참여독려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사료됨.

[지역통일교육센터]
▲북한 영화이해하기 등 열린통일강좌▲통일골든벨, 통일문화축제·포럼 등 대규모 통일문화행사 ▲북한음식체험, 남북 접경지역 견학 등 통일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기회 마련

○ 통일교육협의회는 '18년 기준 총 73개 민간 통일교육 단체가 가입·활동하고 있으며, 사업비(406백만원), 경상비(28백만원), 인건비(97백만원)를 통해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18년 기준 총 293회, 44,851명 대상 통일교육 실시), 사회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지원사업] 평가 내용
▲'통일노래 부르기' 및 '통일시 낭송대회'의 즉흥성 ▲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필요▲강사역량 프로그램 등 도입필요 ▲ 단체역량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질 결정 등

○ 성과지표 중에 통일교육 만족도 측정을 이수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하고 있으나, 연령대별과 지역별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산정하는 것으로 해야, 바람직한 사회통일교육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음.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이해 제고의 가중치가 높은 편이며, 실제 시민대상의 가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1) 통일교육 만족도 (점)	목표	4.20	4.22	4.26	4.40	4.42	5점 척도법에 의한 측정(원내교육을 통한 통일문제 이해제고 및 만족도×0.2)+(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 이해제고 및 만족도×0.2)+(학교통일 교육 만족도×0.2)+(사회통일교육 만족도×0.2)+(기본교재 만족도×0.2)	①원내교육 이수자 대상 직접설문조사 ②교육종료 후 직접설문조사 ③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통일리더캠프 및 체험경비지원, 연구학교, 어린이 기자단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④사회통일교육 참여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⑤기본교재 사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4.14	4.24	4.30	4.42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강연 또는 학술적 내용보다는 지역 시민의 통일교육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8년 기준 18개 지역통일교육센터에 국고보조금 약 1,67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950백만원은 경상비(인건비, 관리비, 운영경비 등)로, 720백만원은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비는 지역통일교육센터별 약 4천만원 정도이므로, 경상비를 절감하고 사업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통일교육협의회의 활동 내용(통일공감 마로니에, 통일교육활성화 학술대회, 통일교육포럼)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활용내용이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지역통일교육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보조금 지원 내역 및 방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18년 기준 통일교육협의회에 대한 국고보조(531백만원)은, △사업비(406백만원), △경상비(28백만원), △인건비(97백만원)으로 구성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역통일교육센터)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홈페이지 공모방식으로 센터를 지정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단 구성이 취약함.

-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단(외부 3명, 내부 2명)을 구성하여 센터 지정을 심사함.

(선정과정)
* 통일교육위원 임기(2년)와 연동하여 2년마다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모방식을 통해 센터를 지정
*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절성△사업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충실성(30점)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20점)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역량(20점) △지원(신청) 기관·단체의 통일교육 의지(15점) 등을 고려함.

○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회원단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회원단체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함으로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지역통일교육센터) 외부 전문가 평가단(3~4명)을 구성하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이보다 전단계에서 지역센터별 성과를 비교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구축하고, 성과지표가 일정수준보다 미달인 센터에 대해서는 패널티 또는 차기 센터지정에서 배제하는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

○ (통일교육협의회)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단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등을 반영한 통일교육협의회 집행지침 배포 등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보조사업 전반적으로 실사 점검을 통해 보조금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회계적 점검 뿐 아니라, 사업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량적 평가체계 개발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기본적인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통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절차도 마련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후 정산 절차 등을 거쳐 집행 잔액을 반환받고 있으며,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선진화」,「지역통일교육센터 사회교육통일교육 허브화」 예산안 산출근거 및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와 실적 등이 운영시스템 선진화나 통일교육 허브화를 달성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다고 사료됨.

- 사업비 10% 감축 필요함

○ 사업내용이 일회적 체험성 행사 또는 학회, 전문가 토론회 등의 학술적 행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민의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강연 장소 또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전국 18개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에 대한 본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 지에 대한 평가 지표 미흡

○ (지역통일교육센터) 센터 선정에서 심사위원단(외부 3명, 내부 2명)을 구성하고 있는데, 심사위원 수가 부족함. 외부 전문가 평가단(3~4명)을 구성하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이보다 전단계에서 지역센터별 성과를 비교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구축하고, 성과지표가 일정수준보다 미달인 센터에 대해서는 패널티 또는 차기 센터지정에서 배제하는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

○ (통일교육협의회) 일회성 사업수행을 방지하여 통일교육의 효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학교통일교육강화' 보조사업과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예산부족에 따른 프로그램의 취약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보조사업과 '학교통일교육강화' 보조사업과의 미래지향적 통합 타당성 검토를 권함.

-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부의 '학교통일교육강화' 보조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본 보조사업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의 운영을 위한 크로스체크를 권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통일부
사 업 명	이산가족교류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0.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 사업은 2016년 평가에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예산 감축 요구가 있었으나 2017년도 정부이후 남북관계가 긍정적 변화하면서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의 필요성이 높으며, 활발하게 추진되어야할 사업으로 정상추진으로 최종 판정함 · 본 보조 사업은 전제사업과 세부사업 간의 연계성이 높고, 국가 전체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이 높음 · 본 보조 사업은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 수혜범위 및 외부효과, 사업의 시급성과 폐기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법령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해당사업의 수행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타당성이 있음 · 사업관리영역에서는 지침이나 규정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 수행이나 사후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은 남북협력기금법 제 8조에 근거하여 남북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근거를 갖고 있음

- 내역사업에 대한 근거 역시 남북협력기금법의 기존에 준하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은 현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과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국정과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목적의 타당성이 높음

- 해당사업은 국정과제 92에 명시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의 수혜대상 범위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외부효과에 대한 제시가 부분적으로 미흡함

- 통계자료를 통해서 이산가족의 규모와 연령 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본 사업의 수혜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음

- 민간기관 지원이나 면회소 운영 등의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인프라 개선 등이 본 사업에 주는 효과가 외부 효과가 될 것으로 예측됨으로 사업지속과 확장을 고려할 때 외부효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용과 기간 등이 2017-2019년도 예산 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사업목표 달성에 적절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이산가족교류가 국가차원, 민간차원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각각의 기관에서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절차들이 제시되어 있어 사업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음

- 내역사업 중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 제작 등에 대한 적극적 시행을 국회감사 자료 등에서 언급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사업시행 시에 사업성과가 목표에 부합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은 2015년도 남북경색국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집행률이 낮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으나 이후 목표 대비 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2019년도 2회 남북관계교류건수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그 외 본 사업에서 다른 세부사업이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 지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영상편지나 유전자 검사 등의 실시가 예산이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향후 성과관리에서 고려할 부분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은 국정과제이고 공약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

- 타사업과의 중복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의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보조 사업임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은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 가능성은 낮음. 이산가족문제해결지원사업의 사업대상과 예산 출처의 차이로 인한 사업 통합 어려움을 확인함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사업이 시급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항구적이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유지되어야할 사업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의 전체 사업규모는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보조율의 산정기준이 정해진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내용의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평가됨

1-6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실현 1번, 12 영역과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서로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나 행복 추구권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산가족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비공모 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사업주관을 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해당기관에 대한 선정 적절성 기준 보완을 제안함

- 본 사업이 대한적십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기관이 본 사업의 수행자로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보완 검토를 제안함

- 또한, 내역사업 중 영상편지, 유전자 검사, 민간기관 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 선정과정 등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시행령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위임 규정, 남북협력기금법 및 관련 위임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음

-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은 일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이 있음. 관련 지침이 없는 경우는 계약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통해 보조금 집행과정을 감독하고 있음

-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해당 지침대로 사업집행 점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으며, 유전자사업과 영상편지는 착수보고회·주간업무보고·월간 업무보고·중간보고회·완료보고회 등을 통해서 보조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보조사업의 정산 및 회계감사에 대한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조달청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은 조달청입찰 과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보고 시 실제 업무 수행 단체의 정산서류까지 검토하고 있고,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도 정산관련 서류를 재검토한 이후 대금 지급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적절하다고 판단함. 또한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은 적십자사의 내부 감사 뿐만 아니라 통일부 자체감사의 대상이어서 회계검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고려의 증빙자료로 협약서 보다는 부정수급 관리를 구체적인 점검 자료가 평가에 더 적절함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은 일반적인 보조금과 달리 사업 또는 행사를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음. 또한, 수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시점부터 과업지시, 수시적인 업무협의, 현장 점검, 정산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은 국정과제이자 공약사업이며 남북관계의 변화와 맞닿는 사업으로 보조 사업으로 수행이 타당하다고 평가됨

- 해당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세부사업 내용들이 전체 본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정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됨

○ 사업효과성과 재정규모의 적절성, 사업 필요성 면에서 성과관리나 사업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의 외부효과 등에 대한 고려들을 통해서 사업효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제안함

- 사업효과성에서 이산가족교류건수 이외의 다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성과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사업집행 관련한 사항은 전반적으로는 적절하게 수행됨. 집행과정, 사후관리, 부정수급 전반에서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증빙 자료로 확인함. 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공모사업이지만 위탁하는 기관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보완을 제안함

3-2 정책 제언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로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세부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발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통일부
사 업 명	이산가족문제해결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1.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4.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7.2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8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8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본 보조 사업은 2016년 평가에서 이산가족교류지원과의 통합제안을 하였으나 예산 체계의 상이성으로 반영되지 않았음. 본 보조 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역사업의 적절성, 사업성과, 사업집행 관리 전반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내역사업과 예산 편성 재조정, 사업관리 등의 불필요한 내역사업을 검토 축소하고 사업방식 변경이 전폭적으로 필요하여 감축과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내역사업 전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2019년도 사업 전체 예산 중 5천만원 감축 운영이 필요함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본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으나 내역사업의 대부분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사업성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행사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내역사업 전체를 개편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하고 사업성과 관리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함 ·사업집행 관리가 매우 미흡함으로 위탁단체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이나 규정 보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 12조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사업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의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려움

- 해당부처에서 제시한 법령 제 12조와 시행령 제 7조의 내용은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나 조사를 위한 민간기관지원으로 볼 수 있으나 내역사업 내용에서 이에 대한 내용 부재함. 수행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의 목적이 매우 불명확하며 제시한 내역사업들은 사업 목적에 부합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해당사업이 국정과제 92번과 관련된다고 하였으나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의 내역사업이 이산가족의 날, 이산가족 소식지 발간, 국제협력활동 자원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혜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함에도 불고하고 구체적인 수혜 범위나 혜택의 내용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산가족의 양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들의 특수성과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사업수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향후 사업 수행이 당사자들 이외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야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은 전체 사업목적, 대상과 내용이 모호하고, 내역사업들이 매우 산만하고 전체 사업목적이나 타당성에 부합도가 매우 낮음

- 내역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내역사업과 본 사업 전체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적절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 이산가족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역사업은 무엇이며,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내역사업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지 않음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의 사업목표 달성률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고 성과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방식의 전면적 개편과 아울러 성과관리에 대한 노력들이 집중되어야 함

- 내역사업별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내역사업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자료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와 타당한 근거가 매우 부족함

- 본 사업이 남북화해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근거는 부분적으로 있지만 현재의 사업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됨

- 내역사업에서 전체 사업명이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업(예시 : 기관 정기총회지원, 고국방문초청행사, 해외지회 지원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보조금사업에 적절한 내역사업에 집중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 시급성이나 연장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재하며, 사업폐기시의 손실에 대한 자료로 부재하여 평가가 어려움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본 보조 사업의 위탁 단체)에서 운영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민간운영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독립적 운영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의 재정규모는 내역사업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적절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내역사업의 예산집행 내용에서 부적절한 내역사업에의 지출로 인해서 재정규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됨. 따라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과 아울러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함

- 정책세미나, 지도자 작성, 통일후계수련회의 내역사업은 명확하지 않고, 보조사업 목적의 부합정도가 낮아 내역사업 중 축소 운영이 필요한 부분임

- 내부사업별 소요예산을 확인한 결과 불필요하거나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준보조율이 없는 사업인 만큼 보조율의 산정근거가 명확해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 부재하여 평가가 어려움

1-6 사회적 가치 실현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와 간접적 연계성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해당부처에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평가 불가능함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을 해당부터 직접사업으로 수행하지 않고 위탁운영이 되는 만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함

- 또한, 내역사업 중 이산가족의 날 행사, 국제교류, 이산가족소식지 발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수행 담당기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으로 향후 이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서 통일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으로 대신하고 있으나 해당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적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고 세부 지침이나 규정이 부재함

- 해당 내용은 교부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며 집행과정의 적절성과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점검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라고 보기 어려움 해당 지침대로 사업집행 점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됨.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평가할 수 없음

- 이산가족교류 이외 다른 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에 대한 규정이나 내용도 부재하고 이에 대한 점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평가가 어려움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서 통일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으로 보조사업의 정산 및 회계감사에 대한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서 본 사업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세부사업의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함

- 해당 내용에 대한 점검 자료는 법적 근거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 사후관리에 대한 준수자료가 부재함으로 사업수행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제시가 없어 평가하기 어려움

-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위와 같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은 사업 자체가 모호하고 사업목적이나 내용에서도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평가됨

- 해당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내역사업들이 전체 사업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음으로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의 사업효과성, 사업필요성, 재정규모의 적절성의 증빙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고 매우 미흡함

- 사업효과성에서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제시하지 않고 이산가족교류건수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적절하지 않음

- 사업의 직접적 수혜대상자의 감소와 아울러 사업내용의 수혜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외부효과 역시 파악하기 어려움

○ 사업관리의 평가의 모든 영역에서 보완이 필요함. 각 항목별 세부 규정이나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지침 마련이 요구되며, 실제 집행을 확인할 있는 근거자료 구비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은 사업 자체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내역사업 구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산가족문제해결사업의 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 마련하고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통일부
사 업 명	학교통일교육강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2019년 2,911백만원 중 10백만원 감축), 사업방식 변경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나 성과파악이 안됨 ·대학생 학교밖 통일교육 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100백만원) 중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나 성과 파악이 안되는 통일포럼 사업을 폐지하고 그 예산인 10백만원 감축하고, 대학통일 지원사업의 사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사업내용 조정 필요 ·대학통일교육 지원사업의 사업조정에 따른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나 방법을 통해 내역사업의 사업비 예산과 보조율을 조정하여 감축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제8조에 의거 국가의 학교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명확함

- 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명시됨

□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2011. 7. 28., 2013. 3. 23., 2013. 8. 13.>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정과제 94-4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 교육추진'에 부합의 세부실천과제, 94-4-2번 '청소년들의 긍정적 통일인식 형성을 위한 학교통일교육 확대' 및 94-4-3번 '취약한 대학사회 통일교육 기반 확충 및 대학생 통일 무관심 해소'에 부합됨

○ 본 사업은 초·중등, 대학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모델 개발 및 확산, 대학사회 내 통일교육의 활성화, 건전한 통일논의 확산, 차세대 리더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개입 타당성이 인정되며 수혜대상이 광범위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016년 보조사업평가결과에서 '사업의 전반적 효과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강구 필요함'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 이후 사업의 효과평가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확인함

- 참여학생수(정량평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실태조사(정성평가)를 반영하여 평가한 내용을 확인함

○ 2016년 보조사업평가결과, 효과성 제고가 필요한 대학통일교육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조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포럼은 예산삭감하고 통일준비콘서트 사업은 폐지하는 등의 조정이 있었음

○ 매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교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해 통일연구학교의 확대와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 대학생들의 통일에 관한 관심 제고와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통일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통일교육 연구학교(시도교육청 협의, 40개교), 통일교육 선도대학(권역 고려 선정, 총 6개교),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전국 대학 78개 회원 보유) 등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업진행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 선정기준이 기준년도 전년도에 근거하여 사업평가와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한 기준을 찾을 수 없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선도대학 및 연구학교 선정은 권역별 분포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연구학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선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며 통일교육 선도대학은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선정하고 있음

○ 2016년 국고보조사업평가에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한 대학통일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감축과 연동해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효과성에 근거하여 감축 노력이 필요함

- 대학생 학교밖 통일교육 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수행 사업의 효과성 자료 부족함
- 보조사업자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는 75개 대학이 가입한 최대협의체로서 전문성은 인정되나,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독점적 사업자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독점적 성격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업 집행 및 관리 필요함

- 본 사업선정자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는 특근매식비 집행시 통일교육원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바 있음(통일부, 2014년 보조금 감사결과보고서)
- 동 선정자는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서적을 구입하는 등 용도와 달리 보조금을 사용한 바 있음(통일부, 2014년 보조금 감사결과보고서)
- 이에 따라 대상금액(57,200원)에 대한 적절한 환수조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보조사업자 선정시 고려사항이나 효과성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통일부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의 효과성 지표 등을 통해 사업 예산 감축에 대한 노력 등이 부족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통일부 지침에 의한 관리·감독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대학통일 지원사업의 사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사업내용 조정과 이에 따른 일부 내역사업의 폐지를 통한 사업비 감축이 필요함

- 지정된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프로그램간 차별화에 대해서는 '17년 이후 각 대학별로 차별화 전략을 제시함

- 그러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한 대학통일 지원사업은 사업내용 조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이 필요하고,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사업자로 판단됨에 따라 효과성 제고 등을 통해 선정기준을 엄격히 해야 함

- 이에 내역사업 중 대학생 학교밖 통일교육 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100백만원)에서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나 성과 파악이 안되는 통일포럼 사업을 폐지하여 그 예산인 10백만원 감축하고, 대학통일 지원사업의 사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사업내용 조정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대학통일교육 지원사업의 사업조정에 따른 보조금 비율을 조정함

○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나 방법을 통해 내역사업의 사업비 예산과 보조율을 조정하여 감축함

○ 장기적으로는 사회통일교육내실화 사업과 연계, 통합하여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법무부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법률구조
변호사제도의선진화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법무부
사 업 명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정상추진함.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던 기능을 국가 지원방식으로 확대 전환한 사례로서 정부의 공적 역할이 확대되는 현재와 같은 사업 운영기조의 유지가 적절함.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해당 기능에 대한 국가의 재정역할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적 지원의 성격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공적 활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업대상자인 범죄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사업수행체계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 근거와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제34조에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복구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가진 범죄피해자 및 가족 지원서비스는 국가가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책임에 속하는 것임. 이를 담당하는 기관과 활동에 대한 보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범죄피해자 지원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의 만족도에서도 성과 향상이 인정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사회안전망의 성격이 있는 기본적인 국가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의 전략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준용하는 수준에서 재정지원 규모가 결정됨.

○ 사업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합회 및 59개 개별 센터)는 15~20% 수준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스마일센터(13개 센터)는 100% 보조율로 지원함.

○ 전년도 기준의 관례적이고 점증적인 형식으로 재원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기능들을 선제적 수행할 수 있는 전략경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안전과 통합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중요한 보조사업임. 다만, 이러한 가치는 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 당연한 고유목적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평가에서는 제한적으로 반영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함.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년 동일한 보조사업자가 선정되고 있음.

○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조사업자의 유형을 다변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서 보조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관리 감독함.

○ 2017년 결산 기준으로 4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스마일센터 신규설치 경비 및 운영비의 절감과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서 특별한 쟁점이 발생하지는 않았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전국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53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내 사무실에 위치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유리한 사업환경임.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의 활동을 통해 혜택을 받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규모와 특징에 대한 성과분석 그리고 정책의 환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쟁점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최근 3년동안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회안전망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높음. 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적 근거 속에서 수행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임.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던 기능을 국가 지원 방식으로 확대 전환한 사례임.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해당 기능에 대한 국가의 재정역할이 지속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선정과 부정수급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쟁점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원대상 기관들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의 기본 목적달성에 충실히 활동함.

3-2 정책 제언

○ 보수적인 사업운영 기조에서 나아가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운영이 요망됨. 사회 환경의 불안정성이 악화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사업운영 노력이 요망됨.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범죄피해자와 가족 지원서비스 내용 및 담당 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최적 수준의 사업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한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함.

○ 지역센터들은 사단법인으로서 지방검찰청 청사에 소재하고 있는데, 센터 설치 분포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함.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 센터의 법적 위치와 활동의 보편성 등에 대한 사업환경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법무부
사 업 명	법률구조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법률구조법인의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를 개편하는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기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음. 동 기관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지원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이 악화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법률구조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별 계층별 그리고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관 활동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법률구조기관의 다양성 확보와 전략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관설치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법무부의 기타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보조사업의 집행과 성과에 대해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 하지만 이외 두 개의 법률구조법인의 경우는 법무부에 등록된 일반 민간법인임. 기관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규정하거나 기관운영비 지원의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세 개 민간기관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비 그리고 사업비를 보조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설치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음. 나머지 두 기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의 조건을 갖추어 법무부에 등록된 기관임. 법률구조법 제4조에는 등록법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1988.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법인 등록
- 2002. 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법인 등록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법률구조사업은 법률분야의 복지사업으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통한 인권보장 및 법 교육을 통한 준법정신 고양을 도모하는 것임.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보조사업비의 대부분은 법률구조공단의 기관운영과 기본 사업지원에 충당됨. 공단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수행되며 각 지부-출장소-지소를 통해 저소득층 중심의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법률구조공단 이외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구조법인의 경우에도,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능을 진흥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비영리민간법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사업의 목적 타당성이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보조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됨. 그런데, 법률구조 수혜자 수가 매년 비슷한 규모에 정체되어 있으며 고객 만족도는 매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이 악화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법률구조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과 관리 그리고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다양성 확보 등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보조사업의 효과성 혹은 성과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망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법률상담 기능들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 전국적으로 법률구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충분한 보조사업의 수행이 요망됨.

○ 법원에서 소송구조, 국선변호,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 등의 유관 기능이 있지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별도의 법률구조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들을 활성화하여 전국민 대상의 포괄적인 법률복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 속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 지원 조건에 따라 재원이 지원됨. 사업비의 경우는 법무부의 재정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연도별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법률구조 기능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재원 수준의 최적 수준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률구조지원금을 확보하여 자체 수입의 비중이 상당 정도 차지함. 그런데, 공단은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의 경영목적을 위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창출의 법적 부담을 강제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보조금 비율을 법 규정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위한 제도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보조금 규모 결정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음. 다만, 법무부에서는 법무부는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 수행함.

○ 법률구조법인인 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부서가 확보한 예산형편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된 경향이 있음.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유관 기관들간의 기능분담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적정성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법률구조의 보조사업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임. 본 사업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정책가치라는 점에서 평가 반영은 제한적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법률구조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관설치 조항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판단됨.

○ 이외 두 개의 법률구조법인의 경우는 동법 제3조와 제4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법률구조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두 개의 법률구조법인에 국한되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법률구조법인이 두 개 기관 이외에도 더 있으며 사회적 환경변화와 국민들의 법률구조 수요에 따라 향후 추가적으로 법무부에 등록 신청할 법인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이외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기관운영비 지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중기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 전반에 대해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함.

○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두 개의 법률구조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연재산보고서 관리 그리고 세무확인서 및 결산서류의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 준수 등의 관련 집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들은 법무부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되어 있어 계량지표를 포함하여 매년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각종 관리 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및 결산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기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음. 동 기관의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법률구조의 중요성이 사회안전망 차원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법률구조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이 악화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지역별 계층별 그리고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관 활동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전략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의 기타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보조사업의 집행과 성과에 대해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 하지만 이외 두 기관의 경우는 법

무부에 등록된 일반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향이 있음. 보조금 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적절한 성과계약 혹은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정한 일반 민간법인에 국한하여 매년 관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재원의 운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해당 기관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거나 법률구조법인의 기관운영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법률구조 부문별로 다양한 형태의 법률구조법인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진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책임 관점에서 공공재원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들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집행내역과 성과에 대한 기관 경영공시 정보들을 국민 눈높이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법무부
사 업 명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세부 사업내용의 법적 근거와 보조금 지원 타당성이 인정됨. 따라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조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변경이 요망됨. ·보조사업의 명칭은 '변호사제도의 선진화'인데, 실제 세부 사업내역은 법조윤리협의회와 한국법학원의 기관운영비 지원임. 사업의 명칭과 실제 내용이 일치되지 않음. ·사업비 지원의 실질적인 목적인 법조윤리협의회와 한국법학원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지속적 지원 필요성이 있음. 다만 보조사업의 명칭과 실제 사업내용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으므로 실제 세부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조사업의 명칭과 운영방식 그리고 성과관리체계 등을 재설계해야 함. ·사업명칭인 '변호사제도의 선진화'와 내역사업인 '민·상사 법학연구지원'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음. 연구지원사업의 수행대상인 한국법학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실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운영방식의 변경이 필요함. 또한 예산이 지원되는 두 가지 공적 기관의 재정운영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명칭은 '변호사제도의 선진화'인데 실제 세부사업의 내용은 법조윤리협의회와 한국법학원에 대한 기관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능'에 대한 사업명칭과 '기관운영'에 대한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인·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변호사법 제88조의 3」에 규정되어 있음. 사무국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회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명칭에서 제시한 변호사제도의 선진화와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①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변호사법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2조(보조금)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민·상사 법학연구지원'의 법적 근거로 제시된 「한국법학원 육성법」의 규정 내용은 법적 근거로서 명확하지 않음. 동 법 제2조에서는 한국법학원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한 보조금 교부를 규정한 것임.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명시한 것은 아님. 연구지원에 대한 '기능'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서 '기관운영' 지원의 규정은 적절하지 않음.

- (사)한국법학원육성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경비지원의 법적 근거 규정이 있음. 또한 동법 제4조에서 한국법학원은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관의 법적 성격과 기능 그리고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한 기관이기 때문에 동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변호사제도 선진화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인정됨. 다만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이라는 명칭과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명칭과 사업 방식 등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

○ 한국법학원의 연혁, 설립배경,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민·상사법학연구 지원을 특정 민간기관에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변호사제도의 선진화'와 그 내역사업인 '민·상사 법학연구지원' 사업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방식 변경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1~2천여 명의 변호사 수임자료를 심사하고, 그 중 100여 명 전후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됨. 그러나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인 '변호사 제도의 선진화'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비 중심의 지원 방식 개편이 필요함.

○ 한국법학원의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에서 실제 사업은 기관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따라서 보조금 교부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명칭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의 효과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법조윤리협의회와 한국법학원 운영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보조사업의 명칭인 '변호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동일하지 않음.

○ 해당 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동 보조사업의 사업명칭과 내용을 개편하여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8년 기준으로 법조윤리협의회 지원 144백만원 한국법학원 지원 3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영세 보조사업임. 중앙부처에서 독립적인 예산단위로 운영하기에는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비용-효과성이 제한적으로 평가됨.

○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기관인 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법조윤리협의회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예산을 동일한 비율로 보조하고 있음. 일부기관의 지원금만을 상향할 경우 협의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관운영비 구성에서 정부와 민간의 적정 분담 비율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소규모 예산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으로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명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제도 선진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조사업의 명칭과 세부사업명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정성 평가에 한계가 있음. 다만,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 자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및 관련 정책 협의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기관으로서 「변호사법」 제89조의3이 해당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내용기준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정함.

○ 세부사업 가운데 하나인 '민·상사 연구지원사업'의 명칭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연구사업에서 공모 등의 절차없이 한국법학원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보조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한국법학원 운영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내용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명칭과 목적을 개편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선정의 적절성과 관련한 쟁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사업내역을 기준으로 계속 보조사업을 운영할 경우, 보조사업의 실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기관운영에 대한 지원의 관점에서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기관운영을 지원하는 소규모 예산사업이며 불용액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 적정성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정부 예산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노력이 요망됨.

○ 예를 들어, 법조윤리협의회 또는 한국법학원의 홈페이지에 정부 지원 예산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제도에 준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음. 한국법학원은 인터넷 등의 검색에서 기관의 주요 활동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 등 정부 예산사업의 투명성 관리에서 한계가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 영세사업으로서 예산지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일반적인 영세사업의 경비 지원과 정산 규정들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사후관리의 적정성이 인정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두 개 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 정산규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의 쟁점이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명칭에서 의미는 '변호사제도'의 선진화이지만 실제 세부 사업 내용은 법조윤리협회와 한국법학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임. 이에 따라 보조사업 명칭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기관으로서 지원의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보조사업의 명칭과 실제 사업내용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으므로 실제 세부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조사업의 명칭과 운영방식 그리고 성과관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2조는 한국법학원의 운영비 충당을 위한 보조금 교부를 규정하고 있어 한국법학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과 그 내역사업인 '민·상사 법학연구지원' 사업간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방식(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사업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건전한 법조윤리 풍토를 조성하는 명분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의 사업운영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목적 설정과 운영 필요성 등에서 많은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음. 기관운영 지원에 대한 전략적 목적 설정과 체계적 성과관리가 요망됨.

○ 한국법학원 운영 경비 지원의 경우, 보조금의 법적 근거는 있지만 '법학연구'의 목적이 명시된 것은 아님. 특정 기관에 보조금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과 민·상사법학연구지원은 성격이 다른 보조사업임. 실제 내용 중심으로 보조사업의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이 기관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변경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두 기관 모두에서 정부 재정지원의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필요가 있음. 또한 기관의 주요 활동이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에 대한 관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법무부
사 업 명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9.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에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므로 **정상추진이** 필요함.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있는 명확한 기준과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미집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진술조력의 회수가 아닌 진술조력을 통해 범죄 피해인이 받는 실질적 혜택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ex) 경찰 및 검사 등 수사 인력의 진술조력인 만족도 등 ·채용지연에 따른 미집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기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에는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등에서도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에서는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음

- 운영은 위탁할 수 있으며, 제59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있어 법적근거 명확한 편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사업의 목적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인 진술조력인을 양성·배치하여 피해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보조사업은 전국 단위로 각 지역의 해바라기 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근 근무를 할진술조력인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임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 수혜의 범위는 전국 단위로 광범위한 수혜자가 존재함

- 보조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이 전국 각 지역의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상근 근무하고 있는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수사·재판 등의 형사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의 내용이 명확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진술조력인 배치)으로 이루어져 목적이 동일하고, 진술조력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운영하는 등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구성됨

○ 보조사업(진술조력인 배치)의 내용 및 목표는 진술조력인을 전국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근 근무자로 배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의 신속성 및 접근성,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은 15년도 해바라기센터 9개소 9명을 시작으로 '16년 10명, '17년 11명, '18년 12명을 배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배치지역을 확대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되었음

- 특히, 2017년 상근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953건으로 목표치 899건을 초과달성하여 (달성율 106%)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다만, 상근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산출지표로서 상근 진술 조력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수혜를 입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 적인 지표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금의 대부분은 진술조력인의 임금,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금 및 상여금이 정확한시기에 정확한 액수가 지급되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민간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따라서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자체수행 할 경우, 인력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를 국가가 주기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은 유사사업이던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이 동 사업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법무부 고유의 사업으로서 타 사업과의 중복이 없음

○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매년 진술조력인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함

- 다만,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용 지연되어 미집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절 수요에 대한 예측과 이에 근거한 체계적 인력관리가 필수적임

- 인구규모에 차이가 있는 서울과 부산에 조력 인이 동일하게 2인씩 배치되어 있어 사업 수혜측면에서 수도권 지역에 조력사를 추가 또는 배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인원(명)	2	2	1	-	1	1	1	3	-	-	-	-	-	-	1	-	12
조력대상 범죄발생 건수(천건)	14	4.2	2.9	4.6	2.1	1.8	1.5	14	2.1	2.0	2.4	2.6	2.4	2.8	2.8	0.9	63.1

※ 조력대상범죄 : 전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 보조사업이 중단되어 비상근 진술조력인만으로 진술조력 수요를 대처하게 하는 경우 신속한 진술조력인 지원이 어려워져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신속한 법률 조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의 규모가 18년 5억 2천만원으로 소규모인 편이나, 진술조력인을 상근 근무자로 채용하여 전국에 배치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신속하게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큼

○ 보조금의 대부분이 진술조력인의 임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진술조력인의 1인당 임금이 월 260만원으로 낮은 편이어서 전문 인력의 이직 가능성이 큼

- 또한 현재 전국 10곳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조력인의 수가 부족한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진술조력인 지원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지속적인 배치 확대 추진이 필요함

○ 따라서 진술조력인 임금 인상 및 배치지역 확대를 위해 보조사업의 규모 확대가 필요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10 ~ 100%의 보조율을 지정하고 있는데,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는 100%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진술조력인은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 수행 능력과 목표 달성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였으나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선정절차 마련 필요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법령 및 예산의 목적의 적합성 심의, 교부 결정 등의 교부 절차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관리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사용예정 내역을 연초에 미리 받아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추후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월별로 회신받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음
- 다만, 채용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집행점검에서는 보조사업 실집행액과 관련하여 매월 초에 전월 집행내역을 회신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고, 문제점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자체를 교체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자 등 반납 예정액의 반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보조금 사용내역 확인 시 지출내역 및 지출 영수증, 보조금 관리통장 등을 직접 점검하였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대부분이 진술조력인 임금으로 지출되는 등 지출목적이 정해져 있고, 자의적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부정수급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음

○ 매월 보조금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있고, 사실상 지출 전 본부에 보조금 지출 계획을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인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배치함으로써 피해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책무임

○ 또한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자체수행 할 경우, 매우 비효율적이고,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국가기관에서 보조사업 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연장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국가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보조 사업으로서 필요성도 있으나 사업의 효과측정 및 사업인력의 배치, 사업자 선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사업의 효과 (진술조력인의 구체적인 수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전국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하고 있는데, 보다 진술조력인 지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면 부족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배치 전환 및 확대 추진도 필요함

○ 채용지연에 따른 예산 미집행 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법무부
사 업 명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4.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상추진**이 필요함 · 다만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알 수 있는 결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음 ·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성과측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사건승소율이나 피해자 만족도와 같은 결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헌법」 제27조5항,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제1항, 제34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법률구조법」 제4조 등에 법적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이 가능한 것을 규정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등의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적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및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1차적 수혜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및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이며 2차적 수혜자는 관련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 수혜자의 폭이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국선변호사 수당, 교육 및 홍보비, 간담회, 연구개발비, 피해자상담지도점검, 전담변호사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지원되는 보조금의 95%가 국선변호사 수당 및 전담변호사 인건비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내역사업의 구성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국선 변호사의 배치에 있어 경기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은 4명 경기는 2명이 배치되어 지역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성과지표인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건수는 달성도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2017년 기준 110.4%) 계획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지원건수는 산출지표로서 국선변호사 지원의 질을 알수 있는 결과지표의 설정이 필요함

-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변호인 지원이 사건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지원에 대한 피해자의 만족도 등 사업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사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추가로 피해자가 직접 민간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에 대하여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타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낮으며 지속적으로 발생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수요와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민간단체보조 사업으로서 관련 범죄의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는 사업으로서 관련 재정 지원 규모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음

○ 본 사업은 법률구조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95%가 국선변호사 수당 및 전단변호사 인건비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본 사업은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선정에 따른 인건비와 전담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비 등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어 그 구성이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하다고 판단됨

○ 기준보조율 100%로써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적합한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법률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교부신청, 법령 및 예산의 목적의 적합성 심의, 교부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선벌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위촉절차 시행,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및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지급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고 매월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사건처리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 받는 등 단계별로 적절한 관리체계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인건비 지급에 있어 일부사업의 불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외 사용금지, 월별 사건처리내역 제출 요청, 분기 및 연도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정산보고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정산확정 및 반납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에 이에 근거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지출 대부분이 국선전담변호사 인건비 등 경상비용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리체계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규정과 채용계약서상 금액이 부합하지 않다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국선전담 변호사 임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한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건 해결율, 서비스 만족도등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국방부

일반지원시설
자기계발교육
취업활동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방부
사 업 명	일반지원시설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9.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9.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단계적폐지(21년말), 감축(20년 50억) ·일부 내역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내역사업도 계획에 따라 종료됨 ·해강안 철책 제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양구저수지 사업이 종료되어 예산을 20년 50억원 감축하고, 해강안 철책 제거사업은 완료가 예정된 2021년 폐지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일반지원시설사업은 양구저수지 사업과 해강안 철책 제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급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편임

○ 양구저수지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의거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4조에서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시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서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하여야 함

○ 해강안 철책 제거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에 의거 군 경계 철책 철거 및 대체감시장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양구저수지 사업의 경우 양구군은 접경지역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2025 전국수도정비 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서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가능 지점으로 양구군 비아리 일원 계획 명시함
- 상수도공급은 주민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2017년 양구군의 총세입은 307,933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17%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양구저수지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양구군민 및 지역 내 주둔장병(19,730명)임

○ 해강안 철책 제거 사업의 경우 국가 안보라는 환경속에서 해안선 413㎞에 군 경계철책이 설치되어 지난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 등 피해와 희생을 감내하여 온 상황임

-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대체감시장비 설치비 과다 소요 및 대체감시장비 설치후 관할 군부대 등 국가에 모두 귀속되고 해안 개방에 따른 해양경관 개선 등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릴 수 있음

- 해강안 철책 제거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해강안 경계철책 설치지역 주민, 관할 군부대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양구저수지 사업의 경우 정부 3.0 시책에 의거 군·관 협약사항으로서 군부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군부대 2개사단(2, 21사단) 미급수지역 상수도를 공급함

- 양구군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 증가로 수원을 확보하고 기존 취수시설 용량부족 및 노후화(37년 경과)로 수질사고 발생 우려되고 있어 사전에 방지함

○ 해강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군의 작전성 검토결과에 따라 대체감시 장비 및 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원·근거리 감시장비, CCTV, LED경계등, 초소, 케이블설치 등을 수행함

- 대체감시장비 및 설비 설치완료 후 군 경계철책 철거가 가능해짐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양구저수지 사업의 경우 민통선 내부에서 시행하며 군민 및 지역내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 만큼 국방부의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양구군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개발 및 출입의 제한을 받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지역적 특수성으로 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타부서의 지원금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다만 동 사업은 종료되어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음

○ 철책제거 사업의 경우 군 경계철책 철거는 단순히 지역 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 계획에 의거 감시장비 첨단화를 통해 해안경계 감시인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강원도, 시군)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 불가하며,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은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이 지자체 예산 책정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50% 수준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해강안 경계철책 413.3㎞ 중 114.62km는 철거가 승인되어 69.3km가 철거되고 45.32km가 진행되고 있어 동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양구 저수지 사업의 경우 일일 계획공급량 13,000㎥/일(생활 11,000㎥/일+하천유지용수 2,000㎥/일) 공급을 위한 총저수용량 347만㎥, 댐 높이 63.5m의 규모로 추진됨

- 양구군의 근본적인 식수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양구군 동면 비아리 일원에 식수전용저수지 건립이 필요하여 실시함

- 보조금법 시행령 제 4조에 의거 해양 및 수자원관리 보조율 50%를 적용함

○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철책철거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관할 군부대에 신청하면 군에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철거 승인여부 및 대체감시장비 등의 규모를 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함

- 지자체에서는 작전성 검토결과 및 대체감시장비의 작전성능요구서(장비의 규격, 성능, 용량 등)에 따라 대체감시장비 구입 및 설치 후 군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있음

- 철책 철거사업비 중 대체감시장비 구입·설치 비용이 전체사업비의 70~80%를 차지하고 대체감시장비 설치후 관할 군부대 등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작전성능요구서 등 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군과의 협의 절차 복잡 및 장기 소요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두 사업의 경우 인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양구 저수지 사업의 경우 기존시설 노후화(35년) 및 시설용량 부족(용량의 2.5배 생산), 급수구역 확대 등에 따라 수원확보가 필요하여 수행됨

- 군 경계철책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 해안가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시행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양구 저수지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4조 및 접경지역특별법 제 4조, 수도법 제 2조에 의거 재원을 교부받아 집행함

○ 철책 제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재원을 교부 받아 집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양구군) 직접수행으로 원가심사 등을 통해 추진함

- 지방자치단체(양구군) 직접 수행함

○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은 군 작전성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군부대 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군의 작전성능요구서에 따라 대체감시장비를 설치한 후 군의 최종 수락검사를 받은 후 군 경계철책을 철거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양구저수지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양구군) 직접수행으로 원가심사 등을 통해 추진함

○ 해강안 철책 제거사업의 경우 대체감시장비(설비)에 대하여는 합의각서에 따라 군부대(국가)에 기부채납 후 관할 군부대에서 운영 및 관리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양구저수지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양구군) 직접 수행하고 있음

○ 해강안 철책 제거 사업의 경우 군 작전성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군 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군의 작전성능요구서에 따라 대체감시장비를 설치한 후 군의 최종 수락검사를 받은 후 군 경계철책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일반지원시설사업은 양구저수지 사업과 해강안 철책 제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급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편임

- 양구저수지 사업의 경우 민통선 내부에서 시행하며 군민 및 지역내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 만큼 국방부의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철책제거 사업의 경우 군 경계철책 철거는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 계획에 의거 감시장비 첨단화를 통해 해안경계 감시인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 적절함
- 해강안 철책 제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3-2 정책 제언

○ 2019년 양구저수지 사업(50억원 수준)이 종료되고 및 해강안 철책 제거 사업이 2년 정도 예산 반영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2021년 폐지함

- 해강안 철책 제거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에는 예산을 미반영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방부
사 업 명	자기계발교육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본 사업은 특성화고에서 군이 요구하는 기술분야를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졸업 후 첨단장비 운용 유급지원병(Ⅱ형)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사업임. 필요한 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이 분명함. 또한 「군 특성화고 운영지침」에 의해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이는 2016년 보조사업 평가 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방부 지침을 통해 군 특성화고 관련 사항을 매년 하달·시행중임. 그러나 이는 군 특성화고 운영과 관련된 지침이지, 군 특성화고 설치의 법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병역법」 제20조의 2(유급지원병), 「유급지원병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7620 호) 등에 근거하고 있음

- 현재 「병역법」, 「유급지원병 운영규정」 등의 관련 조항에 유급지원병과 관련된 내용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군이 요구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2016년 국고보조사업 평가 시 근거법령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후 국방부 내부논의를 통해 법령에는 큰 테두리만 명시하고 군 특성화고에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지침으로 매년 하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함. 2019년 군 특성화고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1월 2일 「군특성화고운영지침」(국지시 제19-001호)이 하달되었음

- 그러나 「군특성화고운영지침」은 군특성화고 운영계획, 예산사용계획, 사업평가 및 지도방문, 평가계획 등 운영과 관련된 지침으로, 운영지침을 통해 군 특성화고 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명시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특성화고에서 군이 요구하는 기술 분야를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졸업 후 첨단장비 운용 유급지원병(II형)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군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함

○ 군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됨.

- 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로, 추진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으로 인한 1차적인 수혜자는 군 특성화고에 재학한 후 유급지원병으로 근무하게 되는 대상자임. 그러나 2차적인 수혜자는 전체 국민이라고 볼 수 있음

- 국방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군의 전력 강화는 전체 국민에서 제공되는 국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본 사업의 2차 수혜자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국방 기본정책 및 국방중기계획의 중장기계획을 근간으로 군에서 소요되는 인력규모를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사업 규모를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 규모 등의 결정 과정이 보조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는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육성률=선발인원 중 유급지원병 입대인원/군특성화고 과정 선발인원'으로 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육성률'이 매년 90% 이상으로 큰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성과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성과목표를 9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 후 입대 시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원하지 않았으나 탈락하게 되는 인원의 존재를 고려하기 때문으로 안정적인 인력 수급 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납득할만한 수준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됨.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조금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장비 기술 인력을 맞춤식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적음.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군에서 필요한 전투기 정비인력을 맞춤식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첨단장비운용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본 사업과 내용 측면에서 일부 유사성이 있음. 그러나 군특성화고는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사업인 반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부사관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인력양성 목적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음

○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장비 기술인력의 숙련도 강화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군 특성화고를 통해 맞춤식 인력양성을 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첨단장비운용을 위한 유급지원병은 군특성화고를 통해서도 모집이 되지만 민간모집을 통해서도 모집되고 있어, 군특성화고를 통한 유급지원병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군특성화고를 통한 유급지원병 모집은 민간모집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모집은 2018년 1300명에서 2019년 1000명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군특성화고를 통한 모집 규모는 2018년 700명에서 2019년 1000명으로 증가시키는 추세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교사인건비, 실습지원비, 교육비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규모가 결정되고 있음

- 2019년의 경우 14개교 700명에서 23개교 1,000명으로 양성인력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도 2,556백만원에서 3,970백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본 사업은 탈락율을 고려하여 110%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예산규모가 결정되므로 예산 규모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 맞춤식 양성인력에 대해 10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국고보조금의 경우 군특성화고 근특교수 인건비, 훈련생 실습위탁비 및 실습지원비 등 대부분 경상비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음

- 특성화고에서도 해당 학생이 이용하는 실습시설개선, 기자재 구입 등 교육여건 보장 및 최신화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실제 '2018년 군특성화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학교의 대응투자 규모는 약 7억8천만원임

- 따라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학교의 투자가 일정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특성화고 운영을 위한 경상비를 보조금으로 100%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군특성화고에 재학생의 45%이상이 한부모 가정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기술적인 지원과 능력 배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고 기초조사보고서에서는 기술하고 있음

- 그러나 위의 언급된 측면은 본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교육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본 사업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교육부의 특성화고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국방부/교육부 합동평가단의 평가에 의해 군에서 필요한 특수인력 양성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여,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 2007년 10개 학교, 2015년 4개 학교를 지정한데 이어, 2019년 9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 본 사업은 「군 특성화고 운영지침」에 의해 교육계획, 사업예산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군 특성화고 운영지침」 등에 의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 지도방문을 하고 있으며, 연 1회 운영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평가 결과 '미흡' 판정 시 예산 및 정원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15년 신규로 4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160명 정원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2014년 평가를 통해 기존 학교의 정원을 160명 삭감한 것에 따른 조치임

- 2017년 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10%)를 받은 1개 학교의 학급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과 관련된 회계감사 등의 절차 및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회계감사 결과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학교의 예산과 정원을 삭감하고 있음

- 2015년 신규로 4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160명 정원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2014년 평가를 통해 기존 학교의 정원을 160명 삭감한 것에 따른 조치임

- 2017년 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10%)를 받은 1개 학교의 학급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회계감사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특성화고의 운영성과가 반복적으로 미흡하게 평가되고 있음.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예산은 국방부에서 각 군의 인력양성 계획에 따른 요구예산을 검토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교사인건비, 훈련생 교육비, 실습지원비 등 예산항목이 구체적임

○ 학교 예산으로 편성되어 국방부 통제 하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부정수급 및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부정수급 발생 시 즉시 퇴출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낮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특성화고에서 군이 요구하는 기술 분야를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졸업 후 첨단장비 운용 유급지원병(Ⅱ형)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사업임.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이 분명함. 또한 「군 특성화고 운영지침」에 의해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2016년 보조사업 평가이후 군 특성화고에 관련된 사항을 국방부 지침으로 하달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군 특성화고 운영과 관련된 지침이지 군특성화고 설치의 법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움

3-2 정책 제언

○ 보다 엄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방부
사 업 명	취업활동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업의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함 ·연도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설정 근거가 미흡하여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내역사업 숫자도 많음 ·16개의 내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역사업 단순화를 검토하고, 성과지표의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취업활동지원사업은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전직교육원법 및 동법 시행령',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군인복지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 각각의 법령 등에는 보조사업의 재원 근거, 보조사업자의 의무사항,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조에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복지계정은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인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운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 법령은 전역예정군인들에게 다양한 전직지원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경쟁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군인은 장기간 군 복무로 인해 사회와의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미흡함

- 군 경력을 사회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워 취업경쟁력이 약하므로, 전역예정군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다양한 취업활동지원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음
-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군 문화의 특수성, 인적자원에 대한 보안, 군인의 특성 및 커리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지자체와 민간에서 수행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함

○ 전역예정군인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인 수혜자는 장기간 군 복무한 전역하는 군인들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취업활동지원사업의 목적은 전역예정군인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기회 확대에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전직기본교육, 군특성화맞춤형교육, 전직컨설팅, 취업박람회, 취창업설명회, 구인구직만남행사, 청년장병 진로도움사업, 청년장병뉴스타트 등의 내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전직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사회 고용환경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본인의 군 경력과 부합하는 진로를 설정하고, 설정된 진로에 맞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연도별 성과지표로서 구직희망자 취업률, 전직컨설팅 취업률, 전직지원교육 만족도 등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도전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0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도 집행률 저조(84%)로 인하여 미흡 판정을 받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장기간 사회와의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미흡하여 취업경쟁력이 취약한 전역예정군인이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목적은 전역예정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있으므로, 전역 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맞춤식 취업지원 활동 지원 능력 구비 여부가 정책수단 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국방부 '전직지원교육' 및 '취업활동지원'사업은 현역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사업은 제대군인 중 미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지원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역예정군인의 취업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약 119억원 규모로 16개 내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역사업의 단순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 국방전직교육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로 3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진로설계, 진로교육, 전직기본교육,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전직컨설팅, 군특성화맞춤형교육, 전직지원성과평가 등 전직지원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44억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찾아가는 1:1 진로 및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취창업설명회, 구인구직만남행사, 취업 네트워크 강화 등에 4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2019년 전직컨설팅 및 청년장병 1:1 진로 및 취업상담 사업의 확대로 민간 컨설턴트를 신규로 54명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음

-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및 제25조에는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운영하며,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3조에 따라 교육원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교육원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함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및 제25조,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운영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련 법령 및 훈령에 보조사업 관리 감독 및 집행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

- 국방전직교육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국방전직교육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수행 내용,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 결산 보고, 업무의 지도·감독 등이 적시됨

-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서 국방전직교육원의 보고 및 고지의무(매월 사업실적 보고, 매분기말 성과분석 실시 등), 운영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교육실태 등 점검 및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 등을 규정함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관련 법령 및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의 절차를 명시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함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는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방전직교육원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전역예정군인의 재취업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2015년부터 전직지원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2015년도 이후 보조사업의 집행실태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전직교육원법 및 동법 시행령’,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군인복지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근거규정이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군 문화의 특수성, 인적자원에 대한 보안, 군인의 특성 및 커리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함
- 연도별 성과지표로서 구직희망자 취업률, 전직컨설팅 취업률, 전직지원교육 만족도 등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도전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도 미흡함에 따라 사업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함
- ‘전역예정군인의 취업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6개 내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역사업의 단순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의 협업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사업지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
동원자원관리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ODA)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생활공감정책추진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보조)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접경권발전지원
제주4.3평화재단지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풍수해보험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과거사관련사업지원
보조유형	자치단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에 근거 규정이 명확히 확인됨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된 과제로서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업 시행시 지방계약 법령등에 따라 집행 하며 보조금 정산검사 및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 수감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 가능성 거의 희박함 ·사업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고, 과거사 진상 규명 노력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자체 재정집행이 합법성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에 근거 규정이 명확히 확인됨

○ 주요 내역 사업 역시 위 법에 열거된 제주4.3 실무위운영 및 희생자 추념식,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운영, 산청함양사건 추모 공원 관리 운영, 민주공원 관리운영, 유해매장 추정지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된 과제로서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직접적 수혜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 4.3사건 유가족, 충북 영동군, 경남 거창군, 산청군 등 관련 사건 유가족, 경기 이천시 및 민주화운동 유가족,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등임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위로, 보상,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적인 파급력이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4·3희생자 추념식, 희생자 개호비 지원, 노근리, 거창, 산청함양 사건 추모공원 관리운영, 민주화공원 관리 운영 및 한국전쟁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관리 등 관련 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보조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매년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교부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과거사 관련 보상, 위령사업, 시설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을 후세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여타 유사중복 사업은 없으며, 각 내역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가 단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추모공원 운영 등 명예회복사업은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수 있도록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2016년이후 민주공원 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상경비는 지방비로 전환해가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사업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등 불행한 과거사를 재정립 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가 해당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등 불행한 과거사를 재정립 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제주(제주특별자치도) 4.3 실무위원회 운영 및 노근리(영동군) 평화공원 관리운영, 거창사건(거창군) 추모공원, 산청함양(산청군) 추모공원 및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이천시) 관리운영은 한국전쟁 전후 근현대사 사건 발생 지역 지자체로 별도의 선정절차는 없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지자체)가 매년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내역 점검 후 보완 및 집행잔액, 이자를 반납 받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 유지하고 있음

○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에 사업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와 합동으로 64개 유해매장 추정지 현장 점검 실시하는 등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정기 현지 확인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사후 시정조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업 시행시 지방계약 법령등에 따라 집행 하며 보조금 정산검사 및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 수감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 지원사업 및 전국합동추모제 사업은 매우 소액 사업이고(년 2천만원 내외) 광역지자체 및 행안부의 감독을 받고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 없다고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에 근거 규정이 명확히 확인됨

○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된 과제로서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등 불행한 과거사를 재정립 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업 시행시 지방계약 법령등에 따라 집행 하며 보조금 정산검사 및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 수감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 가능성 거의 희박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고, 과거사 진상 규명 노력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자체 재정집행이 합법성을 확보하는데 그치지말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보조유형	자치단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3.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본 사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근거 규정이 확인됨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된 과제로서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적 추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동 사업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등 불행한 과거사를 재정립 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업 시행 시 지방계약 법령등에 따라 집행 하며 보조금 정산검사 및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 수감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 가능성 거의 희박함 ·추모시설 건립과 동시에 본 사업은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노력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근거 규정이 확인됨

○ 주요 내역 사업은 위 법에 의거하여 '임시유해안치시설 운영지원'등이 추진 중이며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된 과제로서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직접적 수혜자는 희생자 및 희생자 유가족임.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위로, 보상,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적인 파급력이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임시유해안치시설 운영지원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및 각 지자체 등에서 발굴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1,920구) 및 유품(6,516점)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하는 사업임. 또한 세종시 추모의 집 임시유해안치시설 운영지원(인건비, 공공운영비, 관리비 등)을 함

○ 또한 보조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매년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교부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국전쟁이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발굴과 안장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사특별법 및 진실화해위원회 정책권고 사항에 따른 사업으로 향후 단일 화해위령시설"전국단위 위령시설(영구안치시설)" 조성 후 연구안치 전까지 임시안치시설 운영 예정임

○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유해의 보존 관리 및 향후 영구 안치는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

○ 여타 유사중복 사업은 없으며, 각 내역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임

○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의 정부 정책권고에 따라 대전 동구 낭월동 지역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18 ~ '21)이며, 전국단위 위령시설(영구안장시설) 조성 전에 보조사업이 폐지 될 경우, 유해를 보존·관리할 곳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예상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가 1개 지자체 이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음. 또한 임시유해 안치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은 1년에 6000만원으로 유해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관리직원 인건비 30백만, 유해안치실 항온항습기 운영비 등 공공요금 19백만원, 기타운영비 11백만원 등)

○ 본 사업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불행한 과거사를 재정립 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무사업으로 해당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등 불행한 과거사를 재정립 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세종시와 행안부가 관련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항온항습 시설이 설치된 추모의 집에서 위탁 관리하는 등 국가위령사업에 적극 협조함

※ 임시유해 안치시설 운영지원 : 년 60백만 원(인건비 31, 공공요금19, 기타운영비 1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지자체)가 매년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내역 점검 후 보완 및 집행잔액, 이자를 반납 받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보존 관리에 국한된 사업이고 비교적 소액(년 6,000만원)이므로 문제 발생 가능성 낮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정기 현지 확인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사후 시정조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업 시행시 지방계약 법령등에 따라 집행 하며 보조금 정산검사 및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 수감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근거 규정이 확인됨

○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된 과제로서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적 추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등 불행한 과거사를 재정립 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업 시행시 지방계약 법령등에 따라 집행 하며 보조금 정산검사 및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 수감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 가능성 거의 희박함

3-2 정책 제언

○ 추모시설 건립과 동시에 본 사업은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노력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3.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사업변경을 요구함. 단 정해진 기간 안에 운영비 및 인건비의 비중을 줄이고 사업비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기관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의 예산 감축을 요구함 ○ 본 사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 및 피해조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규명과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함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운영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8년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65%를 넘어 진상조사 및 유족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보조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재단의 경직성 경비 규모가 합당하고 지출이 효율적인지와 이러한 재단의 경직성 경비를 보조금 외에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유족 지원 및 문화학술기념사업 등 보조사업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성이 있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는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본 사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 및 피해조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규명과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함

○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대체로 광범위함

-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강제 동원된 피해자 780만명과 그 유족이며, 조사·학술 연구·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운영사업 등의 수혜자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귀속
- 국고보조사업 중 피해자 유족들의 해외추도순례(상하반기 각 2회, 40명 정도), 전국합동위령제(매년 8~9월), 추도비 건립 등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직접 효과를 미치며, 조사연구 기능은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적 기능 제공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사업은 강제동원조사법상의 정부기능을 구체화하여 정관에 규정하였고 수행하는 사업내용도 관련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임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필요함

- 투입 위주의 성과지표로 효과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법보다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연구, 유족지원 등은 공익성이 강하고 일본과 관련한 사업이라 전문성이 요구되며 수익 발생이 어려운 구조로서 보조금이 적정함
- 다만 높은 비중의 사업비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관 운영비와 인건비에 투입되고 있음. 이는 보조사업으로서의 원칙과 기타 공공기관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기능을 재단에 위임하여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조사 및 지원의무가 존속하는 한, 계속하여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임
- 추도사업의 특성상 유족 생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시급성이 높으며, 조사 사업의 경우에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 확보 및 실지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추진의 시급성도 만족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운영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65%를 넘어 진상조사 및 유족 지원사업 추진에 애로
- 2019년에는 국회와 언론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일본지역 유해봉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657백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대비 48% 증액된 예산이 확보됨. 이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판단됨

○ 보조율 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미흡하나, 국가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사업예산을 전액 보조받는 사례가 충분히 존재함

- 현재는 산정된 운영비에 일부사업비를 반영하여 보조금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재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일반적인 차원의 보조사업 관리체계가 수립, 운영되고 있음

-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국고금관리시스템, 국세청, 재단 홈페이지에 재무제표등 주요 사업집행 정보 공시
- 행정안전부의 정기적인 점검 및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수검 받고 있음

○ 자체적인 재무회계규정,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위반시 징계등 제재조치를 마련, 시행하고 있음

- 주무부처 통합재정사업 평가대상에 반영되어 성과가 미진할 경우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출 관련 직원들이 보증보험, 인우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집행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거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일반적인 차원의 보조사업 사후관리체계가 수립, 운영

- 내부 감사인 공인회계사 보고와 외부 감사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 국가 예산 및 공공기관으로서 국회 결산에 포함되어 감사 받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 규정 외 별도의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규정 없음

- 지금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례 없음
- 내부적으로 일일결산과 자금 집행 확인 및 일상 감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음
- 집행결과는 연1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점검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3년에 1회 감사를 통하여 부정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 및 피해조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규명과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함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운영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8년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65%를 넘어 진상조사 및 유족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보조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재단의 경직성 경비 규모가 합당하고 지출이 효율적인지와 이러한 재단의 경직성 경비를 보조금 외에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3-2 정책 제언

○ 유족 지원 및 문화학술기념사업 등 보조사업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동원자원관리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기술인력의 동원훈련에 대한 성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산출하여 국민들에게 기술인력 동원 훈련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기술인력의 전쟁시 동원 소집 및 개별 임무 숙지에 대한 매뉴얼을 ICT 활용으로 첨단화시키는 방안 등 미래지향형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검토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 보조에 국비 100%지원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09. 4. 1.]
제22조(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4. 1.]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본 보조사업은 기술인력 동원훈련은 전시를 대비하여 평시에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인력동원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며, '84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주무부·처의 부령 정비하여, 정부는 유사시를 대비한 자원동원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훈련참가자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도록 명문화하였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하에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 목적의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유사시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등을 위해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시·도 주관으로 실시(매년 1,900명 대상) 전시대비 동원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비상대비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동원훈련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의 동원훈련에 대한 성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지표가 미흡

- 상·하반기 계획인원 1,900명 대비, 1,857명 응소로 97.7% 달성하였다는 성과지표가 있으나, 동원훈력을 통한 역량강화 수준에 대한 지표 선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비상시 필요한 기술인력(224개 자격·면허자)의 소요인원(23천여명) 파악, 기술인력 일제조사(445만명) 및 배분회의를 통해 전시 인력동원 계획 수립
※ 소요제기 지침 통보(2.12)→전국 일제조사 실시계획 통보(4.3)→인력자원배분회의 개최(7.4~7.6)
○ 기술인력 평시지정자(2만여명) 중 동원훈련(1,900명)실시로 시·도(시·군·구)의 전시임무 숙달 훈련 및 동원대상자의 임무숙지 등 훈련 실시
※ 기술인력동원 훈련계획 수립통보(5.11/9.4), 인력동원 훈련실시 (6.25~6.29, 10..22~26 / 11개 시·도, 1,900명)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전시에 소요되는 동원자원 관련 임무(생산, 관리 등)를 수행할 업체(7천3개)에 대한 동원능력을 파악하고자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국가비상대비계획(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등을 위해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시·도 주관으로 실시(매년 2회, 총 1,900명 대상)함으로써 전시대비 동원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상비병력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전력인 '동원자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최근 국방부에서 발행한 '2018 국방백서'에 의하면 현재 59만9천여명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9만명으로 감축계획이 있음.

-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동원전력사령부'설치 추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술인력의 전쟁시 동원 소집 및 개별 임무 숙지에 대한 매뉴얼을 ICT 활용으로 첨단화시키는 방안 등 미래지향형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가고유의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총괄 조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산보고서 제출 및 훈련불참자에 대한 보상금 반납처리 하는 등의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훈련불참자에 대한 벌칙조항(『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30조, 제31조(벌칙) 마련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하고 있어 기본적인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통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절차도 마련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후 정산 절차 등을 거쳐 집행 잔액을 반환받고 있으며,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비상대비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동원훈련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의 동원훈련에 대한 성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산출하여 국민들에게 기술인력 동원 훈련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0.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6.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3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4.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동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동 보조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등 내부규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활용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타당성은 다소 낮으며 목표치도 도전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법 제3조(국가등의 협력 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 하지만 이상은 동사업의 근거로서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조직의 대내외적 새마을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3조제2항) 신설”을 위한 의원발의 개정안(‘18.7.6. 조원진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제출되어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 중에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목적은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 사례인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개도국 빈곤퇴치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선진국의 단순 물적지원 중심 ODA방식에서 탈피, 주민 참여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역량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등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보조사업자를 통해 '09년부터 새마을운동 ODA 추진 중에 있는데, 개도국과의 외교적 관계, 국가적 자산이라는 새마을운동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은 국가의 관점에서 대체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초청연수생, 시범마을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2차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사업의 내역사업은 새마을운동 관련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교육·연수(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새마을금고('19년 예정)), 현지 프로젝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새마을 시범마을 관리), 국제행사(새마을리더십 교류협력 함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역사업은 동사업의 목적달성에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동사업은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 모델을 설정하여 운영 중임

- (1단계 지도자 양성) 새마을교육을 통해 마을·지역 지도자 양성
- (2단계 자립역량 배양) 소규모 현지 프로젝트를 통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실현
- (3단계 개도국 자립) 마을기금 관리역량 배양, 자체적 사업추진 등 완전한 자립

* 새마을운동 ODA 단계적 모델 - 내역사업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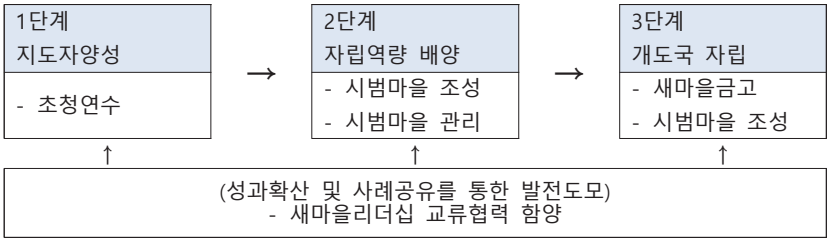

○ 동사업의 주요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성과지표	목표치	실 적	목표달성도(%)
새마을운동세계화 초청교육인원(공통)	430	472	110%
새마을운동 세계화 시범마을 수	41	41	100%
초청연수 교육과정 만족도(%)	97	98	101%

-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성과지표로서의 타당성이 다소 낮으며 목표치도 도전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사업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하나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무이므로 정부 조정을 배제한 민간수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 ODA는 새마을조직(새마을운동중앙회)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행안부에는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조직이 미비하여 자체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보조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됨

○ 외교부(KOICA), 농촌진흥청 등 농촌개발 관련 ODA 사업 추진 중이나, '17.6월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을 계기로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중에 있어 통합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비에서 소규모 행정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총 예산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음

○ 사업규모는 기존 프로젝트 사업(시범마을 조성)의 연속성 유지, 초청연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재정지원 규모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100%로,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도국 ODA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사업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 지급 등)(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근거,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해 사업비를 지정 교부하고 있음

○ 또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장 제 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에 근거,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사업비중 일부('17년에 코이카에서 이관된 초청연수 예산 6.3억원에 대해 공모 시행)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 공모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대체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됨
  * 공모절차 : 행안부 홈페이지 공고 → 선정위원회 개최 → 보조금 교부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고 있어 대체로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함
-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라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으며,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 받음
-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에 따라 10억원 이상 교부사업자는 외부 회계기관을 통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그 외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집행 영수증을 각각 검토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여부를 감시하고 있음
-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에 따라 공모에 의하지 않은 지정교부기관(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해 e-나라도움 상 집행 점검뿐 아니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집행점검 수행함

2-3 보조사업 집행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 정산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정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적절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으나 '15년도 새마을 협력관의 사업비 횡령 발생과 관련하여 협력관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해당 사건을 계기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여 사후조치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부정수급 점검) 및 제45조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의 주요 목적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 사례인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개도국 빈곤퇴치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이므로 국가적 관점에서 동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초청연수생, 시범마을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2차적 수혜자는 명확하고 광범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동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의원발의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어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 중에 있음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구체성이 부족하여 사후조치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활용중인 성과지표의 타당성은 다소 낮으며 목표치도 도전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3-2 정책 제언

○ 동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등 내부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목표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보조유형	자치단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2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방식 변경**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전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 다양한 기념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알 수 있는 결과지표가 미설정 되어 있음 · 다만, 민주화 기념운동의 통일성과 시너지 확보를 위해 민주화 기념 사업회와의 업무 공유를 통해 사업의 역량과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민주화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나 참여인원 등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조, 21조, 제24조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재정지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기념·추모사업 추진)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타당성이 분명함

○ 개별 법령에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법령은 민주화 기념사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광주, 부산, 대구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주주의 교육과 역사적 가치의 보존을 위해 어느 정도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직접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유족 및 유공자이며 다만, 간접적으로 민주화의 가치와 역사적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전체 국민이라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광주 민주인권평화사업 등 5.18지원 사업, 2.28민주운동기념사업,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업이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구현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각 내역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위로하고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함

○ 본 보조사업은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기념사업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여 보고 있음

- 본 사업들의 평균 만족도는 80점을 초과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사업의 효과가 주관적인 만족도인 정성지표로 측정되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나 참여인원 등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업이고 사업을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기도 어려워 민간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임

○ 본 사업은 각각의 고유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은 없지만 사업의 수행에 있어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민주화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결합하여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거나 홍보할 때 더 높은 시너지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고 비민주적 정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 민주화 운동의 중요성을 교육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비 수익적 공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직접적인 사회적 후생의 감소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의 민주의식의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과 각 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는 각 민주화 기념사업에서 소요되는 소요액을 적절하게 산출하여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100%이고 이는 개별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지만, 그 파급효과가 전국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관련된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인권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관련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던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직할시로 지자체 보조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재원을 집행하였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가 광역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은 5.18기념재단 등 관련 민간단체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보조사업의 성격도 지님

-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민주화 운동단체의 실질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또는 사업추진 시 보조금반납 조치 및 사업변경 요구를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관련 지자체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회계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했던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을 통해 사전·사후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전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현황 점검을 통해 부정 집행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

-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했던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있어 부정수급이나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최종 사용자인 민간단체 집행의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국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 및 목적이 분명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민주화 운동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임

- 다만, 사업의 수행방식, 성과지표, 보조금 관리에 있어 사업방식의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큰 틀에서 민주화 기념 사업회와의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단체 간 인력 및 업무노하우 공유, 공동행사 진행 등을 통해 민주화 기념사업의 역량과 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합을 통해 체계적으로 민주화 기념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 만족도의 위주의 성과지표 외에 민주화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나 참여인원 등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보다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지자체에 보조 사업이나 최종 집행은 민주화 단체이므로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 대책 등에서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점검 체계 및 절차를 적절하게 구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사업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전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본 사업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지원과 협업을 강화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의 추진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 (민주화운동 인식도 및 만족도)가 설정되어 있으나 인식도의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기관 자체사업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원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민주화보상법」 제23조(기념사업)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과 제14조(보조 금 및 출연)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명확하고,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명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민주화 기념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국정과제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의 세부내용의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직접적으로 6.10민주화 운동 유족과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 전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대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민주화 운동 기념'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모사업, 민주주의 교육, 역사정리 및 연구, 사료수집 및 관리 등 내역사업은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 (민주화운동 인식도 및 만족도)가 설정되어 있으나 인식도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홍보강화,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특성상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보조금을 투입해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보조금 외 다양한 자체사업을 개발하여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기관의 역량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 유관단체 지원사업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 네트워크 및 동아시아 민주인권 평화네트워크)과 일부 중복이 있으며 개별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지원과 사업방식의 협력과 공유를 통하여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어느 정도 민주화 노력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적 교훈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는 사업

○ 이러한 기념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단기적인 후생손실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관련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총 예산규모 (이전비 포함)는 2017년, 82억 2018년 114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사업 수행 기관의 자생적 독립성 제고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자체사업 수익 개발 및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 대상이 아니며 매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및 국회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선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치유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선정되고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법령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 보조사업자로서 선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을 위한 관리절차를 구비했음

○ 이러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정기 감사와 지도점검을 받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 관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됨

○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원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내역사업들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나 지역의 개별 민주화 사업과의 협업, 사업의 성과제고, 다양한 기념사업의 발굴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관련 유사 민주화 기념사업과의 협업, 기관 자체사업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민주화 운동기념 사업과 통합하거나 관련 사업들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민주화 기념사업과의 공동개최, 홍보, 업무 공유 등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홍보, 참여형 프로그램의 확대 등의 개선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생활공감정책 추진
보조유형	자치단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6.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3.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18백만원) ·동 보조사업은 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현장에 참여·모니터링의 강화로 정책의 환류기능을 도모하며, 국정 및 시도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됨 ·동 사업 규모 자체가 소규모('18년 총 88백만원, '19년 총 180백만원)이고, 보조사업자가 17개 시·도 각 지방자치단체이며, 정률보조(50%)로 지자체의 부담이 적절히 분담되어 있음.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을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정책제안 성격이 지자체에 대한 정책 제언이라면 본 사업의 국고보조 여부 지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별로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중앙정부의 비예산 정책(성과관리, 경진대회)으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생활공감 모니터단 역량강화 및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공감정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임

○ 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시·도 생활공감정책 온-오프라인 활동 지원' 단일 내역사업으로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생활공감정책 추진에 대한 의무 규정과 이에 근거한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지침 제9조의 모니터단의 활동 지원, 제12조의 행정안전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채택 제안의 정책 및 서비스 반영 의무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 생활공감형 정책설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6기('17.3.~'19.2) 3,858명이 전국 시군구별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동 보조사업은 모니터단의 역량 강화 및 활동을 지원하고 위한 사업임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현장에 참여·모니터링의 강화로 정책의 환류기능을 도모하며, 국정 및 시도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지역별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수혜자는 전국 생활공감 모니터단 회원(6기 3,858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 분야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안하여 파급력이 생긴다면 외부효과가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지방자치단체별(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역량강화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소한의 비용(운영비, 행사비 등)만을 지원함으로써 보조사업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고 있음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을 매년 1만건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5천여건 이상 신속한 민원제보로 생활불편 해소에도 기여해 오고 있음

○ 소액 사업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참여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효과성이 확인되었다고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생활공감모니터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최종확정· 위촉 절차로 구성되고, 전국 지역단위별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연찬회, 워크숍, 컨설팅 및 시도대표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전체 모니터단 운영방향 및 우수사례 등 공유 등 전국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의 발굴·실행 등을 위한 것임

○ 그러나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정책제안 성격이 지자체에 대한 정책 제언이라면 본 사업의 국고보조 여부 지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별로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중앙정부의 비예산 정책(경진대회, 지자체 합동평가 등)으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 규모 자체가 소규모('18년 총 88백만원, '19년 총 180백만원)이고, 보조사업자가 17개 시·도 각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동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기준보조율 122번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기준보조율을 50%로 설정 운영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에 대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직접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 결정과 참여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 사업추진의지,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역 지자체별로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도 생활밀착형 정책설계를 위한 지역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지자체)가 매년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내역 점검 후 보완 및 집행잔액, 이자를 반납 받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 유지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매년 지자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교부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집행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실적을 검토하는 등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정기 현지 확인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사후 시정조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업 시행시 지방계약 법령등에 따라 집행 하며 보조금 정산검사 및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 수감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보조사업자 각 지자체별 소액의 보조사업이며(2018년 기준 최고 경기 10,700천원~ 최저 세종 1,400천원), 현재까지 집행상 문제로 인한 개선조치 요구나 페널티 적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현장에 참여·모니터링의 강화로 정책의 환류기능을 도모하며, 국정 및 시도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 규모 자체가 소규모('18년 총 88백만원, '19년 총 180백만원)이고, 보조사업자가 17개 시·도 각 지방자치단체이며, 정률보조(50%)로 지자체의 부담이 적절히 분담되어 있음

○ 그러나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정책제안 성격이 지자체에 대한 정책 제언이라면 본 사업의 국고보조 여부 지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별로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중앙정부의 비예산 정책(성과관리, 경진대회 등)으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의 정착된다면 중앙정부의 보조를 적절한 수준에서 감축할 필요가 있으며, 비예산 사업(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자체 합동평가 가점 등)으로 충분히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민 참여 정책제안의 실제 정책화 된 성과 등 질적 우수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의 내역사업은 노후주택 개량사업, 정주생활지원금,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교육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음 · 정주생활지원금의 금액을 증액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금 복지급여 대신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관계의 변화와 서해 5도 지역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제1차 종합지원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에 종합발전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2차 종합발전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 5년 중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현금복지 대신에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남북분단 및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사업임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3조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에서 행정안전부는 특별법에 따라 노후주택 개량사업, 정주생활지원금, 생활필수품 운송비,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 지급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1조, 12조, 14조, 15조 >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제14조(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서해 5도는 영토주권과 국방·안보적 요충지로써 타 도서와는 다른 특수성으로 주민의 거주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연평도 포격('10.11.23.) 이후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되고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임

○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수혜자 범위가 서해 5도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들 - 노후주택 개량사업, 정주생활지원금, 생활필수품 운송비, 교육비 지원 -은 남북분단 및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정됨

○ 보조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들은 사업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교육비 지원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학생의 정주환경 제고 및 교육복지를 증진함
-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주민의 안정적 생활보조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액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며, 2018년부터는 거주기간 10년 이상인자는 10만원, 10년 미만인자는 5만원을 지급하는 차등급여 방식을 택함
- 해상운송비 지원은 육지와 도서간 생활필수품 물가 격차를 줄여 생활안정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유류비, 가스비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함
-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주택개량을 위한 건축비(가구당 4,0000만원)를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정주의욕을 고취함

○ 행정안전부는 제1차 종합발전지원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집행해 왔으며, 4개 사업(정주생활금 지원, 해상운송비 지원, 교육비 지원, 노후주택 개량)에서 총 1,449억원(국비 1,021, 지방비 255, 민자 등 173)을 지원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왔음

- 노후주택 개량 공사비 지원, 정주생활비 지원,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정주인구 증가를 가져옴 ('10년) 8,348명 → ('17년) 9,584명 (증 1,236명)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

구 분	개량실적 (동)	예산액(억원)			
		계	국비 (80%)	시비 (14%)	군비 (6%)
계	**927**	**310.93**	**191.96**	**33.5**	**89.53**
2012년	243	56.00	28.00	4.90	23.10
2013년	134	52.50	38.00	6.60	7.90
2014년	140	52.05	34.00	5.90	12.15
2015년	120	45.50	28.40	4.97	12.13
2016년	100	37.34	23.00	4.03	10.31
2017년	105	35.54	20.56	3.60	15.44
2018년	85	32.00	20.00	3.50	8.50

- 옹진군은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추계인구)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지역으로 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옹진군의 연평균 1인당 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통해 종합발전지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옹진군의 1인당 GRDP와 연평균 증가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6년		연평균 변화율 ('11~'16)
	GRDP	1인당 GRDP	GRDP	1인당 GRDP	
전 국	1,330,888,239	26.652	1,641,957,177	32.041	4.67%
인 천	61,854,353	22.454	80,859,230	27.817	6.15%
옹 진	317,536	16.296	429,594	20.121	7.06%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청에서 GRDP는 시군별 자료까지 발표,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추계인구)는 시도별 자료만 발표하여 옹진군의 1인당 GRDP는 추계자료가 없어 주민등록인구로 산출한 추정치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수익은 낮거나 발생하지 않고 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다른 정책수단이나 민간에서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옹진군의 재정자립도가 16.86%로 전국 군 평균 재정자립도(23.42%)보다 낮은 지자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들은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후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되므로 유사·중복사업이 없음

○ 서해 5도의 국가 안보상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노후주택 개량 수요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해상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지속할 수요가 충분하게 존재함

- 다만, 남북긴장관계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제 1차 종합지원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원 제도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서해 5도 주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당초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개선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게 되어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국무총리 주관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재정지원 규모가 적정함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5,775백만원	7,621백만원	7,618백만원
	67%	78%	80%
자치단체부담	2,834백만원	2,174백만원	1,905백만원
	33%	22%	20%
민간단체부담*(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8,609백만원	9,795백만원	9,523백만원
	100%	100%	100%

○ 서해 5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 80%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는 보조율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3조 >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련 지자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안부 장관이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종합발전계획 변경과 연차별 사업계획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가 갖추어져 있음

○ 행정안전부는 특별법에 따라 옹진군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행정안전부는 매년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관련 부처 협의 후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연도별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며, 보조금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을 집행함

○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보조금 집행상황 파악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가 없었고, 단순 과오 지급된 사례가 일부 있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8조(지원금의 반환),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 제13조(환수)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함

○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에 따라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확정, 반환 등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은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에서 보조사업의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효과가 구체적이며 명확함

○ 제 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종료 시점에 맞춰 사업의 존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규모가 적정하고 합리적임. 다만 현금 복지급여를 확대하는 급여방식을 지양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에서 사업수혜자의 자격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관리함

3-2 정책 제언

○ 제1차('11~'20)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계획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긴장관계가 완화되는 현실에서 제 2차 종합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기('21~'25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8년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함에 따라 노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보편수당 금액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40만원에 달하여 타 지역 거주 노인들과 비교하여 불평등한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서해 5도 지역 주민에 대한 종합발전지원은 현금 급여 대신에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가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우수저류시설설치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재해예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상추진할 필요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와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및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음 ·본 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주로 도심지에 설치됨에 따라 민원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며, 이에 따라 전체 사업지구 중 일부사업지구에서 사업반대, 민원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하여 '17년도는 집행률이 62%에 불과하였으나, '18년도는 81.7%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집행율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와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가 법령에 의거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19조의2>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심지 침수피해지역의 침수해소 및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우수저류시설은 태풍·호우시 침수를 유발하는 위험 홍수량을 일시에 지하 저류시설에 저류하여 도심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시설물이며, 저류시설 상부에는 공원, 체육·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우수저류시설은 국정과제 및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예방사업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도심지 침수피해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시 침수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혜자이나, 침수피해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우수저류시설설치로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약 3년이 소요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적정규모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형태임

구 분	'17년	'18년	'19년
□ 우수저류시설설치	71,046	69,546	55,318
▪ 우수저류시설설치	32개소 71,046백만원	22개소 69,546백만원	24개소 55,318백만원

○ 우수저류시설설치는 기획재정부 중기사업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우수저류시설 설치규모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침수피해지역에 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실적>

2016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7개소 추진(계속·마무리 29, 신규 8) - '1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18개소에서 총 41회 가동, 우수저류시설 배수구역 내 침수피해 미발생
2017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2개소 추진(계속·마무리 26, 신규 6) - '17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10개 시도 23개소에서 총 63회 가동, 우수저류시설 배수구역 내 침수피해 미발생
2018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2개소 추진(신규 6, 계속·마무리 16) - '18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9개 시도 34개소에서 총 83회 가동, 우수저류시설 배수구역 내 침수피해 미발생

- 다만, 본 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주로 도심지에 설치됨에 따라 민원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며, 이에 따라 전체 사업지구 중 일부사업지구에서 사업반대, 민원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하여 '17년도는 집행률이 62%에 불과하며, '18년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우수저류시설 등 재해예방사업은 수익요소가 없어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며, 지자체 재정여건상 단독수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자연재난은 사후 처리 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지원의 필요성은 있음

○ 환경부의 도시침수대응사업(하수저류사업)과는 중복성 배제를 위하여 '16년부터 환경부와 업무를 공유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침수예방과 두 사업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사업간 차이점>

구분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도시침수대응 사업 (하수저류사업)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하수도법
설치 목적	○ 첨두홍수량(최대 강우가 발생하는 2~3시간) 일시 저류를 통한 상습저지대 침수예방	○ 오염물질 침전·배출을 통한 수질오염(극히 일부분의 침수예방 가능)
설치 대상	○ 상습 침수발생 지역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이외의 침수 발생 및 우려지역	○ 하수관거 개량 불가 지역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설치 위치	○ 집중호우시 홍수량을 조절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침수지역의 중·상류에 설치	○ 홍수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하여 하류에 설치
설계 기준	○ 상대적으로 극한 강우량(30~50년 빈도 강우량) 적용 * 시간당 95~103㎜ 극한 강우량 적용	○ 최초 오염물질 제거에 중점을 두어 간선과 지선에 따라 다른 강우량 적용 * 간선 30년(95㎜/시간), 지선 10년(78㎜/시간)
설치 효과	○ 집중호우시 우수처리로 도시침수 예방(상부는 공원,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	○ 하류지역에 설치되어 침수예방에 한계

○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호우시 빗물유출량이 증가되어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높으며, 사업이 폐지될 경우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해소가 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가중될 우려 역시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우수저류시설은 타당성 조사 및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적정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말까지 침수지역 192개소 중 91개소가 해소되었고 잔여 침수지 101개소의 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지자체의 사업수요 및 추진 중인 사업지구 진척도 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반영한 추진이 필요함

○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 50%를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인 101개소 9,343억원에 대해서는 중기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기간별 재정소요액을 추계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자체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자체 수요조사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본 사업은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목적 시설을 활용하는 등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매년 3월중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사업계획 수립절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지 취합 제출 (시도→행안부) (3월)	⇒	신규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 계획안 확정 (행정안전부) (5월)	⇒	보조금 예산안 사전통보 (행안부→지자체) (9.15.한)	⇒	사업계획 확정·통보 (행안부→지자체) (12월)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관련 법령, 현장점검 및 선정심의회를 통해 타당성·효과성이 검증된 신규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확정 및 추진지침”을 마련, 사업의 계약, 집행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조기추진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조기·이월방지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주간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조사업이 정상 집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민원 등으로 이·불용액이 많으므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집행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점검 실시 후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확정 및 추진지침”을 마련,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7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8장(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 동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있음

○ 주민 민원, 보상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상대적으로 이·불용액이 많으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정부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등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회의에서 사업의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미비사항 보완 및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와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태풍·호우시 침수를 유발하는 위험 홍수량을 일시에 지하 저류시설에 저류하여 도심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국정과제 및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주로 도심지에 설치됨에 따라 민원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며, 이에 따라 전체 사업지구 중 일부사업지구에서 사업반대, 민원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하여 '17년도는 집행률이 62%에 불과하였으나, '18년도는 81.7%로 상향되었음을 고려하고 재해예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상추진 하되 집행율 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호우시 빗물유출량이 증가되어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높으며, 사업이 폐지될 경우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해소가 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환경부의 도시침수대응사업(하수저류사업)과는 중복성 배제를 위하여 '16년부터 환경부와 업무를 공유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침수예방과 두 사업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보조유형	자치단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상추진할 필요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와 제1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개선 등),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규제(거주제한, 행위제한 등) 등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취약시설·지역을 정비·개선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수익요소가 없어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며, 지자체 재정여건상 단독수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사업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임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와 제1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개선 등),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가 법령에 의거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2조 및 제14조>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다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규제(거주제한, 행위제한 등) 등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취약시설·지역을 정비·개선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수익요소가 없어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며, 지자체 재정여건상 단독수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사업은 국정과제 및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예방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습침수지역, 유실·붕괴위험지역 등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 정비·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일차적 수혜자는 해당 지자체와 완료지역 거주 주민들이나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재해취약시설·지역 정비·개선 및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 해소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한다는 재해예방사업 목적에 따라 재해유형별로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로 내역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보조사업 관련 근거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해당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기간은 약 3년이 소요됨에 따라 기재부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적정규모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재해예방이라는 사업 목표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사업 중기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임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등에 따라 B/C분석, 전문가 검토 및 설계심의 등을 거쳐 사업의 계획, 집행, 효과성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을 보다 도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실적>

2016	'16년 재해위험지역 494개소 정비(223개소 해소) - 재해위험지구 300개소 정비(124개소 해소) - 급경사지 194개소 정비(99개소 해소)
2017	'17년 재해위험지역 490개소 정비(159개소 해소) - 재해위험지구 291개소 정비(69개소 해소) - 급경사지 199개소 정비(90개소 해소)
2018	'18년 재해위험지역 437개소 정비(149개소 해소) - 재해위험지구 284개소 정비(73개소 해소) - 급경사지 153개소 정비(76개소 해소)

- 본 사업의 최근 3년간 실집행율은 90%대이며, '18년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 집행율 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실집행액>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385,423	459,823	459,823	459,823	33,304	493,127	450,739	39,004	3,383	91.4
2016	351,913	362,172	362,172	362,172	44,898	407,070	365,116	35,780	6,174	89.7
2017	352,227	383,103	383,103	383,103	48,859	431,962	346,751	43,758	7,127	90.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은 사실상 민간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또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단독수행이 어렵고, 자연재난은 사후 처리 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지원의 필요성은 있음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재해유형을 구분하여 타 사업 계획을 충분히 반영,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난을 유발하는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지역 집중호우(일 80mm이상) 일수가 1970년대 연간 18일에서 2000년 이후 27일로 1.5배 증가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는 필요하다고 여겨짐

- 재해위험개선 지구의 경우 매년 평균 88개소 증가되는 반면,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지구는 평균 58개소로 위험지구 증가추세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음

<재해위험지역 지구수>

(단위 :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구수	1,539	1,585	1,632	1,748	1,915	1,963	2,069
증가수		46	47	116	167	48	106

○ 사업 폐지시 기후변화로 태풍·집중호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국지적 저지대 침수 및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18년 태풍·호우특보 597회 발령, 최근 5년 평균 328회 대비 182% 증가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규모, 사업목표 달성 여부 등 검토를 위하여 중앙 및 시도에서 직접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거쳐 사업 규모, 계획, 집행, 효과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매년 전년도에 제출된 지자체의 사업수요 및 추진 중인 사업지구 진척도 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업 수요 등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함

○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 50%를 지원하고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검토가 반영된 사업비에 대하여 중기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소요액을 추계하고 있으나 우선순위 및 체계적인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등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사업수요, 추진의지,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3월중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음

- 또한 신규사업 대상지구에 대한 시·도별 사업계획 조기 수요조사(3~4월), 지구별 사전검토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관련 법령, 현장점검 및 선정심의회를 통해 타당성평가·효과성이 검증된 신규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지침”을 마련, 사업의 계약, 집행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조기추진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조기·이월방지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주간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조사업이 정상 집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불용액의 발생으로 실 집행율이 90%대에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집행율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점검 실시 후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재해위험지역정비 확정 및 추진지침”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을 마련,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7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8장(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 동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있음

○ 주민 민원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상대적으로 타 사업에 비해 이·불용액이 많으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정부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등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회의에서 사업의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미비사항 보완 및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와 제1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개선 등),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규제(거주제한, 행위제한 등) 등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취약시설·지역을 정비·개선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수익요소가 없어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며, 지자체 재정여건상 단독수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율이 90%대이며, '18년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상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3-2 정책 제언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은 사실상 민간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또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단독수행이 어렵고, 자연재난은 사후 처리 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지원의 필요성은 있음

- 다만, 사업추진시 매년 제출된 지자체의 사업수요 및 추진 중인 사업지구 진척도 등을 감안하한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반영·추진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업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조사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보조유형	자치단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완료 지구 및 수요감소 등을 감안하여 '20년부터 3,270백만원의 10%정도에 해당하는 3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세종시 재해위험지구 28개소 중 27개소가 완료되어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세종시의 도시개발로 재해위험지역이 감소하고 최근 3년간 실집행율이 65.9%-97.0%로 편차가 많이 나며, '18년은 역시 92.2%에 이르고 있으나 집행율 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와 제1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개선 등),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가 법령에 의거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2조 및 제14조>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다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규제(거주제한, 행위제한 등) 등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취약시설·지역을 정비·개선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수익요소가 없어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며, 지자체 재정여건상 단독수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사업은 국정과제 및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예방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습침수지역, 유실·붕괴위험지역 등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 정비·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일차적 수혜자는 해당 지자체와 완료지역 거주 주민들이나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재해취약시설·지역 정비·개선 및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 해소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한다는 재해예방사업 목적에 따라 재해유형별로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내역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보조사업 관련 근거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해당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기간은 약 3년이 소요됨에 따라 기재부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적정규모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재해예방이라는 사업 목표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사업 중기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임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등에 따라 B/C분석, 전문가 검토 및 설계심의 등을 거쳐 사업의 계획, 집행, 효과성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을 보다 도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실적>

2016	재해위험지역 2개소 해소
2017	재해위험지역 4개소 해소
2018	재해위험지역 3개소 정비 중

- 다만, 본 사업의 최근 3년간 실 집행율이 65.9%-97.0%로 편차가 많이 나며, '18년도 역시 90%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어 예산의 조정이 필요함

<최근 3년간 실집행액>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4,227	4,227	4,227	4,227	-	4,227	4,102	125		97.0
2016	7,041	7,041	7,041	7,041	125	7,166	6,483	683		90.5
2017	6,337	6,337	6,337	6,337	683	7,020	4,176	2,788	56	65.9
2018. 9	3,270	3,270	2,288	2,288	2,788	5,076	2,235			68.3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은 사실상 민간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또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단독수행이 어렵고, 자연재난은 사후 처리 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지원의 필요성은 있음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재해유형을 구분하여 타 사업 계획을 충분히 반영,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난을 유발하는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지역 집중호우(일 80mm이상) 일수가 1970년대 연간 18일에서 2000년 이후 27일로 1.5배 증가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대비는 필요하다고 여겨짐

○ 사업 폐지시 기후변화로 태풍·집중호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국지적 저지대 침수 및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세종시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음

※ '18년 태풍·호우특보 597회 발령, 최근 5년 평균 328회 대비 182% 증가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규모, 사업목표 달성 여부 등 검토를 위하여 중앙 및 시도에서 직접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거쳐 사업 규모, 계획, 집행, 효과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자체의 사업수요 및 추진 중인 사업지구 진척도 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는 도시개발로 재해 위험지역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 50%를 지원하고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검토가 반영된 사업비에 대하여 중기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소요액을 추계하고 있으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한 재정소요 추계가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등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사업수요, 추진의지,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3월중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음

- 또한 신규사업 대상지구에 대한 시·도별 사업계획 조기 수요조사(3~4월), 지구별 사전검토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관련 법령, 현장점검 및 선정심의회를 통해 타당성평가·효과성이 검증된 신규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지침”을 마련, 사업의 계약, 집행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조기추진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조기·이월방지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주간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조사업이 정상 집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불용액의 발생으로 실 집행율이 90%대에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집행율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점검 실시 후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재해위험지역정비 확정 및 추진지침”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을 마련,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7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8장(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 동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있음

○ 주민 민원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등 상대적으로 타 사업에 비해 이·불용액이 많으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정부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등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회의에서 사업의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미비사항 보완 및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와 제1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개선 등),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규제(거주제한, 행위제한 등) 등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취약시설·지역을 정비·개선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자체 재정여건상 단독수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함

- 다만, 본 사업은 세종시의 도시개발로 재해위험지역이 감소하고 재해위험지구 28개소 중 27개소가 완료됨. 또한 최근 3년간 실집행율이 65.9%-97.0%로 편차가 많이 나며, '18년은 92.9%에 이르고 있으나 이·불용액 발생 등을 감안하여 '20년부터 3,270백만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3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은 사실상 민간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또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단독수행이 어렵고, 자연재난은 사후 처리 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지원의 필요성은 있음

- 다만, 진행 중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결과에 바탕한 위험지역의 신규 지정 및 재정소요 추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접경권 발전지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3.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감축(35억, 2019년예산 기준 9%) ·접경권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 내역사업의 실집행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현재 실집행율 50% 수준). 또한, 11년 계획단계 이후 최근 남북관계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함. ·평화누리길, 한탄강주상절리길, 통일을 여는 길 위주로 사업을 완료하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의 경우 향후 교통량 뿐 아니라 지선으로 연결된 동서녹색평화도로(국토부) 사업 추진율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접경권발전계획에 포함된 관련 부처의 광역사업의 중복성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 2017. 7. 26.>

이하 생략.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 1항, 2항 >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보조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내역사업: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통일을 여는 길
- 특별법 제5조에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바, 이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수혜자는 접경지역 주민들로 명확하지만, 그 수혜범위는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음.

- 최근 남북관계(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긴장 완화*로 이 사업의 목적성이 더욱 구체화되고 타당성이 높아짐.
  * 417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동서 도보 순환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 평화누리길, 한탄강 주상절리길 일부구간 개통 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등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개통 전후 관광 (전) '17년 8,598명 → (후) '18년 373,500명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개별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명확히 제시되었음.

- (평화누리길 조성) 접경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Tour de DMZ 국제자전거 대회 개최('18년 제3회 대회, 3개 부문 3,500명) *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회 및 걷기행사 연간 25,800명('17년 기준)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접경지역 동·서간 교류 활성화 및 연계발전 도모 * 행정안전부 : 지방도 구간 6개소(57.9km, 총사업비 2,395억원) * 국토교통부 : 국도 구간 4개소(65.9km, 총사업비 9,406억원) -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한탄강 주변 역사·문화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한탄강(포천·연천·철원) 주상절리길 걷기행사 연간 8,600명('17년 기준) - (통일을 여는 길 조성) DMZ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분단의 상징성을 활용한 세계인이 찾는 체류형 도보여행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11년~30년까지 20개년 사업으로 행안부 사업은 광역사업으로 평화누리길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록, 한탄간주상절리길이 진행되고 있고, 통일을 여는 길 사업이 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됨.

○ 성과지표는 주로 과정, 산출지표(공정률)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관광객 증가 등 개발사업의 성과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2020년 이후 사업성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보조 타당하나 보조율 차등보조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70%를 보조하고 있으나, 고양, 춘천 등 인제, 양구에 비해 접경정도도 낮은 지역도 동일 보조

○ 접경지역의 낙후정도와 향후 관광객 증가를 예상할 때 사업의 연장은 타당하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의 공정률로 미루어보아 재정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자체 사업으로 완료 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군부대 협의 등 특수 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실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개별 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아 사업별로 적정하게 구성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평화누리길 사업 예산 30% 증가하였으나, 실집행률 개선 지침(사전행정절차 이행 완료 사업장 우선 예산 지원, 전년도 실집행 실적 70% 미만 사업장 페널티, 기 완료사업장 관리운영 부분 점검 인센티브)으로 미루어보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행지연이 만성적임.

- 지자체에 기 통보('18.7.31.)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실집행률 개선지침에 따라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장 위주로 '19년 예산을 우선 지원하였고, 주기적(매월)으로 사업 단계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실집행율 현황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18,560	18,560	18,560	18,560		18,560	11,875	6,685		64.0
2016	27,350	27,350	27,350	27,350		27,350	13,196	14,154		48.3
2017	28,760	28,760	28,760	28,760		28,760	14,698	14,062		51.1
2018. 9월기준	29,710	29,710	25,222	25,222		25,222	10,074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낙후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동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구조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 판단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추진지침 등을 통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행안부 계획에 따른 지자체 수행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 명확함.

- 보조사업자(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 또는 우선사업 대상지를 평가하여 사업대상지 확정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추진지침, 결산지침 등을 통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집행지연이 빈번함. 현장점검, 실집행율 개선지침 마련 등 중앙부처의 집행 적정성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됨.

- 2019년 상반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보고회, 현장점검 계획이 수립되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추진지침, 결산지침 등을 통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시군 결산보고서 등 증빙자료가 2019년 3월 이내 제출될 예정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자체 자본 보조 사업으로 부정수급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음.

○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부정수급 집중 점검계획, 결산지침, 추진지침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접경권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 내역사업의 실집행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11년 계획단계 이후 남북관계 여건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2019년 기준 90억 감축으로 판정함.

○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접경권발전계획에 포함된 관련 부처의 광역사업의 중복성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평화누리길, 한탄강주상절리길, 통일을 여는 길 위주로 사업을 완료하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의 경우 향후 교통량 뿐 아니라 지선으로 연결된 동서녹색평화도로(국토부) 사업 추진율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제주4.3평화재단지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4.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상추진**이 필요함 ·다만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알 수 있는 결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음 ·본 보조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관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사업의 효과달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70주년 기념사업, 전 국민 바로알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효과를 알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예) 일반국민 4,3사건 인지도 등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근거가 명확함

○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 추모기념일지정, 4.3 유족보존 및 유해발굴 기념사업 추진으로 구성되어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명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폭력으로 인하여 양민들이 희생당하였고 이를 후손인 전국의 국민들이 기억해야 할 사건으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명확한 편임

- 다만, 희생자 및 후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된 후에는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수혜자는 직접적으로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간접적으로 불행한 역사를 기억해야 할 일반국민으로써 수혜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 주요 목적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한다로 규정하여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동 보조 사업은 유적보존 및 유해 발굴, 70주년 기념사업, 전 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사업의 효과달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실적이 제시되지 않음

- 따라서, 70주년 기념사업, 전 국민 바로알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효과를 알 수 있는 일반 국민 4,3사건 인지도와 같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고유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업으로 민간에서 수행불가능하며 타 사업과 유사 중복성은 없음

○ 유족의 노령화, 유적발굴의 어려움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며 사업의 미 추진시 유족의 항의 및 역사적 교훈의 퇴색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장기적으로 사업목적 달성 시 지자체의 기념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국가가 전액을 보조하고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자치단체가 맡는 것은 타당한 분업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보조사업 규모와 사업구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음

○ 단일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이 없으며 국회 예산심의에서 보조금의 규모가 결정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의 '인권보호'에 해당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선정은 타당하며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보조사업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제출된 보고서에 따라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반납토록 하는 등 집행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잔액 및 이자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방문으로 적정 집행을 확인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매년 보조사업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제출된 보고서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반납토록 하는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보조사업 수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을 포함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가 하나의 자치단체이므로 부정수급의 가능성은 낮으며 부정수급의 가능성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음

- 다만, 단일사업자로서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부적절한 집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현장점검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본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관리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사업보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2 정책제언

○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국민 4.3인지도와 같은 결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자치부
사 업 명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보조유형	자치단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2.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을 요구함 ○ 본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함 ○ 사업의 종료시점이 연기될 경우, 적정한 수준의 재정지원 규모 측정과 합리적인 집행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성이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제14조 지자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 반환공여구역을 도로·공원·하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60이상 지원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본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함

○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광범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본 사업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는 것은 아님. 다만,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현재까지 경기침체 등 여건변화에 따른 지자체 요구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14차까지 변경하였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법보다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목표는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 외에는 다른 정책수단을 찾기 어려움

○ 추진의 시급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됨

-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난 직후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 부처 협의하여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2년까지는 추진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재배치 등 이전 지연으로 26개 미군기지 중 주요 9개 기지는 '19년 이후에나 반환이 예상되므로 사업 연장 필요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된 보조율(주변지역 도로 50%, 토지매입비 평균 68%)이 적용되어 규모가 결정되고 있음

- 본 사업은 특별법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각 시·도에서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사업비 등 규모가 확정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과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촉진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 지자체는 「동법 시행령」 [별표 1, 2] 에 구체화 되어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은 명확함

-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일반적인 차원의 보조사업 관리체계가 수립, 운영되고 있음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원활한 추진 및 보조금 집행상황 파악을 위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
-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일반적인 차원의 보조사업 사후관리체계가 수립, 운영

-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결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 규정 외 별도의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규정 없음

-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연차별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종료시점이 연기될 경우, 적정한 수준의 재정지원 규모 측정과 합리적인 집행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자치부
사 업 명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보조유형	자치단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을 요구함 ○ 본 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 촉진 및 이전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2005년 평택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2022년까지를 기한으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평택지역개발계획(2006~2022년)' 완료 시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에는 폐지되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성이 있음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 15조(연차별계획), 제19조(사업비 지원) 등에 근거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본 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 촉진 및 이전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수혜자가 광범위하다고 보기 어려움

- 평택지원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평택시민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는 것은 아님
-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외부효과나 누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통해 평택지역의 발전 촉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복지시설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평택시 및 평택시민의 의견을 반영 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함(2015.1.5.)
- 이후 실행 가능성 제고 및 계획 내실화를 위해 지역개발계획 2차 변경(2018. 1.29, 사업간 사업비 조정), 지역개발계획 3차 변경(2019.1. 부진사업을 제외하고 대체사업 발굴, 평택지역개발계획 기간 2년 연장) 추진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보조사업의 정량적인 목표가 제시되었고, 목표달성 정도가 검토됨: 2018년까지 국비 5,658억원 중 4,812억원 지원(85%), 행정안전부 11개 사업 중 7개 완료, 4개 추진 중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법보다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민 피해의식 해소 및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평택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므로 유사·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된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평택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정지원 규모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평택지원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와 협의를 거쳐 사업비 등 규모가 확정되어,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정하며 사업비 적정

○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비 100% 보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122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의 일환인 평택 복지타운 조성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 조건으로서 복지서비스 국가제공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개발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평택시가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회계결산, 정산 등을 시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매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도별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보조금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통보하고, 회계결산 등을 실시함

○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보조금 집행상황 파악을 위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조치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일반적인 차원의 보조사업 사후관리체계가 수립, 운영

-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결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 규정 외 별도의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규정 없음

- '평택지역개발계획(2006~2022년)'에 따라 매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지자체의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 촉진 및 이전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2005년 평택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2022년까지를 기한으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평택지역개발계획(2006~2022년)' 완료 시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에는 폐지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 사업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의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회계결산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집행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여 사업방식 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 내역사업 중 지방회계센터운영은 예산 비중이 크지 않지만 사업 중요도 및 외부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에서부터 사업집행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 보완하는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해당사업의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효과성, 사업 지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함 · 사업관리 적절성은 소규모사업으로 국고보조비 지침 전체를 규정으로 제시하였으나 적절하지 않음으로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 마련과 이를 실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관리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 근거가 명확함

- 지방회계법 제13조 제 2항에 의거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준을 토대로 본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내역사업으로는 지방회계전문기관 운영인데 지방회계법 시행령 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통 적용할 회계 기준 및 지방재정통계 산출 및 분석 등 국가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사업은 공약사업, 국정과제, 계획사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방재정통계 작성,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조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됨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사업에 대한 수혜범위와 외부효과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음

- 1차 수혜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제시되어야 함. 세부설명 자료는 통계자료 자체를 제시하고 있어서 본 사업의 수혜대상자 및 혜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함. 본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지자체 회계 담당자 외 지방공기업,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음. 수혜대상자들의 영역뿐만 아니라 규모도 파악하고 성과관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야 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사업의 내역사업 내용들은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에 적절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수행된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사업의 기간에 대한 제시가 없어 각 사업의 일정 등에 대한 제시가 사업 수행의 적절성이나 효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기관운영의 목표와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연구개선지원을 통해서 기관 운영의 목표와 연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사업이 계획한 목표 대비 달성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2017년도, 2018년의 실적이 해당 연구지원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혼란스러움. 본 사업은 재정통계 관련 연구수행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각 교육의 실적이 본 사업의 효과로 제시된 것은 관련성이 낮음

- 성과지표는 기관만족도로 제시하였는데 기관통계자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사업성과를 확인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사업은 국가의 보조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됨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사업의 사업 중복성은 증빙자료로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 가능성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자체의 회계결산 시스템과 중앙부터의 회계결산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서 본 보조 사업으로 지방행정지원에 구체적인 도움 정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사업의 긴급성이나 연장 필요성 근거는 사업폐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내용 근거는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제시한 근거자료는 회계통계결과를 제시한 것이지만 통계결과 분석결과가 사업의 연장성과 연계성을 제시되어야 함

- 사업폐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재정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사업에 수행의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사업은 보조금의 규모가 적절함

- 본 보조 사업은 해당사업 전체의 7% 정도를 차지하며 사업 연구지원의 인건비 비용이 기획재정부에 규정하는 학술연구용역 기준 단가를 토대로 제시하여 적절함

- 보조사업의 규모가 지방회계통계센터 전체 소요 예산의 연구지원에 적절하도록 구성됨

○ 현행 보조율은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고 있고 총 사업비 중 국가 보조와 자부담이 함께 재정으로 책정되어 적절함

1-6 사회적 가치 실현

○ 해당사항이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지원사업의 주체는 법적 근거에 의해 지정되어 있어 비공모 방식으로 공모관련 규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사업과 관련된 자격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함

- 해당사업은 연구용역 또는 책임연구원의 연구역량 등에 대한 평가기준들이 있는 것이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성과를 낼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평가 기준마련이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지원사업의 집행에 관리와 단계별 집행 점검 등에 대한 규정은 국가보조금 전체 집행에 대한 규정에 준하고 있고 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집행의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해상사업 점검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점검 지침이나 규정이 없음으로 구체적인 점검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사업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을 사업계획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점검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사업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은 국가보조금 전체 집행에 대한 규정에 준하고 있어 해당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내역사업에 대한 정산과 회계감사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지원사업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간이 2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

- 신규 사업임으로 현재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구지원임으로 연구비 부당사용, 연구윤리 위반 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지원 사업이 부정수급에 관련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이후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지원사업은 2017년도 국가보조금 신규 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수행이 적절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체 사업목적과 내역사업의 목적이 연계성은 있지만 해당 내역사업의 목적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는 비교적 명확함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지원사업의 사업효과성은 연구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시한 실적과 통계기관 만족도가 연구지원의 효과성라고 평가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사업의 수혜범위 및 외부효과, 국가 지원 필요성, 사업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마련해 둠으로써 향후 사업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지원사업은 보조사업 관리의 적절성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해당사업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으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지방회계전문기관사업 중 지방회계 통계 생산 및 분석을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보다는 해당부처에서 해당 전문기관의 관리,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서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풍수해보험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8.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8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풍수해보험 사업은 사유재산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복구비로는 부족하고, 풍수해의 경우 발생시 그 규모가 매우 큼에 따라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틈새를 파악한 후, 국가가 나서서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적이나 필요성이 매우 인정됨에 따라 정상추진 권고함 ·예산집행률의 경우 매년 불용액 정도의 차이가 큰데, 이는 풍수해보험금의 특성상 거대 재해 발생여부에 따라 보험가입률이 달라지는 이유에 따른 것임 ·이에 2019년도 예산 산출기준인 목적물별 전체 가입대상이나 가입률을 그대로 산출근거로 유지할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합목적적인 사업이지만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정책보험 사업내용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고,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중간점검이나 현장점검, 회계연도 이후 성과분석 및 다음 해 반영 등의 사업관리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의 법적근거는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 등의 가입 등)에 있음

- 동법 제76조 제1항에서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보험·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동법 제76조 제5항에서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와 공제회의비의 일부, 보험 등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또한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와 동법 시행령 제4조(보험료의 지원)에 근거함

- 풍수해보험법 제7조 제1항과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2항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사용계획·결산서를 행안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법적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풍수해를 대비한 정책보험으로서 풍수해를 입은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풍수해는 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매우 커서 민간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데에 합목적적임

- 즉, 지자체 단위에서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보험사의 경우도 피해규모가 커서 주된 위험담보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 중의 하나임

○ 본 사업의 수혜범위는 궁극적으로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음

- 보험목적물이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고, 보험가입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주택가입률은 24.9%(418,029호), 온실 가입률은 7.2%(1638.5ha)로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주택 등으로서 전 국민이 수혜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홍보 등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해 발생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자체복구비용이 매칭되어 지출됨

○ 자체평가서에서 본 사업의 효과에 대해 연도별 목적물별 가입실적과 보험금 지급실적,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를 제시하고 있음

- 목적물별 가입실적의 경우 주택과 온실 가입실적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실적의 경우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대상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발생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임에 따른 이유임

-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의 경우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주택가입률과 온실가입률을 살펴보면 주택가입률의 경우 거의 매년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이나 온실가입률은 최근 3년간 목표에 다소 못미치는 경향을 보임

○ 자체평가서의 효과성 항목을 살펴본 결과, 실제 본 사업의 효과로 볼 수 있는가의 한계가 있음

- 즉, 목적물별 가입실적에서 가입달성도가 비교적 높은 주택의 가입률이 간접적으로 본 사업대상인 풍수해보험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 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적이지 않음

- 특히 보험금 지급실적의 경우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행안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해가 발생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본질적 수혜자인 보험가입 대상자나, 보험사,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어 강점은 향후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해나간다는 등의 분석을 통해 효과도 함께 드러나야 할 것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유재산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예산의 한계로 실질적 복구비로 부족한 점, 풍수해의 경우 발생시 그 규모가 매우 큼에 따라 민간보험사에서 위험담보 상품으로 판매하기 있지 않음에 따라 본 풍수해보험 사업은 국가차원에서의 정책보험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 그러나 본 사업은 풍수해보험료 지원, 홍보 등 운영비 등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 부분에서는 보험료지급실적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있음에 따른 한계는 있음

○ 본 사업의 유사중복성 부분은 자체평가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타 부처의 보험사업과는 가입대상에 차이를 보임

- 즉, 농식품부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57개 농작물 및 농업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축재해보험은 16개 가축 대상 보험사업임
- 해수부의 양식어업 재해보험의 경우 27개 품목 및 양식시설이 지원대상으로서, 본 사업의 대상인 주택, 온실, 상가·공장과는 차이를 가짐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2019년 현재 183.34억원의 예산사업인데, 이 중 풍수해 보험 등의 운영비가 4.59억원, 보험료 지원이 183.75억원으로 구성됨

- 예산의 산출근거는 목적물별 전체 가입대상×가입률×평균 보험료로 산정했음

○ 그런데, 보험료 지원은 실적이 거대 재해 발생여부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2017년도의 경우 불용액이 2.8%(5.38억원), 2016년도 17.5%(27억원), 2015년도 40.3%(77.5억원)이 발생했음
- 2018년도의 경우도 9월말 현재 173,57억원 현액 대비 집행액이 75.31억원으로서 결산이 마무리 되면 불용액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사업의 경우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사회적가치 세부분류 2번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즉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에 해당함

○ 사유재산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복구비로는 부족하고, 풍수해의 경우 발생시 그 규모가 매우 큼에 따라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틈새를 파악한 후, 국가가 나서서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추진내용의 특성상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풍수해보험법 제6조(보조사업자)와 동법 시행령(보험사업자 약정의 체결)에 따라 진행함

- 풍수해보험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사업자 선정, 약정서·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동법 제8조(재정지원), 제22조(약정의 연장)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행안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험대상목적물이나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적시됨

○ 이상의 내용에 따라 5개 민간보험사는 거의 매년 자동 연장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사업의 효과성 부분과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제 이러한 진행방식이 올바른 것인지, 다른 바람직한 방식은 없을지에 대한(예를 들면 만족도 등) 분석이 필요해 보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이나 집행점검체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본 사업은 보조금 집행관리 내부규정인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서에서 제7조(자료제출), 제8조(재정지원), 제9조(보조금 회수의무), 제18조(사업점검), 제21조(약정의 해지) 등 보조금 집행을 위한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내부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중간점검한 실적, 점검결과, 이에 대한 개선조치 등의 실제 활동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풍수해보험법 제7조(자료제출)에서 회계연도 종류 후 3개월 이내 운영사업비 사용결산서(회계감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회계연도 2개월 이내 손실보전준비금 운영결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있음

○ 그러나 실제 이러한 절차규정에 따라 일정별로 실적이나 정산보고서 등 사후운영절차나 사후분석에 이은 개선방향 조치 활동은 드러나지 않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자체평가서에서 정리한 것처럼 약정서에 부정수급 사전방지를 위한 사업점검, 보조사업자의 자체 보조금 회수의무 및 부정수급 발생시 약정·사업자 제외를 명시하였다고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없지는 않음

○ 물론 대형기업인 5대 민간보험사가 부정수급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는 최종수혜자가 재난 재해 피해로 인한 보조금 수령대상자인지, 여기서 부정한 시도는 없는지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즉,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자인 민간보험사 외에도 부정수급 가능 층을 크게 열어놓고 좀 더 적극적인 부정수급 관리가 필요해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풍수해보험 사업은 사유재산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복구비로는 부족하고, 풍수해의 경우 발생시 그 규모가 매우 큼에 따라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틈새를 파악한 후, 국가가 나서서 그 틈새룰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적이나 필요성이 매우 인정됨에 따라 정상추진 권고함

○ 보조사업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규정만 있을 뿐 실제 관리조치는 미흡해보임

- 예산집행률의 경우 매년 불용액 정도의 차이가 큰데, 이는 보험금의 특성상 태풍이나 홍수 등 풍수해의 발생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에 따른 것임

- 이에 2019년도 예산 산출기준인 목적물별 전체 가입대상이나 가입률을 그대로 산출근거로 유지할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합목적적인 사업이지만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사업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의 운영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풍수해보험 사업의 경우도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인정되지만 중간점검이나 성과분석, 개선조치 활동 등이 일부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중간점검이나 현장점검, 회계연도 이후 성과분석 및 다음 해 반영 등의 사업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여름철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6.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5.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6.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3.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 측면을 중심으로 개선의 여지가 작지 않게 노출되고 있음. 부처는 본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부처가 본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음. 부처는 본 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부처가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음. 이상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현행 예산 투입 규모에서 성과를 보다 제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성과에 그치고 있는 것은 개선될 필요. 현재의 미흡한 성과관리 방안이 지속된다면 현재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명분이 약해짐. 이를 고려해 2천9백만원('19 예산대비 10%)의 감축할 것을 권고함 ·부처에게 본 사업의 과거 성과 및 현재 환경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미래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있고 기속성있는 추진계획*이 마련된다면 감축(10%) 의견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항을 전달받지 못해 당초 의견(감축 10%, 사업방식변경)을 유지함 (제도개선방안: 위 *의 추진계획 마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 사업을 특정하여 보조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본 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다소 미약한 수준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며 하천 ·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하며, 물놀이 인명피해의 대부분의 외지인이고, 지자체 재정여건상 단독수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비지원이 일정 수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수혜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음.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것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나 생활수준 향상, 교통여건 개선 및 여가문화의 변화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벗어나, 자연경관, 수질, 유명세 등 각자의 취향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음

- 또한, 2018년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외지인이 88%를 차지하고 있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인한 수혜자는 해당 지자체 주민뿐만 아니라 물놀이를 즐기는 다수 국민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대체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별 기간 등에 대해서는 부처가 관련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부처는 본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부처가 본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음

○ 부처는 본 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부처가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부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환경변화 및 수혜자의 요청 등을 우선시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예산편성에 빠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처는 전국 물놀이 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역 총 4,859개소 중 현재까지 4,12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731개소에도 설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본 사업에 대한 수요가 731개소 수준으로 대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부처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만약 본 사업이 폐지된다면 재정적 손실을 크지 않겠으나, 내수면에서의 사망자수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인명 손실이 증가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행정비용이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행정비용이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 아님

○ 보조사업 규모 자체는 사업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수준은 아님. 그러나 현행 예산 투입 규모에서 성과를 보다 제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성과에 그치고 있는 것은 개선될 필요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근거하여 국비 50%를 적용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대체로 마련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은 대체로 집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대체로 마련되어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를 대체로 집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결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는 없으며,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경감사업 추진지침」「보조금 교부조건」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대응에 관해서 통보하는 등 대체로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 측면을 중심으로 개선의 여지가 작지 않게 노출되고 있음. 부처는 본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부처가 본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음. 부처는 본 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부처가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음. 이상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 현행 예산 투입 규모에서 성과를 보다 제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성과에 그치고 있는 것은 개선될 필요. 현재의 미흡한 성과관리 방안이 지속된다면 현재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명분이 약해짐. 이를 고려해 2천9백만원('19예산대비 10%)의 감축할 것을 권고함

3-2 정책 제언

○ 부처에게 본 사업의 과거 성과 및 현재 환경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미래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있고 기속성있는 추진계획*이 마련된다면 감축(10%) 의견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항을 전달받지 못해 당초 의견(감축 10%, 사업방식변경)을 유지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문화체육관광부

가상현실콘텐츠육성
개도국문화자원역량강화(ODA)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ODA)
게임물관리위원회지원
게임산업육성
공예관광산업육성
관광레저기반구축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
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및단체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관광활성화기반구축
국내관광역량강화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
만화산업육성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사회서비스)
문화예술해외교류
문화예술향유지원
문화정보자원안전관리체계구축(정보화)
문화중심도시조성및운영
문화콘텐츠국제협력및수출기반조성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운영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아시아문화전당콘텐츠및운영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영화유통지원
영화정책지원
영화제작지원
예술의산업화추진
예술의전당리모델링
예술인력육성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예술창작지원
올림픽공원운영지원
음악산업및대중문화산업육성
이야기산업활성화
전통문화체험지원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생활문화진흥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종교문화시설건립
종교문화활동지원
중부내륙권관광개발(지역지원)
지역문화진흥
첨단영화기술육성
패션문화산업육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운영지원
한국문화정보원운영(정보화)
한국어진흥기반조성및확산
한국영상자료원지원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지역지원)
한스타일육성지원
해외작은도서관조성(ODA)
핵심관광지육성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보조사업 목표 및 내역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정상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당분간 전체 예산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개별 지원사업이 상위목표와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사업을 재편하고, 업계의 수요와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직접·간접 지원사업 간의 예산비중을 조정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아직 사업의 초기단계로 예산투입의 즉각적인 결과로서의 산출에 해당하는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성과 제시는 미흡한 편임.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성숙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공공부문 선도형 콘텐츠 개발 및 정부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그간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은 그 효과성을 정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등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제 9조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다양한 콘텐츠 중 가상현실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동법 12조에서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가상현실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상현실 콘텐츠제작, 인프라조성, 해외진출 지원으로 구성한 내용의 지원근거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법령 자체가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내역사업의 구성 자체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님

- 법의 내용과 해당 사업의 내역사업(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가상현실 콘텐츠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뉴콘텐츠센터),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존 조성, 가상현실 사업화 지원)이 그 지원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가상현실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상현실 콘텐츠제작, 인프라조성, 해외진출 지원, 국민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현실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에서 “4차 산업혁명시

대, 융합콘텐츠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과 부합하므로 다양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점이 인정됨

- 가상현실콘텐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네트워크, 노하우 부족 등의 문제를 정책지원의 형식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해당 사업의 직접적·실질적 수혜자는 제작지원/입주지원을 수혜하는 제작자 등이며 산업의 연계효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수혜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관련 세부분야와의 연계로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지속 성장을 견인하는데 근본이 되는 활동으로 국가 단위의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가상현실콘텐츠의 유통저변 확대와 국민적 체험 기회 제고를 위한 체험존 구축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간접적 수혜자가 광범위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컨텐츠산업의 특성상 간접적·잠재적 수혜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 사회적 편익도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VR, AR, MR 분야의 성공가능성과 시장파급력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핵심기술개발(R&D), 스토리, 콘텐츠 제작・상용화, 유통 全 단계 원스톱 지원하고, 가상현실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향유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를 세부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가상현실 콘텐츠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뉴콘텐츠센터),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존 조성, 가상현실 사업화 지원 등의 내역사업을 구성하였으나, 내역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부족하고 법령상의 목표 및 근거 법령상의 업무 간의 정합성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음

- 핵심기술개발(R&D), 스토리, 콘텐츠 제작・상용화, 유통 全 단계 원스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작·입주·사업화 지원 사업이 개별적인 지원사업으로 비쳐져 상위목표와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함

- '체험존구축 사업' 경우에도 독립적인 지원 사업으로 비쳐지는 바 인프라 구축 - 제작지원- 유통활성화 지원 - 체험기회 확대 등의 전 과정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목표는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초기기업 인프라 구축 - 제작지원- 유통 활성화 지원 - 체험기회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 생태계 조성으로 비교적 명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개별 내역사업의 추진목표도 명확함. 다만, 사업의 구성

및 추진계획 상 개별 내역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여하기 보다는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지원과제 개발 성공률, 사업화율, 해외진출 기업 계약액, 체험존 방문객 수 등 명확한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파악됨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현재는 지원업체에 대한 관리 및 성과창출에만 국한되어 그 효과가 논의되는 측면이 있음. 개별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국내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 보조사업 관리의 초점이 추진계획 달성여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점은 명확한 한계임. 즉, 집행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보고 및 예산관리를 수행하며 사업담당제를 운영하는 점은 그 자체로는 필수적인 관리활동이나 이 자체가 사업의 성과는 아님

-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라고는 하나 다수의 사업에 있어서 성과로 제시된 내용이 단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과제 개발 성공률, 사업화율, 해외진출 기업 계약액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파악되나, 직접적 수혜대상인 지원업체에게 나타난 단기적인 효과이외 업계 전반에 미친 파급력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객관적·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성과지표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소장 문화재 등을 활용한 실감형 체험 사업의 경우, 그 잠재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공공부문 선도형 콘텐츠의 경우 그간 다양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은 그 효과성을 정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고 그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경쟁국들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세한 업체를 재

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신기술과 고도의 산업전략이 필요한 가상현실 콘텐츠 분야는 민간에서는 선뜻 투자하고 도전하지 않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야임

-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의 경우 영세한 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금문제나 경영노하우 부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제작, 해외진출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인정됨

○ 가상현실산업 육성 관련 뉴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일부 중복의 소지가 있으며, 같은 문체부 내에서도 게임산업 지원에 일부 VR 관련 대상지원사업과의 중복의 소지가 있음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달리 문화, 체육, 관광 분야로 지원 산업 / 대상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유사·중복의 소지는 희박한 편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처별 사업추진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VR/AR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 반면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금문제나 해외진출 노하우 및 네트워크 부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소업체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장기적 필요성은 인정됨

- 국내 가상현실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4차산업 혁명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선두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조사업 연장의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됨

- 다만, 기술적 선점의 중요성 및 규모의 경제 등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의 적용을 받는 가상현실산업에서 정부의 지원이 도리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즉, 보조사업의 시한을 정해 지원규모를 점차 축소하거나 보조사업의 직/간접적 수혜기업들로부터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업폐지 시 인프라 구축 및 제작지원의 중단으로 보조사업 수혜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

- 특히 콘텐츠 분야의 미래 유망산업인 가상현실콘텐츠 산업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전체 콘텐츠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국가지원이 절실하고, 지원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나 매출 성장의 효과가 기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

- 다만, 해당 보조사업이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를 폐지할 경우 향후 전체 콘텐츠산업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일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재부와의 협의 및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된 내용이나, 이의 산출근거 제시가 미흡한 편임

- 콘텐츠 제작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50% 이상 편중되어 편성되었으므로 추후에는 인프라 조성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간접지원으로 확대하여 편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개별 내역사업의 효과성이 면밀하게 분석·제시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확대는 보다 엄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즉, 사업의 효과성에 근거하여 예산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은 전체 예산의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접·간접 지원사업 간의 예산비중은 업계의 수요와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전체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를 둔 정부 법정업무로서, 4차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콘텐츠 분야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며 정액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규모는 기재부와의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사업으로 중장기 재정추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부처의 기초조사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부처에서 제시한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사회적 가치 분류체계 상에서도 해당하는 영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에 대한 전년도 실적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보조금 교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따라 보조금 교부절차를 준수하는 등 제도화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분야 전문기관으로 그간의 업무수행실적, 전문성, 효율성, 현장과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에 도입된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여 국고보조금을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음

○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 등의 대표성을 가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관 자체의 공정한 사업집행, 회계, 감사 등 사업기획 및 운영, 사후관리 전반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기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을 통해 실시간 사업별 실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집행현황 점검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같은 시스템에서 해당 건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조사업 정산 시에는 외부회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집행액 발견 시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 제출 등을 포함한 보조금 관련 사후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정산검토 시 집행 건별 증빙 보완요청이나 불인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체계도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음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적절히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검증보고서)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간접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간접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건별로 회계검토를 거쳐 적정 집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정산 검토 중 부적정한 집행 건이 발생되는 경우 불인정하여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으며, 회계검토 이후에 담당자의 재검토를 거치는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실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도 없음

- 특히, 최근에는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모든 보조사업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어 중복수급,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시 제재방법 및 절차 등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는 제26조(보조사업 집행점검), 제32조(부정수급 점검), 제32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제36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발견 시 제28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30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제31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는 부정수급시 제재방법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가상현실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상현실 콘텐츠제작, 인프라조성, 해외진출 지원으로 구성한 내용의 지원근거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법령 자체가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내역사업의 구성 자체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님

○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가상현실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상현실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가상현실콘텐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네트워크, 노하우 부족 등의 문제를 정책지원의 형식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해당 사업의 직접적·실질적 수혜자는 제작지원/입주지원을 수혜하는 제작자 등이며 산업의 연계효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수혜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컨텐츠산업의 특성 상 간접적·잠재적 수혜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 사회적 편익도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음

○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가상현실 콘텐츠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뉴콘텐츠센터),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존 조성, 가상현실 사업화 지원 등의 내역사업을 구성하였으나내역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위목표인 사업목표의 달성에 적절히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지원과제 개발 성공률, 사업화율, 해외진출 기업 계약액, 체험존 방문객 수 등 명확한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파악됨

- 반면, 보조사업 관리의 초점이 추진계획 달성여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점은 명확한 한계임. 즉, 집행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보고 및 예산관리를 수행하며 사업담당제를 운영하는 점은 그 자체로는 필수적인 관리활동이나 이 자체가 사업의 성과는 아님

-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객관적·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성과지표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소장 문화재 등을 활용한 실감형 체험 사업의 경우, 그 잠재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공공부문 선도형 콘텐츠의 경우 그간 다양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은 그 효과성을 정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함

○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고 그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경쟁국들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세한 업체를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신기술과 고도의 산업전략이 필요한 가상현실 콘텐츠 분야는 민간에서는 선뜻 투자하고 도전하지 않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야임

-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의 경우 영세한 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금문제나 경영노하우 부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제작, 해외진출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인정됨

○ 가상현실산업 육성 관련 뉴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일부 중복의 소지가 있으며, 같은 문체부 내에서도 게임산업 지원에 일부 VR 관련 대상지원사업과의 중복의 소지가 있음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달리 문화, 체육, 관광 분야로 지원 산업 / 대상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유사·중복의 소지는 희박한 편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처별 사업추진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VR/AR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 반면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금문제나 해외진출 노하우 및 네트워크 부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소업체의 비

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장기적 필요성은 인정됨

- 국내 가상현실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4차산업 혁명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선두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조사업 연장의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됨

- 다만, 보조사업의 시한을 정해 지원규모를 점차 축소하거나 보조사업의 직/간접적 수혜기업들로부터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업폐지 시 인프라 구축 및 제작지원의 중단으로 보조사업 수혜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미래 유망산업인 가상현실콘텐츠 산업에서 뒤쳐져 향후 전체 콘텐츠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해당 보조사업이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를 폐지할 경우 향후 전체 콘텐츠산업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일 수 있음

○ 기재부와의 협의 및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된 내용이나, 이의 산출근거 제시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직접지원 사업은 현행 유지 간접지원 사업은 확대편성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개별 내역사업의 효과성이 면밀하게 분석·제시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확대는 보다 엄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즉, 사업의 효과성에 근거하여 예산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은 전체 예산의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접·간접 지원사업 간의 예산비중은 업계의 수요와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 목표 및 내역사업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나 다수의 지원사업이 개별적인 지원사업으로 비쳐져 상위목표와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지원업체에 대한 관리 및 성과창출에만 국한되어 그 효과가 논의되는 측면은 개선이 필요함. 개별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국내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근거 제시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 다수의 사업에 있어서 성과로 제시된 내용이 단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

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과제 개발 성공률, 사업화율, 해외진출 기업 계약액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파악되나, 직접적 수혜대상인 지원업체에게 나타난 단기적인 효과이외 업계 전반에 미친 파급력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단위의 산업전략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국내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재원의 한계 상 일부 업체에만 한정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지원을 통한 파급효과의 유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지원규모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 개별 내역사업별로 그 효과성에 기반하여 지원규모나 예산배분방식이 결정될 필요가 있음. 당분간은 전체 예산의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접·간접 지원사업 간의 예산비중은 업계의 수요와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개도국문화자원역량강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6.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동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동사업은 신남방, 신북방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ODA 수원국의 다양한 문화 분야(문화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창작 및 연수를 통한 교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됨 ·동사업의 관리는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수원국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사업수행자 등이 동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으나 2차적 수혜자의 범위는 모호하고 협소하다고 판단됨 ·동사업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도전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4.10.15.일부개정)

-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 2013. 7. 16.>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5.>

국제문화교류진흥법(2017.3.21.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 하지만 동사업의 내용과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사업은 “신남방, 신북방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ODA 수원국의 다양한 문화 분야(문화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등)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창작 및 연수를 통한 교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 사업성과 확산 및 문화동반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후관리(장기공동 프로젝트 확대 등)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ODA 수원국 문화분야 전문가를 초청, 공동 창작 및 연수를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을 이전하는 개도국 문화인력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수원국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사업수행자 등이 1차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으나 2차적 수혜자의 범위는 모호하고 협소하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사업의 내역사업은 문화동반자초청연수사업으로, 개도국의 문화역량 강화를 목표로 ODA 수원국의 문화,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공동창작 및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소개하고 문화동반자들의 이해 도모를 위해, 한국어 교육 실시, 문화탐방 및 한국인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쌍방향적 문화교류를 위해 공동창작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대체로 명

확하다고 할 수 있음

○ 사업운영 기간 중, 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목표와 계획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연도별 보조사업 주요 실적>

구분	예산(백만원)	초청인원	참여기관
2016년	1,145	41개국 77명	16개 기관
2017년	1,145	38개국 76명	14개 기관
2018년	916	25개국 63명	14개 기관

○ 동사업의 성과지표인 '문화동반자사업 종합평가'는 동 사업에 대해, 참여자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이며, 7점 척도를 사용함으로 목표치는 80점임

- 다만 이러한 목표치가 도전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교기념행사를 통한 한국문화이해도 (단위: 점)	목표			신규	78.5	79	리커트 7점 척도 기준에서 5.5점(응답 : 약간 그렇다~그렇다) 정도 달성해야 가능한 목표치 78.5점 설정	Σ{(7점 척도-1)x 16.7} / 전체응답자 수	결과보고서 등
	실적					-			
	달성도					-			
문화동반자사업 종합평가 (단위 : 점)	목표	89.3	89.4	90.4	80* (변경)	81	과정·만족도 대비 '성과' 항목 비율 강화 도입에 따라 과거 목표치 흐름에서 일정 부분 하향조정 필요	Σ(평가점수(7점 척도 기준)X가중치(평가 문항별))	1.연수생설문(30%) 2.운영기관 평가(70%)
	실적	90.1	90.3	86.7	-	-			
	달성도	100.9	101	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대표적 문화 ODA 사업으로 개도국의 문화예술 전반의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문화분야 대외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및 특정 기관 자체 예산으로 수행이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문화예술(예술,문화산업,미디어 등) 전문가 대상의 레지던지형 (5개월) 초청 연수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기관 사업과의 유사성은 낮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Sustainable Deve lopment Goals) 달성을 목표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문화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은 역량강화

사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원국의 문화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며, 특히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과 수요 요청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청 연수사업으로, 사업비 대부분(88%이상)이 항공, 숙박, 체재비, 문화현장 연수, 한국어 연수, 전문연수 등 직접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국 행정비용(인건비, 운영비 등)은 12% 수준으로, 사업수행 14개 기관에 대한 사업 관리, 감독을 위한 사무국 행정비용은 크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관으로 사업신청자 공모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며 해당내용은 주관기관 홈페이지(http://kofice.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사업 공모 시 사전 공지하였으며, 최종사업자 선정시 심사기준(적합성, 실현가능성, 성과관리)를 별도로 마련하여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 진행하였음

- 선정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문화예술 행정, 문화예술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5인(외부 3, 내부 2)으로 구성, 서류와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사업 이행도, 일반사항, 사업계획, 사후관리, 전년도 평가 등 총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에 적합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절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금 관리 체계를 마련, 준수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시 동 내용을 고지하고 있음.

○ 또한, e나라 도움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집행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집행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에 대해 회계 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단계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안내 및 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음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 사용용도 제한 안내 등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예산 사용을 불인정, 반납조치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보조금 집행은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018.4.4.일부개정)」 제7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제8장(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제6장(보조금의 사후관리) 근거하여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금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 정산을 실행하고 있음

- 1차로 회계 법인을 통하여 사업비 운영내역을 점검, 검증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2차로 담당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 첨부여부를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환토록 함

○ 종합적으로 볼 때 보조금 사후 관리도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에서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시 예산집행 매뉴얼 배포를 통해 동 사항을 교육하는 등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사업은 “신남방, 신북방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ODA 수원국의 다양한 문화 분야(문화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등)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창작 및 연수를 통한 교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 사업성과 확산 및 문화동반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후관리(장기공동 프로젝트 확대 등)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동사업의 관리는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수원국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사업수행자 등이 동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으나 2차적 수혜자의 범위는 모호하고 협소하다고 판단됨

○ 동사업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도전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3-2 정책 제언

○ 성과지표의 목표를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개도국 스포츠발전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8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사업의 근거, 법령, 필요성 대체적으로 인정됨.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엄격한 연동시책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사업 내용과 목표 그리고 기간 및 시간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동시켜 로드맵을 관리할 필요 있고,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동계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 행사 후 남은 시설활용 등을 통하여 수입액을 확대하고 활용하는 시도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2페이지 이상 작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이루는 법적 근거와 객관적 규정 확인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본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인 ①개도국선수 합동훈련과정 ②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③개도국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④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은 모두 스포츠 선진국 위상에 맞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보조금 지급 근거 존재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 보조사업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며, 개도국과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스포츠 발전 및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수행되기 어렵고 국가 보조사업으로 타당성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사업대상인 수원국의 스포츠 선수·지도자·행정가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며, 교육을 받은 지도자·행정가들의 지도·교육에 따라 보다 많은 개도국의 스포츠 관계자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음.

<표 > 2018년 ODA 사업 활동 내용

○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4종목, 60개국, 232명) ○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15개 종목, 15개국, 260명) ○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6기, 20개국, 21명 선발) ○ 스포츠 지도자 파견 및 용품 지원(6종목, 6명 파견) ○ 태권도 초청연수 및 용품지원(19개국 183명, 9개국 용품 지원) ○ 드림프로그램(26개국 112명, 장애부문 6개국 21명 포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바, 개도국 선수 합동훈련 과정,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스포츠 지도자 파견, 용품 지원, 태권도 초청 연수, 드림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타당한 구성으로 사료됨.

- 다만, 내용과 목표 그리고 기간 및 시간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동하여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는 상태로 판단됨.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 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 사업은 공공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무상원조) 별도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정부의 조성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실 인정됨.

- 다만, 사업의 성격상 민간과 개별 종목 관련 참여자의 기여를 부분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 본 사업은 개도국과의 교류를 통해 개도국의 스포츠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체육 외교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다른 부처업무나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음.

- 사업 폐지 시 직접적 재정 손실은 없었으나, 지도자 파견사업이나 학위과정 지원사업의 경우 활동과 효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장기간 파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지도자 1명당 최대 4년간 지원, 국제대회 개최 주기 기준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사업 중단 시 수원국과의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개 종목(자전거, 태권도, 육상, 철인3종) 스포츠지도자 교육,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양성을 위한 정규학위과정 개설, 종목별 스포츠 용품 지원 및 지도자 파견, 국가대표팀 간 합동훈련 등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바, 종목의 다양성(올림픽 35개 종목, 아시안게임 추가 9개 종목 등), 수원국 수요의 증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맞는 국제사회 공여를 위한 ODA 사업의 확대 필요성 등을 인정할 때 중장기 사업으로 적합하나 규모는 성과에 따라 조정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국제체육 교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상 별도의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개도국에 대한 공여를 목적으로 하는 ODA 사업 특성 상 민간의 재원 부담이 없이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ODA사업 중에서 지자체경상보조사업인 '드림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지자체 지원사업들과 유사하게 50%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됨.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인권과 형평에 기여할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일부 이러한 활동이 확인됨.

- 드림 프로그램의 경우 2018년 30개국 140명을 지원하였는바, 이 가운데 장애 부문 7개국 28명 포함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확인됨. 2016, 2017년도 유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세부사업 중 지자체 사업인 '드림 프로그램'의 경우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였던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이 오지 않는 개도국 청소년의 동계스포츠 저변을 넓히는 데 적절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ODA사업임에도 지자체의 자부담 비율이 50%로,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됨.

- 드림 프로그램의 내용은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 초청, 동계종목 훈련 및 문화교류 실시임. 구체적으로는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훈련프로그램 운영, 친선경기, 동계스포츠 및 동계올림픽 관련 특강, 그리고 설상 4종목(알파인스키, 장애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빙상 2종목(피겨, 쇼트트랙) 운영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 중 지자체 보조 내역사업은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 중 '드림 프로그램'의 경우,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동계종목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계스포츠 저변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 및 개최장소(스키장) 여건상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강원도가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체부는 매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정산단계 및 부정수급 등의 발생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됨.

- 체육교류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나 경기단체(NF) 위주로 교류가 이루어지므로 이들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종목・대상국가・대상자는 내역사업별로 적절한 기준을 통해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민간보조사업 부분에 관하여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공단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및 주요 국제대회 참가 및 국내 경기단체를 총괄하는 기관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 경기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종목별 교류 추진을 위해 가장 적합한 보조사업자라 할 수 있으며, 그 외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사업 등도 체육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적절한 사업추진 주체들에게 예산이 교부되는 것 확인됨.

- 현장평가단 운영, 현장 점검, 만족도 조사, 체적인 사업 평가 및 환류, 기금 지원사업 실무소위원회 및 기금지원사업평가위원회 성과평가 절차를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이 발견된 경우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문체부)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과오납 환급,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두고 있음.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기금 관리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담 조직(기금 정산팀, 기금 환수팀)을 운영하고 있음.

○ 완료된 후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회계검사를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는 없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보조금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조치(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등)를 마련하고 있음.

○ 체육진흥기금 관리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매뉴얼을 매년 제작하여 배포하고, 보조사업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조사업의 사용을 관리하고 있고,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 내 전담 조직에서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차년도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사후관리방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법령상의 근거 인정됨.

○ 내역사업 구성은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의 내용과 목표 그리고 기간 및 시간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동시켜 로드맵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태로 판단됨.

○ 민간사업 보조의 경우는 성과관리 고도화를 통한 효율화 필요하고, 강원도의 드림사업은 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사후 시설 활용 등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 재원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성과 관리를 실제의 4가지 내역사업 모두 반영하여 시행할 필요성 있음.

○ 사회적 약자,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한 내역 세부사업의 발굴과 실행 확대의 여지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강화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과 원칙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 사업 등의 주요업무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므로 사업목적에서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게임물 사후관리, 게임물 등급분류,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 조사연구 등의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근거제시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수행방식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단순히 사회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적 측면보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개별 내역사업이 사업목적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을 소명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 중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노동집약적 관리 대신 중장기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인력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설치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제20조(지원)에 게임물 등급분류 및 유해성·사행성 확인 및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치 목적 및 국고보조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과 원칙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세부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의 업무범위와 일치하게 구성되어 근거법령과의 정합성이 높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불법사설서버 근절, 불법 게임물의 단속 등을 통해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며 동시에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므로 사업목적에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킬러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 정책단위의 업무로, 국가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69번 과제,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관련, 대표적 문화산업인 게임산업의 산업질서 확립 및 보호역할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바임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는 게임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며 그 수혜 범위가 광범위한 특성이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 사업 등은 게임 산업 전반과 모든 국민에 대해 광범위하고 동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국가 정책단위의 업무임

- 주요 사업을 통해 게임 이용의 적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게임의 오용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잠재적 혜택은 경찰, 검찰, 법원, 지자체공무원, 게임업체 종사자, 일반 국민 등을 망라하여 귀속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라는 목표를 위해 구성한 9개 내역사업과 근거법령상의 목표 및 근거법령상의 업무 간의 연계성이 높음

○ 보조사업의 목표가 명확하며, 이들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게임물 사후관리, 게임물 등급분류,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 조사연구 등의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다만, 내역사업 중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 의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수행방식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단순 처리건수, 단속건수,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건수 등으로 제시된 성과목표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의 확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및 이용자/사업자 교육 실적과 관련한 대부분의 성과가 단순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게임산업의 성장과 함께 심의 및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 및 사업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처리 건수 및 모니터링 실적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점은 명확한 한계임. 제한된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가령, 내역사업 중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노동집약적 관리 대신 중장기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인력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을 통해 게임물의 공공성 및 윤리성 확보, 사행심 조장 방지 및 청소년 보호, 불법게임물 유통방지라는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내역사업 중 '사업자·이용자 교육'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근거제시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수행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등은 법령상 목적달성을 위한 최종 관리를 민간에서 수행하기는 적합하지 않으며 사후관리는 게임물의 전문적 불법 감정능력 및 다년간 숙련된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별도의 전문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 게임 산업 전반과 모든 국민에 대해 광범위하고 동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국가정책단위의 업무이며, 민간 자체등급분류제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법령상 목적달성을 위한 최종 관리는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운영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존재하는 타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고유성이 충분히 인정됨

○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산업인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록 게임물의 윤리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사회적 수요도 함께 증가함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장기적·규범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특히, 불법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비용이 막대하며,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가 미치는 파급력이 검찰 및 경찰, 법원, 지자체공무원, 게임업체 등 주요 수혜자들에게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 연장의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됨

○ 사업폐지 시 불법게임물 감정중단으로 단속의 어려움 증가, 법률적 혼란, 법률판단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증가함은 물론 주요 수혜자들에게 많은 예산 및 인력의 부담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재부와의 협의 및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된 내용이나, 이의 산출근거 제시를 보다 객관화 할 필요가 있음

- '18년도 기준 89억 원인 지원예산의 규모를 '22년까지 1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논거로서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한 게임물의 폭증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확대에 대비한 게임물 사후관리 필요성 증대, 킬러 콘텐츠로서의 게임산업 지원과 건전 게임문화 정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수행 방식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개별 내역사업의 성과지표가 효과성을 입증하기에 다소 미흡한 내용들로 구성된 바, 단순히 사회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예산의 증액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써의 사회적 수요는 필요조건에 해당할 뿐임.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충분조건으로서의 개별 내역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객관적 입증을 수반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서 누락항목)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정액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의 자체수입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적정하게 결정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공헌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 실적이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0조(지원)에 의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보조금 교부절차를 통해 교부하는 등 제도화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띠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비공모'사업에 해당되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절차를 진행하고 재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상황 및 사업 수행상황 점검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등을 관리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음

○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기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을 통해 보조사업자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 제출 등을 포함한 보조금 관련 사후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적절히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보조사업의 직접 수행자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등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실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도 없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시 제재방법 및 절차 등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는 제28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30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절차), 제31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32조(부정수급 점검)에는 부정수급 시 제재방법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과 원칙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 사업 등의 주요업무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므로 사업목적에서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 사업 등은 게임 산업 전반과 모든 국민에 대해 광범위하고 동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국가 정책단위의 업무임

- 주요 사업을 통해 게임 이용의 적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게임의 오용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잠재적 혜택은 경찰, 검찰, 법원, 지자체공무원, 게임업체 종사자, 일반 국민 등을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게 귀속되는 특징이 있음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단순 처리건수, 단속건수,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건수 등으로 제시된 성과목표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의 확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한된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가령, 내역사업 중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노동집약적 관리 대신 중장기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인력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을 통해 게임물의 공공성 및 윤리성 확보, 사행심 조장 방지 및 청소년 보호, 불법게임물 유통방지라는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내역사업 중 '사업자·이용자 교육'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근거제시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수행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등은 법령상 목적달성을 위한 최종 관리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후관리의 경우에도 게임물의 전문적 불법 감정능력 및 다년간 숙련된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별도의 전문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 게임 산업 전반과 모든 국민에 대해 광범위하고 동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국가 정책단위의 업무이며,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운영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기재부와의 협의 및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된 내용이나, 이의 산출근거 제시를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수요의 증대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증대를 예산증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근거의 제시는 미흡함. 예산의 증액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써의 사회적 수요는 필요조건에 해당할 뿐임.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충분조건으로서의 개별 내역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객관적 입증을 수반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그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중 '사업자·이용자 교육'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근거제시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수행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게임산업의 성장과 함께 심의 및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 및 사업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처리 건수 및 모니터링 실적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점은 명확한 한계임. 제한된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가령, 내역사업 중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모니터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노동집약적 관리 대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인력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이의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산증액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배정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방식의 변경 등을 포함하여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게임산업 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게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간의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대내·외적인 평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내역사업 중 건전문화 조성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근거제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축소의견을 바탕으로 10%에 해당하는 50억 원 예산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8년도 기준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555억으로 게임산업이 갖는 잠재성을 감안하고 시장 규모('16년 기준 10조 8,945억) 및 수출액(3조 9,607억 원)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99년도부터 시행된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가 현 단계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별 내역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한 사업추진방식의 효율화가 요구됨 ·특히, 내역 사업 중 건전문화 조성의 경우 연구역량강화, 기반구축, 저변확대 등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위목표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그 성과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며, 성과지표로 제시된 과몰입 비율의 저감도 그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같은 맥락에서 사업수행방식의 효율성(다양한 세부 사업보다는 핵심적인 사업으로의 역량 집중)도 개선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일부 근거하고 있음

- 게임산업진흥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 제5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고 있음

- 이스포츠 관련 지원내용은 「e 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자금지원 등),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제13조(이스 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등에 주된 근거를 두고 있음

- 해당 법령에는 국내 게임산업 육성, e스포츠의 활성화, 건전게임문화 조성, 지역게임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에 대한 내용 및 사업범위까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해당 법령은 국내 게임산업 육성, e스포츠의 활성화, 건전게임문화 조성 등과 관련한 국가의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법령이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

- 법의 내용과 본 사업의 세부내용이 지원의 방향성에서 포괄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당 사업은 문화산업 중 부가가치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시장 등 해외진출 여건 악화, 국내 게임산업의 양극화 등을 고려할 때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게임산업은 기술개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신기술이 가장 먼저 접목되는 분야이기도 한만큼 이를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어 적절한 논거를 제공함

- 게임산업의 경우 여전히 종사자 수나 자본금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영세한 기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수한 게임을 개발할 역량이 되는 기업도 자금문제나 해외진출 노하우나 네트워크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제작,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게임산업의 허리를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간의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대내·외적인 평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임

-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네트워크, 노하우 부족 등의 문제를 정책지원의 형식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해당 사업의 직접적·실질적 수혜자는 국내 중소게임기업 및 게임산업 종사자, 게임산업 예비 종사자, e스포츠 아마추어 선수 및 시청자, 게임콘텐츠 개발자, 게임이용자 등이며 산업의 연계효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수혜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관련 세부분야와의 연계로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지속 성장을 견인하는데 근본이 되는 활동으로 국가 단위의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문화컨텐츠의 특성 상 간접적·잠재적 수혜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 사회적 편익도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부가가치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세부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게임산업 육성, 건전 게임문화 조성, e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령상의 목표 및 근거법령상의 업무 간의 정합성이 일정 수준 확보됨

- ‘건전 게임문화 조성’ 사업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며 큰 틀에서 게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산업경쟁력의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접근이 아닐 수도 있음. 따라서, 해당 내역사업은 타 보조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19년도 예산사업부터는 타 세부사업(지역 컨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내 내역사업으로 재조정된 바 있음

-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의 경우 지역 컨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의 관점에서 추진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역별 안배라는 관점에만 치중할 경우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됨. 게임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목표는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로 비교적 명확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건전게임문화 조성 등 일부 내역사업의 추진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세부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실제 개별 세부사업에 배분된 예산규모는 크지 않은 경우가 다수로 기대한 성과를 창출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내역사업 중 ‘글로벌게임산업 육성’ 은 중소게임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 강화 및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e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e스포츠 저변 확대, 종주국으로서 위상 강화,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수립을 수행하는 등의 적절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반면, 내역사업 중 ‘건전 게임문화 조성’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근거제시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수행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다수의 사업에 있어서 성과로 제시된 내용이 단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16년도 연장평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매출액 및 고용창출) 등을 보조자료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비록 보조사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산업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 등을 보조적인 성과지표로 관리하여 해당 보조사업이 상위목표에 기여하는 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객관적·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성과지표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게임산업의 경쟁국들은 게임산업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세한 중소 게임업체를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게임산업의 경우 영세한 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금문제나 해외진출 노하우나 네트워크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제작, 해외진출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인정됨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08.2.29)에 따라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고유 업무로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게임산업 육성'의 경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서 유망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원내용도 창업지원 및 멘토링으로 유사하므로 일부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시행되므로 그 고유성은 여전히 인정됨

○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산업인 게임산업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반면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금문제나 해외진출 노하우 및 네트워크 부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소업체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장기적 필요성은 인정됨

- 게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 및 대기업의 게임광고 등 마케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규모 게임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의 성공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게임산업의 생태계보호를 위해서는 보조사업 연장의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됨

- 다만, 기술적 선점의 중요성 및 규모의 경제 등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의 적용을 받는 게임산업에서 정부의 지원이 도리어 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한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그간의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조사업의 논거를 퇴색시키는 대목임

- 즉, 모든 보조사업 특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은 일몰시점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함. 해당 보조사업을 통해 사업목표가 달성되는 매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도식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행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사업폐지 시 국내 중소게임기업 및 게임산업 종사자, 게임산업 예비 종사자, e스포츠 아마추어 선수 및 시청자, 게임콘텐츠 개발자 등이 다양한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

-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시장 등 해외진출 여건 악화, 국내 게임산업의 양극화 등을 고려할 때 중소업체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중단은 게임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다만, 게임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사업의 폐지 시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약화 및 국가경쟁력 악화로 확산된다는 우려는 과장일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재부와의 협의 및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된 내용이나, 일부 내역 사업의 경우 성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소명이 미흡한 편으로 예산규모 감축의 필요성이 있음

- '18년도 기준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555억으로 '16년 기준 시장 규모가 10조 8,945억이며 수출액은 3조 9,607억 원임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음

- 특히, 국내 게임산업의 허리역할을 할 중소게임업체를 육성하고 우수게임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배정된 341억 원 및 게임을 활용한 e스포츠 분야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에 배정된 25억 원 등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산업경쟁력의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고려할 때 타 보조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19년도 예산사업부터는 타 세부사업(지역 컨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내 내역사업으로 재조정된 바 있음

- 또한, '건전 게임문화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게임이용 실태조사 및 연구 활성화, 게임 리터러시 교육, 게임활용 강화, 문화콘텐츠 활용 게임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 운영, 건전 게임문화 확산 홍보, 건전 게임문화 확산 홍보 등으로 구성된 내용이 보다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즉, '건전 게임문화 조성' 사업의 경우 연구역량강화, 기반구축, 저변확대 등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위목표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그 성과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여 현재 규모의 재정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사업수행방식의 효율성 제고(다양한 세부 사업보다는 핵심적인 사업으로의 역량 집중)가 필요함

- 게임산업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부족함. 예산의 증액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써의 사회적 수요는 필요조건에 해당할 뿐임.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충분조건으로서의 개별 내역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객관적 입증을 수반할 필요가 있음

○ 게임산업 육성 지원 예산은 정액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규모는 기재부와의 협의 및 국회심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게임산업 육성 지원 예산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매년 기획재정부 중기재정계획(5개년 사업비 소요)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 및 이스포츠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각 연도별 구체적인 재정소요액 추계를 검토하고 있는 등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6개 권역 9개 지역 글로벌게임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게임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각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대표성, 사업실적, 사업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진행하는 등 제도화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게임산업육성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국제e스포츠연맹 등 총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원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대표성, 사업실적, 사업추진역량 등이 인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기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을 통해 실시간 사업별 실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집행현황 점검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같은 시스템에서 해당 건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조사업 정산 시에는 외부회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집행액 발견 시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 제출 등을 포함한 보조금 관련 사후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정산검토 시 집행 건별 증빙 보완요청이나 불인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체계도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음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적절히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검증보고서)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간접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간접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건별로 회계검토를 거쳐 적정 집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정산 검토 중 부적정한 집행 건이 발생되는 경우 불인정하여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으며, 회계검토 이후에 담당자의 재검토를 거치는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실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도 없음

- 특히, 최근에는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모든 보조사업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어 중복수급,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시 제재방법 및 절차 등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는 제26조(보조사업 집행점검), 제32조(부정수급 점검), 제32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제36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발견 시 제28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30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제31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는 부정수급시 제재방법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법령은 국내 게임산업 육성, e스포츠의 활성화, 건전게임문화 조성 등과 관련한 국가의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법령이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

○ 해당 사업은 문화산업 중 부가가치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종소업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게임산업은 기술개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신기술이 가장 먼저 접목되는 분야이기도 한만큼 이를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어 적절한 논거를 제공함

- 게임산업의 경우 여전히 종사자 수나 자본금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영세한 기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제작,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게임산업의 허리를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네트워크, 노하우 부족 등의 문제를 정책지원의 형식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보조사업의 목표는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로 비교적 명확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부 사업의 추진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내역사업 중 '건전 게임문화 조성'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근거제시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수행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다수의 사업에 있어서 성과로 제시된 내용이 단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게임산업의 경쟁국들은 게임산업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모든 보조사업 특히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은 일몰시점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당 보조사업을 통해 사업목표가 달성되는 매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도식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행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게임산업의 경우 영세한 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금문제나 해외진출 노하우나 네트워크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제작, 해외진출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인정됨

- 그간의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대내·외적인 평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수행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08.2.29)에 따라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유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은 유사·중복성이 존재함

- '글로벌게임산업 육성'의 경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서 유망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원내용도 창업지원 및 멘토링으로 유사하므로 일부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지원업체 선정 등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게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 및 대기업의 게임광고 등 마케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규모 게임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의 성공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게임산업의 생태계보호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장기적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게임산업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보다 구체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음

○ '18년도 기준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555억으로 '16년 기준 시장 규모가 10조 8,945억 이며 수출액은 3조 9,607억 원임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의 산출근거 제시가 미흡한 편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적절하지 않음

- 특히, '건전 게임문화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게임이용 실태조사 및 연구 활성화, 게임 리터러시 교육, 게임활용 강화, 문화콘텐츠 활용 게임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 운영, 건전 게임문화 확산 홍보, 건전 게임문화 확산 홍보 등으로 구성된 내용이 보다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수행방식의 효율화 및 예산감축을 권고함

- 게임산업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보다 구체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우선 사업의 목표 및 지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다수는 기술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영세한 중소업체를 지원하고 지역에 특화된 업체를 지원하는 등 재분배적인 속성이 있으나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업수행 방식이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개별 내역사업이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보다 객관적·직접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필요한 경우 성과지표도 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사업에 있어서 성과로 제시된 내용이 단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국가 단위의 산업전략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그간의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대내·외적인 평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수행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모든 보조사업 특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은 일몰시점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함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수행방식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전 게임문화 조성' 사업의 경우 연구역량강화, 기반구축, 저변확대 등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위목표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그 성과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며, 성과지표로 제시된 과몰입 비율 저감도 그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같은 맥락에서 사업수행방식의 효율성(다양한 세부 사업보다는 핵심적인 사업으로의 역량 집중)도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공예관광산업 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6.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3.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업의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함 ·유사한 업무의 내역사업들이 많으며, 중요한 내역사업에 대하여 사후적인 성과를 관리할만한 지표가 부재함 ·내역사업의 단순화를 검토하고, 중요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검증할 지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7조, 8조, 10조 내지 14조, 18조 내지 19조,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2018~2022),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7조, 39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등에 의거함

- 상기 조항에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과 확산 지원, 실태조사, 창업 및 제작 지원,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우수공예품 지정,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을 규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한국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견고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국정과제 67(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7-3(지역공예클러스터(메이커스페이스) 조성)과 공예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사업(내역사업)의 연관성이 있음

○ '공예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목표는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로 혜택을 받는 공예 분야 종사자가 직접적인 수혜자임

- 공예 종사자(공예장인, 작가, 업체 500여개) 외에도 간접적으로 '공예주간', '공예트렌드페어' 등을 관람하는 관광객, 소비자 역시 해당 사업을 통한 수혜자로 볼 수 있음(2018년 기준 총 27만여명)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목표인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예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공예상품 개발, 지역공예 기반조성 지원, 공예품 유통 활성화, 공예문화 확산을 위한 공예주간 운영,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 사업의 목적은 공예문화산업 정책서비스 제고 및 공예기술 R&D 생태계 구축, 공예산업 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공예산업 자생력 확보, 공예문화 소비 확산 및 공예품 품질 향상 등임

- 이를 위해 공예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공예상품 개발, 지역공예 기반조성 지원, 공예품 유통 활성화(공예트렌드페어 개최, 우수공예품 지정제, 공예유통기반 구축), 공예주간 운영(서울 및 수도권, 지역순회),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등을 수행함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의 목적은 한국공예품의 해외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장 발굴 및 확대, 한국공예 우수성 홍보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 등임

- 이를 위해 해외문화예술기관 한국공예전 개최, 국제교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함

○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공예업체 매출액 증가율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내역사업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고부가가치 공예상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과 연계된 지표도 부재하여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검증하기 어려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공예산업이 가진 다양한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량생산체제의 정착으로 공예산업은 제조업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의 열위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옴

- 자생적 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시장 자율보다 민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공예산업 육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및 특정기관 자체 예산 수행시 수혜자가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로 한정될 우려가 크며, 공예문화산업은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견고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9년 세부사업예산은 5,330백만원으로써, 사업비의 81%인 4,330백만원이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내역사업)을 통해 공예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300백만원, 고부가가치 공예상품 개발 400백만원, 지역공예마을 육성 500백만원, 공예품 유통 활성화 1,400백만원, 공예주간 개최 1,030백만원,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700백만원으로 공예트렌드페어 개최, 우수공예품 지정제, 공예유통기반 구축, 공예주간 운영 등을 추진함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은 해외문화예술기관 한국공예전 개최 600백만원, 해외시장 진출 400백만원으로 공예분야 국제교류 및 전시, 해외공예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 중임

○ 다만 2016년 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감축'으로 나왔지만 2017년 이후 신규사업 추진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공예관광산업 육성' 사업은 공예문화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의해 지정된 전담기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받아 지원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공예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전승 및 발전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닌 분야로 인류의 행복추구권, 공예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직업의 자유 보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공예관광산업 육성' 사업은 1차 보조사업자(전담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가 간접보조사업자(공예장인, 작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공모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능력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공예작가, 단체 등을 선정하여 공모를 진행함

-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매 분기별 예산액을 나눠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 전 집행현황 및 추진상황을 점검함

○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내부지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맞는 전문법인 및 단체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보조금 집행·정산 업무 매뉴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회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업무를 진행함

- 보조사업의 계획부터 정산까지 관리·감독 및 집행 점검을 위해 반기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사를 진행해 왔으며, 점검단에는 담당사무관, 주무관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보조사업 전 범위에 대해 점검을 진행함

- 분기별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집행 전 단계에 걸쳐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보조금 집행·정산 업무 매뉴얼'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업무를 진행함

- 각 지침별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계획부터 정산까지 관리·감독 및 집행 점검을 위해 반기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사를 진행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함

- 사업 후 보조금 정산 시 공인된 회계기관을 통해 보조사업을 점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2018~2022),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의거하여 시행됨

- '공예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목표는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로 혜택을 받는 공예 분야 종사자가 직접적인 수혜자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공예업체 매출액 증가율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내역사업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고부가가치 공예상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과 연계된 성과지표도 부재하여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검증하기 어려움

3-2 정책 제언

○ 예산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엄밀한 예산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요한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감축 판정을 받았으며, 신규 내역사업(공예주간, 공예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추진으로 예산이 증가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관광레저기반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8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20년부터 50억원 감축),‘19년 내역사업(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은 18,635백만원 ·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경우 실질적 성과가 미미하고,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으므로 사업비를 50억원 감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 사업계획 미비로 본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16년 71억(54.4%), ‘17년 75억(22.8%), ‘18년 64억(33.9%)임 · 본 사업은 지역의 관광 투자 활성화 및 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관광 진흥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 균형적 시각의 추진이 필요함 - 다만,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지자체 준비성과 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지역정치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언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관광기본법 제9조 >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 >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이 명확함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관광개발사업 지역의 투자 유치 지원, 지역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개발 지원 등은 관련 법적근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지역의 관광 투자 활성화 및 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관광 진흥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관광개발사업 지역의 투자 유치 지원, 지역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 관광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지원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등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요구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은 지역의 관광 투자 활성화 및 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관광 진흥사업으로 각 세부내역사업별로 민간과 지자체로 나누어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관광진흥 사업으로 지자체 투자 역량강화 및 지역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의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이 중단 될 경우 국가 차원의 관광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고, 그동안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가 매몰비용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자치단체보조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28,417백만원	18,950백만원	22,743백만원
	50%	50%	50%
자치단체부담	28,417백만원	18,950백만원	22,743백만원
	50%	50%	5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부담)	%	%	%
합계	56,834백만원	37,900백만원	45,486백만원
	100%	100%	100%

○ 민간단체보조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4,862백만원	1,778백만원	1,846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4,862백만원	1,778백만원	1,846백만원
	100%	100%	100%

○ 정액보조

○ 레저관광활성화

-사업시행주체/정액보조액 : 한국관광공사/'17년 900백만원, '18년 900백만원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사업시행주체/정액보조액 : 한국관광공사/'17년 162백만원, '18년 162백만원, '19년 130백만원

○ 관광투자유치 지원

-사업시행주체/정액보조액 : 한국관광공사/'17년 300백만원, '18년 300백만원, '19년 300백만원

○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시행주체/정액보조액 : 한국문화관광연구원/'17년 500백만원, '18년 416백만원, '19년 416백만원

○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은 '18년 기준으로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정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이 수행하는 세부내역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22호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따라 국비를 '정액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가 수행하는 세부내역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65호(관광자원 개발)에 따라 국비를 '50%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 불용액이 많음

* 지자체 불용액으로 인해 본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16년 71억(54.4%), '17년 75억(22.8%)

1-6 사회적가치 실현

○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 중 '지자체 보조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를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국비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일부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는 지자체의 사전 준비없이 국회 예산심사시 증액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 중 '민간 보조사업'은 사업 특성, 보조사업자의 사업 능력 및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였음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투자유치 지원 : 한국관광공사
-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사업 : 한국관광공사(오시아노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광자원개발 지자체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보조금 집행 실적과 수행상황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보고토록 하고 보조금 사용 용도제한을 명시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으나, 자자체 불용액이 많은 점은 사업계획과 집행시에 개선해야 될 부분임

○ 민간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외부기관의 회계검사를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절차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사후절차와 규정이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 수행 및 완료 후 보조사업자의 수행상황 보고,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회계검사 포함)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지역의 관광 투자 활성화 및 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관광 진흥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경우 실질적 성과가 미미하고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으므로 사업비를 50억원 감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 불용액으로 인해 본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16년 71억(54.4%), '17년 75억(22.8%)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지역의 관광 투자 활성화 및 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관광 진흥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지자체 준비성과 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지역정치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언함

○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성과지표로 개발이 필요함

○ 내역사업인 관광투자유치 지원은 투자정보 구축 및 운영 예산의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검토하여 적정예산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 효과성을 나타내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6.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4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3.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내역사업 간 재정비를 추진하고, 사업 중장기 목표(로드맵)를 바탕으로 관광 중소기업 지원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향후 동 사업은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단계 기업'과 '성장·성숙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권고함 ·창업준비 및 초기창업단계 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기한 설정을 통해 기업의 자립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 ·성장 및 성숙단계 기업 지원의 경우 기업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한정하고, 일정 수준의 역량 확보 시 지원을 종료함과 동시에 중기부 TIPS사업 등 타부처 지원사업 등에 적극 편입되도록 사업 소관부처의 노력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사업은 「관광진흥법」을 중요 법적 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동법 제47조의7에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역사업의 추진 근거로서 연계성 및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구체성은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타 산업 융합, IT접목 등 미래형 관광사업의 발굴·육성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외연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숙박·교통중개 플랫폼 등 IT기반형, 한식·한복체험, 레저관광상품 운영 등 체험형 관광사업 창업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동 사업은 '22년까지 800개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을 명시한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국정과제 73번)'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 역시 현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함

○ 동 사업의 수혜자 범위에 대해서 사업소관부처는 직접적 수혜자로서 관광사업 관련 예비 창업자 및 중소규모의 관광벤처기업을, 잠재적 파급효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음

- '12년부터 '18년까지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일반창업기업에 비해 관광벤처기업의 생존율이 높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파급효과는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동 사업이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편익을 발생하기보다는 창업 초기단계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내역사업은 연도별로 주요 내역사업들이 수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 '17년의 경우 주요 내역사업은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관광기업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관광기업육성 펀드 조성·운용' 등 세 가지로 구성
- '18년은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관광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 '관광기업육성펀드 조성·운용' 등 네 가지로 전년 대비 관광벤처 인큐베이팅을 위한 보육공간 조성을 위한 내역사업이 추가되었으며, '19년의 경우 '18년 내역사업과 동일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설정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선사업소관부처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내역사업(예: 컨설팅, 판로개척,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 사업소관부처는 당해연도 선발목표 기업수와 기업별 컨설팅 건수, 기업당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방향 및 시장단가를 참고하여 조정하고 있음을 밝힘
- 다만, '예비 및 관광벤처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기업별 역량 강화 전문교육 및 성공지원 연계 사후 관리' 등 사업 간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목표의 명확화를 바탕으로 사업명 변경 등의 구조개선이 요구됨

○ 동 사업은 '16년 국고보조사업평가를 통해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내역사업은 차별화하고 국내외 관광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역사업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사업소관부처에서는 타기관에서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컨설팅은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광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관광분야 특화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힘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예비)관광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인프라 구축, 관광기업육성펀드 조성·운용 등으로 중소·창업벤처기업 지원의 큰 틀에서 볼 때 일반적인 지원정책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동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내역사업의 구성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사전에 설정하였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관광분야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기관인 관광공사가 관광산업분야 초기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

- 즉 관광공사가 가진 플랫폼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관공공사에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동 사업의 유사·중복성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의 사업들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 예상됨

- 동 사업 소관부처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관광분야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일정 부분 성장시킨 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편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중소벤처기업부 TIPS사업과의 연계)

- 향후 어느 수준까지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실시하고, 어떠한 기준에 도달하였을 때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사업과 연계시킬 것인지 기준 및 로드맵 등의 제시가 요구됨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업수요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예비관광벤처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의 경우 '17년 신청 331개 선정 38개, '18년 신청 327개, 선정 44개로 기업 수요가 충분히 존재함

- 관광벤처기업의 경우 '17년 기준 신청 31개 중 선정 19개, '18년 기준 신청 39개 중 선정 28개로 상대적으로 신청수는 낮으나 적절한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 또한 '17년~'18년 기준 동 사업의 평균 지원 기업수는 '사업화 지원 및 교육·컨설팅' 기준 약 80개 정도로 동 사업을 통한 수혜기업이 한정적이며, 동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홍보·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고려하는 경우 '17~'18년 기준 평균 약 330개의 기업이 수혜기업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나, 지원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경우에도 재정적 손실의 여지는 크지 않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내역사업별로 연도벌 예산배분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나, 이는 연도별 산업 수요에 근거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역사업별 예산배분의 변화임을 확인함

- 사업소관부처는 '17년에 신규 반영된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의 경우 관광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추진됨을 소명하였음

- '17년 관광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18년 관광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 등 연도별 신규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는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유형의 사업은 아니며, 기준보조율 국고 100%로 정하고 있음

- 수익자 부담원칙을 준수하고 민간 참여기업의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자, 보조사업자를 통한 예비창업자와 관광벤처기업 사업화 지원 등 실제 사업 진행 시 참여기업의 자부담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입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함

* 관광벤처기업 사업화 지원금 지원 기준 : 자부담 25%

** '18년 추진사업인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사업' 지원 기준 : 자부담 39%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이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한국관광공사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한국관광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와 방대한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나, 창업보육, 투자 컨설팅 등의 영역은 민간의 전문성이 발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인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협업이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 운영지침」, 「예비관광벤처사업 운영지침」, 「사업비 계상 및 사업화지원비 지급기준」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

- 지원받은 기업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업무계획 심의, 성과평가, 예산 집행 등을 점검·관리하고 있음

-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목표달성도가 부실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가 추진됨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집행점검 내실화를 위하여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외부 회계감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해제·해지되거나 사업진행 상황점검 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차명제한, 사업지원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또한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후정산으로 지원하며, 외부 회계법인의 적격증빙 검토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사업 전반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지침에 의거 별도의 심의조정위원회를 두어 사업추진상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점검을 실시함

-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상기 운영지침에 의한 '예비관광벤처기업 운영지침'과 '예비관광벤처사업 사업비 계상 및 사업화지원비 지급기준'을 별도로 두고, 선정사업자의 사업운영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관리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예비)관광벤처기업의 발굴과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동 사업 내역사업 간 재정비를 통해 차별화 및 사업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사업 중장기 목표(로드맵)를 바탕으로 관광 중소기업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사업 중장기적 차원에서 로드맵을 바탕으로 동 사업 내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단계업'과 '성장·성숙단계 기업'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여 지원할 것을 권고함

- 창업준비 및 초기창업단계 기업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며, 지원 후 기업의 자립을 위해 지원기한을 설정함과 동시에 타부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성장 및 성숙단계 기업 지원지원의 경우 기업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한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역량 확보 시 '지원제도 졸업'은 물론 중기부 TIPS사업 등에 적극 편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및단체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19년 예산 기준 205백만원) ·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중 고용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일부 사업은 2020년 즉시폐지함 · 본 사업의 목표는 우수 관광 종사원의 육성 기반 마련, 관광산업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광업계 상호교류 여건 조성 등을 통한 관광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궁극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효과를 판단할 성과지표 등에 대한 검토, 개선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관광기본법 제11조(관광 종사원의 자질 향상), 관광진흥법 제39조(교육),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관광진흥법 >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관광기본법 >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관광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육성) 및 종사원 전문역량 강화(교육),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취업지원, 지역 일자리 역량 강화),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안전점검 및 교육, 정보망 구축), 관광단체 지원(학술연구 지원, 관광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 등은 관련 법적근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관광전문인력 양성, 지역 일자리 역량 강화,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관광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우수 관광 종사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서비스 인력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 역량 강화사업은 관광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자생구조 확립 목적을 가진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됨

○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유원시설업체의 지속 증가 및 최근 안전사고 다수 발생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및 인식 제고,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목표는 우수 관광 종사원의 육성 기반 마련, 관광산업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광업계 상호교류 여건 조성 등을 통한 관광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궁극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우수 관광 종사원의 육성 기반 조성, 관광분야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 지역 관광산업 일자리 역량 강화,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광학 연구지원 및 관광업계 상호 교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용과 목표가 명확함

- 다만, 성과지표인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참여 인원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관광전문인력양성 사업은 관광교육 종사자 및 교육기관 육성을 통해 우수한 관광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 서비스 인프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사업은 관광업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관광업계 상호교류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기준 마련, 실태관리 및 인식 제고, 종사자 및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하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민간단체보조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3,037백만원	3,542백만원	7,194백만원
	92.7%	92.7%	85.5%
민간단체부담	238백만원	277백만원	1,219백만원
	7.3%	7.3%	14.5%
합계	3,275백만원	3,819백만원	8,413백만원
	100%	100%	100%

○ 정액보조

○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정액보조금 지원 비율: 100% * 단, 종사원 교육사업 및 단체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부담예산 편성 ** '19년 신규편성된 '지역관광 혁신센터 구축' 의 경우 국비:자부담=5:5로 예산 매칭하여 추진

○ 현재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구인-구직 지원, 지역 일자리 역량 기반 강화,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광단체 상호교류 및 연구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판단됨

○ 전문인력양성 기반 구축, 우수 교육기관 육성의 전국적 확대, 지역 관광산업에 특화된 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다만,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중 고용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일부사업은 2020년 즉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원시설 업체수의 증가에 비해 관리예산의 증가폭은 적은 편으로 판단됨 ('15년 894개소 → '17년 2,165개소(2년간 242% 증가)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관광분야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보유한 한국관광공사와 업종별 분야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협회들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 학술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관광학회는 국내 최초 관광학 분야 학술지를 창간하였으며 2017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될 정도로 관련 연구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판단됨

- 유원시설 안전검사기관의 경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후 이를 고시하여 유원시설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안내인력 양성 교육과 관광의 날 기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진흥법 제41조를 설립근거로 하는 관광산업 민간영역의 대표 법정단체로서 다양한 업종과 관광 관련 분야,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아우르고 있는 단체로 민관 파트너십 차원의 상호 협력기반 관광진흥 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적정한 보조사업자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조금 집행상황 및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및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등을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세부사업은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부처 집행 관리대상사업으로 일부 내역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매월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지원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내역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정산 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집행액 발견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충실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에 따라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사후관리가 충실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업실적보고 및 소액 사업을 제외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받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 부정수급 여부를 충실하게 감독하고 있음

○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목표는 우수 관광 종사원의 육성 기반 마련, 관광산업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광업계 상호교류 여건 조성 등을 통한 관광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궁극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효과를 판단할 성과지표 등에 대한 검토, 개선이 필요함

○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중 고용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일부사업은 2020년 즉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9년 예산 기준 205백만원 감축)

3-2 정책 제언

○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사업은 관광업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관광업계 상호교류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기준 마련, 실태관리 및 인식 제고, 종사자 및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하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3.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5.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3.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3.5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2.47억 원, 전체 사업비 대비 3.65%), 사업방식 변경 ·본 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정보의 제공을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외국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경상보조와 지자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로 이루어져있는데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내역사업은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인언어불편해소지원 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인 비비비코리아의 선정 절차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관광 정보 리플릿 제작배포 사업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과를 알 수 없음 ·외국인언어불편해소지원 사업은 비비비코리아가 유일한 민간보조사업자이지만 해당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관광 정보 리플릿 제작배포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광광안내 정보의 제공을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및 외래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관광기본법」 제7조,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와 4개 민간단체에게 지자체보조와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높지 않음

- 「관광기본법」에서는 외국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낮음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4개 단체 대상)와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로 구성된 사업으로 세부 내역사업들이 사업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성이 높지 않음

- 민간사업자는 한국관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행협회, 사단법인 BBB코리아 등 4개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관광편의를 높여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은 높지 않지만 국정과제(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므로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본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민간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BBB코리아, 해당 지자체이고 최종수혜자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가 보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지자체경상보조(5억 원), 지자체자본보조(4억 원), 민간경상보조(58.6억 원)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세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내역들로 인해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자체경상보조 (5억 원) :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중 관광 안내사 인건비
- 지자체자본보조 (4억 원) : 읽기 쉬운 안내판 시설 설치
- 민간경상보조 (58.6억 원) : (1)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3) 관광안내 표지판 DB운영, (4)관광경찰협업, (5)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구축

○ 본 사업은 관광안내 및 언어 등 불편해소를 통해 관광편의 제공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역 사업	규모	비 고
1. 관광안내소 운영	24.4억 원	
(1) 관광통역안내소 운영	11.22억 원	
(2) 공항안내소 운영	6.18억 원	
(3)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6.00억 원	지자체경상보조 : 관광사인건비(5억원)
2.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37.9억 원	
(1)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운영	22.25억 원	
(2) 관광안내표준화 및 네트워크 확산	0.50억 원	
(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1.85억 원	
(4) 외국인언어불편해소지원(BBB)	7.18억 원	
(5)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번역 지원	1.65억 원	
(6) 관광안내소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2.00억 원	
(7) 관광정보 리플릿 제작,배포	2.47억 원	
3. 관광안내표지판 DB운영	0.8억 원	
4. 관광경찰협업	1억 원	
5.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구축	4.5억 원	
(1) 안내판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4.00억 원	지자체자본보조
(2)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가이드라인 제작	0.50억 원	

○ 본 사업은 외래관광객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만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역사업들 중 일부는 별도의 성과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관광안내표준화 및 네트워크 확산, 관광안내표지판 DB운영, 관광경찰협업 등과 같은 사업들은 별도의 성과지표를 갖추는 것이 필요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은 민간보조사업자들로만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보조금이 효과적인 방법이고 지자체보조사업들도 보조율이 50%로 지자체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됨

○ 본 사업은 내역사업들 간 유사·중복성을 판단한 결과 지원 대상에 대한 차별성이 인정되어 유사·중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본 사업은 여타 사업들과 비교해서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구축된 관광안내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함

○ 본 사업이 폐지되는 현재 구축된 관광안내체계를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추후 재구축하는데 재정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일부 내역사업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음

-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사업 중 관광불편신고센터는 총 1.85억 원 중 운영비가 1억 원, 홍보비가 0.85억 원으로 홍보비 비중이 높으나 이 홍보비는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74호에 규정되어 있어 타당성이 있음
-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사업 중 외국인언어불편해소지원 사업은 관광통역안내소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이 2.45억 원으로 총비용 7.18억 원 중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높다고 판단됨
-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사업 중 관광정보 리플릿 제작, 배포 사업은 총비용 2.47억 원 중 배포요원 인건비가 1.92억 원으로 78%를 차지해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들이 없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지자체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 50%를 준수하고 있고 민간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 없음

○ 지자체보조사업은 보조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고,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현재 보조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 중 지자체보조 사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화되는 지역경제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보조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서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음

- 지자체경상보조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부산, 대구, 인천, 춘천, 평창 등 5개 지자체를 선정
- 지자체자본보조는 읽기 쉬운 관광 안내체계 구축 사업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 부산과 전북 완주를 선정

○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4개 중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행협회 등은 선정 절차가 갖추어져 있으나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는 선정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음

-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는 국내 유일 언어통역 자원봉사단체라는 것 이외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조금 집행 상황 및 사업 수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어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교부조건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경상보조 사업자 중 비비비코리아 선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회계법인의 회계거사를 의무화하는 등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정보의 제공을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외국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경상보조와 지자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로 이루어져있는데 일부 내역사업들의 사업비 구성이 적절하지 않고 효율성이 낮고 일부 민간보조사업자는 선정과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민간경상보조 58.9억 원 중 2.47억 원(민간경상보조 대비 4.2%, 전체사업 대비 3.65%)를 감축하고 외국인언어불편해소지원은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여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 외국인언어불편해소지원은 비비비코리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관광 정보 리플릿 제작배포는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2.47억 원 감축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관광활성화기반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20년 1억 감축, ’21년 1억 감축, ‘22년 2억 감축) · 내역사업인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사업은 2022년 완전한 민간이양을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감축함 · 전통한옥체험사업은 2개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액이 28백만원인데 사업신청시 지자체보조 확약 등을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가 필요함 · 민박업 담당자 국외연수를 폐지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6조(융자대상자격)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관광기본법 >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호텔 등급제도 운영, 관광숙박업 통계 발간, 안전민박 활성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관광두레 조성,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은 관련 법적근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사업체 육성· 지원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서 중점 추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각 내역사업들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사업체 육성· 지원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정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광 호텔체인화 기반조성사업은 민간이양계획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자치단체보조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925백만원	0백만원	1,400백만원
	50%	0%	50%
자치단체부담	925백만원	0백만원	1,400백만원
	50%	0%	50%
민간단체부담* (자부담)	0백만원	0백만원	0백만원
	0%	0%	0%
합계	1,850백만원	0백만원	2,800백만원
	100%	0%	100%

○민간단체보조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5,964백만원	6,177백만원	5,912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0백만원	0백만원	0백만원
	0%	0%	0%
합계	5,964백만원	6,177백만원	5,912백만원
	100%	100%	100%

○정액보조

< 한국관광공사, 민간단체 등 정액보조 >

-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정액보조액 지원 비율 : 100%

○ 본 사업의 주 수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으로서 별도로 책정된 기관운영비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보조사업비에 기관운영을 위한 고정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산 전액이 사업 수행 경비로 집행되므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각 내역사업의 예산항목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액보조 비율을 100%로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보조사업인 관광두레 조성(지역협력)사업과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자원 개발 기준보조율 50%로,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60%로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에 공헌함

- 관광두레 조성사업은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청년· 다문화구성원, 지역단체 참여로 공생·연대·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매년 25개소 내외 한옥에 각각의 특색을 반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전통한옥 및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련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고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제반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 후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민간보조사업은 한국관광공사법, 관광진흥법 41조, 관광진흥법 및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보조사업자 3개 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을 지정하여 추진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민간보조사업은 법적합성 및 전문성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지정하고,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보조금 교부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점검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자 집행관리 및 집행점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하게 점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불용액에 대한 관리 점검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정산 및 회계검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의 적법한 사용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 사후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공공기관, 법정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및 지자체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부정수급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발생시 처리 기준을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사업집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자 3개 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과 지자체를 통해 각 내역사업들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각 사업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각 예산항목의 규모와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내역사업인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사업은 2022년 완전한 민간이양을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감축함('20년 1억 감축, '21년 1억 감축, '22년 완전폐지)

○ 관광기념품 컨설팅은 당선작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컨설팅 수혜자 증대를 통한 관광기념품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전통한옥체험사업은 2개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액이 28백만원인데 사업신청시 지자체보조 확약 등을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가 필요함

○ 민박업 담당자 국외연수를 즉시 폐지함

3-2 정책 제언

○ 안전민박 활성화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 국민이 여행을 갔을 때 본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필요함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사업을 통해 관광품질의 실질적 향상이 있다는 가시적 성과를 3-5년 후에는 볼 수 있도록 사업성과관리를 꾸준히 할 것을 제안드림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국내관광 역량 강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5.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국민 관광 지원>의 '근로자 휴가 지원'은 2018년에 실시한 사업 효과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민간투자구축과 사업추진의 비효율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 타당하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추진함이 타당하지만, 국정과제 사업이고 2018년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 사업예산은 사업추진과정 점검과 개선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기존 예산액 8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2021년의 사업 지속여부와 사업규모는 2018년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2020년에 결정할 필요가 있음 ·<국내관광 캠페인>은 비용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방식별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하여 TV광고 송출 비중을 줄이는 등 매체별 송출비중을 조정하고, 새로운 광고방식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관광기본법」 제8조, 제13조,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국내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임

- 국내관광 역량 강화는 국내관광 수요 확대와 국내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관광 매력 홍보, 관광소재 개발,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여행정보·통계 제공,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자원화, 관광상품 개발, 관광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국민 관광 지원>의 '근로자 휴가 지원'의 경우 「관광기본법」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는 국민의 휴가사용 촉진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이 국가가 특정 근로자의 국내여행 소요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시장조사 및 통계분석, 관광향유권 확대, 국가 단위의 관광 상품 개발, 관광산업 초기단계 성장 기반 마련 등은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국내관광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영역에 대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가 일부 지원할 타당성은 있음

- 관광시장 조사분석, 관광통계 개선, 국민의 여가권 확대 및 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업 등은 민간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고 혜택이 폭넓게 돌아가는 사업이므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국민 관광 지원>의 '근로자 휴가 지원'의 경우 국정과제 73-1(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의 세부과제 1(노동자 휴가지원제도 도입)과 관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부사업 분리 등을 통해 내역사업 간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의 범위가 넓고, 내역사업 이관이 빈번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목표가 다른 내역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국민 관광 지원>의 '근로자 휴가 지원'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가 미비하므로, 2018년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진 요인들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2020년에는 참여대상인원을 기존 8만명 이내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2019년말까지 2018년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2021년의 사업 지속추진 여부와 사업규모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 관광 지원>의 '근로자 휴가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확대하고 국내관광을 진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된 기업의 근로자에게 1인당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 20만원, 기업 지원금 10만원, 정부 보조금 10만원의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조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 시범사업 후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으로 확대하여 실시중이며 2022년까지 총 5개년간 실시 후 2023년부터는 민간자립형 구조로 전환하여 직접 지원을 중단할 계획임

- '근로자 휴가 지원'은 수혜자의 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국내관광 관련 지출을 늘려 국내관광 진흥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중이나, 실제로는 국내관광 관련 지출의 제고 없이 보조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출했을 경비를 단순히 국고 보조금과 기업 지원금으로 대체하거나, 투입된 보조금 규모에 비해 국내관광 관련 지출이 늘어나 국내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성과가 다른 사업추진 방식에 비해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함

- '근로자 휴가 지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관광비용 지출을 구축하거나 사업 수행방식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성 사업에 대한 수혜자격 지원가능 대상층의 지원대상 확대요구를 주된 이유로 지원대상이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에서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으로 네 배 늘어났고, 사업 운영비 등 5억원을 포함한 예산은 2018년 25억원에서 2019년 85억원으로 60억원 증가함

- ‘근로자 휴가 지원’은 2018년 사업추진 과정을 2020년 예산편성시점 이전까지 점검하여 근로자와 기업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체들의 행동변화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진 요인들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2020년에는 참여대상인원을 기존 8만명 이내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2019년말까지 2018년 사업추진결과에 대해 본 사업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국내여행 비용 지출을 단순 구축하지 않고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수혜 근로자의 휴가 사용률과 국내 관광 참여를 증가시키는지, 총 사업비용 대비 국내 관광 진흥 효과가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적지 않게 나타나는지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2021년의 사업 지속여부 및 사업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관광시장 조사분석, 국민관광 지원, 관광통계 개선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며, 국내관광 캠페인과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과 부문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해야 함

-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은 시장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영역에 한정하여 필수적인 부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내관광 캠페인>의 광고 방식은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국민관광 지원>의 ‘근로자 휴가 지원’은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에 근거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관광 캠페인>은 광고방식별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하여 TV광고 송출 비중을 줄이는 등 매체별 송출비중을 조정하고, 새로운 광고방식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민 관광 지원>의 ‘근로자 휴가 지원’은 민간의 국내여행 경비지출을 구축하고 사업의 비용대비 성과가 타 사업보다 작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2020년에는 2019년 사업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의 사업지속 여부와 사업추진 규모는 2018년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업 중 일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에 관련됨

- <국민 관광 지원>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관광 향유권 증진을 통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임
-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등의 내역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의 사회적가치 실현과도 연계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을 관리하고 있음

-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지는 않지만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공모절차, 선정기준을 준수하는 등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집행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지는 않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집행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사후절차와 규정이 마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감독 관리하고 있음

- 부정수급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추진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방식과 규모 등을 조정하고,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의 범위가 넓고, 내역사업 이관이 빈번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목표가 다른 내역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국내관광 캠페인>, <국민 관광 지원> 등의 내역사업은 사업효과에 대해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는 등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함이 바람직함

- <국민 관광 지원>의 '근로자 휴가 지원'은 2018년에 실시한 사업 효과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민간투자 구축여부와 사업추진의 비용효율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 타당하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추진함이 타당하지만, 현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며 2018년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 수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2018년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진 요인들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조

건으로 2020년에는 참여대상인원을 기존 8만명 이내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2019년말까지 2018년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2021년의 사업 지속추진 여부와 사업규모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관광 캠페인>은 비용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방식별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하여 TV광고 송출 비중을 줄이는 등 매체별 송출비중을 조정하고, 새로운 광고방식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을 제안함 ·사업의 규모가 크며 매년 증액되는 사업이나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내역사업 간에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있음 ·만족도, 이용률 이외에 사업목적의 효과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집행률이 낮음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립체육센터 건립지원 등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며 사업목적의 효과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설이용률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도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하여 일부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의 내용이 내역사업과 비교적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내역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 정부 100대과제 중에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가 포함되어 있음(72번)
- 시설 규모와 입지에 대한 계획적·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재원효율화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을 통한 사업 운영이 필요함

○ 시설의 수혜 범위가 광범위하여 공공재적 성격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등 국민 선호 생활체육 시설로 전 국민이 잠재적 수요자가 되어 수혜의 범위가 넓음
-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또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있음

- 이를 위해서 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등을 지원함
-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이용률 및 시설만족도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성과측정 지표선정이 합리적이지 못함

- 내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국립체육센터건립지원 및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은 실집행률이 낮다고 판단됨
- 실집행률이 17년도 62%, 18년도 24% 로 매우 낮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라는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서 체육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음

-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비수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민간이 하기에는 불가능함

○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10분 이내(4만명당 1개소)에 모든 국민이 체육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나 시급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음
- 사업이 폐지 될 경우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 또는 학교에 재정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타사업과의 유사· 중복가능성은 없어 보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2019년 기준 3개 세부사업 207,479백만원으로 2018년 56,120백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증액 사업은 신규 국민체육센터 및 근린형 소규모 체육시설임

- 일반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개소당 2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는 개소당 1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그 지원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됨

○ 체육 시설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금액이 달라지나 보조율은 30% 정률로 지원되고 있음

-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중대도시의 경우 9억원 이내, 소도시농촌형은 4.8억원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보조율 30%)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중대도시와 소도시농촌을 구분하며, 지방비를 정률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어 지역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효과가 있어 재정지원의 규모가 타당하다고 보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음

- 1단계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평가(70점)를 실시하고 2단계 정량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1~3배수 대상 사업을 선정함

- 이후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성평가(30점)를 실시하여 정량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함

○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지자체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교부를 통해 재원을 집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실적 및 정산 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예산집행 및 실집행 관리를 분기별로 점검하며, 부진지역을 집중관리 하고자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집행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사업의 실집행 및 단계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서 계속사업비 지원액을 조정하고 있어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실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 대상 공모 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 17년 결산자료 결과 국립체육센터 건립지원 및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과도하게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에 대한 정산내역 및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 관리에 관한 내용은 다양한 법률(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 서류 검토를 통해 보조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최근 3개년동안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는 없으며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다고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체육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은 인정되며 2~3년간 개소별로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지원의 재정규모가 적정하게 설정되었음

- 사업의 지원 재정규모가 적정한 편이며 지자체 별 재원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비가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어 재정지원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의 실집행률 부진 및 성과지표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신규로 개소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임

○ 본 사업은 18년 대비 19년 보조금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증액 및 비용 산정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일반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개소당 2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는 개소당 1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18년 대비 금액이 증가한 것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신규로 지원되었으며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에 대한 수요가 늘어 그 지원금액이 증가하였음

○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내역사업 간에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있음

○ 지속적으로 내역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의 관리방식의 변경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성과지표의 체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임

- 만족도, 이용률 이외에 사업목적의 효과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이용률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립체육센터 건립지원 등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업의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함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할만한 성과지표가 부재하며,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운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차원의 문화예술, 전통문화에 대한 시책마련과 의무가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문화재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훼손·멸실 위기에 있는 전통기록유산을 비롯한 민간 소장 국학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국학 자료를 과학적으로 보존·민족의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문화기본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 제3조에서 제시한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을 통한 민족문화 창달 및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자료의 대부분이 지류(紙類)이기 때문에 전통문화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활용성을 가질 수 없고,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보존이 힘든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학자료를 DB로 구축하게 되면 원천자료는 과학적인 수장시설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음

- 민간에서 이러한 자료를 DB화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시장 및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임

○ 전통시대 민간의 일상적 삶을 기록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간 기록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고, 이것을 전통문화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보존할 뿐만 아니라, DB구축을 통해 연구에서 콘텐츠 구축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듦으로써, 연구자가 1차적인 수혜자임

- 기록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통해 우리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경쟁력과 국격(國格)을 제고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국학자료 수집 및 보존, 체계적인 정리, 심층연구, 성과의 보급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서 민간소장 기록유산의 종합적인 조사·수집을 통한 전통문화자산에 대한 보존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 선현들의 정신유산과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함으로써, 전통문화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국격을 높이고 있음
- 매년 2만여 점의 국학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보급, 전시, DB 및 콘텐츠화 등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일련의 사업임

○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데 어느정도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역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에 산재한 자료의 소재 및 소장자와의 접촉 등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전문 수장시설 및 전시공간의 확보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국학 전문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의 필요성은 인정됨

- 2001년부터 한국국학진흥원이 국내에서 최초로 국학자료 소장자의 소유권은 보장하고 관리권을 위임받는 '기탁제도'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
- 기탁제도는 자료 구입에 따른 예산 투입비용을 줄이고 기증을 꺼리는 문중의 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민간소장 기록자료 수집 방식으로써, 국가적인 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사업은 전통시대 민간의 일상적 삶을 기록한 민간 전통 기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것을 전통문화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보존할 뿐만 아니라, DB구축을 통해 연구에서 콘텐츠 구축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없음

- 왕실자료나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재 문화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민간 소장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타 사업과의 통합 가능성은 없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현재 주관 사업기관의 운영예산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가위탁 사무,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여 정액보조를 적용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경우 보유자들이 노령자로 열악한 보존환경과 노령화 심화로 인해 자료관리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 전문기관에 자료 기탁을 통해 훼손 및 멸실위기에 처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한국국학진흥원이 수집한 자료는 516,036점(2018년 12월 현재)으로 국내 최대의 국학자료 전문소장기관임

- 수집된 자료는 수장고와 장판각(목판 10만장 수장 가능)에 보존하고 있으며, 전시시설 및 연수시설을 갖추어 전통기록문화 유산을 수집·보존 및 연구·보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전문시설을 갖춤

- 공모방식에 의해 진행할 경우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51만여 점의 자료 반환, 기탁자의 민원 제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할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인 (재)한국국학진흥원은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2001년 본관을 비롯하여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 시설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건립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보조사업 집행관리)에서 요구하는 사항별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통지) 등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함

- 사업대상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내용 및 예산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업의 진척상황 및 성과를 매주 주례보고 형태로 보고 받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분기별로 주관사업 관계자와의 미팅 및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은 결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회계 검사를 시행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6조(검사) 등에 따라 개선 조치 및 시정 명령 등 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기준을 적용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6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7장(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36조(검사), 문체부 '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후 정산 및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함

- 보조사업의 회계관리를 위해 결산보고서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해의 예산 교부에 반영하는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사례가 없으며, 관리 체계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함

- 보조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시 사전 협의를 통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집행 내역의 국비보조사업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 및 회계검사 등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임

- 국가적인 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인 (재)한국국학진흥원이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함

3-2 정책 제언

○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초 예산 편성시 세부적인 예산 편성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성과지표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6.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2020년 정상추진 후 2022년 예산부터 66억 감축(2019년 예산 기준 75%) ·이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법에서 기념공원 설립을 명시 한 바 기념공원 설립사업(총사업비 310억) 타당성이 높음. 하지만, 기념 공원 설립 이후 사업 규모 확대 필요성이 낮아 정상추진 후 2022년 예산부터 2019년 기준(88억) 66억 감축(75%)으로 판정함. ·기념공원 설립은 사업 중단 이후 기재부, 조달청 검토의견 후 재개된 사업으로 사업 완료가 중요하므로 완료 시까지 정상추진으로 판단하였음.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 등으로 동학혁명 기념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정 기념재단이 지역단체와 협업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기념공원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리감독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운영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19.> ⑥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⑧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10. 3. 17.]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운영 지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전문개정 2010. 3.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목적이 명확하지만, 기념재단 지원 이외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2019.2.26. 개정)에 의거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관련 기념행사 등을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사업수혜자 범위는 현재 민간자치단체와 단체가 행하는 행사에 참여한 인원으로 제한됨. 현재 전국적인 파급효과는 미흡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유적지 답사 인원 증가, 기념관 관람객 증가 등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보기 어려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보조 어느 정도 타당하나 지자체,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이고 기념공원 사업은 개별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됨.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는 현재 사업회 30개, 천도교 4 등 다양한 바, 이를 활용하여 동학농민사상의 의의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역할이 국가의 역할일 것임.

-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고보조 기념공원 설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2016~2017년 사업 중단 후 다시 논의(기재부, 문체부)를 거쳐 2020년 완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필요성이 인정됨.

- 충북 보은, 전북 정읍, 충남 아산 등지에서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전주, 장흥 등에도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관리 추가 기념관, 기념공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념재단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 현재까지 사업 성과로 미루어보아 사업의 연장은 타당하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움.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념공원 건립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기념재단지원(8.5억),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운영(3억), 기념식지원(2억)

- 개별 사업이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적 확산에 적절한 규모라 보기 어려움.

○ 기념공원 사업비 78억(총 313억, 조달청검토의견)은 기재부 조정, 증액요구에 대한 조달청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기념공원 사업비를 제외하면 기념재단지원의 운영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효율적이라 보기 어려움.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기념재단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함.

○ 기념재단 전체 운영비에서 보조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으로 고려했을 때, 자부담 능력이 부족함.

- 기념공원 조성 이후 수익사업 추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사업성과가 없을 시 국고 지원 효과는 없다고 판단됨.

- 법적 근거를 두고, 기념재단에 지원하는 것보다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문체부 집행점검, 이 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음.

- 2013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사업중단, 사업재개, 사업비조정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문체부 관리감독 역할이 추가 요구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회계 감사, 정산보고서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민간보조사업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회계감사 등이 이루어짐.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이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법에서 기념공원 설립을 명시 한 바 기념공원 설립사업(총사업비 310억) 타당성이 높지만, 설립 이후 사업 규모 확대 필요성이 낮아 2022년 예산부터 2019년 기준(88억) 66억 감축(75%)으로 판정함.

○ 기념공원사업 이후 사업효과에 대한 점검 후 기념재단 지원에 대한 효율화가 요구됨.

3-2 정책 제언

○ 기념공원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리감독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 기념일 지정이 된 만큼 기념재단의 전국적으로 역량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동학농민운동 관련 단체들을 고려하면, 기념재단의 역할을 찾기가 어려움. 기념공원 준공 이후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체부와 기념재단의 노력이 요구됨.
- 향후 이 사업의 효과는 행사 참여자 수(전국적 분포 포함), 관람객 수, 동학농민운동 정신의 전국적 확산 정도 등에 의해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 소모성 행사지원에 그치지 않는 사업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만화산업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9.3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만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보조사업은 종류가 너무 많아 체계적인 관리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민간보조와 지자체 보조사업이 특정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부 사업은 민간보조 형태로, 일부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집행 및 관리 체계가 중첩되어 있음. ·경기도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 “만화규장각 사업지원”과 “부천웹툰융합센터 구축”예산을 지자체보조 대신 민간보조로 집행방식을 바꾸어 만화산업육성사업의 예산 집행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신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음

- 동법 제2조 제1호 문화산업의 정의에서 만화산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 진흥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사업목적이 국정방향과 일치함.

- 2개 국정과제(67-2 동네 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 69-2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임.

○ 산업의 파급효과는 크지만 영세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대형 플랫폼사를 제외하고는 만화산업 업체당 평균매출이 1.2억원 규모로 영세함.
- 만화작가의 46.6%가 2천만원 미만의 연소득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창작환경에 처해 있음.

○ 실질적 수혜자는 만화산업 종사자이며 간접 수혜자는 일반인임.

- 잠재적 수혜자는 만화 관련 학과 학생 및 만화작가 지망생 등 산업 종사 희망자, 간접적 수혜자는 만화박물관 방문객 등 만화를 즐기는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만화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동 보조사업을 구성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은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만화콘텐츠 기업 육성, 만화산업 인력 양성, 만화 유통 및 산업기반 조성, 만화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사업을 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 체계적인 관리도 어렵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움.

- 만화산업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내역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및 기업 육성”은 다양성 만화 창작지원과 사전 제작을 지원을 위한 만화 기획·개발 지원, 우수 신규 만화의 연재 및 출판 지원을 위한 연재만화 제작 지원,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만화 IP 비즈니스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임.

- “만화산업 인력 양성”은 지역웹툰캠퍼스 및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지원 사업, 신인만화가와 기성만화가간 노하우 전달을 위한 멘토링 사업, 웹툰 작가 데뷔 기회를 제공하는 공모전 지원 사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만화산업 진입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이 주요 세부 사업내용임.

- “만화 유통 및 산업기반 조성”은 만화 창작자 및 기업의 창작공간 등 지원을 위한 부천웹툰융합센터 구축 지원, 만화자원 보존 체계 마련을 위한 웹툰아카이브 구축 및 만화규장각 사업, 만화 향유 방법의 다각화 지원을 위한 전시향유 확산 지원 사업 등이 주요 세부 사업임.

- “만화 해외진출 지원”은 해외 전시마켓 참가 지원, 수출작품 번역 지원 등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산업육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영세성 극복을 목표로 한다는 사업 취지는 타당함.

- 작가 및 기업의 창·제작 환경이 열악하여 정부의 보조금 사업 필요성이 인정됨

- 소규모 기업의 네트워크 등의 한계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해외마케팅 사업이 필요함.

○ “만화”라는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소지는 없음.

○ 현재 만화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산업이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구상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자치단체보조 사업은 보조금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100% 보조율 적용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만화박물관을 운영하는 부천시 출연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율 100%를 적용함.

<자치단체보조>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2,100백만원	1,900백만원	3,500백만원
	50%	44.2%	46.7%
자치단체부담	2,100백만원	2,400백만원	4,000백만원
	50%	55.8%	53.3%
민간단체부담*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4,200백만원	4,300백만원	7,500백만원
	100%	100%	1,000%

<민간단체보조>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10,090백만원	10,690백만원	17,513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10,090백만원	10,690백만원	17,513백만원
	100%	100%	100%

○ 2016년 보조사업 평가결과에서 10%예산 감축을 권고하였고, 2018년 평가대상사업인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16.8% 감축하였으며, 2019년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 예산은 증액됨.

○ 2019년 예산의 정액보조액이 만화산업인력양성, 만화콘텐츠 기업 육성, 만화 유통 및 산업기반 조성 세부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1-6. 사회적 가치 실현

○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작가 양성 사업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대상 만화 창작 전문교육을 제공할 계획을 마련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정,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7조)을 명시하여 사업추진 여건 검토 절차를 마련함.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7조), 보조사업자 공모(제8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0조) 등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함.
- 사업자 선정시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사업자 선정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과 민간사업자 지원이 중첩됨.

-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로 부천시를 지정하였으며, 민간사업자 보조 대상으로 부천시가 출현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지정함.

○ 지자체 보조: 만화규장각 및 디지털만화유통활성화 사업은 한국만화박물관을 운영하는 부천시를 지정함.

- 보조금 교부 전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 보조: 만화산업육성 사업의 일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에 의거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함.

- 만화산업육성 사업의 다른 일부는 부천시 출연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지정 보조사업자로 선정함.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경기도(부천시)	50%,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부천시의 출연기관인 한국만화박물관의 운영예산은 일부는 지자체 보조의 형태로, 일부는 민간사업자 보조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점검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보조금 사용방법(제12조), 카드 사용 및 제한(제13조), 별도 계정 설정(제14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5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26조)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명시하여 운영함
- 보조금을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으며 1차와 최종교부 사이에 보조사업 진행 및 집행상황을 보고받아 실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보조금 반환 및 제재(제28조 내지 제32조),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제33조), 재산처분의 제한(제34조) 등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시달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31조), 부정수급 점검 및 모니터링(제32조 및 제32조의2) 등을 규정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3. 종합 평가

○ 부가가치가 크고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만화산업이 영세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만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보조사업은 종류가 너무 많아 체계적인 관리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민간보조와 지자체 보조사업이 특정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어떤 사업은 민간보조 형태로, 어떤 사업은 지자체 보조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집행 및 관리 체계가 중첩되어 있음.

3-4. 정책 제언

○ 사업성격을 구분 현재와 같이 일부는 민간보조, 일부는 지자체 보조 형태로 수행하지 않고 집행 및 사업자 선정체계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경기도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 “만화규장각 사업지원”과 “부천웹툰융합센터 구축”예산을 지자체보조 대신 민간보조로 집행방식을 바꾸어 만화산업육성사업의 예산 집행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사업은 상당수의 보조금 예산이 부천시에 위치한 만화진흥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9.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의 정상추진을 제안함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업지원에 따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 재정규모가 비교적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음 ·문화 콘텐츠 제작·관광개발 자금지원 구성내역과 상위 목표 간의 인과성이 뚜렷하고, 고용창출 등 목표한 사업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임 ·문화 콘텐츠 제작·관광 개발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그에 맞는 성과지표가 관리되어야 하며 타 지역과의 협력구축 등을 통한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유기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아시아문화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동법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에 따르면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산업 등의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동법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시책 및 지원)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비용을 지원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하여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의 내용이 내역사업과 비교적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내역사업은 아시아 문화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아이디어 공모전 사업화지원으로 구성되어있음
- 아시아문화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령 제16조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상품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하게 되어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어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투자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이전 및 창업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문화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대상 수혜자가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임

- 광주지역 전체 문화산업체는 3,496개로 이 중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해 있는 문화산업체는 총 72개(561명)에 머물러 있음(CGI 24개(326명), KDB 20개(164명), 전당권역 28개(71명))
- 잠재적 수혜자 그룹까지 포함하면 광주 투자진흥지구에 이전 및 투자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체까지 대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넓다고 판단되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산업 육성기능을 지역에 확산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였음

-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통하여 투자진흥지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위 목표의 성과 측정을 위해 고용 창출 수(2명)를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성과측정 지표선정에 대한 근거가 미흡함

- 문화 콘텐츠 제작·관광 개발 자금지원을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그에 적합한 성과지표(관련 콘텐츠 제작 건수 등)가 필요해 보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아시아문화전당 개관(2015년 11월) 이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기획력이나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나 신용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법적으로도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합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 투자진흥지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 콘텐츠 제작·관광 개발 자금지원은 그 필요가 인정되며 그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됨

- 사업이 폐지 될 경우 그간 지원되었던 비용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다만 그 문제가 크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육성사업, K 스타트업 사업 등)이 존재해 보이나 K 스타트업은 창업까지만 지원하고 동 사업은 기업 성장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며,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중복 선정하지 않고 있어 중복의 여지를 방지한다고 설명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민간보조액 규모는 2018년 기준 2개 기업 각 4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 제작·관광 개발 자금 지원을 위해 9천만원이 매년 동일하게 지원되는 비용이 비교적 적절하고, 그 산정근거는 애니메이션 파일럿 1편을 제작 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 현행 보조율에 대한 산출 근거가 미흡함

- 전액 국고로 보조해야 할 타당성이 미흡하며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10%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비율의 명확한 근거가 없음. 책임감 부여를 위해 자부담율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임

- 2015년 기준 103,902개의 문화산업체의 51.4%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편중과 균형 발전 측면에서 동 사업은 사회적 가치 향상에 역할을 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서 공모기간, 내용, 절차, 보조금 교부기준,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져 공모사업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보조사업공모를 통해 e-나라도움을 통해 2차례에 나누어 분할 교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보조금관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집행상황 및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음
- 사업비카드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용을 통제하고 있음
-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보조금사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적발된 적은 없으며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e-나라도움을 통해서 부정 징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매년 사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산업을 지역 균등 발전 측면에서 비수도권까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사업의 수혜자가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한정되며 보조금지원 재정규모의 설정근거가 비교적 타당함

- 문화콘텐츠 제작·관광 개발 자금 지원을 위해 9천만원이 매년 동일하게 지원되는 비용이 비교적 적절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성과측정 지표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문화 콘텐츠 제작·관광 개발 자금지원을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그에 적합한 성과지표(관련 콘텐츠 제작 건수 등)가 필요해 보임

○ 투자진흥지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 콘텐츠 제작·관광 개발 자금지원은 그 필요가 인정됨. 국가의 지원금을 통해 투자 유인 및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관리 선정 및 집행 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됨. 이에 따라 사업의 정상 추진을 제안함

3-2 정책 제언

○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유기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산업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른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함

○ 동 사업은 문화 콘텐츠 제작·관광 개발 자금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성과지표가 관리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관광축제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2020년 사업 예산의 10%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일부 농수산물 홍보형 축제(9.5억원)는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사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으나, 사후적으로 관리한 실적은 있음(1건 보조금 지급 중지).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입장료, 기업 후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역축제에 대한 직접 보조에서, 컨설팅 및 홍보지원, 축제 전문 인력 양성 등 간접 지원 확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부처 역시 동의했으나 직접적인 계획은 수립은 미흡하므로 2020년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움. - 2020년부터 자치단체 보조 예산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 및 홍보, 축제 전문인력양성, 글로벌축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지원의 근거는 명확하나, 일부 내역 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는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있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은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고 있음.

- 법은 '우수한 지역축제'를 지원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은 '가능성 있는 축제'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계적인 축제 육성'이라는 내역사업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단, 세계적인 축제 육성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중(정세균 의원 대표 발의, 2018.11.)임.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 >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지역축제 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을 자원화하고, 축제의 관광상품 특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세계적인 축제 육성의 목적이 있음.

- 과거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한 선심성 축제의 예산 낭비를 막고 양질의 축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및 관리가 필요했으나, '유망' 축제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되, 사업의 관리 및 기획 등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함.

○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전 국민을 포함하는 일반인으로,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음.

- 2017년 문화관광축제종합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방문 목적이 축제 참여인 사람의 비율이 86.5%로 높게 나타났으나, 외국인의 방문은 '화천산천어 축제' 등 대표적인 축제로 한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미흡함.

-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문화관광축제 지원과 육성축제 지원 및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축제 관리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문화관광축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효과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나, 일자리는 재정지원 및 단순 아르바이트로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낮음.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 결과 행복일자리, 대학생 도우미로 한정되며, 당초 축제 기획의 전문성을 가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우수한 지역축제의 경우 더 이상 보조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료수입 및 기업 후원, 지정 기부금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함.

- 일부 축제는 지역의 특산물 홍보와 결합한 축제로, 농식품부의 농촌축제 지원사업과 중복될 가능성 있으나 사전적으로 관리된다고 볼 수 없음. 실제로 사후 관리 결과 1건 중복된 사례가 적발되었고 보조금 관리는 잘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일부 지역 축제가 농수산물 구매 및 장터 방식(식당)의 축제로 구성되어 있어 확장 가능성이 낮음. 다양한 지역 관광 상품과의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획 및 컨설팅이 중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을 기준으로 재정 지원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외국인 및 내국인이 한국관광공사 혹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방한하기 보다는 미디어 혹은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검토할 때 종래의 재정 지원 방식의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외국인 초청 TV 프로그램이나 내국인 대상 맛집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되고 있어 정부 중심의 홍보 방식을 다양한 채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지역 축제(진주남강, 보령머드, 화천산천어)는 유료수입 및 기업 후원, 지정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국가 재정의 의존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으로 제출한 내용은 구체적인 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선정은 적절하며, 공모절차를 준수하고 교부조건도 충족하고 있음.

-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선정을 위해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 축제 발전역량, 축제의 효과, 감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현장평가, 소비자모니터링, 성과지표 달성도(자체), 분야별 심사, 종합 심사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적정함.
- 민간사업자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선정이 적절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 등 관리는 적정함.

-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금관리에 대한 종합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되어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사전적인 교육에 의존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외 다양한 보조금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운영 방식 및 축제 선정 등의 절차상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자치단체가 추천한 축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추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농식품부의 지원과 중복 가능성 있음(실제로 1건 적발 사례 존재함).

3-2 정책 제언

○ 현재 큰 규모의 지역 축제는 입장료 및 기업 후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관 합동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이 필요함.

- 과거에는 자치단체의 선심성 축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축제 예산의 비효율 및 낭비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제 지역 축제가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재정지원방식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중앙정부는 지역축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지역축제의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축제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자치단체는 문화관광축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특산물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입장료, 기업 후원 등)을 검토하여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의 선정, 기획 및 컨설팅 등의 간접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정상 추진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없으며, 자원봉사형 일자리 창출 효과가 명확함. · 퇴직자·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의 유휴인력을 해설사로 양성 및 활용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증가시켜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의 3항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음.

- 제76조 역시 관광에 관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의 폭넓은 유휴 인력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 및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자원봉사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직접일자리 사업 합동지침에 따르면, 동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 유형 중 '사회봉사·복지형'에 해당되며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임.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으로 지자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양질의 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문화관광해설 육성 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을 양성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해당 활동지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인력 양성과 관리사업을 추진함.

- 약 2,900여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교육비와 활동비 지원, 상해보험료 및 근무환경개선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음. 신규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교육 사업은 17개 보조사업자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지자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교육비 등을 50% 지원해 주는 사업임. 지자체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도·감독 역할 수행함.

-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동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교육비 등을 50%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해설사 운영을 위한 지자체 자체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국고 보조금 예산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국고보조는 16년 19.5%, 17년 28.0%, 18년 23.5%). 사업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자율 사업 성격 강화할 필요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 보조율은 50%이나 지자체 예산 투입 비율이 점차 높아져서 국비 보조율은 '17년 28.0%, '18년 23.5%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를 의미하는 바, 자원 봉사형 일자리인 동 사업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설사 운영을 위한 지자체 자체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 보조금 예산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는 50:50 매칭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비용부담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사업 추진 의지 또한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고보조 공모 사업이 아닌 지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선정 및 교부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자 역시 공기업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관리 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매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교육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www.ctgs.kr)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하고 있으며,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기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시 회계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받는 등 보조금관련 사후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시 회계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받는 등 보조금관련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서 부정수급 발생 사례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의 유휴인력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 및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임.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양성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 등이 표준화되어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문화관광해설사는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여흥적 해설로부터 해당 활동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까지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하므로 문화관광해설사 보수 교육 과정을 다각화하여 자원봉사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예술 해외교류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의 정상추진을 제안함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일부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를 통해 효과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과목구조 개편으로 예산의 불용액이 크게 감소한바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됨 ·내역사업의 내용이 많으나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많지 않아 성과지표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 및 제13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제3조 2항에서는 국가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며 제13조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하여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의 내용이 내역사업과 비교적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내역사업은 한중일 문화교류,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 해외전통문화 예술단 파견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지역별, 계기별로 우리나라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문화관광부 산하 해외 한국문화원들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민간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동 사업은 국가 차원의 문화교류 사업으로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한중일 문화교류,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 해외전통문화 예술단 파견지원 등 문화예술 해외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내역사업이 구성되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임

- 내역사업간 업무의 중복여지가 없음

○ 내역사업의 내용은 많으나 성과지표는 해외문화교류 국가 수 하나로 관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해외문화교류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이 합리적이지 못함
-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 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18년도 예산과목 구조개편으로 보조사업비 집행액이 증가하였으며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수교 및 기념행사나 대형 국제 행사 등 공적 계기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정부 차원의 교류채널 운영 및 협력관계 유지·강화는 민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음
-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법령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 하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상호 이해 증진 등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로서 보조사업의 연장 수요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됨

- 사업이 폐지 될 경우 그간 지원되었던 비용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 신뢰 저하의 문제도 발생 할 수 있음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존재하기 어려워 유사·중복의 여지가 없어 보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2018년 기준으로 3,120백만원 지출하고 있으며 행정비용(국외여비 등)은 각 내역 사업의 10%범위 내로 설정되어 보조금 규모가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 내역 사업별로 사업비를 살펴보면 한중일 문화교류가 900백만원, 국제문확류 및 민간협업 지원 904백만원,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 1,202백만원, 해외전통문화예술단 파견 114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비용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민간협업 문화교류 세부내용에 대한 지원규모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 지원 사업의 경우 세부내용에 대한 지원규모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수교 및 기념행사나 대형 국제 행사 등 공적인 계기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적합한 기관에 지원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에게 지정형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집행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등을 시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 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1조(보조금 교부 방법), 제12조(보조금 사용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용 방식을 입·출 계좌를 통한 이체 방식만을 인정하여 적정하게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8장(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6장(보조금의 사후관리)에 근거하여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의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부과금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발생한 적이 없으며 향후 발생가능성도 낮아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지역별, 계기별로 우리나라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문화교류를 통해서 해외 국가들과의 우호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보조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교적 비용 산정이 적절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비용 산정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과목구조 개편을 통해 18년도부터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음

○ 내역사업의 내용은 많으나 성과지표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편이나 일부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를 통해 효과성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사업의 정상추진을 제안함

3-2 정책 제언

○ 사업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마련이 사업별로 필요함

○ 다른 문화교류 사업과의 연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사업의 연계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예술향유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예산 40억(약 10%)을 즉시 감축할 필요가 있음 ·지원규모 대비 성과지표가 부족하며 사업지원에 따른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다른 사업과 수혜대상의 유사·중복이 존재할 수 있음 ·농어촌 대상의 문화사업 등 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불분명한 세부사업이 존재함. 성과에 기반을 두지 않고 추가적인 수혜자 발굴로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소외계층의 정확한 타기팅으로 예산의 낭비가 방지되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조사업의 목적, 재원, 재원의 용도, 재원관리 주체 및 조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힘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와 제18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과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하여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의 내용이 내역사업과 비교적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내역사업은 신나는예술여행과 방방곡곡문화공감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개 사업 모두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추진 중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사업의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있어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지 시책 강구)에서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함

○ 동 사업의 수혜자는 지역예술가, 예술단체 및 문화회관 등의 보조사업 수행자와 문화소외계층 국민이 될 수 있어 비교적 수혜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은 신나는예술여행과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으로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분명하고 구체적임

- 매칭형 프로그램으로 아동시설순회, 청소년시설순회, 장애인시설순회, 일반시설순회, 특수계층시설순회의 사업들이 있으며 대상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발굴형 프로그램으로 지역협력특화사업, 지리적 문화 소외지역 순회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확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문화소외계층 수혜자 만족도와 수혜자수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목표치 설정 근거도 미흡해 보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지표 및 투입 지표보다는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계량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 예산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향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취약계층에게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문화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찾기는 어려움

○ 문화양극화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소득계층 간 문화예술 관람 기회 격차(100만원 미만 관람률 30.9%, 600만원 이상 89.5%로 약 2.9배 차이)와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문화예술관람 격차가 상존하고 있음
-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소외계층 문화격차는 심화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향유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줄어들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과 수혜대상이 겹치고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의 여지가 있음

-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수행 중인 움직이는 예술정거장과 수혜대상이 일부 겹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과거 문화예술향유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과를 검토하고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추가적인 수혜자를 바탕으로 예산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수혜자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예상)까지 연평균 5.5% 증가로 그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하지만 추가적인 수혜자 발굴로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세부프로그램 별로 지원비율이 차이가 있음

- 우수공연 프로그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이상일 경우 지원비율이 50%이고 그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이 60%임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과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의 지원비율이 동일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미흡함

○ 내역사업의 세부 사업 중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음

-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은 그 취지가 불분명함

-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은 공연프로그램과 중복될 여지가 있으며 실집행률이 낮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음

- 지역적·문화적·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사업에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제정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제 규정 및 지침(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 등)에 따라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부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등에서 사업자 선정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여부는 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심의회의에서 의결함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문화복지 포함) 등 심의분야별 또는 사업분야별 심의위원 5~10인을 위촉하여 구성한 심의·의결기구임

-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방침을 정하고 지원대상사업 및 배정할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의무화를 명시함

- 단체의 자부담 능력을 평가지표로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통해서 사업구조, 운영방식, 예산배분 방법, 지원 적격성 등을 판단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운용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사업 목적과 과정에 적합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2016년 소속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연자의 출연료를 직원급여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용도외 사용 및 출연료 편취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통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임

○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금지원의 재정규모 선정이 적정하지 않음

- 성과에 기반을 두지 않고 추가적인 수혜자 발굴로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 및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은 그 취지가 불분명함

○ 성과지표가 부족하여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사업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사업을 감축 할 필요가 있음

- 소외계층에 대한 정확한 타기팅(Targeting)이 필요하고 문화예술의 구체적인 하위 분야를 선정할 때 그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본 사업의 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목표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

- 보조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효과적인 목표관리가 필요함
- 보조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정상추진'이 필요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소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인정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을 법적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수집·탐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보안관제센터의 설치는 강제규정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업무의 위탁이나 센터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명확성은 제한적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소속·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침해 사고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동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약 150개에 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관련 소속·공공기관임

- 물론 간접적 수혜자를 고려할 경우 국민에 이르기까지 수혜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한 직접적 수혜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첫째, '안전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으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둘째, '안전관리체계 지원' 내역사업으로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통합보안관제 위탁운영, 공직자통합메일 보안모니터링 위탁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원함

○ 내역사업의 구성은 크게 시스템 구축 및 센터 운영비, 관련 업무 위탁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목표에 비추어볼 때 내역사업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됨

○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19년 기준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탐지·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통합보안관제·메일관제 위탁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보조사업은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인 '관제대상기관 만족도'를 당초 목표 대비 달성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및 소속·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위해 기술적 전문성을 지닌 부문 관제센터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사업 특성 상 유사·중복성의 문제는 크지 않음

○ 사이버 침해 등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의 업무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재정적 손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예방이 시급하다는 것이 반드시 현재와 같은 사업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보조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행정비용은 보조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조사업으로서 실효성이 있음을 확인함

○ 동 사업의 사업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구성되었다고 평가됨

- '안전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의 경우 장비 예산은 평균 조달단가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며, 전담기관 지원은 인건비 등 운영 경상비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한 자연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 심의를 요청하고 있음

- 안전관리체계 지원의 내역사업의 경우 유지보수 요율, 정보보호사업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정보보호관련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존보조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거쳐 100% 국고보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보안관제 및 메일관제를 통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적극적 예방활동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이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한국문화정보원이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의거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전담기관) 센터는 한국문화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기관은 센터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정보보안 전문 인력을 확보·양성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체계 지원' 내역사업으로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통합보안관제 위탁운영, 공직자통합메일 보안모니터링 위탁운영 등은 위탁시행자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 위탁시행자 선정과정의 경우 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전규격 공개, 공고, 평가, 계약 등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사용방법, 보조사업비 제한, 업무처리 대행,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집행점검 등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실집행현황, 단계 집행현황을 연 2회(실적, 정산 포함) 실시하고 있으며, 주간 실적현황(담당사무관) 및 월간 실적현황(담당과장)을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시스템 및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현황을 모니터링 실시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보조금의 반황 및 제재) 및 제6장(보조사업 사후관리)에 의거하여 사후관리 실시

- 한국문화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회계감사를 통해 정산을 실시함

- 회계감사 후 현장실사를 통해 중요재산 관리, 정산 증빙자료들을 점검하고 있음

- 위반행위 처리기준 이외에도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금액의 반환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사업소관부처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개선 중

- 특히 보조사업 수행질서 문란 행위자의 보조사업 배제(성폭력 연루자, 다년간 미정산자 등), 보조사업 집행계획서에 '부정수급 관리계획' 포함 의무화,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등을 중심으로 지침 개선을 확인함
-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위반행위자 명단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소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인정됨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은 위탁사업자 '선정 공정성'과 '업무연속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공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년도 계약보다는 2년 수준에서 위탁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사업소관부처 및 보조사업자가 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업의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함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가 부재함 ·사업의 사후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용(제10조의2), 가치평가제도의 운영(제16조의2~제16조의3),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제43조~제56조의2)을 규정함

-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을 제18조 등에서 규정함

○ 사업은 무형자산 기반인 콘텐츠 기업의 투융자를 원활하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완성보증계정 출연, 콘텐츠 투융자기반조성,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등 3개의 내역사업을 포함함

-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콘텐츠 투융자 기반조성' 사업은 기업대상 투자IR교육, 투자설명회 개최, 완성보증계정 운용을 위한 지원,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운용,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문화콘텐츠 금융의 기반을 이루는 제도운영(가치평가, 문화산업전문회사, 완성보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콘텐츠 산업의 민간 투융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기업, 종사자)에게는 투융자 교육을, 공급자(민간 금융산업 관계자)에게는 산업이해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함

- 재원 조달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2016년 기준 50인 미만 기업이 98.5%에 달하는 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해 콘텐츠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 금융 기반 활성화를 위한 동 보조사업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 69-1 실천과제가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와도 연계된 사업이라고 평가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콘텐츠기업 투융자기반조성’사업은 콘텐츠산업 투융자 기반조성과 자금조달을 위한 간접 지원 형태의 사업으로 콘텐츠분야 투자활성화의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된 내역사업임

-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개발과 데이터 구축을 통한 가치평가 제공(투융자 판단자료)으로 무형담보 중심의 콘텐츠 기업이 원활하게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콘텐츠 제작자 등에 대한 ‘자금조달’이며, 민간 투자/융자를 통한 제작비를 조달하여 원활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내용과 연계된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고부가가치산업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콘텐츠산업의 경우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민간 금융권을 통한 제작비 조달이 어려움이 있음

- 보조사업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투융자 역량 강화 및 기회 제공, 금융권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및 투융자 동기 제고 등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세부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한 IR실무교육 및 멘토링은 콘텐츠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며, 투자유치설명회는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완성보증 및 기업보증 추천은 콘텐츠 제작비 또는 기업의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함

○ 국내 콘텐츠기업 중 90% 이상이 소위 ‘10-10-10’(자본금 10억원 이하-매출액 10억원 이하-종업원 10인 이하)이며 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이 필요함

- 기업은 금융기관 자금 조달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까다로운 대출심사’, ‘매출액 및 재무제표 중심 기준’의 판단, ‘과도한 담보 혹은 보증요구’를 지적하고 있어, 무형자산(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가치판단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할 필요성은 인정됨

- 본 사업이 폐지될 경우 제조업 중심의 금융제도 하에서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어 민간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급격한 폐지는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영화, 게임, 애니, 캐릭터 등 콘텐츠 전 장르의 투융자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비, 위탁비 등 기본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됨(2018년 기준 1,332백만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에 따라 전액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6년 보조사업 평가에서 정부와 민간과의 역할 및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위하여도 지속적인 검토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거 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통지)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절차를 진행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함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콘텐츠분야의 전문기관임

- 지침 및 내부 관리규칙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위탁사업자 선정 시 공모절차 준수 등 관련규정을 준수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 조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 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관련 사항을 준수,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 사업 집행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 시, 관련 규정을 첨부하여 보조사업자가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도록 지도함
- 분기 실적보고서 제출을 통해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로 사업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함

○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추진 실적을 파악(현장점검, 보고, 시스템(e나라도움) 등 이용)하여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함

-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등 패널티를 적용하거나 집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사후절차와 규정이 마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교부조건을 제시하여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였고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요구하여 검토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50인 미만 기업이 98.5%에 달하는 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해 동 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내용과 연계된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사업 평가 결과가 적절히 환류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업의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함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적절한 성과지표가 미흡하여 예산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유사한 업무가 상호 포함될 수 있는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역사업을 단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0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에 의거 정부는 문화상품 및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규정함

-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콘텐츠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국제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유치,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콘텐츠 해외 현지화 지원 등이 제시됨

○ 본 사업은 국내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 현지화 재제작 및 해외 출원등록 등을 지원함

-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 및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콘텐츠 마켓 참가 및 해외 바이어 초청 등으로 우리 콘텐츠 홍보·마케팅을 지원함

-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여 국내 콘텐츠기업 해외진출시 비즈매칭, 현지시장 정보제공, 인프라 이용 등 맞춤형 비즈니스를 지원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킬러콘텐츠 육성 및 정부간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해외진출 지원 기반 구축을 통한 수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중남미, 동남아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들 수 있음

- 국정과제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의 실천과제 중 69-5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국내콘텐츠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일부 공모사업을 제외하고는 보조사업 수혜범위가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체, 종사자 등을 포함함

- 직접적 수혜자로서 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어(번역, 자막) 재제작 및 샘플번역 지원과 국내 콘텐츠를 해외시장에서 보호하기 위해 상표, 디자인, 기술 등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 수출상담회 및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으로 참여업체 수출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는 업체 및 직원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해외진출 지원 기반 구축을 통한 수출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국제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진출기반조성 등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추진 등으로 콘텐츠 수출 증가세 유지에 기여할 목적임

- 2018년 11월 기준 해외현지마케팅 활성화 비즈매칭 3,900여건, 정보제공 915건, 단독/협업 사업 330건 진행, 홍보 1,013회 등을 실시함

- 중소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해외진출상담 551건 컨설팅 지원, 현지화 75건 지원, 출원 28건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신흥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동남아 K-콘텐츠 엑스포 개최(2회) 및 마켓 참가(1회) 지원으로 약 836만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함

○ 본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출정보 제공 및 상담지원, 콘텐츠 컨퍼런스 등 정보교류 지원, 문화컨텐츠 종합홍보 마케팅, 콘텐츠 기업간 민관 파트너쉽 구축, 현지화 및 플랫폼진출 지원, 해외 거점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의 단순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내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비즈니스 상담 지원(건), 해외진출기반 서비스 만족도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점검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최근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플랫폼 등장, 모바일 보급 확대, 가상/증강현실 등 뉴 콘텐츠의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콘텐츠 수출의 경우 2011년까지 35%의 성장률을 구가하였으나, 최근 2014년 7.1%, 2015년 7.3%, 2016년 6.1%로 해외 수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임
- 나아가 최근 우리 콘텐츠의 주력 수출국인 일본에 대한 콘텐츠 수출이 2012년 한일관계 악화 이후로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으며, 중국시장 역시 대외적인 이슈로 인하여 콘텐츠 수출 전망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기존 한국콘텐츠의 주요 수출대상이었던 중·일 이외에, 동남아 및 동유럽 등 콘텐츠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에서, 아직 영세한 중소콘텐츠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자원과 위험을 직접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문화콘텐츠 글로벌 협력채널 확대 및 국제교류 강화와 관련하여 해외진출 국가와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간, 민간 교류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음

- 해외현지마케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의 직·간접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마케터를 2곳에 파견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문화산업 진흥과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취지를 위해 현재 전액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SBS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로시 빈민가 소재 음악학교 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 및 K-Pop아티스트 멘토링과 K-Pop콘서트 관람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 능력이 없는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 등에 의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교부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수행 및 재원집행의 적정성, 목적달성의 적합성, 전문성 등을 검토하고 교부조건 등 교부절차에 의해 법적근거에 의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조 지원사업 참가기준, 제7조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내규를 준용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을 수행함

- 기재부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매분기 집행 및 실집행을 점검함
- 사업계획에 따른 실집행 현황 등을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를 통해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분기별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중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목적 및 취지대로 집행했는지를 확인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마련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를 정하였으며,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를 통해 중요재산관리를 등록 관리토록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수행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류, 외부 회계기관의 정산검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 발생정도를 파악함

- 부정수급 적발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0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에 의거 정부는 문화상품 및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함

- 국정과제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의 실천과제 중 69-5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음

- 내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비즈니스 상담 지원(건), 해외진출기반 서비스 만족도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점검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3-2 정책 제언

○ 유사한 내역사업이 있다는 점에서 내역사업의 단순화를 검토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의 단순화를 검토하고, 중요한 내역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3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해당 사업은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10% 수준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감축하도록 함 ·전기 평가에서 10% 감액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보조금액을 2016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있는데 학교밖 프로그램은 승마, 골프, 볼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감축이 불가피함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출 중심의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성과지표에 제시된 만족도 목표도 최소한 목표치는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사업수행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거나 대한체육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에 대한 수요를 감안했을 때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적용을 통한 보조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생활체육진흥법>은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학교체육진흥법>은 제3조와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의 법률 규정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책임을 밝히고 있을 뿐 해당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국가의 지원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당 사업은 “다양한 체육활동의 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 즐거운 학교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

-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체력 증진은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나 해당 사업이 이를 위한 산출 목표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는 프로그램 강사로 판단되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2차적인 수혜자로 평가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학교안과 밖에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과는 참여자 만족도로만 관리되고 있음

- 성과 지표 상의 만족도는 매년 90점을 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자족적인 성과인 것으로 보이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산출 위주의 목표를 다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전기 평가에서 보조금 10% 감축을 판정받았으나 학교밖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보조금을 2016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합당한 사유나 성과의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학교밖 프로그램 상위 5개 프로그램 중 3개가 볼링, 골프, 승마인데 이러한 종목을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사유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사업은 민간시장을 통해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이를 통한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학교 체육 교육의 정상화와 학교안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학교밖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는 운영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음

- 기초보고서는 “대한체육회 및 시도/시군구체육회를 통하여 학교 및 지역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사업의 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조율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운영비 가운데 해외연수, 연구용역, 여비 가운데 해외여비, 민간이전 가운데 체육회 운영비 등이 사업목표와 어떻게 연관이 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정소요액 추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평가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기초보고서는 해당 사업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인성 함양,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 등의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다만 해당 내용을 보다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사업수행주체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있으나 사업수행주체 선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나 공모절차를 통한 선정 과정에 대한 규정 등을 제시하지 않음

- 보조금 관련 법률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대한체육회가 정관에 명시된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특별한 사업수행주체 선정 과정 없이 대한체육회가 맡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집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운영관리지침 등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의무, 정산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강제하여 적정한 기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집행점검의 기준이나 점검의 상세내용 및 평가결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특히 2017년 사업 부정 징후 모니터링의 결과 및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업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 외부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검증과 대한체육회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검증 등의 기본적인 사업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예산설명서와 기초조사보고서에는 예산액이 100%로 집행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동시에 기초조사보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산 확정에 따른 정산잔액 반환 등 정상적인 반납절차를 성실히 수행 중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는 현장점검, 성과평가 등의 연중 평가와 사업수행주체인 대한체육회의 자체 감사규정 및 감사계획에 따른 실집행 점검, 시도체육회 대상 감사, 정산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평가함

○ 다만 부정수급 방지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및 결정 기준과 절차, 반납 절차 및 패널티 부과 등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은 학교안과 학교밖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인성 함양을 하기 위한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다각적인 산출 중심의 성과지표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전기 평가에서 10% 감액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보조금액을 2016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있는데 학교밖 프로그램은 승마, 골프, 볼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보조금액의 감액이 불가피함

3-2 정책 제언

○ 학교밖 프로그램의 종목을 학생들이 일상을 통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해외연수, 연구용역, 해외여비, 체육회 운영비 등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출 중심의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성과지표에 제시된 만족도 목표도 최소한 목표치는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거나 대한체육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업의 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함 ·내역사업이 많지만, 중요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만한 지표가 부재하여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어려움 ·내역사업의 단순화를 검토하고, 중요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생활체육 활성화는 범국가적인 기본여건 조성이 필요한 공공성을 지닌 사업으로 생활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운영됨

- 2022년까지 국민생활체육 활동 참여율을 64.5%까지 향상시켜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고, 체육활동 생활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전개함

○ 동 사업은 생활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보조금 지급 근거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을 지원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늘어나는 국민의 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 등을 통해 생활체육 현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하여 국민의 생활체육에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체육활동을 증진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일반국민(실질 수혜자, 간접·잠재적 수혜자)을 대상으로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현황, 체육활동의 효과성 등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를 실시함

○ 사업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별·종목별·연령별 참여자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내역사업을 구성함

- 내역사업은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생활체육지도자 수혜자 만족도, 저소득층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등이 성과지표임

- 내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생애주기별 신체·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역사업별로 프로그램을 구성 및 보급하려 함

- 세부사업 내에 과도하게 많은 내역사업이 존재하고 사업간에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일반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 정부의 국정과제 및 체육정책의 생활체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등 공공성을 띠고 있음

○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중장기적 효과를 보는 생활체육 사업의 특성상 동 보조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 어렵고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2019년 기준 84,659백만원으로 10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지속적으로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시 정한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여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에는 국고 50% 정률 보조하고, 기타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은 국고 100% 정액 보조하고 있음

○ 국정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분야 주요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중기재정 소요액이 책정되는 사업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생활체육 보급을 통해 건강한 체육복지를 실현하고 약자에게 생활체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것으로 평가됨

-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과 클럽 활성화 및 동호인 지원, 각종 생활체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은 생활체육 현장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정 배치하여 국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결정된 국고 보조율 50%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나머지 5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매년 5월)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 및 사업추진의지 등을 확인하고 계획된 지역별 배치 인원만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고로 동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50%를 부담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보조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지원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신체 활동과 스포츠 참여 확대로 국가적 현안이 된 생활체육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 보조금 집행을 위해 관련지침(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지침, 사업별 지침 등)을 수립·준용하고 있음

- ‘17년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구축한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1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축한 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 사용)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보조금법을 준수하고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보조금 사용용도 제한,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의무, 정산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강제하여 기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보조금 횡령 시 고발조치, 횡령액 환수,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을 준수하여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단체별 회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자문을 받음

○ 사업수행주체인 대한체육회는 예산 불용방지 및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자체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부진 사업 대상으로 향후 집행계획 제출요청과 관련 회의를 실시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관련 법률(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을 준수하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함

- 부정에 따른 강제반납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산 확정에 따른 정산잔액 반환 등 정상적인 반납절차를 수행 중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체육계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성 확보노력은 정부 체육정책의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은 부정수급 발생 건은 없음

- 동 보조사업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과 기금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현장점검, 성과평가 등의 연중 평가를 받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생활체육 활성화는 범국가적인 기본여건 조성이 필요한 공공성을 지닌 사업으로 생활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함

- 사업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별·종목별·연령별 참여자임
- 내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이 많지만, 중요한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만한 지표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내역사업의 통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성과를 측정할만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6.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장기사업으로 계획된 지자체자본보조 사업이나 지자체의 사업 지연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함 · 2017년 사업예산 실집행률이 10%, 2018년 15.8%에 그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들이 보조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사업종료 후 2020년 1차 보조사업 중간평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간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조정을 단행하고, 장기재정계획을 재작성하고 예산추계를 재산정하여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성을 지님

<관광기본법 제9조>

제9조(관광자원보호)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3개 시·도, 19개 시·군의 40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역사업은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지님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기존 광역관광개발에서 제외된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이며,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국정과제 73-4의 과제로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명소 집중육성사업으로 추진됨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서부내륙권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 29개, 관광진흥사업 11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광개발 사업의 1차 수혜자는 사업지역의 주민, 관광 관련 사업자 또는 종사자 등이며, 2차 수혜자는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 등 일반국민, 관광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수혜범위가 광범위하며, 지역특색을 갖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사업 혜택이 명확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갖춘 사업방향을 설정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합리적으로 내역사업이 설정됨

- 지역관광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업 목표에 부합하도록 세종, 충남, 전북 3개 시·도, 19개 시·군에서 40개 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구상단계부터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함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개년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 점검을 추진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

- 2017년 사업예산 실집행률이 10%, 2018년 15.8%에 그쳐 지자체들의 보조사업에 대한 조속한 집행이 요구됨

<보조사업 실집행률>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7	8,650	8,650	7,650	7,650	-	7,650	766	6,884	1,000	10
2018	8,600	8,600	7,900	7,900	6,884	14,784	2,329	12,445	700	15.8%

- 10년 장기 사업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환경 및 관광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3~4년 주기의 중간평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2020년에 실시될 1차 중간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국가관리 사업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종, 충남, 전북 지역의 19개 시·군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부터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관리 10개년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 관광분야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연구, 기재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 및 사업 규모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없음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17년 10개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었고, '18년 14개 사업(계속 9, 신규5))이 추진되었으며, '19년 4개 사업이 추가되어 총 19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국가 관광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개년 사업계획('17년~'26년)에 따라 보조사업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적절하게 관리함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으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후 국가관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국가행정의 신뢰도 하락 및 기 투입된 국비 및 지방비의 매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계획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에서 각 내역사업의 보조금 규모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사업비 구성이 적정함

<보조사업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7,650백만원	8,600백만원	15,340백만원
	50%	50%	50%
자치단체부담	7,650백만원	8,600백만원	15,340백만원
	50%	50%	50%
민간단체부담*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15,300백만원	17,200백만원	30,680백만원
	100%	100%	100%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차 중간평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의 실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사업의 지속 및 축소 또는 포기)를 확인하여 부진사업의 폐지를 검토하고 문제 사업의 계획변경 및 사업비 조정을 단행하여야 함

○ 「보조금법 시행령」상 '관광자원개발 기준 보조율은 50%'이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차원의 관광자원 보호와 개발로 마련된 정부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의 장기 재정소요액 추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간평가를 통해 장기재정소요액 추계를 재작성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도별 예산을 재산정하여야 함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6,167	2,626	86.5	86	153.4	323	335	347	310	390	350	245.1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서부내륙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공헌함

- 서부내륙권 지역의 재정자립도 점진적 상승 및 국내 관광객 수와 관광사업체 수가 지속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관광활성화 기대감이 상승하여 사업지역 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체수가 지속 증가하는 등 지역민 일자리 증대 및 공동체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부절차를 준수하며,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별도 마련하여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내외 환경조사 및 분석, 보고회, 자문회, 공청회, 지자체 의견수렴, 현장조사, 사업자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의 사업의지,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부 절차를 준수하여 재원을 적절하게 교부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역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 체계 및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를 연 2회 제출받아 예산 실집행 및 사업 단계별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추진상황 및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집중적인 컨설팅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관광개발 기획평가센터'의 평가를 통해 심층적인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 보조사업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요구하여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2017년 보조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의 선정, 예산규모 등을 관리하고, 단계별 점검추진을 통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도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부정수급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이행함은 물론 별도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구체화, 체계화 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하고, 보조사업이 관광자원 개발에 효과성을 지닐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보조사업의 재원규모가 사업비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사업비에서 지자체의 자부담률을 50%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음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들의 사업 지연으로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선정과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 대책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적정하게 관리됨

3-2 정책 제언

○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장기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차 중간평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여 부진사업의 폐지를 검토하고 문제사업의 계획변경 및 사업비 조정을 단행하여야 함

○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내역사업을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장기재정계획을 재수립하고 예산추계를 재산정하여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예산 30억을 즉시 감축할 필요가 있음 ·예산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내역사업별 성과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보이며 사업지원이 대규모이나 그에 따른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교육, 교류협력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지원에 따른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3개년 간 평균 10%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내역사업의 내용은 많으나 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를 대표지표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목표치 설정 근거도 미흡해 보이며 도전적이지 않음 ·내역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제27조의 2에 따라서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하여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의 내용이 내역사업과 비교적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내역사업은 전당콘텐츠 및 프로그램운영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26조에는 아시아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 27조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 제 27조 2항에는 재정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동시대 예술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향유, 창·제작, 체험의 장과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동 사업은 문화전당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목적적합한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는 국정과제 67번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의 세부과제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주요정책방향에 부합함

○ 하지만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문화전당의 외부효과가 존재하여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사업을 위한 내역사업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있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은 시설관리 및 전당운영을 총괄하는 지원체계 등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있고 전당콘텐츠 및 프로그램운영은 교류협력 및 조사연구, 창·제작, 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간 중복이 없음

○ 내역사업의 내용은 많으나 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목표치 설정 근거가 미흡해 보이며 도전적이지 않음

- 만족도 지표보다는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관련한 건수 , 공연관람 현황 등 계량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 예산 집행실적이 낮으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내에서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립문화예술기관 운영이라는 특성상 공공성이 강해 보조사업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입 건립비용은 약 7,600억원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이를 잘 활용하고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핵심 사업이므로 보조금사업에 대한 수여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크다고 판단됨

- 사업이 폐지될 경우 그간 지원되었던 비용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음

○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과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나 기능상 중복의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향후 기능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100%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2016년 425억원, 2017년 328억원, 2018년 335억원으로 안정적이나 지원내역별로 적절한 산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움

- 전당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내역사업 가운데 교류협력 및 조사연구 등에 지원되나 그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창제작·전시·공연은 17년 대비 큰 규모로 증액되었으나 그 산출근거가 미흡하며 집행률도 저조함

○ 문화원과의 업무 조정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도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재정소요액 추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향후 지속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하지만 시설관리·감독 보조를 위해서는 현 수준 유지 또는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여 비용 절감이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아시아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아시아문화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함

- 아시아문화원은 특수법인이자 기획재정부 지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의 성과평가대상임
- 사업수행 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수행 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통해서 사업구조, 운영방식, 예산배분 방법, 지원 적격성 등을 판단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사업 목적과 과정에 적합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사업완료 시 국고보조사업 결과보고,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대장,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고 판단됨
- 중요재산 및 고정자산은 매년 정기적인 재물조사 및 자산취득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 중임

- 아시아문화원 외 보조단체 및 2차 보조단체는 없으며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부정수급의 여지는 작은 것으로 분석됨
- 2천만원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경쟁 입찰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중복수급의 여지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아시아문화전당콘텐츠 및 운영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시아문화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한 사업임

○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내역별로 비용의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움

- 전당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내역사업 가운데 교류협력 및 조사연구 등에 지원되나 그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창제작·전시·공연은 17년 대비 큰 규모로 증액되었으나 그 산출근거가 미흡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 예산 집행실적이 낮으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3개년 평균 10%, 2018년 87.7%)

○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근거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움

- 교육, 교류협력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지원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지표가 적절하지 않음. 내역사업의 내용은 많으나 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목표치 설정이 도전적이지 않음

○ 아시아문화원과 문화전당 사이의 기능이 중복 될 수 있어 업무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 등을 조정해야 함

- 동 사업과 다른 사업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 관계로 직접적으로는 문화전당과의 업무 협력 및 분장이 필요하고 넓게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한 사업임

- 따라서 사업 범위에 따라서 향후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2 정책 제언

○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인프라운영 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함

- 모호한 사업 구분으로 혼전을 야기하기보다는 분명한 사업 구분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함

○ 내역사업의 내용은 많으나 그에 비해 성과관리 지표가 부족하므로 성과관리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함

- 만족도 지표보다는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관련한 건수 등 계량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9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해당 사업은 행정비용 등의 절감을 통한 감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9년 예산의 15% 수준인 5억 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판정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는 매우 포괄적인 수준에서 뒷받침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프로그램 참여자인데 보조금의 감액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수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 수혜자와 소통하는 청년을 의미하는 간접적 수혜자의 축소폭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사업 선정 경쟁률도 높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보조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등 사업의 개선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임

- <문화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국민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규정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평가할 수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포괄적인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2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으로 지원의 대상을 국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당 사업은 “고령사회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한 고령인구의 문화향유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국가의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프로그램 참여자인데 보조금의 감액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수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 수혜자와 소통하는 청년을 의미하는 간접적 수혜자의 축소폭은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은 교육지원, 동아리지원, 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내역 사업이 고령인구의 문화향유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예산설명자료에 제시된 성과계획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만 제시되어 있으나 2016년 이후 하향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는 하향 조정한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한 점이 확인됨

○ 사업의 성과를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라는 단일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2년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관리, 더 나아가서는 사업 자체의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하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고령화의 진전 및 노령층의 확대라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문화적인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노령층의 문화적 욕구와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기초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같은 프로그램 당 참여자 수의 증가폭(2017년 28.9명, 2018년 30.7명)은 대폭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해당 사업은 사업폐지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예상되지 않으나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서 노령층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고려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현재 내역사업의 구성이나 참여도, 성과를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당 내역 사업이 사업 전체의 목표 달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음

- 기초조사보고서에서 “2018년의 경우 3,788백만 원 중 297개 프로그램 운영비 3,119백만 원을 제외한 행정비용은 669백만 원으로 17.7%이고 이 중 홍보용역비를 제외하면 369백만 원으로 9.7%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여러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보조금 전체 규모를 고려했을 때 행정비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또한 2019년에는 전체 보조금액 3,273백만 원 가운데 사업홍보 및 경상비가 673백만 원으로 20.6%에 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예산변경을 통하여 그 비중을 10% 이내로 감축하였음

○ 해당 사업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참여자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일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문화적 취약계층인 노령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됨

○ 이를 통해 고령인구 증대에 따른 노인사회문제(노인우울증, 고독사, 질병 등)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노년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수행주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보조 사업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모개요를 통해 사업 선정 절차 및 기준, 선정 방식을 공고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음

-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결과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사업수행주체인 간접보조자의 경우, 2018년 사업에 공모한 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은 총 566개이고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은 299개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내역 사업에 대한 실질 경쟁률이 2: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한 집행률 및 증빙자료 수시점검, 간접보조사업자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관련 교육 및 사업현장 수시점검 실시, 회계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문회계기관의 예산집행내역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관련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 및 지침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집행 현황 및 패널티 적용 및 개선 조치의 실시 여부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보조금액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확인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단체는 3년간 간접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기본적인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결정 기준 및 절차, 사후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는 매우 포괄적인 수준에서 뒷받침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프로그램 참여자인데 보조금의 감액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수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 수혜자와 소통하는 청년을 의미하는 간접적 수혜자의 축소폭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
-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사업 선정 경쟁률도 높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보조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등 사업의 개선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위주의 성과 지표를 다각화하여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비용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내역 사업 참여에 대한 실질 경쟁률이 2: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와는 별개로 사업의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영화유통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내역 사업 중 하나인 국제영화제 참가 지원 사업에 심사제 도입하는 사업방식 변경 필요 ·국제영화제 참가 지원 방식이 국고보조금 지원 취지에 미치지 못함. ·한국 상업영화 평균 순제작비인 79억원(2018년 기준) 보다 낮은 5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영화에 대해 국제영화제 참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첫째 제작비 대비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영화에도 국고가 지원되고 있고, 둘째 신청 시 일괄지원하고 있어 취약한 국내 영화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는 사업 목적 달성에 낭비적 요인이 됨. ·초청받은 영화제 수월성과 참가자의 파급력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사업 운영 방안 마련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3, 4의 2, 5, 7, 8호에 의해 사업에 대한 보조급 지급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내역 사업인 국내외영화제 육성 사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7.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지원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 사업은 사업 수혜자의 확장성 보다는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독립예술영화 영화의 유통·인프라 지원 사업은 상업성 부족한 독립·예술영화 작품을 상영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적 다양성 제고에 기여함.

- 비영리, 다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내 영화제 지원 사업은 비상업적 영화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별 문화 정체성 제고에 기여함.

○ 영화산업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국영화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역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별 사업 추진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이며 보조사업의 구성이 전반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음.

-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과 독립예술영화 개봉을 위한 배급 마케팅비(P&A) 지원을 실행하여 독립예술영화의 안정적 상영기반을 마련하였음.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상영기회와 다양성·예술영화의 상영 활성화에 기여함.
-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해외배급 예정 영화의 해외세일즈 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하여 영화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개별 사업은 당초에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 되었으나, 개별 내역 사업이 비영리, 다양성,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한 바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축적되지 못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영화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과 독립·예술영화를 중심으로 상영하는 전용관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 형태가 적절하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없는 사업임. 특히, 전체 개봉작 중 독립예술영화의 개봉 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 상황에서 한국독립예술영화 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영화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국내외영화제 육성 사업과 국내 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해당 사업 참여자의 상업성과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규모의 지역별 영화제와 국제영화제 독립영화제 개최비용 지원 사업은 비영리, 다양성,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는 한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제영화제 참가 지원은 2018년 한국 상업영화 평균 순제작비인 79억원 보다 낮은 5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영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작품의 제작비 대비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의 국제영화제 참가 지원을 국고 지원 사업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며, 사업별로 보조금 지급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음.

- 별도의 보조율 없이 보조금 지급 규모 안에서 정액을 지급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함. 별도의 근거에 따라서 정액 규모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제 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 공모 심사 시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규모 및 내용,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급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정함('18년도 6개 국제영화제 국고 비율 평균 15.2%, 국내영화제 자부담 비율 30% 이상)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개봉지원,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사업은 영화문화 다양성 확보를 통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하지만, 가치실현에 기여한 점을 정량적으로 적절히 증빙하지는 못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 제14조를 반영한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 사업과 국내외 영화제 육성 사업은 내내역 사업별로 각각 사업요강 및 심사세칙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개별 사업 목표에 따른 적합성과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지정위탁 사업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을 검토한 후 업무협약서를 체결함.

○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과 해외세일즈 지원 사업은 사후 정산형 사업이며, 영화촬영지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지정위탁 사업으로 추진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규정이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마련되어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지원금 집행 내역을 수시 점검하여 부적절한 내역 발생 시 환입조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마련되어 있음.

- 개별 사업별 사업요강 또는 협약서에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교부, 집행점검, 정산을 실시하는 보조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과오납의 환급,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음.

- 내역사업 모두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으며, 통합관리지침, 내부 규정, 약정서에 의거 보조금의 부정수급,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 사업은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특히 독립예술영화 영화의 유통·인프라 지원 및 비영리, 다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내 영화제 사업은 문화적 다양성 제고에 기여함.

- 단, 국내외 영화제 사업 중 국내 영화제 지원 사업은 사업요강 상 신청대상과 지원기준에 영리성이 큰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 국제영화제 참가 지원은 2018년 한국 상업영화 평균 순제작비인 79억원 보다 낮은 5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영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작품의 제작비 대비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영화의 국제영화제 참가 지원을 국고 지원 사업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별 사업 추진 목표와 내용은 구체적이나, 사업이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과 주기적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영화정책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4.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내역 사업인 유공영화인 지원 사업 폐지를 권고함. 해당 사업 폐지에 따라서, 사업 예산 1억을 감축함.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된다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공로금 지급이 복지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동 사업이 영화정책지원 사업 효과 확산에 적정성이 부족하여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없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5의2, 8, 8의3, 10호에 의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단, 영화정책지원 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유공영화인 현금 지급 사업은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제25조 ① 5의 2)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을 구성하는 내내역 사업 모두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목적의 타당성을 갖고 있지는 않음.

-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국정 과제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장애인과 문화소외지역 시민들의 영화 관람 기회를 증진시켜 영화문화 향유권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함.

-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에 영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서 영화제작 환경 및 인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단, 유공영화인 지원은 보조 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국가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이질적인 내역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은 내역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유공영화인 지원이 사업요강 상 사업목적은 '유공영화인 복지지원을 통해 영화인 기초안전망 강화와 영상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영화산업의 균형 발전 유도 등의 사업 목적과 연계되는 정도가 미약함.

-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사업은 청각장애인의 관람 지원과 격오지·사회복지시설 등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함.

- 지역 중심의 영화제작을 활성화한다는 것의 명확한 목표와 사업 대상 및 효과 정의 필요함. 동시에 사업 추진으로 지역 중심의 영화제작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성과가 합리적으로 측정되지 못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내역 사업들 모두가 충분하고 긴급한 정책적 수요에 기반 하여 수행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일부 내역 사업의 변경이 필요함.

- 유공영화인 지원 사업은 영화인들에게 영화산업에 대한 애정과 헌신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나 (재)한국영화복지재단 자체 예산 사업 또는 영화인 직능 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임.

-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사업은 시청각장애인용 영화제작을 지원하고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음.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위하여 지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지역 영화관 부재지역에 찾아가는 영화상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역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임. 단,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지원 사업은 문화 바우처 등으로 영화문화 향유가 가능한 사회복지관보다는 벽·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산하의 영상콘텐츠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지원금 예산 매칭을 통해 지역영화를 기획개발하고 제작지원 사업으로 수도권에 치우쳐있는 영화문화 향유권을 확산하는 사업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며, 별도의 근거 없이 정액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율 100%로 지원되고 있음.

- 정액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집행되는 성격이며,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만 2차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는 지자체와 예산 매칭 5:5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보다는 장애인과 격오지 마을 주민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 제14조를 반영한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하지만,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만 보조사업자를 공모함.

-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장애당사자 단체와 상시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사업 계획 구체화에 도움이 되지만, 공모 절차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적정성 떨어짐.
-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에서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규정이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마련되어 있음.

-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사업은 상설회의체를 통해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지원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집행 내역 점검을 통해서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마련되어 있음.

- 사업별 사후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교부, 집행점검, 정산을 실시하는 보조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과오납의 환급,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음.

- 부정 수급 사례는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이질적인 기금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나, 청각장애인과 격오지·사회복지시설 등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영화를 기획개발하고 제작지원하여 지역간 문화 격차 완화에 기여하였음.

- 단, 지역 중심의 영화제작을 활성화한다는 것의 명확한 목표와 국가적 차원의 사업 효과에 대해서 구체화할 필요 있으며,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사업 목표에 합당하게 모니터링하고 재조정할 필요 있음.

- 유공영화인 지원 사업 역시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사업으로 장애인 영화제 지원 사업은 영화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함.

- 단, 장애인 영화제의 취지와 그 간 지정위탁 사업의 배경을 감안 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공모선정 방식의 영화제 지원사업으로 편입 시에는 내역분리를 통한 방식으로 추진 검토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영화제작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5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내역 사업인 극장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방식 변경 필요함. ·극장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의 운영 기준이 국고보조금 지원 취지에 미흡함. ·극장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은 영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취약 분야 영화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제작지원으로 인하여 상업적 성공이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지원이 민간의 상업적 이익에 기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 방식을 산업 인프라는 강화하되 손익분기점 초과 시 지원금 상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국고융자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1, 4, 7호에 사업에 대한 보조급 지급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내역 사업인 애니메이션종합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_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 7.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수익성이 낮고 상업화 여지가 크지 않은 부문의 취약한 제작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국정과제와 명확한 연계성은 없음.

○ 극장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은 국산 애니메이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업용 영화 제작에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분야 영화 산업기반 구축이 주요 국가정책 방향이라 판단하기도 어려움.

※ 2017년도 국산 애니메이션 점유율은 8.6%, 해외 애니메이션은 91.4%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상대적으로 제작 환경이 취약한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독립예술영화 장편/단편/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상영관에서 유의미한 관객을 창출할 수 있는 10억원 미만의 장편 독립영화를 1년에 26편 이상(1편당 2주 상영 기준) 제작될 수(편당 5억원 지원 목표) 있는 토대 구축을 목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국내 영상 제작환경의 다변화를 도모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는 않음.

- 극장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은 연간 5편 이상의 장편 애니메이션 상영을 목표로 초기기획 개발비, 제작비, P&A비 등 단계별 지원 사업을 추진함.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연간 5편 이상의 장편 애니메이션 상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두 개의 내역 사업(독립·예술영화와 극장 애니메이션) 모두 민간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움. 독립·예술영화는 영화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가보조의 타당성이 있으나 상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극장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숙고가 필요함.

- 극장 애니메이션 중 장편 제작지원(순제작비 30억원 이내 작품 대상) 외에는 상한 제작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2018년 한국 상업영화의 평균 제작비가 79억원인 점을 감안, 애니메이션 지원의 타 부문에서도 상한 제작비를 명시하고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를 상회하는 작품은 국고융자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에 해당 없는 사업이며, 별도의 근거에 따라서 보조율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필요에 따른 일부 사업 외에는 보조금 수혜자의 재정 역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차등 정액지급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액지급 방식 및 설정된 지원액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은 아님.

-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 지원금액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총 제작비 역시 크게 상승하여 약 40%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16년도 총제작비 대비 지원금 비율 42%, 2017년도 40%, 2018년도 38%

- 장편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의 경우 순제작비 30억 미만 작품에 대해 편당 7억원의 정액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보조율 자부담율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은 영화문화 다양성 확보를 사업의 목표로 하며,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영화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하고 시민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음. 하지만, 가치실현에 기여한 점을 정량적으로 적절히 증빙하지는 못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 제14조를 반영한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과 애니메이션 종합지원 각각 사업요강 및 심사세칙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개별 사업 목표에 따른 적합성과 적정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애니메이션 장편제작지원 사업에서만 자부담율(자부담율 10% 이상, 50% 이상)을 설정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사업요강에 명시하고 있을 뿐 정액 지원으로 자부담 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규정이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마련되어 있음.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은 제한기한 내에 제작 착수보고 미실시, 제작 미완성인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하는 규정이 있으며, 촬영현장 실사를 통해 집행현황 점검함.
- 애니메이션 종합지원 사업은 매달 진행상황 및 지원금 집행내역 점검과 중간평가(제작공정률, 스토리릴, 스튜디오 실사) 실시 후 '70점 이상'획득 시 잔여 지원금 지급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마련되어 있음.

- 지원 취소작의 경우 지원금 반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 정산시 정산보고서 회계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교부, 집행점검, 정산을 실시하는 보조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과오납의 환급,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수익성이 낮고 상업화 여지가 크지 않은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으로 영화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함.

○ 장편 애니메이션 상영 확대를 위하여 초기기획개발비, 제작비, P&A비 등 단계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극장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숙고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의 목표가 제작 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제작 이후에 상영을 통한 영화 기반 확대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음. 즉, 지원된 영화가 모두 상영되고, 신인들이 영화제작할 수 있는 여건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될 필요 있음.

○ 극장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은 영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취약 분야 영화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제작지원으로 인하여 상업적 성공이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지원이 민간의 상업적 이익에 기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보조금 지원 방식을 산업 인프라는 강화하되 손익분기점 초과 시 지원금 상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국고융자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예술의 산업화 추진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예술컨텐츠를 생산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경영마인드의 부족 및 영세성을 감안할 때 예술 산업화를 위한 창업·사업화 추진 등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상위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 효과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수행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됨 문화예술분야 사회경제적 활성화 지원 및 예술 머천다이징 시제품 개발비 지원 등의 경우 사업의 목표인 '산업화'와 상충되는 요소가 있어 그 수행방식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다수의 내역사업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입증도 보다 객관적이고 측정가능한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 3년차인 2019년도부터는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성숙이 요구됨.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제시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단순 지원 건수 위주가 아닌,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도 일부 근거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와 14조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 법령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 강구 및 재원마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에 대한 내용 및 사업범위까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해당 법령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 등과 관련한 국가의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법령이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

- 법의 내용과 본 사업의 세부내용이 지원의 방향성에서 포괄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3조는 문화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문화 서비스 확충, 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지원 필요하므로 일부 연계성이 인정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예술분야 컨텐츠를 발굴·지원하는 내용은 많았으나, 장기적 관점의 예술계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발굴을 위해 예술분야 경영역량 강화, 유통채널 다각화 및 투자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부재했으므로 사업목적에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 '16년 기준 국내 공연단체 수입에 대한 분석 결과, 공공지원금 53.1%, 자체수입 42.4%, 기부·후원금 3.3%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술컨텐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장성 있는 예술분야에 대한 사업개발·마케팅 등 경영 역량 강화와 투자환경 조성으로 산업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해당 사업은 전국의 문화예술단체·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등 예술 현장 종사자가 수혜대상으로 이들의 경영 활성화 및 수익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 및 상품을 이용하는 수혜자에게까지 간접적 혜택이 전달되는 등 그 수혜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함

-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일반들이 최종적인 수혜대상으로 예술의 저변 확대, 예술상품 개발 및 유통을 통한 예술 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 잠재적 편익이 큼을 감안할 때 광범위하고 동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국가 정책단위의 업무임

- 다만, 문화컨텐츠의 특성 상 문화향유권 및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는 국민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며 그 사회적 편익도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예술분야 경영역량 강화, 유통채널 다각화 및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한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 예술상품 유통채널 다각화 지원, 예술분야 투자 활성화 등의 내역사업은 그 사업영역이 적절하게 구분된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효과를 창출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여 추상적으로 비쳐지는 측면이 있음

-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성숙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예술의 산업화라는 일종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며,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산업화'에 보다 부합되도록 사업방향 및 수행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가령, '18년도 신규사업인 문화예술분야 사회경제적 활성화 지원의 경우에도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리 사업 운영 필수 등 요건에 따라 예술의 자생력 제고 및 산업화에 기여하나 사회적 가치 창출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타 내역사업에서 지향하는 산업화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상위목표와 적절히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마찬가지로 예술 머천다이징 시제품 개발비 지원의 경우도 예술의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예술분야의 아이디어와 상업화의 경험을 매개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유통채널 지원 등에 집중하는 것이 사업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수단일 수도 있음. 이 경우, 예술 머천다이징 국내외 유통지원이나 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에 보다 많은 예산배분이 가능할 것임

○ 보조사업의 목표는 명확한 편이나 '산업화'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한 후 내역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해서는 성숙도가 다소 부족함

- 예술경영아카데미의 경우,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던 예술분야 경영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며, 교육 수강 이후 현업에 적용도가 높아지는 등의 일부 성과가 확인됨.

- 그러나, 다른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투입의 즉각적 결과물로서의 다수의 산출지표를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함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수행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제시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단순 지원 건수 위주로 제시된 점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수행방식은 아직 성숙단계에 이른 내용은 아니나, 단순 지원금 교부 이외에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과 병행하여 추진됨으로써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파악됨

- 단순 지원 건수로 제시된 사업의 성과는 유통 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예술 산업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전달체계 및 효과성 창출의 매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도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활동의 질을 평가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예술컨텐츠를 생산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경영마인드의 부족 및 영세성을 감안할 때 예술 산업화를 위한 창업·사업화 추진 등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보조사업 형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정부 중심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배양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수혜단체가 보조금 외 자기부담금을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부 지원사업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감독의 절차가 예술 분야의 창의성과는 상충될 여지가 있음. 해당 사업에서는 당초 수립했던 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 회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집행 여부만을 관리·감독할 뿐 예술분야 고유의 창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내용적 측면의 관리·감독은 하지않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 단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 진흥 정책의 중장기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현행 민간보조금 정액지원 방식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표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존재하는 타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고유성이 충분히 인정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기관의 지원 사업의 경우 일부 중복성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술분야 기획사는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로 중복의 가능성은 낮은 편임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협동조합 및 소셜벤처까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부 중복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장치를 적절히 마련하고 있음

○ 예술 분야의 우수 컨텐츠를 발굴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장기적·규범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현재 수행 중인 사업방식 및 효과성의 미흡함을 고려할 때 현재 수행 중인 사업방식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개별 내역사업이 영세한 예술분야의 전문화·분업화·대중화를 통한 예술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자생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다 객관적·실증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예술분야는 시장논리나 업계 자율성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야로 창작 위주 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창작-유통-향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폐지 시 예술분야 산업적 기반 조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라는 지원 정책의 지속적 수행이 어려우며, 예술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재 수행 중인 사업방식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아직까지 사업 초기 단계 성격이 강해 예산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점차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18년도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의 총 예산은 3,612백만원이며 이는 예술분야 전문성 강화 및 유통채널 구축, 재원조성 다각화를 통해 예술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동 보조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위해 적절히 배분된 내용으로 파악됨

- 다만, 문화예술분야 사회경제적 활성화 지원 및 예술 머천다이징 시제품 개발비 지원 등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산업화'라는 사업목표와 상충되는 요소가 있어 현재의 사업수행방식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재검토에 여부에 따른 예산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수의 사업은 그 효과성이나 성과목표의 기여도에 근거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기 보다는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되는 적절한 사업규모(지원건수)를 염두에 두고 배정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구체적인 산출근거의 제시는 미흡함

- 특히, 사업초기로 향후에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한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사업목적 달성을 고려하여 작성한 예산안(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 검토 및 국회 승인 등을 거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규모를 적정하게 결정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예술계, 지역, 나아가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⑫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1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01호)되었으며, '예술산업' 및 '예술경영' 전문 특화 기관으로서 보조사업자로 적정성이 인정됨

○ 통상적인 보조사업 집행절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사업성과평가 등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을 맡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수행은 보조사업자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산업' 및 '예술경영'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교부 승인 시 해당지침을 배포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해당하는 조항에 부합하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추진 및 집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

- 연초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해 사업을 집행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친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기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 제출 등을 포함한 보조금 관련 사후절차와 규정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움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회계검사 등 사후관리 절차를 차질 없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통해 부당사용액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실제 '17년 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부당사용액 없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시 제재방법 및 절차 등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부정수급 시 제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각종 사업추진 및 집행·성과관리·회계 감사·복무 감사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받고 있어 '17년 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부정수급 발생 사례 없으며, 향후 발생가능성 역시 높지 않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고 증빙자료 등록하고 있음. 향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명시된 부정수급 시 제재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법령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 강구 및 재원마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에 대한 내용 및 사업범위까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법령이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

○ 예술분야 컨텐츠를 발굴·지원하는 내용은 많았으나, 장기적 관점의 예술계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발굴을 위해 예술분야 경영역량 강화, 유통채널 다각화 및 투자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부재했으므로 사업목적에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 예술 생태계 신규 서비스 창출 계획 중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예술·소비재가 결합한 MD(머천다이징) 시제품 개발 및 국내·외 유통망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등 국정과제와의 연계성도 높은 편임

- 해당 사업은 전국의 문화예술단체·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등 예술 현장 종사자가 수혜대상이며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 및 상품을 이용하는 수혜자에게까지 간접적 혜택이 전달되는 등 그 수혜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함

- 다만, 문화컨텐츠의 특성 상 문화향유권 및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는 국민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며 그 사회적 편익도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 예술상품 유통채널 다각화 지원, 예술분야 투자 활성화 등의 내역사업은 그 사업영역이 적절하게 구분된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효과를 창출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여 추상적으로 비쳐지는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초기단계인 점은 감안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성숙도를 제고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보조사업의 목표는 명확한 편이나 '산업화'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한 후 내역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지원 사업이 예산투입의 즉각적 결과물로서의 다수의 산출지표를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가령, 예술경영아카데미의 경우,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던 예술분야 경영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정 수, 수강생 수, 만족도 이외에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내용임

- 사업의 수행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제시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단순 지원 건수 위주로 제시된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예술컨텐츠를 생산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경영마인드의 부족 및 영세성을 감안할 때 예술 산업화를 위한 창업·사업화 추진 등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보조사업 형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현 단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 진흥 정책의 중장기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현행 민간보조금 정액지원 방식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아직까지 사업 초기 단계 성격이 강해 예산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점차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사업은 그 효과성이나 성과목표의 기여도에 근거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기 보다는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되는 절절한 사업규모(지원건수)를 염두에 두고 배정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구체적인 산출근거의 제시는 미흡함

- 특히, 사업초기로 향후에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한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개별 내역사업이 유통 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예술 산업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도식화가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함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수행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제시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단순 지원 건수 위주로 제시된 점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다수의 지원사업에서 예산투입의 즉각적 결과물로서의 다수의 산출지표를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단순 지원 건수로 제시된 사업의 성과 보다는 유통 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예술 산업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객관적·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함

- 전달체계 및 효과성 창출의 매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도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활동의 질을 평가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아직까지 사업 초기 단계 성격이 강해 예산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점차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예술의 전당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만 2011년 사업 시작시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예술진흥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통해 예술의전당 기관 운영의 목적, 임원과 필요한 직원 운영,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국유재산 양여 등에 대한 사항 등이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사업 수행의 기반인 국내 최대의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후한 예술의전당(개관 30년)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임

○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제37조)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문화 나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임

- 국내 최대의 공연장·미술관이자 연간 250~300만 명이 방문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의 각 내역사업을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예술의전당은 건립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 중심 기관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함

-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은 예술의전당 시설의 노후화를 극복하여 기관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예술의전당은 1988년 개관 이후 한 번도 개보수 없이 수선유지만으로 유지한 설비를 다수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단종, 전반적인 성능하락,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고장의 빈발, 에너지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방지 및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의 확산 등을 위해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의 국가 지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됨

- 내부 주요 설비 장기사용으로 인해 노후화가 심하고, 2011년도 침수피해 등으로 주요 설비 내구성이 타 공연장 대비 낮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 문화예술시설로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관리가 필요함

-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은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시행됨

- 2019년도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전기설비교체, 노후공조설비·배관 및 항온항습 설비 교체, 오·우수관로 교체로 구성됨

○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은 문화 예술 공간의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며 연차별 리모델링 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이 구성됨

- 2018년 빙축열 시스템, 노후저효율터보냉동기 및 냉각수 배관 교체 공사/전기설비교체 는 일정에 맞게 2건 공사가 완료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하는 총 사업비 중 리모델링 포함 총 보조금의 비중은 25% 정도이며 나머지 75%는 예술의전당에서 대관, 임대, 공연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함

-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예술의전당 내 자체재원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예술의전당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관료, 임대료, 티켓가격 인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특수법인 예술의전당에 대한 지원인 예술의전당 지원은 단일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타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낮음

- 예술의전당 국고 지원을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영상을 통한 우수 콘텐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예술의 전당 관람객이 직접 수혜자임

- 설비의 노후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설비가 다수 존재하는 바, 감사원 감사에서 시급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예술의전당 총 예산규모는 450억 내외로 매우 크나 재정적으로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기관임

- 2017년 기준 예술의전당 이월결손금 규모는 약 380억원임. 이중 가장 큰 비목은 감가상각비(매년 70억 내외)임

○ 다만 예술의 전당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상 중요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폐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체 노후 설비를 일시적으로 개선할 경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고 재정지원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수행함

- 예술의전당은 순수예술사업의 저수익성과 넓은 시설의 감가상각으로 해마다 구조적으로 영업손실·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적자 공공기관이며, 방대한 건물과 시설의 유지에 많은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있어 수선유지로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임

- 예술의전당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면 수익성이 낮은 예술사업을 축소하고 수익성이 높은 대관,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영하게 됨

○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간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내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리모델링을 연차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조사업 규모, 시행시기를 산정하고 있음

- 예술의전당 리모델링사업은 정액 지원사업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노후전기설비 교체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통해 공연·전시 관람중단 및 안전의 위협을 제고하고, 오·우수관로 교체를 통해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 및 기능불량 THP하수관 (87년 설치) 개선을 지원하여 누수피해 방지 및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함

- 이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사회적 가치와 연계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제37조)에 근거한 법정법인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되어 사업자로 선정·교부함

-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노후 공간, 설비는 모두 예술의전당이 직접 운영하는 자산으로 예술의전당에 직접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 보조금 교부 조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 수행 및 정산에 대한 관리, 주의사항 등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를 마련함

- 문제 발생, 위반 시 징계, 지원 중단 등 처리기준을 항목별로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 명령,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에 명기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은 e나라도움 시스템 내 반영함

-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의 경우 '민간보조금 정산관련 회계검사 시행기준'을 마련, 배포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전문법인의 외부 회계검사 시행을 의무화함

○ 투명한 회계감사를 위해 전문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관리함

- 보조금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 처리기준(부정수급 등)을 최초 교부 시점부터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문화예술진흥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통해 예술의전당 기관 운영의 목적, 임원과 필요한 직원 운영,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국유재산 양여 등에 대한 사항 등이 있음

-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방지 및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의 확산 등을 위해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의 국가 지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됨
- 동 사업을 시작한 2011년 계획에서는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됨

3-2 정책 제언

○ 안전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업은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사업시작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으로 예상하고 총사업비를 61,410백만원으로 계획함
- 다음 보조금 평가 기간에는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예술인력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6억), 사업방식변경 ·사업수행기간이 장기임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사후관리가 미흡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업 성과가 동 예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우며,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운용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18조의 제1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션 및 비전(ARKO VISION 2020)에 의거하여 사업목적이 설정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6조(예술인력육성),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4호에 의거, 동법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9년부터 신진예술가와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하여 국가적으로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책무를 가짐

-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의 범위는 문화예술분야 관련 전공 졸업자 또는 문화예술분야 현장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관경영 전략체계(ARKO 비전전략 2020)를 통해 내역사업별 세부 실행과제를 설정함

-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로서 연수단원 정규직 취업실적, 창작물 유통 확대 수준, 예술작품 생산건수, 지원사업 참여관객 만족도 등을 설정하여 운용중임

- 동 지표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관리하는 지표이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의 효과적·효율적 운용을 위해 직접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연수단원 정규직 취업실적	목표	20	21	22	22
	실적	21	22	23	-
	달성도	1.05	1.05	1.05	
창작물 유통 확대 수준(건)	목표	-	신규	60	152
	실적	66	71	103	-
	달성도	-	-	1.72	-
예술작품생산건수 (건/백만원)	목표	-	신규	1.17	1.25
	실적	1.22	1.17	(1.17)	
	달성도	-	-	1	-
지원사업 참여관객 만족도(점)	목표	-	신규	92.8	93.1
	실적	91.0	92.5	(92.8)	
	달성도	-	-	1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목적은 예술현장의 성장동력 확충 및 창작활성화를 위하여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예술분야 연수를 통한 실무능력 배양 및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② 사립미술관의 전시운영 전문화, ③ 공연단체의 안정적 창작환경 기반 조성 ④ 전문무용수 상해재활·예방 및 직업전환 지원 등과 같은 사업세부 내역 사업을 전개함

○ 예술인력육성사업은 중앙정부(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등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대상, 사업목적을 차별화 하고 있으며, 예산사업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지원을 배제함

- 예술계 전공 졸업자들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예술단체들에게는 작품 창작의 활력을 제공하고 수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함

- 우리나라를 대표할 성장잠재력이 있는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지원대상의 특화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됨

○ 보조금 사업이 즉시 폐지될 경우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상실, 문화예술을 전공한 청년들의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가재정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위원회 정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규모를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국회(해당상임위 및 예결산특별위원히) 심사를 통해 사업규모 검토를 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의해 설치된 기금임

- 기금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위원회 회의 및 5개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방향 및 규모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시행함

- 기금의 중기적인 사업방향 및 규모를 정하기 위해 매년 내부작성 및 검토절차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사업비 규모를 정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2016년 보조사업 평가시 감축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예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을 감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보조율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보조율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됨

-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7조(예산 편성) 제③항에 의거하여 총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책상 필요한 전액 지원사업 등 주관부서의 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의무화(해당사업, 최대 50%), 단체의 자부담능력을 평가지표로 하여 국고보조율을 관리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부상위험이 높은 무용수들의 안정적인 공연활동을 위한 상해치료비 지원, 상해예방교육, 사전 부상 예방 검진을 통해 근로 복지를 지원함

- 예술계 전공 졸업자들의 향후 진로에 필요한 현장실무 능력 배양 및 취업기회 제공과 예술계 바른 근로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것으로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기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제정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제 규정 및 지침(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 등)에 따라 공모사업을 진행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각종 공모 사업의 지원 및 심의를 진행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1조(보조금 교부방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교부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사업비 일부 보조의 원칙을 준용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보조사업를 관리·감독함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 및 집행상황을 실시간 점검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실적보고서의 심사 및 보조금 삭감, 정산보고서의 검증,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관련한 규정을 준수함

- 문예기금을 통해 교부되는 모든 보조금 사업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진행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통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따라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집행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발생가능성이 있는 주요사업들을 대상으로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을 단계별로 점검함

- 2016년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업목적이 설정됨

-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의 범위는 문화예술분야 관련 전공 졸업자 또는 문화예술분야 현장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임
-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관리하는 지표는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의 효과적·효율적 운용을 위해 직접 설정하고 관리하는 지표는 없음
- 2016년까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함

3-2 정책 제언

○ 2016년 평가에서 감축 판정을 받았으며, 2019년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함. 불용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을 2020년 6억원 수준(약 5%) 감축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을 철저히 운용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7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직업역량강화, 창작역량강화, 공정한 예술생태계조성, 예술인 사회보장확대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지원 사업,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내역사업 중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적용 범위의 확대 추이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벗어난 예술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조의 제4항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 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재단의 사업)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사회보장확대지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 및 본 사업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의 법적인 근거는 명확함. 다만,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접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은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수혜대상은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임. 2018년 12월11일 기준 56,435명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아주 넓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013년 사업시행 초기 6,654명에서 수혜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본 사업의 잠재적 수혜자는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약 55만여 명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사업,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상담 및 컨설팅, 예술인 신문고,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성폭력 피해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내역사업의 내용은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어 있음

○ 이들 영역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직업역량강화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지원, 사회보장 확대 등의 내용은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각 사업을 독립적인 세부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음

○ 본 사업의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99% 이상으로 매우 우수하며, 예술인들의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목표치 수준을 달성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으로 조세지원, 규제완화, 융자 등보다는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생계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 폐지가 검토된 바 있으나, 2015년 국무조정실 주재 '유사중복사업 조정회의'를 통해 생계지원 목적이 아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하였음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 상 유사중복성이 있으나, 사업의 주된 목적 및 사업의 적용 대상 등에서는 일정정도 차이가 있음.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가 넓어질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본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 데 반해, 본 보조사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률 제고를 통해 예술인들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또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지만,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계약 외의 형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이라는 점에서 적용범위 또한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음

- 또한 예술인들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술인들에 맞는 사회보험 가입 촉진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초등학교 돌볼 교실 등과 일정정도 유사중복성이 있어 보임. 예술인의 활동시간 특성상 주말, 야간 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간연장 운영 등을 통해 차별성이 일정 정도 해소될 수도 있을 것임.

- 현재 두 곳의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만이 설치되어 있어, 자녀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의 신규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사업 안에서 보완을 통해 예술인 자녀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바우처 방식의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8.4%에 달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실집행되고 있음

○ 동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의 추진 주체인 예술인복지재단의 자부담 없이 국고로 100% 지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의 자부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5년 간의 재정소요액 추계가 이루어졌음.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이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는 않고 있음.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의 증가율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추계가 이루어져야 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의 내용 중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은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등과 관련이 되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재단의 사업)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사회보장확대지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은 법률에 의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 보조금 집행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위법 또는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연 2회 사업 담당자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보조금 사후관리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2014년 보조사업 이후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통해 부당사용액 등을 점검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보조금 사후관리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관리하고 있음

○ 창작준비금 지원 등 일부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도 인정이 됨. 다만, 내역사업이 직업역량강화, 창작역량강화, 공정한 예술생태계조성, 예술인 사회보장확대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히려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

○ 세부 목적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을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지원 사업,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제안함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및 이에 따른 두루누리 사업 적용대상자 확대 추이 등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들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의 정상추진을 제안함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성과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자체적 노력을 하고 있음 ·연도별 성과지표로서 민관협력 기부성공 건수, 클라우드펀딩 성공사례 건수 등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점검할 수 있는 등 종합적인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기부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부정수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서 문화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명시되어있으나 제시된 법력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제1항은 기금의 재원 구성에 대한 내용만을 명시하여, 보조금지급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짐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단체는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 근거가 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하여 일부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법령의 내용이 내역사업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음

- 국가와 지방단체는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명시(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사업은 문화예술 재원의 마련을 위해 민간기부 활성화를 통해 예술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됨

-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공공재원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 광범위 하나 직접적 수혜자는 일부로 한정됨

- 직접수혜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관련재단, 메세나협회 및 예술가 등이라고 볼 수 있음
- 간접수혜자로는 관련 기관이 창출한 경제적 외부효과를 받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는 없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예술정책 및 기부금 활성화사업의 내역사업 가운데 보조금사업은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의 예술 후원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정 됨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내역사업은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후원매개단체지원, 기업과 예술의 만남활성화, 문화로 인사합시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세부내용은 민간 후원 및 협력 확대, 기업의 문화경영 인식제고, 민간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연도별 성과지표로서 민관협력 기부성공 건수, 클라우드펀딩 성공사례 건수 등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

- 민간협력 기부건수는 '16년 32개에서 '17년 45개로 증가
- 클라우드펀딩 성공사례 수도 증가하고 있음('16년 23개→ '17년 33개)

○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 2017년 사업 대비 2018년 불용액은 100백만원(130백만원 → 30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조사업 총액 대비 집행률도 각 98.3%와 99.6%로서 예산 집행률이 높은 편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예술기부의 민간재원 확장, 민간분야와의 협력 등을 위해서는 직접적 규제보다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매칭 지원의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예술분야 기부는 여전히 미약하므로 민간사업으로의 전화는 어렵다고 판단됨
- 보조금 지원은 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순수기출예술분야에만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문화예술단체도 경쟁력을 갖춰 관련 비용을 충당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추진이 시급한 사항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사업의 현재 및 미래수요에 대한 근거자료가 보강 될 필요가 있음
- 사업이 폐지될 경우 민간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장 경쟁력에 취약한 예술단체 및 예술가는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워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의 여지는 없어 보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어 보임

- 사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사업비의 1%미만임

○ 보조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어 있으며 집행률이 높은 편임

- 2019년 세부사업비용은 약 2,500백만원으로, 기업과 예술의 만남활성화 1,900백만원,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350백만원, 후원매개단체지원 150백만원, 문화로인사합시다 100백만원으로 구성됨

- 2018년 불용액은 2017년 사업 대비 100백만원(130백만원 → 30백만원) 감소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9조(국고보조 등) 등에 의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며,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50%를 의무화하며 단체의 자부담 능력을 평가지표로 하여 국고보조율을 관리하고 있음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50%,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자부담 비율이 18%, 매개단체지원사업은 21%로 선정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사업 중 매칭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실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 여성연출가의 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예술활동 계기마련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 사업 지원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통기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하도록 되어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의무화(최고 50%)를 명시하며 단체의 자부담 능력,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함(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제9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1항)
-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및 제11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1조 보조금 교부방법, 제17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업무를 진행함

- 보조금을 최소 2차례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명시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을 관리, 감독함
- 보조사업자의 집행점검을 e-나라도움 및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심의에 반영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제2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제 21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제22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제24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28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가 마련됨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어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미정산 및 성과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사항을 적발하였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방지대책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발생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점검을 추진 중임

-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자체적인 노력으로 부처에서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음

- 2018년에 기부자와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기부금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제공하여 기부금의 집행 및 정산현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였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1차 수혜자에서 2차 수혜자로 이어지는 파급효과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 또한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자체적 노력으로 줄이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보조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며 사업의 현재 및 미래수요에 대한 근거가 미흡함

3-2 정책 제언

○ 종합적인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가 필요함
- 민간분야의 기부금을 이끌어 내는 것 이외에도 예술시장 활성화, 후원문화 활성화 등 근본적인 토양을 바꿀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함

○ 기부금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예산의 집행관리를 계속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예술창작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5.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예산 15억(약 5%)을 즉시 감축할 필요가 있음 ·사업지원의 액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지원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금액 산정근거가 미흡하며 예산의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규모를 재설정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의무화를 명시하였으나 그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적어 자부담 금액의 편차가 크므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불용액 및 부정수급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조사업의 목적, 재원, 용도, 재원관리의 주체 및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와 제16조에서 보조사업의 목적과 재원을 규정하였고 제18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나열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하여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근거가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음

- 내역사업은 문화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국제예술교류 지원의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예술창작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의 보급을 위한다고 볼 수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문학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지원 등 순수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현재 K-Pop,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한류열풍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순수예술 지원뿐 아니라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목적도 가지고 있음

-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68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69번),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 관계 발전(93번) 등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선정되었음

- 남북한 교류뿐 아니라 국제교류 측면에서도 순수예술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이나 간접적으로는 예술공연을 관람하는 국민이 될 수 있어 비교적 수혜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예술창작지원을 위한 내역사업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있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예술영역별로 세부사업이 구성됨

○ 창작물 유통 확대 수준과 예술작품생산건수, 지원사업 참여관객 만족도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단위사업 수준의 성과 관리이며 목표치 설정 근거가 미흡해 보이며 성과지표의 내용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지표보다는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계량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야 하며 예술작품생산건수에 대한 목표치 및 측정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음
- 다른 세부사업과 성과지표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동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함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 예산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창작에서 저변 확대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임

- 특정 민간영역인 순수예술 분야까지 정부가 보조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불분명한측면이 존재하고 국가지원의 효과성에 미흡할 수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해서는 공적인 지원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음

- 순수예술 분야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며 자생적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국제교류의 경우 공공성이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이 타당함
- 순수기초예술 육성 및 지원 등은 순수문화예술 관람의 지속적 하락, 자생력이 취약한 예술 활동의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함

- 사업이 폐지될 경우 순수예술분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국제 교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어렵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국제교류재단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수 있어 유사· 중복의 가능성이 존재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되어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 중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공연예술온라인 확산지원에 대한 비용 산출근거가 미흡함

-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2017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의 지원율이 50.2%로 민간단체부담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현행 보조율은 합리적 산정기준에 근거한다고 보이나 지원 금액을 단체의 재정수준 및 공연 수익금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음

-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서 (최대 50%) 자부담을 지원조건에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부담 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하지만 불용액이 2017년에 305백만원 정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등 지원사업이나 수혜자 선정 등 예산 집행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불용액의 추이를 봐도 2015년 3,217백만원, 2016년 1,536백만원, 그리고 2017년에는 305백만원을 기록함

- 불용액 금액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동 사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한다고 판단됨

- 아르코문학창작기금에서 선정한 작가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그리고 이 둘을 준수하여 재정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있음

- 공모사업을 진행 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문화복지 포함) 등 해당 분야에서 사업유형별로 5~10인을 위촉하여 구성함

- 심의위원회에서는 비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섭외 순위를 정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 과정도 거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 선정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의무화를 명시함

- 단체의 자부담 능력을 평가지표로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원한 보조사업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도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집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

-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규정대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실적보고서의 심사 및 보조금 삭감, 정산보고서의 검토 등 일련의 사후관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2016년 부정수급 사업을 적발한 사례가 있어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높아 보임

- 2016년 소속 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출연료를 편취하고 이를 직원급여 및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사업이 적발된 적이 있음
- 또한 지원대상 퇴사일에 대한 허위 통보로 지원된 보조금을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다 적발되었음

○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통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현재 한류 열풍 등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반면 이의 근간이 되는 순수예술에 대한 민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내역사업의 경우 재정규모 선정이 적정하지 않음

-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 중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공연예술온라인 확산지원에 대한 비용 산출근거가 미흡함
-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근거가 부족하며 일부 성과는 그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음

- 보조금 지원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부족하며 성과를 확인하기 매우 어려움
- 불용액 금액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순수예술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순수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활성화라는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임
- 이를 위해서는 측정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의무화를 명시하였으나 그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적어 자부담 금액의 편차가 크므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단체의 자체부담 능력 및 공연 관람 수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부담비율 설정이 필요함

○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올림픽공원운영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지원 사업으로 정상추진할 필요가 있음 ·투명한 회계 집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동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8호에서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제1항1호 “생활체육의 보급과 진흥사업”이라고 제시됨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2항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의 필요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근거가 있음
- 공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수지차 보전기관은 기관의 지출예산총액에서 기관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 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며 기획재정부에서 기관의 자체수입이 존재하고 출연·보조의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 중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지정함
-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공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사업명을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으로 변경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에 의해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할 책임을 가짐

- 올림픽공원 운영지원 사업은 체육기금의 조성, 국민들의 체육활동 진흥, 올림픽공원 및 경기장의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함
- 체육기금은 대부분 본 사업을 통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으로 조성되고 체육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설치목적 및 사용범위에 따라 생활·전문·장애인 체육진흥, 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수행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이며 기간은 계속사업임

- 체육기금 조성 및 올림픽공원(시설물 포함)의 효과적 관리에 부합토록 공단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공단 본부의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을 내역사업으로 설정함

- 체육기금은 국가 체육 분야예산의 약 89% 정도를 담당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입금 전입액이 체육기금의 약 84% 정도를 차지함

○ 본 사업은 기금조성사업과 올림픽공원(시설물 포함)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체육기금을 증액하고 경기장 등 시설물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계획 등)에 따라, 수지차 보전금을 포함한 법인회계 예산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 및 감독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가 아님에 따라 보조금외 정책수단은 없음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사행산업으로 공단의 독점사업이며, 올림픽공원 및 올림픽 시설물은 공단의 재산으로 올림픽공원 운영에 따른 수입을 통해 공원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예산 세부사업 37개와 유사·중복·조정·통합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사업자인 공단의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며 미지원시 올림픽공원의 수도광열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공공요금 미납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폐지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운영이 어렵게 되어 정부 체육예산의 약 89%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단본부 자체수입과 지출의 차이분을 보전받는 사업으로 규모는 2019년 290억원이며 공단본부 2019년 총예산 1,123억원 중 26%에 해당함

- 사업비는 공단본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올림픽공원 수도광열비 및 제세금, 올림픽공원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됨

-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 지침에 따른 수지차 보전사업이며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보전금액(보조율)을 산정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올림픽공원 경기장 등 대관을 위한 공원내 시설물에 대하여 공간안전인증을 받는 등 공원 및 경기장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어 사회적 가치와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됨

- 올림픽공원 및 시설물 관리를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이 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3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설립되었고 동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에 의거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보조받음

- 교부조건 및 교부절차는 공단이 수지차를 반영해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침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예산안을 승인받음으로 교부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며, 기금지원부서에 교부신청하고 e-나라도움시스템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하는 교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자로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해 수지차 보전금액을 산정하고 공단 법인회계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편성하며 내부회계규정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39조(회계 감독 등)에 의거 동 보조금이 포함된 공단의 법인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감독)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가 감독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집행 지침을 반영, 자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및 정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회계 규정, 고정자산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함

- 회계감사의 경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시행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음

- 보조금 반환 및 정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짐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39조(회계 감독 등)에 의거 매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동법 제43조(감독)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속적인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있음

- 본 사업비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 공단 내부 회계시스템(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를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증빙 확인 후 e-나라도움으로 집행하고,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증빙 등을 확인 후 최종 집행되는 2단계 점검 구조를 구현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임

- 올림픽공원 운영지원 사업은 체육기금의 조성, 국민들의 체육활동 진흥, 올림픽공원 및 경기장의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함

- 체육기금 조성 및 올림픽공원(시설물 포함)의 효과적 관리에 부합토록 공단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공단 본부의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을 내역사업으로 설정함

3-2 정책 제언

○ 국민체육진흥법 제39조(회계 감독 등)에 의거 동 보조금이 포함된 공단의 법인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하고 승인하고 있는데 예산의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반환 및 정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민간보조사업자의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 ·음악산업 콘텐츠 창작기반 강화 및 활성화,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조성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신한류, K-POP 음악 등의 음악산업 지원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업방식 변경 필요 ·사업의 집행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문화예술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음악산업 콘텐츠 창작기반 강화 및 활성화,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조성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K-POP으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음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및 인디뮤지션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음악진흥사업은 지속적인 한류확산을 위한 인큐베이팅과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차원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대중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지원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진출 및 권익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사업임.

○ 음악산업 육성은 음반제작·공연지원 사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인뮤지션 발굴·육성, 음악창작소 건립 지원 등의 보조사업을 통해 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및 인디 뮤지션 등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만, 이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의 결과물로 최종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을 향유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수혜의 폭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것임.

- 대중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등 관련 산업 종사자가 직접적인 보조사업 수혜자이나,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연예활동으로 대중문화예술 콘텐츠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해짐에 따라 이를 일반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그 향유의 질 제고에도 기여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음악산업 육성 및 대중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음악산업 육성 사업은 대중음악 인프라 및 창작기반 강화, 대중음악 유통 및 홍보 활성화 지원,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사업의 목표달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대중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및 대중문화예술 제작 스태프 대상 등 포상제도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격려 및 관련 산업 홍보 등으로 내역사업이 구성되어 대중문화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음악산업의 다양성 강화를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창작기반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이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유통되어 국민들의 향유기회가 확대되며, 나아가 해외진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등 산업 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음.

○ 보조사업은 각 내역사업별 계획대로 집행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음악산업에 대한 매출액 증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실집행률이 70%로 나타나 좀 더 효과적인 보조사업의 수행이 요구됨

<음악산업 육성 지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창작 지원	앨범지원(과제)	14	15	14
	공연지원(과제)	18	18	19
	k-루키즈(팀)	8	6	10
해외 진출	쇼케이스 출연(팀)	20	15	15
	페스티벌 참가(팀)	12	27	2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관리 및 법정교육>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건)	748	426	323
법정교육(업체)	2,336	1,812	1,857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심리상담(회/명)	47 / 82	167 / 120	146
법률상담(건)	72	104	112
소양교육(건/명)	114 / 988	122/1,151	147 / 1,288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음악산업 육성은 음악 산업계 자체적으로 독립 뮤지션 음악창작 활동을 지원하거나, 그들의 해외진출을 진행하기 힘든 여건이어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음악창작 공간을 지방에도 건립하여 지역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보호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은 민간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우므로 공익목적의 보조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함

○ 본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중복가능성은 없으며, 대중음악 창작기반 마련을 통한 음악 생태계 조성, 해외 유통지원 및 뮤지션 해외 네트워킹 확대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거점 확대 등 지속적인 한류확산을 통한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운영의 필요성은 있음

- 대중문화 산업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권익강화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은 국정과제의 하나이므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함

○ 사업폐지 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운영, 지원사업 등 국가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다양한 뮤지션이 활동할 수 있는 대중음악 창작기반의 약화 및 대형기획사 위주의 음악시장이 가속화되어 심각한 산업 불균형 초래하며, 장래가 유망한 신인 뮤지션 및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인디 뮤지션들의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또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형성되는 등 공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취약계층인 청소년 및 연습생의 권익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음

1-5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

○ 내역사업의 구성('19)에서 대중음악 산업육성은 창작기반 마련을 통한 다양한 음악 생태계 조성, 해외 유통지원 및 뮤지션 해외 네트워킹 확대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거점 확대 등 지속적인 한류확산을 통한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산업계 트렌드 및 관련 융합산업 성장 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중문화예술진흥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 연구, 상담 및 지원, 원로대중문화예술인 등 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연사업 추진 등 공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조성 및 지원정책의 추진과,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성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내역사업별 세부사업이 다수이고 세분화되어 있어 추후 예산 편성시 통합·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 및 '아시아송페스티벌' 사업은 50% 이며, 그 외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은 정액지원 또는 사업별 자율매칭으로 하고 있음

- 음악산업육성의 민간보조사업은 정액지원 또는 개별 사업별 10~50% 범위내 자율 매칭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진흥 사업의 민간보조사업은 정액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본 사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의 심리상담, 소양교육, 법률상담을 지원함으로써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⑤ 사회적 약자의 기회제공과 사회통합과 관련되며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음악생태계 조성 및 지역문화·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⑧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과 연계되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고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사업계획서, 재원부담, 사업이행 의지, 그간 사업추진 실적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 '통기타페스티벌 개최 지원사업'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 능력, 사업추진 의지 및 계획이행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음.

- 민간보조사업은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인디페스티벌 개최지원)은 민간 협·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해당 사업계획서와 사업수행의 적정성,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인력·사업능력을 갖춘 단체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관련 법령, 사업운영 전문성,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교부 시 2회에 걸쳐 분할 교부를 원칙으로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보조사업 이행실적 및 재정집행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재원 집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조보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 수시 점검 및 정기적인 사업추진상황 보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분기별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사업 이행실적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 실집행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독려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적법·적정하게 집행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교부조건에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조항을 명시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따라 적법한 집행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정산보고 철저,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외부회계 법인의 검증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노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련 규정 등의 준수 및 예산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부정수급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조사업자가 민간 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음으로서 오히려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점검 및 사후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타 유사사례 수집,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음악산업 콘텐츠 창작기반 강화 및 활성화,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조성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각 내역사업별로 계획대로 집행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실집행율이 70% 수준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년부터 성과관리 체제의 구축과 보조사업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 중 음악산업 육성은 음악 산업계 자체적으로 독립 뮤지션 음악창작 활동을 지원하거나, 그들의 해외진출을 진행하기 힘든 여건이어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음악창작 공간을 지방에도 건립하여 지역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보호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은 민간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우므로 공익목적의 보조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하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집행점검 체제 구축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이야기산업 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3.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내역사업 내 신규 세부사업의 재검토와 목표 대비 사업비 증액의 적정성 검토, 사업 수행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6억 원의 예산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야기산업 활성화가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지속 성장을 견인하는데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나, 문화컨텐츠 산업은 특히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의 연계활동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이야기 산업만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개별 내역사업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이 있었음에도 이의 근거 제시가 미흡함. 개별 내역사업들의 성과지표가 예산투입의 즉각적인 결과로서의 산출(output) 지표로 구성되어 효과성이 입증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특히, 스토리 매니지먼트 육성 및 이야기 플랫폼 등 '19년도 신규사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사업의 편성이 전체 사업의 유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개별 사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문화산업”의 정의 중 사.목에 근거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야기 산업을 독립적으로 진흥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구체적으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사.목에서는 문화산업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활동에 주목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산업으로서의 문화컨텐츠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이 중요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 진흥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창업자의 성장 지원 및 (융합)콘텐츠 제작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이야기산업 창작・제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문체부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는 등 사업의 근거를 일정하게 규정하고는 있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7조, 제10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에서 창업자의 성장 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3호에 이야기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문체부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내역사업의 시행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야기산업 활성화가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지속 성장을 견인하는데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나 컨텐츠 산업의 지원과 별개로 분리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이야기 산업은 제조업의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변형이 갖는 잠재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육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문화컨텐츠 산업은 특히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의 연계활동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이 자칫 이야기 산업을 컨텐츠 산업의 생태계에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콘텐츠 산업과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69번 과제,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관련, 콘텐츠 산업 발전과 관련한 다각적 활동을 육성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야기산업 활성화는 콘텐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므로 사업의 목적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됨.

- 이야기 산업은 영국, 미국, 유럽 일부 국가 등이 별도로 그 육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는 제한적임

○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은 그 사업수행 결과가 직접적으로는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대중문화 향유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수혜자가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타 산업과의 연계로 파생 콘텐츠를 창출하고,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지속 성장을 견인하는데 근본이 되는 활동으로 국가 단위의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문화컨텐츠의 특성 상 문화향유권 및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는 국민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며 그 사회적 편익도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이야기산업 창작·제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 단계별로 창작개발지원, 제작지원, 유통활성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설계하는 한편 인프라 구축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등 내역사업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높음

○ 전반적인 사업의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며, 이들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내역사업 간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음.

- 이야기산업 전(全) 주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사업이 고유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위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 또한, '16년도 연장평가에서 제기되었던 예산감축 및 내역사업의 재구성 필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지역스토리랩 운영을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의 내역사업으로 이관하는 등의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

- 다만, 지역스토리랩 운영에 대한 내역사업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내역사업 내 신규사업이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간의 연계성이 오히려 떨어진 점은 개선이 필요함. 또한, 신규사업으로 인해 실제 개별 내역사업의 예산규모가 증대된 반면, 아직 사업의 초기라 그 성과는 충분하게 발생하고 있지 못한 점은 추후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한 예산감축이 요구됨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문화컨텐츠 지원 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예산투입의 즉각적인 결과로서의 산출(output)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임

- 공모대전 수상건수, 스토리센터 입주자 수, 워크숍 및 콘서트 횟수 등 실적과 관련한 대부분의 성과가 단순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드라마 <태양의후예>의 모태가 되었던 '11년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 「국경없는 의사회」가 최종적으로는 세계 32개국 판권 판매, 온라인 15억뷰 돌파 등의 성과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지원사업이 창출한 성과를 컨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상업적 성과 등의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목표 중 하나가 콘텐츠 산업 발전의 근원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의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기대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즉, 보조사업의 다양한 지원활동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소수의 수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컨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원천 소재 발굴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민간 자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민간 부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의 초기인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의 선도적인 지원 및 창의성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인 역할 간의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부 중심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정부 지원사업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감독의 절차가 예술 분야의 창의성과는 상충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는 별개로 산업계 내에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재검토를 전제로 보조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고유성 자체는 인정이 되나, 문화컨텐츠 산업은 특히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의 연계활동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야기 산업과 컨텐츠 산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야기산업의 활성화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며, 이를 견인할 민간 자생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일정하게 필요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자생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지원활동의 효과가 일회성으로 소멸하거나 지원대상이 되는 소수의 수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원활동의 효과가 일회성으로 소멸하거나 지원대상이 되는 소수의 수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영세한 산업구조의 특성 상 그리고 이야기 산업 자체가 갖는 잠재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정부의 보조사업 형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사업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은 명확한 한계임

- 전체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예산 9,604억 원 중 이야기 장르에 대한 지원예산이 0.7%에 불과한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나, 이야기 산업이 갖는 잠재적 가치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요구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체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예산이 9,604억 원임을 고려할 때 그 규모가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의 산출근거 제시가 미흡한 편임

- '19년도의 예산은 과거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나 지역스토리랩 운영이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된 점을 고려할 때 개별 내역사업들에 있어서 예산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실제로는 증액된 것으로 파악됨

- 개별 내역사업들의 성과지표가 예산투입의 즉각적인 결과로서의 산출(output)지표로 구성되어 효과성이 입증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예산증액의 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스토리 매니지먼트 육성 및 이야기 플랫폼 등 '19년도 신규사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사업의 유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개별 사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단순화하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예산감축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저작권 확보 유지를 위한 신규사업과 이를 위한 예산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내역사업에 정액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정액 보조액 지원 비율 : 100%),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기준보조율을 정하는 등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부처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해당하는 항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에 의거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절차를 통해 교부하는 등 제도화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수행의 적정성, 목적달성의 적합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부조건 등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콘텐츠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이 인정됨

-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에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관리규칙', '지원 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등 지원 사업 관련 규정과 지침을 수립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 조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 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관련 사항을 수행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음

○ 사업계획에 따른 실집행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목적 및 취지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기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 정산 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집행을 발견하는 경우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있음

- 법령 및 규정에는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사후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 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요구하여 검토하는 등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실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도 없음

○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적절히 구축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이야기산업 활성화가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지속 성장을 견인하는데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나, 문화컨텐츠 산업은 특히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의 연계활동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이야기 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 컨텐츠 산업의 뿌리분야로서의 이야기와 이의 다양한 변형이 갖는 잠재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육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문화컨텐츠 산업은 특히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의 연계활동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이 자칫 이야기 산업을 컨텐츠 산업의 생태계에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콘텐츠 산업과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이야기산업 창작·제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 주기에 걸쳐 지원사업을 구성하는 등 목표와 내역사업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높으며, 사업의 효과성도 일정 부분 인정됨. 다만, 문화컨텐츠 지원 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야기산업 전(全) 주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사업이 고유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위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예산투입의 즉각적인 결과로서의 산출(output)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제시하는 것은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지역스토리랩 운영에 대한 내역사업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내역사업 내 신규사업이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간의 연계성이 오히려 떨어진 점은 개선이 필요함. 또한, 신규사업으로 인해 실제 개별 내역사업의 예산규모가 증대된 반면, 아직 사업의 초기라 그 성과는 충분하게 발생하고 있지 못한 점은 추후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다양한 지원활동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소수의 수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체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예산이 9,604억 원임을 고려할 때 그 규모가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의 산출근거 제시가 미흡한 편임

- 개별 내역사업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이 있었음에도 이의 근거 제시가 미흡함. 개별 내역사업들의 성과지표가 예산투입의 즉각적인 결과로서의 산출(output)지표로 구성되어 효과성이 입증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예산증액의 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문화컨텐츠 지원 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모대전 수상건수, 스토리센터 입주자 수, 워크숍 및 콘서트 횟수 등 실적과 관련한 대부분의 성과가 단순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그간의 지원사업이 창출한 성과를 컨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상업적 성과 등의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목표 중 하나가 콘텐츠 산업 발전의 근원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의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기대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이의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내역사업들에 있어서 예산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저작권 확보 유지를 위한 신규사업과 이를 위한 예산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바 그간 창출된 사업의 효과성을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스토리 매니지먼트 육성 및 이야기 플랫폼 등 '19년도 신규사업 등이 추가되면서 사업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사업들 간의 전체적인 유기성도 떨어지고 있는 점을 추후 개선이 필요함. 개별 사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단순화하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전통문화체험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3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20년 예산부터 33억원 예산 감액) ·동 보조사업 내 내역 사업간 일부 중복성이 있고, 낮은 실집행률이 매년 반복됨 ·템플스테이 시설지원과 중복성이 있는 전통사찰 관광상품화(내내역)의 '19년 예산 33억원을 '20년부터 감액할 필요 있고,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기 추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등 예산 계획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가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수혜시설의 자부담율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관광기본법」 제7조, 제8조, 제9조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등의 개선 및 확충, 그리고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76조 등은 문체부 장관이 관광 관련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설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템플스테이 지원, 전통문화체험시설지원, 전통문화관광활성화 지원 등 동 보조사업의 각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한 관광자원 보호 및 개발이라는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있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전통문화(불교, 유교) 및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시설지원,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화 연계 홍보 등으로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지원 육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으며, 국가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 가지는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은 필요하고 타당함

○ 현 정부 국정과제 「73: 관광복지확대와 관광산업활성화」의 실천과제 중 하나가 지역관광 명소를 집중 육성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이는 동 보조사업과 연계성을 가짐

○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135개의 운영사찰과 사찰 내 지도법사 등 운영인력, 전통문화체험시설로서의 서원·향교 등이며, 간접적으로는 해당 전통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국내외 이용객 및 관광객, 해당 지역 관광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 등으로 대체로 광범위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전통불교, 유교문화체험사업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 보급'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 지원, 전통문화체험시설지원, 전통문화관광활성화 지원 등 합리적으로 구성된 내역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각 내역사업들의 내용 및 목표, 지원대상이 매년 수시로 바뀌는 등 내역사업 구성의 일관성이 다소 미비하므로,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에 걸쳐 추적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로 내역사업 구성을 개선할 필요 있음

○ 최근 3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은 양호하나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고, "템플스테이 참가인원"과 "템플스테이 참가자 만족도" 등 사업에서 설정하고 있는 성과지표 측면에서는 목표 대비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가 템플스테이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업 전체의 성과를 확인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음

- 예산 비중이 가장 큰 템플스테이 운영 중심의 성과지표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이나, 전통문화체험시설지원, 전통문화관광활성화 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인한 성과도 함께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전국에 걸쳐 고루 분포한 전통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별 산발적 추진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정책적 추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며, 개별 민간시설에 의한 자체수행에도 한계가 있음

○ 동 보조사업과 유사·중복성을 가진 타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내역사업간의 중복성은 일부 발견됨

- '17년부터 템플스테이 시설지원과 전통문화체험시설지원 간의 중복성이 해소하기 위해 정부안에서 제거하는 등 조정 노력을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는 등 여전히 중복성이 존재하고 있음

○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우리나라 관광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전통문화를 활용한 독특한 관광콘텐츠의 육성은 국가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통사찰 관광상품화(내내역)의 경우 템플스테이 시설지원(내내역)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19년 예산 33억원을 '20년부터 감액할 필요 있음

○ 매년 반복되는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기 추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추진실적 미진 시 지원 취소 등 예산계획 및 사업관리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혜시설의 자부담율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할 필요 있음

○ 매년 연도별 사업목표에 따라 재정소요액을 추계하고 중기재정 및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의 간접적 기여도를 일정 부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모와 비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있음

- 공모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에 따라 서울·제주 이외의 지역관광활성화 추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동 지역들을 제외하고 전국의 지자체에 공모계획을 공지하여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에 교부금 교부 시 사업기간 내에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조금 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결정조건으로 하여 통지하고 있음

- 비공모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각 보조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련 규정 등을 통한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음

○ 민간보조사업에서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각 보조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련 규정 등을 통한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의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관련 절차를 준용하고 있고, 사업추진 및 환류절차에 의거 사업전반에 관한 법적합성,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였으며 재원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사후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였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사업 승인 시 예산항목별 사용범위 및 한도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예산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체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하반기 보조금 교부 시 상반기 집행상황 및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음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시,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 미준수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함

○ 사업수행 완료 후 실적보고 시 중요재산 등을 포함한 전문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보고서를 함께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집행지침 및 법률 등을 위반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었음

○ 문체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100억원 이상 내역사업 수행기관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대한 부정수급발생 예방을 위해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실시함

○ 일부 전통문화 시설에서의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각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한 관광자원 보호 및 개발이라는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있다고 판단됨

○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지원 육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가적 타당성이 있고, 국정과제 「73: 관광복지확대와 관광산업활성화」와도 연계됨

○ 각 내역사업들의 내용 및 목표, 지원대상이 매년 수시로 바뀌는 등 내역사업 구성의 일관성이 미비하므로,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에 걸쳐 추적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로 내역사업 구성을 개선할 필요 있음

○ 성과지표 측면에서는 목표 대비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가 템플스테이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업 전체의 성과를 확인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음

○ 전통사찰 관광상품화(내내역)의 경우 템플스테이 시설지원(내내역)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19년 예산 33억원을 '20년부터 감액할 필요 있음

○ 매년 반복되는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기 추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추진실적 미진 시 지원 취소 등 예산계획 및 사업관리 효율화 노력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전통문화 시설에서의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3-2 정책 제언

○ 예산 비중이 가장 큰 템플스테이 운영 중심의 성과지표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이나, 전통문화체험시설지원, 전통문화관광활성화 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인한 성과도 함께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수혜시설의 자부담율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전통생활문화 진흥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4억), 사업방식변경 ·사업의 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지 않음 ·2005년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효과를 측정할만한 적절한 성과지표가 부재함 ·성과를 검증할만한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제3조, 제39조 등은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전통문화예술 계승, 민족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 보호,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규정함

-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지원, 풍석학술연구,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한복진흥원 건립, 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 등 해당 보조사업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의 대중화 및 일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전통적으로 행해온 전통생활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의 보존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창출 및 일상생활 속 전통의 대중화·일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장함

- 일상의 삶에 뿌리를 둔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의 정책방향에 연계됨

○ 전통생활문화 진흥 사업은 여러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은데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지원, 전통문화 인성교육, 풍석 학술 연구 등은 다음과 같음

-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지원의 경우 사라져가는 전통서당의 교육전통과 서당문화를 보존하고, 유치·초·중·고·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서당문화교육 프로그램(30,0345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 1회 서당문화한마당(12,229명)을 개최함

- 전통문화 인성교육의 경우 유치·초·중·고·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전통문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함(3,081회/182,326명)

- 풍석 학술 진흥 연구의 경우 풍석 서유구 선생이 전통실용지식을 집대성하여 집필한 <임원경제지> 등 저술에 대한 번역·출판을 통해 일반국민·학계 등에 제공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전통적으로 행해온 가치 있는 전통생활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전통의 대중화·일상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 전통문화 인성교육, 풍석학술진흥연구,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남북한 전통문화 교류, 한복진흥원 건립, 한지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전통적으로 행해온 전통생활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속에서 자연스러운 전통의 대중화·일상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동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명)'이며, '16년 신규목표로 설정되었으며, '17년도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50백만원이 감소하여 6.4%p 미달성됨

○ 동 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성과지표가 선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인 '전통문화의 보존 및 일상화·대중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한복·한지 지역거점 설립 사업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함

- 다만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수행하는 기관들이 자체 예산 보유 능력이 많지 않아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관련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전통의 일상화를 목표로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서당문화에 대한 보존과 진흥, 총 67권에 달하는 방대한 풍석 서유구 선생의 「임원경제지」 출간,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래놀이에 대한 조사 및 일상화, 전통놀이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은 전통생활문화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의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1,878백만원,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2,150백만원, 한복진흥원 건립 1,456백만원,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600백만원, 남북한 전통문화 교류 5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보조율에 따라,'한복진흥원 건립' 및 '한지생산시설 구축' 사업은 국고 50%를 지원, 기준 보조율을 준수함

내역사업명	구분	정률보조액	국고보조율
한복진흥원 건립	지자체자본보조	1,456백만원	50%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지자체자본보조	600백만원	50%

-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39조(국고보조 등) 등에 의거 지원하며, 동 사업의 예산은 국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어 다음연도 사업의 예산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업부서 내부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부서 검토 → 기획재정부 검토 → 국회 예산 심의 및 확정 등의 사업비 규모 등에 대한 심사 단계를 거쳐 보조율을 결정하고 있음

- 동 사업들은 기관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자부담 율을 0~10%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함

내역사업명	구분	정률보조액	국고보조율	비고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백만원	90%	
전통문화 인성교육	민간경상보조	450백만원	95%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민간 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1,520백만원 358백만원	정액 90%	 공모
풍석학술진흥 연구	민간경상보조	700백만원	90%	
남북한 전통문화 교류	민간경상보조	50백만원	정액	

○ 예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산 감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한복진흥원 건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713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에 해당되어, 기준보조율이 50%임

- 보조사업자인 경상북도(상주시)는 문화재 지표조사('16.2월), 매장문화재 시굴조사('16.5월), 설계용역 체결('16. 9월), 도시관리계획 수립('17.10월), 실시설계 완료('17.12월), 공사 착공('18.3월) 등을 시행함

○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은 기준보조율이 50%이며, 보조사업자인 전라북도(전주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16.11월), 기본계획 수립('17.5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18.8월) 등을 추진함

○ 한복진흥원 건립은 '15년 최초 예산 배정 시에 지역거점 중심의 한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복의 중요 소재인 명주의 생산 지역인 경상북도(상주시)가 사업자로 지정됨

○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은 전통한지의 원류복원을 위해 '17년 최초 예산 배정 시 우리나라 최초의 집적화된 전통한지의 생산지인 전라북도(전주시)가 사업자로 지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집행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보조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사업 진행상황,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통하여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정산 과정을 통해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재확인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없음

-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문화예술진흥법이 문화예술 활동 권장, 보호,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상의 삶에 뿌리를 둔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의 정책방향과도 연계됨

- 다만 동 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성과지표가 선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3-2 정책 제언

○ 예산의 효과성 검증이 미흡하고,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예산을 2019년 예산의 5% 수준인 4억원 정도 감축함

- 2016년 보조사업 평가에서 감축 판정을 받았음에도 신규 내역사업 시행 등으로 예산이 2019년 크게 증가함

-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8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2억 4천만원을 즉시 감축하는 것을 제안함 ·성과는 만족도로 관리되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 및 목표선정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업의 성과대비 재정지원규모가 과다함 ·만족도를 측정하는 평가항목이 이해관계자 별로 동일하며 중요한 수요자인 학부모 만족도는 3년 연속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이는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업 목적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지표가 미흡함 ·주요성과 지표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평가항목을 이해관계자 별로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에 근거하였으나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음

- 근거 법에는 국가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근거가 미흡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대하여 일부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연관성이 떨어짐

- 내역사업은 아름다운이야기 할머니로 구성되어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예술 계승만을 명시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민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 [국정과제 1-1]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요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보임

-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이 위축되고 미래세대의 인성함양이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가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내역사업의 내용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보다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보다 강하여 그 목적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음

- 일자리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여성 고령인력을 선발, 교육하여 옛이야기를 전달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대 간 정서적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할머니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음

- 직접적 수혜자는 이야기할머니, 유아 및 유아교육기관 등이나 잠재적으로는 인성교육대상이 되는 학생, 학부모 등도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지방문화원천콘텐츠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광범위 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수혜자의 범위를 넘어 전 국민으로 확산 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의 내용은 명확하며 보조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함

- 할머니 선발부터 파견까지 사업 전 과정이 일관된 프로세스에 의해 관리되고 내용 간 연계성이 비교적 명확함
- 사업의 만족도만을 관리지표로 하고 있어 연도별 성과지표 선정 근거자료가 미흡함
- 설문지 구성내용이 본 사업의 본질적 목적보다는 그 외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이는 등 설문방식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지는 않다고 여겨짐

  * 이해관계자별 설문내용이 달라야 하나 질문 내용이 동일함

-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만족도 하나로 구성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야기할머니 사업만족도의 결과 교육기관장, 교육교사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가장 중요한 수혜자 중의 하나인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이는 보조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16년 전체 85.2, 이야기할머니 88.2, 교육기관장 92.3, 교육교사 85.7, 학부모 80.2
* 17년 전체 89.3, 이야기할머니 86.9, 교육기관장 91.7, 교육교사 89.5, 학부모 84.5
* 18년 전체 90.4, 이야기할머니 89.3, 교육기관장 91.6, 교육교사 90.6, 학부모 85.4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세대 간 문화적 소통목적의 사업이므로 비교적 공익성이 크므로 민간이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대 간 소통과 정서교류 등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나 그 시급성은 떨어짐

  * 활동참여 희망자의 신규선발 지원 경쟁률이 5:1 전후이며, 유아교육기관의 파견요청 대비 파 견율이 60%(2019년 기준) 에 그칠 정도로 현재 및 미래 수요는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야기 할머니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될 경우 여성 노인들 약 2,8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유아기관에 무료로 파견되었던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이 야기 될 수 있음

○ 지자체 가운데 자체적으로 유사사업이 시행중일 가능성이 있어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2009년 (재)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해 실시한 이 사업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모방하여 자체적으로 유사사업을 실시해 옴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으며 지원규모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적절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예산이 선발, 교육, 활동지원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

- 지자체경상보조에서는 파견활동보상비, 교육 참석 수당, 계약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정률보조로 함

- 지자체 보조율은 70%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활동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통한 세대 간 소통 및 정서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할머니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찾아가 옛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사회적 가치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공모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으나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의 특성상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거하여 (재)한국국학진흥원에 교부

- 한국국학진흥원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인성교육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임에 따라 적절한 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한국국학진흥원은 전통문화 관련 기록유산 조사수집, 전통문화 가치 교육과 보급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통스토리 계승 활용사업 전담 정규인력 5명을 배치하여 자부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사업 추진 전 사전에 파악한 파견기관 및 활동 예산 인원에 따라 모든 지자체별 예산 규모와 사업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업무를 진행함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 교부 결정), 제18조(보조금 교부 조건),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등 관련 법에 따라 보조금 집행관리 하고 있음

- 예산 집행은 결산자료를 회계감사 기관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실사를 연 1회 실시하며,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받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위한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 관련 법에 따라 보조금 집행현황을 점검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사후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후관리절차 진행
-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해의 예산교부에 반영하는 절차 마련되어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e-나라도움을 통하여 모니터링 및 부적정 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발생한 적이 없으며 보조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내역사업 내용 자체는 명확하나 그 목적이 일자리창출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되어 관련된 성과지표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이야기할머니 사업만족도의 결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았으므로 이는 보조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유사중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가야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성과지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지표는 사업성과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며 전통스토리 사업 목적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간접 참여자인 학부모에게도 사업의 성과와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재원부담 증액과 유치원 기관 자체 부담 비율 설정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전통사찰지정 및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종단의 전통 종교 문화유산의 책무성이 미흡함. ·전통 종교 문화 유산의 보존을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하나, 해당 종교의 역할 및 책임성을 고려할 때 보조율을 100%→ 90%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19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지원의 근거는 명확함.

- 전통사찰을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의 유지관리, 전통사찰에 대한 전수조사 및 중요기록물을 조사하는 등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함.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체계적인 보존과 종교기록유산의 아카이브 구축은 전통종교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 책무가 타당함.

- 전통사찰의 특성상 방재 시스템의 구축과 기록 유산의 아카이브 구축은 종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쉽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전통종교문화유산의 보존은 1차적인 수혜자가 지원을 받는 전통사찰이나, 이는 사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까지 수혜가 확대되고, 후세대에도 수혜가 제공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전통사찰의 주요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 화재나 도난으로부터 취약한 전통사찰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등 보조사업의 효과는 있음.

- 내역사업의 구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 및 아카이브 구축 등은 국가적 책무에 해당하므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함.

- 그러나 아카이브 구축은 종단에서의 역할 및 책임성도 일부 필요한 만큼, 동 사업이 다른 종교까지 확대될 때를 고려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일정 부분 마련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는 적절하나, 종교기록문화유산보존 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전통사찰의 개수를 고려하여 매년 지원 사찰 수를 고려하여 종료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통 사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개별 종교단체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분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의 책임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자(자치단체)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함.
- 민간보조사업의 선정 역시 사업 추진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제시되어 있을 뿐 선정과 관련한 실적 자료 미제출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일반적인 집행 절차는 적정하나, 단계별 집행 현황 점검 추진체계는 미흡함.

-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의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실집행 현황과 단계별 집행 현황 점검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을 보고·공시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 회계감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1억원 이상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시 문체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종교별 문화재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보수 등 유사 중복 지원을 교차 확인하여 배제하고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법적 근거 및 국가 책무의 타당성은 충분하게 인정되며, 전통종교문화유산의 특성상 불교 및 사찰에 편중되어 있음. 특정 지역 및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으로 오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통종교문화유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 등 중복 지원을 관리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전통 사찰의 수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예산 규모 및 편성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전통 사찰 및 문화유산 보존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해당 규모를 정하여 예산의 편성 및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하여 조정함.

- 전통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사료의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함에는 동의하나 종교별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해당 종단의 분담율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따라 보조율을 100%에서 90%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종교문화시설건립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3.5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감축(2020년부터 3년간 예산의 50%, 건립중인 사업을 고려하여 비중 결정) ·사업의 예산 불용 및 사업 추진 실적 등 관리운영이 미흡함. ·소관 부처는 당초 주요 종단 대표사업만 국가 지원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이 자치단체 및 종교단체의 요구로 추가되었음. 이 중 일부 사업이 수행 포기 등으로 추진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었음. ·2019년 이후 예산의 편성은 내역 사업의 경우 불용액을 고려하여 50% 감축이 필요하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50%를 감축할 것을 제안함. ·부처는 당초 계획대로 종단 대표사업만 예산을 지원하고 그 외 신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지원의 근거는 명확함.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근거하여 종교문화시설의 건립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명확함.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종교문화시설의 설치가 종교 및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의 수혜가 적고 사업의 효과는 제한적임.

- 사업의 범위와 효과가 특정 종교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지역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혹은 자치단체 예산 및 개별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은 민간자본보조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특정 지역과 특정 종교에 편중하여 구성되었음.

- 종교문화시설의 부지 매입 지연, 실시설계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립 공정율도 매우 낮음.

- 부처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 종단 사업의 경우 불용 및 건립 공정에 문제가 없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종교문화시설의 건립은 특정 지역과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있고, 해당 지역과 해당 종교가 문화시설을 건립할 정도의 재정부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국민의 종교활동을 위한 시설 건립을 보조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낮음.

- 특히 종교체험관, 청년문화센터 등은 해당 종교에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념관 등은 문화유산으로 후세대에 전승할 목적으로 보조사업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보조율 및 사업비의 규모는 적정하나, 자치단체 보조의 경우 보조율이 30%이하로 제시되어 있음.

- 특정 지역에 여러 개의 시설을 건립 중이며, 자치단체 보조율이 차등 지원되고 있음.
- 일부 사업은 자치단체의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부지매입에 실패하거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사업포기를 통보하였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문화시설 건립은 주요 종단 대표시설에 한해 종단별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제시된 '종무실 보조사업 운용 지침'은 보조자 선정의 공통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일반적인 집행 절차는 적정하며, 단계별 집행 현황 점검 추진체계를 구성하였음.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의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보조사업의 교부조건 미충족)시 19년 예산 미교부(예, 전국기독교순교자순례센터), 실집행 부진 사업(예, 한국불표문화체험관 건립,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건립, 증도 기독교체험관 건립,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등)은 감액 요구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을 보고·공시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 회계감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없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해당사항없음으로 명시).

-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계획과 실적 등이 제출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종교문화시설의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주요 종단 대표사업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사업의 범위와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일부 사업은 자치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주요 종단 대표사업은 연차별 투자소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나, 나머지 사업은 불용액을 고려하여 예산의 단계적 감축을 제안함(향후 3년간 총 예산의 50% 감축)

3-2 정책 제언

○ 향후 자치단체의 의지없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한 신규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종교문화활동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특정 종교시설의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동 사업의 목적과 합당하지 않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지역 사회 및 전 국민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활동 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수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지원의 근거는 명확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교활동이 광범위한 문화진흥에 포함되므로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함.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 이해활동지원 및 종교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 종교문화활동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 종교 간 이해활동의 지원은 타당하며, 개별 종교의 종교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역 주민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 종교문화행사는 해당 종교를 믿는 신자가 일차적인 수혜자이나 일부 사업은 전국민이 수혜자로 외부효과가 존재함.

- 개별 종교에서 개최하는 산사문화예술제, 부활절, 명상문화 등은 사업의 수혜자가 명확하나,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사업의 수혜자가 광범위하게 전달됨.

-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역시 수혜자가 종교인에 그치지 않고 수혜 범위가 국민들에게 확장되는 외부효과가 존재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종교의 사회통합기능을 강화하고 종교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이나, 국제종교교류협력과 공직자 종교차별예방 시책 추진 등은 보조사업의 목표와 다소 괴리가 있음.

○ 보조사업의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의 비중이 낮은 편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종교단체는 개별 신자뿐만 아니라 기업·개인들에게 기부금 및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출 및 결산은 단위 종교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음.

- 종교기관 및 단체는 유료수입 및 기업 후원, 지정 기부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국가 재정의 투입 필요성이 낮으나,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종교의 역할 및 다종교 국가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등을 고려할 때 이해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및 지역 단위에서 제공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최근 사회의 각박함이나 높은 자살율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을 기준으로 재정 지원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교문화시설 체험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개별 종교에서 실시하는 신자들을 위한 행사성 경비는 자체 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적절하나, 사업의 수혜나 지역 주민 및 전 국민으로 확대되므로 재정 지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 특히 동 사업의 폐지로 종교 활동 및 종교 기관이 위축되지는 않으나, 사회적 갈등 혹은 사회적 위기시 종교가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 사회가 최근 불평등 및 계층간 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종교의 또 다른 역할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재정지원의 규모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종무실 보조사업 운용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별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 7대 종교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신청 및 교부, 보조금의 집행 및 변경,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을 보고·공시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 회계감사 등의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없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관리 실적은 제출하지 않음.

-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및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제출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종교문화활동지원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국가 지원의 타당성도 존재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종교 간 및 국가 간 종교 교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 지원으로 적절함.

○ 전반적으로 종교문화활동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3-2 정책 제언

○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이해활동지원 및 종교문화행사를 통한 국민의 종교문화활동 기획을 확대한다는 사업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 노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종교사업의 특성상 사업 집행의 실적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나, 동 사업의 재정 보조를 받아 집행된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 등 사업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 개별 종교기관에서 신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행사성 경비를 지양하고, 사업의 수혜가 신자를 포함하되 지역 주민 및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감축(8억, 2019년예산 기준 9.3%) ·중간평가 이후 사업계획이 재조정되어 예산이 36% 감축되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졌으나(2017년), 지자체 여건변화로 사업조정이 예상됨. ·기존 사업 완료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예산 기준 8억 감축(9.3%)으로 판정함. ·3개도 17개 시군, 38개(조정 후 32개)의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여건 상 초기 사업계획과 달리 불용, 사업포기가 발생하였음. ·광역연계사업 및 2020년 신규사업 전 2차 중간평가를 실시, 사업 재조정에 따른 예산 감축 현실화가 필요함.(집행이 미진한 사업 조정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중부내륙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음.

○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보다 연관성이 높음.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세부사업 대상지역 3개 시도 17개 시군의 38개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균특회계 광역관광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내용이 2013년부터 이루어져 왔음.

< 관광기본법 제9조>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목적이 명확하지만, 32개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 17개 시군에 한정된 사업이므로 국가 보조의 타당성이 부족하나, 사업권역이 백두대간 중부내륙 시군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보조 타당성이 다소 있음.

○ 사업수혜자의 주된 범위는 해당 지자체 주민이지만, 향후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잠재적 수혜자는 전국민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음.

- 시군사업 중 중도사업 포기 등으로 실집행률이 낮음.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5	14,535	14,535	14,535	14,535	10,234	24,769	11,258	13,361	150	45.5
2016	14,736	14,736	14,736	14,736	13,361	28,097	11,433	16,664	-	40.7
2017	14,692	14,692	14,692	14,692	16,664	31,356	15,833	15,260	263	50.5
2018	9,355	9,355	8,855	8,855	15,260	24,115	10,545	13,091	479	43.7

○ 사업을 통해 지역의 2015년 대비 2017년 관광자원분포 지수, 관광인프라 지수가 상승했음.

- 서울, 경기, 부산 등을 제외하면 강원, 충북, 경북이 높은 편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업성격으로 보아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가능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부 국고보조 유지가 필요함.

○ 현재까지 사업 성과로 미루어보아 사업의 연장은 타당하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이미 공정률이 50%이상 진행중인 사업의 재정적 손실이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중부내륙권(강원, 충북, 경북) 광역관광개발사업 10개년 사업 중 7년차로 중간평가(2017.12월) 반영을 통해 사업계획이 대폭 수정되었음(36%감축).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형태의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된다고 판단됨.

- 중부내륙권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건에서 중앙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체계를 갖춤으로써 선정절차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음.

- 지역관광 개발사업 평가제도 참조.

< 진행 단계 >	< 평가 체계 >	
사업계획 승인	▪(중앙투자심사검토) ▪(사전평가)	1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2 단위사업계획별 진단
⬇		
개별사업 시행	▪(집행평가)	3 단위사업별 평가 모니터링
⬇		
사업시행 완료	▪(사후모니터링)	4 단위사업별 성과평가
⇩ (필요시)		
문제/지연/요청 사업 결정	▪(컨설팅)	5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실집행률이 낮은 편이고, 지자체 사업포기 등 일부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움.

- 500백만원 불용 : 지자체의 '지질예술공원(충북 단양)' 사업 추진 포기로 미교부 불용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체부 보조금 관리지침 뿐 아니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보조사업 관리감독하고 있음.

○ 중간평가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 지원예산 축소 및 제외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특정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의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산보고를 받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음.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정 집행내역이 있는 경우 전액 환수 규정을 두고 있고, 관리 중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중간평가 이후 사업계획이 재조정되어 예산이 36% 감축되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졌으나(2017년), 지자체 여건변화로 사업조정이 예상됨.

○ 기존 사업 완료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예산 기준 8억 감축으로 판정함.

○ 3개도 17개 시군, 38개(조정 후 32개)의 지역관광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여건상 초기 사업계획과 달리 불용, 사업포기가 가능함.

○ 광역연계사업 및 2020년 신규사업 전 2차 중간평가를 실시, 사업 재조정에 따른 예산 감축 현실화 필요(집행이 미진한 사업 조정 필요)

3-2 정책 제언

○ 10개년 계획 중 마지막 3년차 신규사업 전 사업평가를 통해 효율적 예산관리 및 전체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제안함.

- 2차 중간평가(2020년 시행예정)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지역문화진흥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의 변경을 제안함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내역사업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됨 ·내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어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함 ·내역사업 구성 시 내역사업간 연계성 및 상위 목표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산배정 시 성과와 연동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10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규정 되어 보조금 지급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는 국가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
-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규정함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는 국가가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하여 일부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의 내용이 내역사업과 비교적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내역사업은 지역문화 재단 역량강화, 문화의달 행사지원,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 지역문화 전문 인력양성, 지역문화 전문 인력배치,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한국문화원 연합회 사업활동 지원, 문화자원봉사 사회확산 지원, 문화적 도시재생, 지역문화활동가 지원,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원으로 구성
- 문화의 달(문화기본법),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 지원(지방문화원진흥법)은 개별법령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국정과제 67-4]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요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보임

- 지역문화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 및 배치하고, 지역의 문화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동 사업은 지역문화의 핵심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음

- 문화의 달 행사지원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지방문화원천콘텐츠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광범위 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수혜자의 범위를 넘어 전 국민으로 확산 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지역문화 재단 역량강화, 문화의 달 행사지원,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 전문 인력배치 등 지역문화경쟁력 제고 등의 사업 목적으로 하여 내역사업을 구성함

- 세부사업 내에 과도하게 많은 내역사업이 존재하고 사업 간에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과목구조 개편 및 조직개편에 따라 다양한 내역사업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함

- 기초보고서 상 연도별 성과지표, 실적, 성과목표치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흡함

- 내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문화자원봉사 매칭 건수를 대표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내역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음

○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적어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움

- 각 내부사업별 예산집행 실적(분기별, 월별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흡하며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은 비계량적인 부문이 많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용액이 발생하나 이는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이 합산되어 누적되는 것이라 판단됨

- 교부금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감소하였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및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단체가 추진 시 지역별 지원 불균형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바람직 해 보임
- 일부 지방의 문화 저변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이 수행한다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의 사업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움
- 지역발전에 있어서 문화와 예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지역문화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이 인정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나 그 시급성은 떨어지며 일부 내역사업의 현재 및 미래수요에 대한 근거자료가 보강 될 필요가 있음
- 사업이 폐지 될 경우 진행 중인 국정과제 관련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그간 지원되었던 지역문화사업 관련 인프라 투자 효율이 떨어져 재정적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

○ 내역사업 대부분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사업과의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비용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 규모 책정에 대한 근거가 미흡함
- 문화적 도시재생의 경우 예산액이 큰 규모로 증액되어 있으나 성과관리가 미흡해 보여 성과에 따른 재원지원 규모 산정이 필요함
-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원은 재원 규모 산정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 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상비가 17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타 기관과 비교했을 경우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 보조금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에 따라 지자체 보조의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지자체 기준보조율은 50% 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역문화진흥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문화의 달 행사지원 및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육성사업은 지자체 대상공모사업임

- 공모 선정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능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거, 회계감사 등을 실시함

○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생활문화센터활성화 등 내역사업은 공모절차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신청접수부터 정산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절차 이행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능력 (10%이상)을 고려하여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업무를 진행함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사용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감시함
- e-나라도움 점검상황에 따라 지원사업 부적정 집행보완 또는 환수조치 시행을 명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회계 검증을 의무화 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및 제재가 필요할 경우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자료제출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결과에 따라 오류 및 불인정금액 등에 대해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집행 근거자료가 미흡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e-나라도움을 통하여 모니터링 및 부적정 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하나 그 근거자료가 미흡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발생한 적이 없으며 투명한 보조금 사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근거가 미흡하고 내역사업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됨

○ 사업을 지원해야 할 명확한 근거를 성과를 통해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음
- 일부 사업의 경우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연계성이 미흡함

3-2 정책 제언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산배정 시 성과와 연동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내역사업 가운데 비용 산정 근거가 미흡하므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내역사업 구성 시 내역사업간 연계성 및 상위 목표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첨단영화 기술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3.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9.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4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2.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첨단영화 기술육성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동 사업은 내역사업 간 차별성 및 사업내용과 목표 간 연계성, 사업의 성과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됨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의 두 가지 내역사업은 사업별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R&D기술개발 및 제작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반드시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근거는 미흡 ·동 사업은 사업목표를 고려할 때, 내역사업 간 통폐합을 통해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내역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 의해 첨단영화 기술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생략>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생략>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생략>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생략>

- 이러한 법적 근거는 '다양한 기술영화를 발굴하고 제작을 지원한다는'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내역사업을 검토할 경우 이러한 법적 근거가 개별 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됨(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및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일부 정품 VFX(Visual Effects, 시각효과) 소프트웨어 사용과 클라우드 렌더팜 지원, 기술개발비 등의 지원 하고 있음

- 다만, 상기 지원내용이 실제 영상기술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법적 근거의 명확성 역시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다양한 기술영화를 발굴하고 제작을 지원, 둘째,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화 속 특수장면 제작을 지원, 셋째, 국내 우수영상기술기업을 선발하여 강소형 기술기업을 육성하는 것임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저조한 국내 영세 VFX 기술기업의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내역사업과 새로운 영상기술을 활용하는 영화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DIT 기술지원)' 내역사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보조금을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는 것('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내역사업 중)이 기술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강소형 기술기업을 육성하는데 타당한 수단으로 평가하긴 어려움

- 국내 기술로 구현할 수 없는 작업을 로열티가 존재하는 외국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기간 영화제작을 통한 경비절감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실제 국내 기술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에 한계 존재

○ 또한 동 사업의 혜택은 영화 기술업체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일부 예상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혜택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사업소관부처는 동 사업의 혜택이 영화기술 서비스업체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존재함을 제시

-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2018)의 '2016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산업 총 종사자 수는 28,974명으로 이중 영화제작과 관련된 종사자 수는 5,822명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의 긍정적 혜택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내역사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화 속 특수장면 제작 기업을 지원

- 둘째,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내역사업은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R&D기초기술 개발을 지원

○ 동 사업의 경우 '17년 이후 지속적인 내역사업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18년 기준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내역사업은 기존 소프트웨어 지원 중심과 멘토링 중심 지원 사업체계를 확장하여, 일자리 보호를 위한 각종 표준계약서 지원사업으로 확대

- '19년 기준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내역사업은 첨단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폐합하고 유통플랫폼 지원으로 사업 확대

- '19년 기준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내역사업은 기존 연구개발 및 프리비즈 제작 등을 추진하였으나, 영화장비 경쟁력 강화지원 및 사업화 연계가능 기술개발 지원 강화로 내역사업 재편

○ 동 사업의 주요 목표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화 속 특수장면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 영상기술기업을 육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려 할 때, 내역사업의 지원 분야는 합리적으로 평가되나, 이것이 현재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근거는 미흡함

- 내역사업별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R&D기술개발 및 제작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역사업 간 차별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또한 동 사업의 성과지표가 신기술이 적용된 영화의 제작·개봉 건수임을 고려할 때 특정 내역사업만으로도 동 성과지표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보조사업의 구성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소관부처는 지원기술을 최소 2편 이상의 영상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와는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역사업과 동 사업 목표 간 재검토가 필요함

○ 다만, 동 사업은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첨단제작기술 및 차세대 기술(VR, VFX 등)에 영세한 기업들이 비용을 투입하기 쉽지 않아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일부 인정되나, '09년 이후 추진된 동 사업이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함

- 사업소관부처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영상기술기업 육성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나, 이것이 민간에서 수행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또한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추진된 동 사업을 통해 강소형 기술기업이 얼마나 육성되었는지 성과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을 통한 동 사업의 추진방식을 재검토하여야 함

○ 동 사업은 내역사업에 속한 사업들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복 문제는 일부 해결하였으나, 동 사업 내역사업 간 유사·중복성 및 동 사업이 속한 단위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 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의 두 가지 내역사업 간 명확한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동 사업이 속한 단위사업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의 다른 세부사업인 '첨단영화기술지원(非'보조사업)'와의 중복성 검토가 필요함

- '첨단영화기술지원(非'보조사업)'의 경우 현장영화기술 개발지원, 해외 영상기술 수출지원 등을 지원하여 동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 내역사업인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52개 기업이 지원하였고 79개 기업이 선정되어 평균 경쟁률이 약 2:1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2016년 이후 신청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16) 53개 → ('17) 37개 → ('18) 31개

○ 또한 연간 동 사업의 수혜기업이 약 30~40개로 한정적이며 대규모 지원금액이 아님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내역사업 예산의 연도별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실제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일부 미흡함에 따라 사업예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내역사업은 '18년 12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산출근거는 15건으로 되어 있고(61.4백만원×15.13개), '19년 예산은 5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건당 지원금액은 228백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따라서 사업소관부처는 사업예산의 적절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라 내역사업의 규모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 다만, 동 사업은 총 사업규모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사업운영과 관련된 행정비용은 1% 미만으로 집계되어 행정비용 대비 동 보조사업은 실효성이 존재하는 는 것으로 평가함

○ 동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유형의 사업은 아니며, '첨단영화 제작지원 사업요강'에 따라 기준보조율 국고 80%를 준수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공모절차를 준수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기술개발 인력 및 역량, 해당 작품 및 기존 프로젝트의 완성도, 콘티의 충실도 및 타당성, 제작 및 예싼 계획서의 적정성, 제작완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또한 문화예술지원기관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 위원회 소속 임직원이 포함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사업마다 별도 심사운영세칙이 있을 경우 해당 세칙을 적용하고 있음
-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후보군 중 추첨을 통해 선발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규정 제19조(보조금 사용방법), 제31조(보조사업 집행점검), 제32조(보조사업 점검평가단) 등을 바탕으로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사용과 현장 방문 등을 준수함
- 공모사업 전체의 현장점검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평가하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음
- e-나라도움을 통한 민간보조사업의 집행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며, 정기적 수행상황 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가 추진됨

- 보조금 관리규정 제27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제3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의 취소) 등을 바탕으로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시
- 통합관리지침, 내부 규정, 보조사업자 약정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의 정산,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영화진흥위원회가 수행하는 교부, 집행점검, 정산을 실시하는 보조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과오납의 환급,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진행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을 내역사업 간 차별성 및 사업의 내용과 목표 간 연계성, 사업의 실질적 성과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 간 통폐합을 통해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내역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을 권고함

- 현행 사업목표를 고려할 때,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내역사업을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내역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패션문화산업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감축(2020년 670백만 원 감축). ·사업의 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국내외 유통 활성화' 부분은 패션쇼 개최에 집중되어 재정 절감 및 효율화의 필요성 있고, '디자이너 브랜드 창작 지원'은 신진 디자이너 중심 지원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자발성 확보, 그리고 선정의 효과성을 위해 일정 비율 재정적 참여 유도 필요성 있음. ·2018년도 전체예산 6,700백만 원을 기준으로 10%인 670백만 원을 2020년 보조금에서 감축 판정함. ·향후, 성과관리를 위해 상담계약액, 수주액, 참관객 수 등을 지표로 활용 필요하고, 본 보조사업이 성격상 민간기업의 활동과 직결되어 있고, 시장에서의 효과로 시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바, 참여 민간 기업의 재정적 참여를 유도하여 보조사업의 일정 재원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패션디자인 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재원의 확보)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각각의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임.

- (문산법 제12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내용.
- (콘산법 제9조)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과 경쟁력 강화 시책 마련 의무.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선진국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필요성, 청년고용의 확대 가능성,

- 국내 디자이너패션 산업의 현주소는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 3.3명, 업력 5년 이내 기업 비율 67%일 정도로 영세하고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신진디자이너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자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됨.

○ 본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광범하여 민간단체, 일반인, 기타 산업으로의 spill over 효과 등이 인정됨.

- 패션문화산업 육성 사업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디자이너패션 산업 종사자이며, 잠재적 수혜자는 패션 관련 학과 학생 및 디자이너 지망생 등 산업 종사 희망자, 간접적 수혜자는 패션문화를 즐기는 일반인으로 확인됨.

직접적, 간접적 수혜자(2017년 기준)

구 분	직접 수혜자 (지원 브랜드 수)	간접 수혜자 (패션쇼 참관객 등)
디자이너 브랜드 창작 지원	19	-
국내외 유통 활성화 (패션문화마켓, 해외수주회, 컨셉코리아 패션쇼 등)	243	17,500
합계	262	17,50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내역과 기간이 대체적으로 타당하나, 상대적으로 유통 활성화와 브랜드 창작지원에 편중되어 다른 필요부문에 대한 보완적 발전 아쉬움.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조성에는 2019년에 부분적으로 보완된 실정임.

- 2008년 이후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고 일정한 성과 거양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평가와 육성 로드맵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본 사업의 목표를 디자이너 브랜드 창작 지원과 패션문화산업 국내외 유통 활성화로 명시하여 설정하고 있음.

- 한편, 광범한 유통의 단계와 망 가운데 디자이너 브랜드가 진출하고자 하는 권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목표, 성과 등 타겟팅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가 업체 수 기준 337(2017), 340(2018) 매우 획일적으로 일치하여 부자연스러운 부분 존재.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보통(87) 수준의 평가 결과 획득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 3.3명, 업력 5년 이내 기업 비율 67%일 정도로 영세하고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정부의 보조사업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분야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 그리고 이익 창출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이므로, 민간을 활용하는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 있음.

○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 통폐합 가능성은 없음. 기본적으로 패션문화산업 육성 사업이 장르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유사 중복 가능성 낮음.

○ 보조금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됨. 국내 120여개 패션디자인과를 포함 해외유학에서 매년 우수인력이 배출되고 있고, 자체 브랜드 런칭까지의 성장경로가 매우 불투명하고, 기업 당 평균 고용인원은 3.3명, 업력 5년 이내 기업비율 67%로 영세하고 취약하여 지속 사업 필요성 있음.

○ 사업 폐지 시 직접적으로 야기될 재정적 손실 및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음. 다만, 수혜자의 비즈니스와 사업 중단에 따른 유통과 창작 브랜드 활성화 측면에서의 위축 예상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지원에 의한 재정지원 규모 자체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나, 민간자본과의 매칭 등 민간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유통 패션쇼 개최와 더불어, 다각적인 유통망과 네트워크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패션문화산업 육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조율을 100%로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됨.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7조), 보조사업자 공모(제8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0조) 등 사업자 선정 및 교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이를 기준으로 검토 및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 보조금 교부 및 재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 및 교부 방법 등 교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보조금 사용 방법(제12조), 카드 사용 및 제한(제13조), 별도 계정 설정(제14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5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26조)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명시하여 국고보조금의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기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에 보조금 반환 및 제재(제28조 내지 제32조),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제33조), 재산처분의 제한(제34조) 등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됨.

○ 통합관리지침 및 교부조건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등이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검증지침에 따라 집행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후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최종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확인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단계별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적고 본 보조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사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본 사업의 경우 실제 관련 규정에 의해 현장 확인, 실사, 성과평가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그 실증적 증거를 축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타당성 및 근거가 명확하고 계속 지원의 필요성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의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국내외 유통 활성화' 부분은 패션쇼 개최에 집중되어 재정절감 및 효율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있고, '디자이너 브랜드 창작 지원'은 신진 디자이너 중심 지원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동기와 자발성 확보, 그리고 선정의 효과성을 위해 민간 참여자의 일정 비율 재정적 기여 유도 필요성 있음.

○ 2018년도 전체예산 6,700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10%인 670백만 원을 2020년 보조금에서 감축 판정함.

○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본 보조사업은 100% 민간단체 경상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사업의 성격상 민간기업의 영업활동과 직결되어 있고, 시장에서의 효과로 시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방식 변경'을 중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현재로써는 민간 참여자의 재정적 참여를 유도하고 보조사업의 일정 재원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3-2 정책 제언

○ 성과지표를 지원업체 수 중심으로 점검 평가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상담계약액, 수주액, 참관객 수 등 다양한 차원의 내용을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민간자본과의 매칭 등 민간 수단의 활용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을 정상추진할 필요가 있음 ·인건비, 경상비, 연구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경상비, 연구사업비로 내역사업이 구성됨

-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정부는 연구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제5항에서는 내역사업인 연구사업비로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함

<문화기본법 11조의2 4내지5항>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9.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등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조사·평가를 추진하고 관련 정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와 새예술정책, 관광진흥기본계획 등을 추진하고, 문화·관광 정책연구의 수행을 지원하는 것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분야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정책연구사업 수행과 토론회, 포럼,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등을 수행함

-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새 정부 문화·관광정책 의제발굴, KCTI 콜로퀴엄 운영, 국내외 연구기관 중심 문화·관광·콘텐츠 연계 융복합 연구 확대, 통일문화·관광 연구, 평창올림픽 대비 문화·관광 연구, 정책 트렌드 분석 및 포럼 운영 등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목적은 문화·관광분야의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의 진흥을 지원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문화·관광 정책연구의 선도적·전략적 정책연구·조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기초과제, 정책과제, 수시과제 목표를 정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문화·관광분야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외에 다른 정책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문화·관광정책 개발 및 정책수립 지원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책연구 기반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본 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연구사업비 및 운영비에 관한 지원사업이므로 타 사업과의 중복은 없음

- 문화·관광 정책 동향분석 및 대응, 중장기적인 정책개발과 정책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방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가 필요함

- 사업폐지의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 및 정책 지원 기능이 상실될 것이고 정부의 정책 의제 발굴과 현안 대응 등 정부의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경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용역연구를 통해 창출한 자체수입은 최근 3년간 그 비중이 전체예산규모의 약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보조금은 기준 보조율 대상 사업이 아니며, 정해진 보조율이 없는 정액 보조사업임

- 기존 연구원 운영 상황을 검토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연구내용이 휴가, 여가활동(전년 2건), 노동권 보장(2건), 장애인 노인 대상 문화·관광 향유권(2건) 등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연구가 수행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설립근거를 둔 법정법인으로 문화·관광분야의 국가정책연구기관임

- 문화와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교부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검토한 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을 교부함

○ 본 연구원은 문화와 관광 분야의 전문가(연구원)로 구성된 연구기관으로 국가 및 국가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수탁과제(용역연구)수행을 통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충당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원 내부적으로 예산통제(기획팀)와 집행(재무팀)이 이원화되어 예산 집행 시 이중 점검이 실시됨

- 동 보조금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및 정산됨
-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회계정산에 관한 내부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함

○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근거하여 실집행 현황, 단계집행현황을 점검함

- 보조금 정산시 집행에 문제가 있는 내역은 정산확정에서 제외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 점검을 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고금 관리 규정'을 만들어 중요재산 관리 등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매년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 '예산·회계·계약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경비집행을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중복/부정수급관리 메뉴를 통해서 관리 감독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분야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정책연구사업 수행과 토론회, 포럼,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등을 수행함
-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근거하여 실집행 현황, 단계집행현황을 점검함
- 다만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 노력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설립근거를 둔 법정법인으로 문화·관광분야의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한국문화정보원운영(정보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9.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8.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4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3.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5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은 한국문화정보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세부 내역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보조사업자 선정과 집행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세부 내역사업들의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들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함 ·현재 해당 기관의 운영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업목표와 경영평가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과지표들을 활용하여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기본법」과 시행령 등에 수행업무를 제시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한국문화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을 수행의 강제성이 낮음

- 한국문화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수행함

(1) 문화정보화 전반의 기획, 연구, 사업관리 및 운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 및 문화정보화 전문 기술 지원을 통한 효율적 문화정보화 추진

(2)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사업 등 문화정보화 관련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영세한 중소규모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티켓팅 및 홍보) 제공

(4) 문화데이터(정보자원)의 구축 및 개방을 통해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민간기업 부가가치 창출 지원

○ 본 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역사업들이 「문화기본법」과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어 내역사업과 법적근거 간의 연계성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국가적 타당성은 높지 않으나 국정과제 67과 68번과 연관된 사업으로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직접 지원을 받는 한국문화정보원이고 2차적 수혜자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사업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생성된 문화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1) 정보화 전문기술지원으로 효율적 문화정보화 사업 추진, (2)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로 생활문화시대 확대, (3) 문화정보화 정책 연구 및 정보화 평가 지원, (4) 공공문화데이터 개방·공개로 이용 활성화라는 4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 문화정보화 전문기술지원, (2)문화정보서비스 운영지원, (3)문화정보화 기반구축, (4)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내역사업들의 내용은 구체적이나 목표를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 지표들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세부 내역사업들은 성과가 명확하지 않음

- 문화PD 청년 일자리 활성화와 해외문화PD운영 및 한류콘텐츠확산, 문화정보화 정책 연구 사업 등은 정량적인 목표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교육은 사업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본 사업의 일부 세부 내역사업들은 계획한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문화PD 청년 일자리 활성화와 해외문화PD운영 및 한류콘텐츠확산, 문화정보화 정책 연구 사업 등은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교육 등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효과성 판단이 어려움. 투입지표 이외의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1) 정보화 전문기술지원으로 효율적 문화정보화 사업 추진, (2) 맞춤형 분화정보서비스로 생활문화시대 확대, (3) 문화정보화 정책 연구 및 정보화 평가 지원, (4) 공공문화데이터 개방·공개로 이용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유사·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정보화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차별성이 인정되어 현재는 유사·중복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향후에는 문화산업과 정보화산업이 지속적으로 결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두 기관 간의 역할에 대한 중복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여타의 사업들에 비해 사업을 연장해야 될 시급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현재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 관련 정보화 자료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추후 관련 자료들을 재구축하는데 추가적인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 중 문화정보화 전문기술지원은 실질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전체 예산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내역사업들은 사업비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을 위한 것으로 현재 보조율 100%가 합리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정보원을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교부하는 등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의해서 선정되고 재원이 집행되고 있어 적절한 보조 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실집행과 단계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사후관리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와 문체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1) 정보화 전문기술지원으로 효율적 문화정보화 사업 추진, (2)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로 생활문화시대 확대, (3) 문화정보화 정책 연구 및 정보화 평가 지원, (4) 공공문화데이터 개방·공개로 이용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문화정보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사업자 선정과 집행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세부 내역사업들에 대한 성과 지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문화PD 청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과 해외문화PD운영 및 한류콘텐츠 확산사업은 사업내용과 세부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여 현재까지 성과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교육은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한국문화정보원이 갖추고 있는 성과지표들이 있는데 이를 보조 사업에서도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한국어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한국어진흥을 위한 핵심기관인 세종학당과 국어문화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추진함. ·문화컨텐츠의 세계적 보급 확산이 국가브랜드 가치 뿐 아니라 문화산업 육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의 세계적 확산과 국내 한글 문화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됨. ·해외의 세종학당과 국내 국어문화원 중심으로 전문적인 사업수행 주체가 일원화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지원되는 민간보조사업의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 성과 확보를 위한 일관성있는 체계적인 사업운영이 지속적으로 요망됨. ·매년 임의적으로 예산이 편성·지원되는 경향이 있음. 중장기 전략비전체계를 정립하여 전략적인 보조사업 운영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 확산 정책은 언어·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 확대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투자 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어기본법 제4조와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보조사업임. 2018년도에 지자체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조금은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임. 2016년에 한국수화어법이 제정되면서 보조사업의 목적이 추가되었으며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음.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한류확산 등의 세계적 환경 변화와 함께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분위기 형성되고 있음. 이와 함께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에 기초한 한국어 보급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함.

○ 한국어 확산은 국가 이미지 개선 및 향상과 함께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의 경제적 성과에서도 유의미한 정책가치를 가지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세종학당의 설치 국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강생 수에서도 의미있는 수준의 성장 추세가 인정됨. 2013년도 세종학당은 52개국 120개 학당에서 37,177명이 수강했는데 2018년도에는 56개국 172개 학당에서 6만명이 수강한 것으로 추산되었음.

- 모바일 학습앱 다운로드 실적은 2017년 8.1만건에서 2018년도 21.8만건으로 급증했음.
- 세종학당 수료생 수는 매년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80점대 후반을 유지하는 등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가 인정됨.

○ 한글에 대한 언어전파 뿐 아니라 한국문화를 중심으로한 콘텐츠 수출효과도 인정됨. 한류문화와 함께 언론에서 한국어의 세계적 확산효과들이 의미있게 확인하였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와 경제적 가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임. 주요 국가들도 문화전략의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 등 한국수어 관련 기관 예산지원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추진하는 국가의 역할이 인정됨. 동 법은 2016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사업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운영 및 지원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을 통해 해외세종학당과 전국 국어문화원에 대해 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함.

- 문화진흥 분야에서는 최적 수준의 절대적 재정투자 규모 산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운영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규모의 증감이 점진적인 결정되는 특성이 있음. 기관별 혹은 사업별로 정액지원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사업수행 주체의 자부담 매칭 의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담당 기관에서 적정 수준에서 사업을 설계·운영함.

○ 2018년도에 수행했던 세종대왕즉위600주년 기념 보조사업에서 지자체(여주시)에 대한 국고보조율 30%는 과소한 수준이었음. 30% 보조율을 적용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해당사업은 2018년도에 종료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조율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본 평가에서 해당 사항이 없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웹사이트 접근을 지원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인 농인의 언어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노력이 있음.

- 다만, 관련 활동들은 해당 사업에서 기대되는 당연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평가반영은 제한적인 수준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범정부차원에서, 해외 한글 보급 기관을 세종학당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온라인 학습사이트로서 누리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음. 교육부와 문화부의 이원체제를 문화부 주관의 세종학당으로 일원화하면서 해당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국제결혼 증가와 국내 다문화 가정의 확대 등과 같은 국내외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국 국어문화원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의 기준으로 문체부의 일반 지침을 준용하며 해당 사업을 위한 별도의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음.

- 다만, 세종학당, 국어문화원, 한국수어교육원 등과 같이 보조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 법적 근거 속에서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별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 한글문화예술행사는 일반적인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40개 단체를 선정하였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017년 결산기준으로 불용액 2.9억원이 발생했음. 세종학당 및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사업 등 실집행 잔액으로 예산집행에서 특별한 쟁점은 확인되지 않음.

○ 2018년도에 '한글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에서 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 이후 2018년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관리에서 쟁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별로 정액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교부조건과 사후관리절차를 준수하였음. 보조금 관리와 관련한 특별한 쟁점은 발생하지 않았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지출에서 부정수급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종학당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보조금 관리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다 강화되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문화컨텐츠의 세계적 보급 확산이 국가브랜드 가치 뿐 아니라 문화산업 육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의 세계적 확산과 국내 한글 문화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됨.

○ 해외의 세종학당과 국내 국어문화원 중심으로 전문적인 사업수행 주체가 일원화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지원되는 민간보조사업의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 성과 확보를 위한 일관성있는 체계적인 사업운영이 지속적으로 요망됨.

3-2 정책 제언

○ 매년 임의적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지원되는 경향이 있음. 중장기 전략비전체계를 정립하여 전략적인 보조사업 운영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어 확산 정책은 언어·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투자전략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한국영상자료원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0.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본 보조사업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본 사업자를 대체할 민간 기관도 부재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 성과 목표가 고객만족도 조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의 효과가 문화, 영상산업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효과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2페이지 이상 작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35조에 한국영상자료원 보조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④항>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 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항>

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영화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기관으로써, 영화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서비스하고 영상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보조를 지원받는 것이 타당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사업의 세부 사업이 어떠한 사업계획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성과는 성과계획서에 따라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로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로 평가하며, 매년 99%~100% 이상 달성하고 있음.

- 그러나 성과지표를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로만 한정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평가임.

- 대외 서비스 제공 건수, 영화필름 보존 건수, 영상자료 수집건수, 영상자료 활용 및 전시 건수 등 보다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국영화 및 영상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는 역할은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의 아니므로, 국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 본 보조사업의 예산은 민간 정액보조(100%)로 구성되고 있음. 2018년 예산액은 총 11,838백만원임.

- 영상자료 수집연구 1,894백만원,
- 영상자료 보존복원 3,491백만원,
- 영상자료 전시활용 2,508백만원,
- 경상운영비 3,847백만원 및 예비비 98백만원으로 구성

○ 그러나, 이와 같은 본 사업의 세부사업 예산이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1-6. 사회적 가치 실현

○ 한국고전영화 컨텐츠를 온라인 VOD, 온라인 사료관을 통해 무료 개방하고, 연령대별 다음과 같은 영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노년층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시니어 영화공방>
- 어린이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이웃나라 이야기>
- 어린이 대상 <어린이 영화아카데미>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한국영상자료원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써 동사업자가 보조금 수혜 대상자가 되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사업계획 수립 및 분기별 예산 교부 신청 관련해서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 운용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 정산과 회계감사, 그리고 일상감사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본 사업자를 대체할 민간 기관도 부재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사업 성과 목표가 고객만족도 조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효과가 문화, 영상산업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효과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9.3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10억, 2019년예산 기준 6.5%) 및 사업방식변경 ·이 사업은 광역관광개발 사업 10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7년차 사업임.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조정이 이루어졌으나 2020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일부 지자체 사업포기 및 관광공사 연구 결과를 반영한 광역연계사업 8개에 대한 조정, 시군사업조정(인천 22억, 경기 25억, 강원 20억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예산 기준 10억 감축(6.5%)으로 판정함. ·10개년 계획이므로 중앙부처의 사업관리 역할이 보다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 육성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고 있음. 균특회계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

< 관광기본법 제9조>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중략.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1.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9. 4. 22.][제목개정 2018. 3. 20.]

○ 행안부에서 총괄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대상 10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특정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목적이 명확하지만, 내역사업의 구성 상 한반도 생태, 평화 등 차별적 목적이 명확한 사업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 실행계획 연구사업과 평화공원 사업임.

- 개별 시군사업의 내용은 이 사업의 목적을 특징적으로 반영한 개발 사업 내용이라기 보다는 접경권에 해당하는 개별 시군 지자체 자원을 반영하였음.

○ 사업수혜자의 주된 범위는 해당 지자체 주민 뿐 아니라 여건 변화에 따라 전국민 수혜가 가능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7년차 10개년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내용도 구체적임.

- 시군개발 사업 경우에는 10개 시군이 21개 사업을 구성하고 있고, 시군의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DMZ주변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사업이기 보다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가까움.

- 이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0개 시군 21개 사업을 한반도 생태, 평화 관광벨트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달려있음. 현재 광역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효과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현재 시군개발 사업에 대한 관광효과 등은 부족한 편임.

○ 10개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중간평가(2016년) 이후 사업기간 및 내용이 조정되어 현재 사업의 구성은 적절한 편임.

○ 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은 편임.

- 지자체 사업포기에 따른 실집행률이 낮으나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수성이 인정됨.

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의 실집행률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5	12,035	12,035	12,035	12,035	2,416	14,451	11,314	3,137	-	78.3
2016	15,093	15,093	15,093	15,093	3,137	18,230	9,123	9,107	-	50.0
2017	11,724	11,724	10,674	10,674	9,107	19,781	6,069	13,705	7	30.7
2018	10,129	10,129	10,129	10,129	13,705	23,834	10,373	13,461	-	43.5

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내용

지역	사 업 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24개)】		239,143	105,661	122,472	11,010	
1. 관광개발사업(16개)		205,143	88,661	105,472	11,010	
< 인천(4개 사업) >		22,692	11,346	11,346	-	
옹진	①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7,300	3,650	3,650	-	'14~'18
강화	②한겨레 얼 체험공원	7,300	3,650	3,650	-	'17~'19
옹진	③동백나무 테마단지	1,500	750	750	-	'19~'20
옹진	④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	6,592	3,296	3,296	-	'19~'21
< 경기(6개 사업) >		94,426	40,477	42,939	11,010	
파주	①수리 에코타운(본청)	17,700	8,850	8,850	-	'13~'17
연천	②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11,200	5,600	5,600	-	'14~'17
김포	③애기봉 평화생태공원('17 총사업비조정)	22,590	10,064	12,526	-	'13~'19
연천	④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29,770	9,380	9,380	11,010	'16~'19
파주	⑤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 센터	11,166	5,583	5,583	-	'17~'19
연천	⑥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2,000	1,000	1,000	-	'19~'20
< 강원(6개 사업) >		88,025	36,838	51,187	-	
고성	①해돋이 통일전망타워	6,880	3,440	3,440	-	'14~'16
화천	②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31,381	11,316	20,065	-	'13~'17
철원	③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17 변경승인)	18,500	7,600	10,900	-	'16~'19
양구	④박수근 미술체험마을	7,500	3,750	3,750	-	'17~'19
인제	⑤소양호 빙어체험마을	12,764	6,382	6,382	-	'17~'20
철원	⑥궁예 태봉국 테마파크('17 변경승인)	11,000	4,350	6,650		'17~'20
2. 광역연계사업(8개)		34,000	17,000	17,000	-	
	①평화 누리길	4,400	2,200	2,200	-	'19~'22
	②세계문화유산 및 지질공원 등재	3,300	1,650	1,650	-	'20~'22
	③10경 10미 관광자원화	1,300	650	650	-	'19~'22
	④민통선 마을 관광 활성화	7,200	3,600	3,600	-	'19~'22
	⑤축제 네트워크 구축	2,300	1,150	1,150	-	'19~'22
	⑥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3,700	1,850	1,850	-	'18~'22
	⑦DMZ 문화예술 삼매경	6,100	3,050	3,050		'19~'22
	⑧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	5,700	2,850	2,850		'18~'22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가능하지만,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필요성이 다소 인정됨.

○ 현재까지 사업 성과로 미루어보아 사업의 연장은 어느 정도 타당하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20년 시작되는 광역연계사업 중 평화누리길은 행안부사업과 유사하지만, 행안부 사업은 자전거 도로 관련 사업인 반면, 문체부 사업은 평화누리길 주변 마을의 관광자원 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광역연계사업에 대한 점검 및 관련부처 협업이 필요함.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이미 공정률이 50%이상 진행중인 사업의 재정적 손실이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9개 내역사업에 총사업비 2391억 원이 10개년 간 지원되는 사업임.

- 광역연계 170억 사업은 2019년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는 구조이고, 시군사업은 886억 원이 먼저 투입되는 구조임.

-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역연계 사업의 시작 연도를 차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추계가 되어 있지만 경제여건변화, 관광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추계라고 보기 어려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6년 중간평가를 수행하였고, 사업중단 등 재조정이 이루어졌음.

- 2020년부터 시작하는 광역연계 8개 사업에 대해 검토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사업조정을 위한 연구가 시급함. 타부처 접경권 지역 발전 광역사업을 점검 후 재조정이 필요하고 시군 사업에 대해서도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형태의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된다고 판단됨.

- DMZ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건에서 중앙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체계를 갖춤으로써 적절한 절차를 갖추고 있음.

- 지역관광 개발사업 평가제도 참조

< 진행 단계 >	< 평가 체계 >	
사업계획 승인	▪(중앙투자심사검토) ▪(사전평가)	1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2 단위사업계획별 진단
⬇		
개별사업 시행	▪(집행평가)	3 단위사업별 평가 모니터링
⬇		
사업시행 완료	▪(사후모니터링)	4 단위사업별 성과평가
⇩ (필요시)		
문제/지연/요청 사업 결정	▪(컨설팅)	5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체부 내부규정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17년2월 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중간평가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 지원예산 축소 및 제외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관광자원개발사업 특정 보조금 관리지침에는 사후관리, 보조금 반환, 실적보고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감사, 정산의무는 적시하고 있지 않음.

- 실적보고를 정산보고서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어 사후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에 의해 보조금의 용도제한을 적시하고 있음.

○ 동 지침에 의해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이 사업은 광역관광개발 사업 10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7년차 사업임.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조정이 이루어졌으나 2020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지자체 사업포기 및 관광공사 연구를 통해 광역연계사업8개에 대한 조정, 시군사업조정(인천 22억, 경기 25억, 강원 20억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예산 기준 10억 감축(6.5%)으로 판정함.

○ 10개년 계획이므로 중앙부처의 사업관리 역할이 보다 요구됨.

3-2 정책 제언

○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의 사업 포기 등을 감안하고, 사업효율화를 위하여2016년 중간평가를 수행하였고, 사업중단 등 재조정이 이루어졌음.

○ 2020년부터 시작하는 광역연계 8개 사업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재 시군개발 사업의 조정 뿐 아니라 광역사업에 대한 조정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한스타일 육성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6억, 2019년예산 기준 9%) 및 사업방식 변경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전통문화융복합상품자원화 사업과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세부 사업 내 내역·내내역 사업의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고, 다수의 소액사업이 나열되어 보조사업을 통한 사업효과가 미미함.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함과 동시에 예산 감축으로 판정함. ·내내역 사업인 한국적생활문화공간만들기(3.7억), 내역사업 전통문화융복합상품자원발굴(6.3억)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내역사업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 육성자원(55억)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함.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연출 등 사업 내용은 의미가 있으나 재외공간 전체 사업량과 비교하여 사업효과가 미미하므로 시범공간조성, 홍보관 조성 등 일부 전시성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청년기업 지원, 사업아이템 발굴 등 중앙정부의 한스타일 육성지원사업 역할을 정비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전통문화산업진흥에 대해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지원을 적시하고 있지 않음.

- 문화기본법 제5조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의무라 판단됨.

< 문화기본법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이하 생략).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0., 2011. 5. 25., 2014. 1. 28., 2016. 3. 29.>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간생략)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개별 내역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문화유산', '전통문화' 등 포괄적 개념을 통해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됨.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은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확산,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 육성지원(한복, 한지, 한식), 전통문화 융복합 자원 발굴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3항 9호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목적이 명확하지만, 모든 전통문화 범위에 국가보조사업정책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함.

○ 사업수혜자 범위는 전체 국민으로 광범위하지만, 그 혜택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불명확함. 예를 들면, 한스타일 육성지원 사업 중 한복관련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한복체험에 그친다면 이 사업의 의의가 높지 않다고 판단됨. 전통문화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있는 궁극적인 혜택에 대해 언급되어야 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이 보조사업은 한국적 생활공간, 전통문화대표분야(한복, 한지), 한식문화진흥사업, 전통문화융복합자원발굴로 구성되어 있음.

- 크게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와 전통문화융복합자원발굴이 주된 사업인데, 생활공간, 한식 등 여러 세부 내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
- 한국적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확산, 전통문화대표분야 육성지원, 전통문화육복합자원발굴 내역사업간 목적 및 역할이 불분명함.
- 전통문화 분야가 구분되거나 사업방식(전시회지원, 센터운영, 홍보, 연구 등)이 구분되는 등 각 내역사업의 내용이 세부사업의 목적과 어떻게 연계되는 지 명확하지 않음. 또한, 내내역사업의 경우 소액을 통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함.

○ 보조사업 집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사업 성과지표 역시 한복, 한지 육성사업 만족도, 활성화프로그램 참가자수 등 대표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우리 전통문화육성에 관한 사업으로 창업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으나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임.

○ 농식품부 한식관련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업을 부처간에 내용을 조율함으로써 오히려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현재까지 사업 성과로 미루어보아 사업의 연장은 타당하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움.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개별 사업이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적 확산에 적절한 규모라 보기 어려우나 행정비용이 높은 사업은 아님.

- 민간경상보조 66억 원 사업 중 행사성, 홍보성 경비가 높아 사업내용 효율화가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문체부 자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1차 보조사업자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원연합회등에 대해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유일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공모, 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라 보기 어려움.

- 해당 기관의 규모, 사업예산 등 자부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점검, 중간보고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움.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매주 사업별 주간보고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소명서를 제출받는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내역, 내내역 사업의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고, 보조사업을 통한 사업효과가 미미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함과 동시에 예산 감축으로 판정함.

○ 한국적생활문화공간만들기(3.7억), 전통문화융복합상품자원발굴(6.3억)의 내내역사업을 조정하고 전통문화자원 대표분화 육성지원 사업과 통합하는 등 사업방식 변경 및 6억 감축(9%)으로 판정함.

○ 개별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2 정책 제언

○ 국외 한국적 공간에 대한 홍보를 위한 한스타일 접견실 조성 사업은 상징적인 취지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효과 측면에서 그 효과가 미미함. 선정된 재외공간 이외에 벤치마크한 공관들의 사례가 향후 성과로 나타나야 시범공간조성 사업의 취지가 발생한다고 판단됨.

○ 시범공간조성, 홍보관조성 보다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청년기업 지원, 사업아이템 발굴 등 중앙정부의 한스타일 육성지원사업의 역할을 정비해야 함.

○ 내역사업 구성 재편이 필요함.

- 전통문화 대표분야 발굴 및 지원: 한복분야지원, 한식분야지원, 한지분야지원, 기타
- 전통문화포털 운영 및 활성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해외작은도서관 조성(ODA)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3.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해외작은도서관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게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을 요구하도록 함 · 해외작은도서관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재정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시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5%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가점 형식으로 반영하도록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보조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조>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보조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포함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국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교육기회 증진 및 문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범세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지원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지역 어린이·청소년·지역주민들의 교육기회 증진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수혜자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저개발국 대상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의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됨

○ 내역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교육환경 개선 및 문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관련 물품 및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보조사업은 매년 10개 내외의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어, 2018년 말 현재 13개국 123개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특성 상 자체 수행이 어렵고 국제협력업무 관련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단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방식이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의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작성한 종합시행계획 상의 무상원조사업으로 타 부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음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해당지역 내 어린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수원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을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므로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함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폐지된다면 그간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하며 구축해 온 저개발국 국가와의 미래지향적 동반성장 반려자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손실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체 사업비 중 행정비용(인건비, 운영비)의 비중은 10% 내외로 보조금의 규모가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 적정 규모임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490백만원	570백만원	507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490백만원	570백만원	507백만원
	100%	100%	100%

○ 보조사업 예산 규모 산정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양자 무상원조 재원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지역별 재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하며,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조사업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양자 무상원조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국가 정책상 불가피한 경우로 소요 경비 전액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기관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의 사업비에서 최소한의 자부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개발도상국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통하여 학생 및 교사들에게 정보접근(자료),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식함양 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수원국의 삶의 질 향상, 빈곤해소 및 미래인재 양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장(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내부규정(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였음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장에 보조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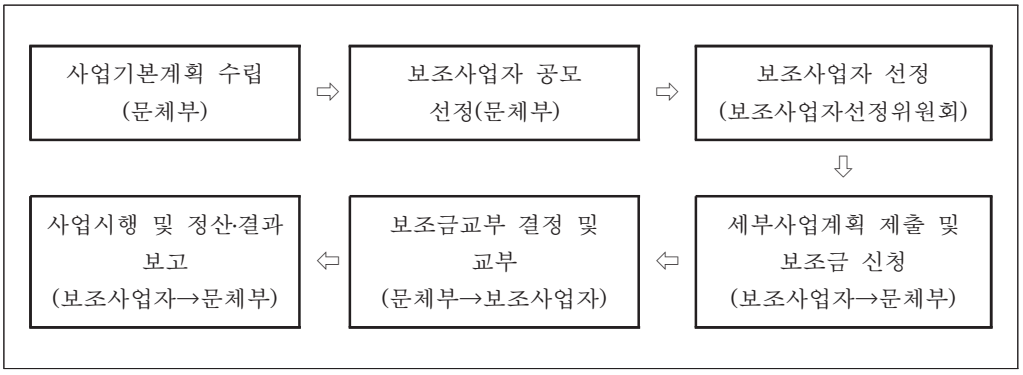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며, 관련 업무 추진실적 및 전문성을 갖추고 해외 인지도 및 문화·체육·관광을 연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민간기관을 공모 방식을 통해 적절하게 선정함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2018.2.4.), 보조사업자로 적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는「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서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적절한 집행관리체계 및 규정을 두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에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부결정 취소 또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및 실집행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7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8장(보조사업 사후관리)에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도별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검증결과에 대한 오류 및 누락결과, 조치결과 등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여 실행하였는지 관리하며, 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거친 후 사업 정산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충실히 준수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생가능성도 현저히 낮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함

○ 보조사업을 통해 해외 작은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보조사업이 지속되어야 함

○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규모를 적정하게 편성해 왔음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적정하게 관리되어 왔음

3-2 정책 제언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설정이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공모 시 민간기관의 사업비 자부담 비율 5% 이상을 명시하고,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자부담 비율을 가점 형식으로 반영하도록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핵심관광지 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6.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감축('20년 사업예산은 2019년 대비 30억 원 감축(지자체자본보조 사업예산 감축)) ·2017 ~ 2021년(5년) 한시사업인데,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음 ·지자체자본보조 사업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대비 추진 실적이 저조하며, 사업비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음(2017년 38.9%, 2018년 55.1%)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차('19년) 사업종료 후 중간평가를 통해서 지자체자본보조 내역사업들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예산을 감축 조정하여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규칙 등에서 보조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타당성을 지님

< 관광기본법 제 13조 >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 >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 -관광콘텐츠 확충, 홍보·마케팅, 평가·모니터링, 관광환경개선, 지역관광 연계망 구축, 인력양성·교육-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지역관광의 공동브랜드화 및 콘텐츠 확충 등을 위해 지리적 인접성 또는 테마를 중심으로 3~4개 기초지자체를 권역으로 묶어 관광요소별 개선 및 지자체 간 협력사업 진행,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국정과제 73-4(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중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지정 및 집중육성'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1차 수혜자는 지자체, 지역 시민 등이고, 2차 수혜자는 해당 권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등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수혜자 범위가 광범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아웃바운드 관광객(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의 인트라바운드(국민의 국내여행) 전환으로 내수 진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은 총 10개 권역(39개 지자체)으로 나눠 지자체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보조사업은 관광환경개선, 이동·연계망 구축,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권역별 관광콘텐츠 확충, 홍보·마케팅, 성과관리·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어 보조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었고, 5년의 사업기간이 합리적으로 설정됨

○ 보조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들의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관광환경개선사업은 각 권역별 핵심 관광자원 및 교통 결절점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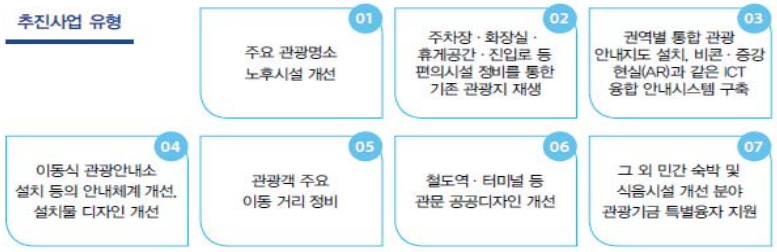

- 권역별 이동 연계망 구축은 권역 내 교통이동 편의 개선 및 지역 간 연계 추진을 목표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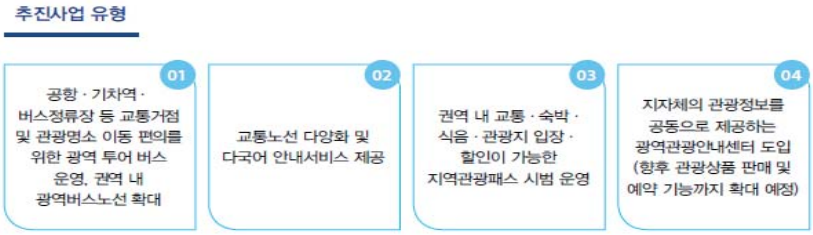

- 인력양성 및 교육은 권역별 해설사 육성 및 관광업계 서비스개선 교육을 목표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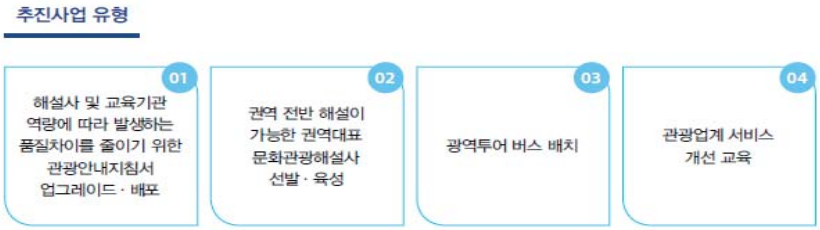

- 관광콘텐츠확충(S/W) 및 홍보마케팅은 콘텐츠공모전, PM기획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 지자체보조사업에서 자본보조 사업(관광환경개선사업) 지연으로 예산 실집행률이 매우 낮아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보조사업 예산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24,000	24,000	24,000	24,000	-	24,000	9,344	14,600	56	38.9
2018. 12월기준	23,951	23,951	23,951	23,951	-	23,951	13,200	10,751	-	55.1

- 2017년 결산국회에서 지자체보조사업의 집행부진과 민간보조사업의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 독려와 관리 강화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소폭 증대되었으나 2018년 12월 기준 예산 실 집행률이 55.1%에 그침

- 2019년 3차 년도 사업종료 후 중간평가를 통해서 향후 보조사업의 추가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권역별로 지역의 특색과 경쟁력이 있는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 지자체보조사업은 지자체 간 협력과 공동마케팅을 통한 지역브랜드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는 단기적인 수익창출이 곤란하여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사업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민간보조사업은 관광콘텐츠 확충과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니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으며 국가 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민간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함

○ 기존 국내관광 정책은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3~4개 지자체를 특정 테마를 위주로 묶어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타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없으며, 역사・인문자원 및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3~4개 지자체를 '권역'으로 묶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도 그간 추진된 바가 없어 타사업과의 통합 가능성이 없음

○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은 2017~2021년(5년간) 한시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연계형 사업으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새로운 정책실험의 결과도출을 위해 사업이 존속되어야 함

○ 권역별 중장기 실행계획(5개년)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이 중단된다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신뢰상실, 지방재정계획의 수정변경, 지자체간 협업구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관광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동력이 상실되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관광산업의 고도화에 역행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은 PM 기획, 관광콘텐츠 공모, 홍보마케팅을 수행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관광환경개선, 지역이동연계망,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지자체보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예산 규모가 적정하게 구성되었음

<자치단체보조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12,600백만원	13,600백만원	20,444백만원
	50%	50%	50%
자치단체부담(경상)	4,600백만원	4,600백만원	4,600백만원
	50%	50%	50%
자치단체부담(자본)	8,000백만원	9,000백만원	15,844백만원
	50%	50%	5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부담)	%	%	%
합계	25,200백만원	27,200백만원	40,888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보조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11,400백만원	10,351백만원	8,806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11,400백만원	10,351백만원	8,806백만원
	100%	100%	100%

<내역사업별 예산규모>

구 분	'18예산	'19요구
□ 핵심관광지 육성	240억 원	293억 원
▪ 관광환경개선 및 이동.연계망 구축	-관광환경 개선 90억 -이동망·연계망 구축 36억 -인력 양성 및 교육 10억	-관광환경 개선 158억 -이동망·연계망 구축 36억 -인력 양성 및 교육 10억
▪ 관광콘텐츠확충 및 홍보마케팅	-사업운영 및 진단·컨설팅 23.3억 -관광콘텐츠 확충 41.4억 -홍보·마케팅 31.7억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7억	-사업운영 및 진단·컨설팅 17.5억 -관광콘텐츠 확충 41.4억 -홍보·마케팅 22.1억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7억
▪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0.5억	-사업관리비 0.5억

- 지자체자본보조 사업의 사업 지연으로 사업추진 2년간(2017년~2018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아 3년차('19년) 사업종료 후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추계의 재 산정이 필요함

○ 지자체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 50%를 준수하고 있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정액 보조사업으로 보조율을 적용받지 않는데, 그 기준이 적절함

○ 본 보조사업은 5년간 한시적 사업이며, 권역별 '중장기 실행계획 보고서'(총 10개)에 중기재정소요액 추계가 적절하게 마련되었으나, 3년차('19년)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 실적과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검토하여 재정추계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음

-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제 8, 9조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함

○ 지자체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은 기본계획수립 → 선정위원회, 추천위원회구성 → 선정기준수립 → 지자체 수요조사(20권역) 및 추천위원회 추천(38권역) → 현장답사,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 10개 권역을 선정하였고, 선정기준으로 관광객유입량(빅데이터 활용), 관광수용여건, 관광잠재력, 연계타당성, 지자체 부담능력 및 추진의지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를 적절하게 선정함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은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8, 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짐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은 사업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보유한 한국관광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교부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는 콘텐츠 공모사업과 여행상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간접보조사업자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기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보조 사업에서 문체부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하고, e-호조를 통해 집행하며, 연 3회 정도 사업수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집행을 점검하지만, 실집행률이 저조함

○ 민간경상보조 사업관리는 한국관광공사가 담당하며 보조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PM단과 권역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집행체계를 확립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지역명소육성팀에서는 회계인력 채용(2명)으로 통하여 하위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시스템 실적 입력을 관리하고 있는 등 보조사업 집행 모든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적절히 집행하고 있음

<민간보조사업 집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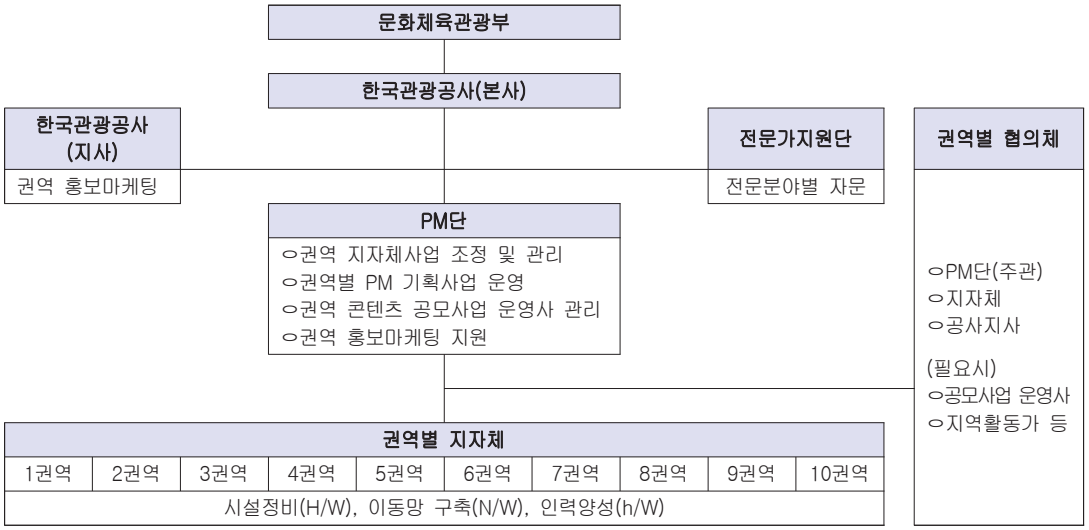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사후절차와 규정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사업 수행 완료 후, 자산취득에 따른 집행 내역 자산등재 및 자산관리를 실시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외부회계법인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보조금 정산보고와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을 추진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짐

-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5개년 중장기 실행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의 중도탈락 조치는 없으나, 매년 권역별 사업평가를 통하여 우수권역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2017년 보조사업이 시작된 이후 부정수급이 한 건도 없으며, e-나라도움시스템상의 부정수급의심 통보 시 즉시 상황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지역명소육성팀 내 회계인력(2명)이 상주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집행, 정산 전반에 걸쳐 준용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지역명소육성팀의 회계인력을 통하여 부정수급방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 국정과제사업이며, 핵심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하며, 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되고, 2017~2021년(5년간) 한시사업으로 2021년 사업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는 내역사업별로 산정근거를 제시하여 예산규모가 적정하나, 지자체자본보조(관광환경개선사업) 사업의 지연으로 2017년~2018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2017년 38.9%, 2018년 55.1%)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재점검 및 중기재정계획의 수정과 재정추계의 재산정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고, 보조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3-2 정책 제언

○ 지자체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2019년 사업예산 대비 30억 원을 감축함('19년 지자체자본보조 사업예산의 20% 상당액)

○ 지자체자본보조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3년차('19년) 사업종료 후 중간평가를 통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보조사업 조기 검토·교부 및 집행 독려를 통해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도 각 권역마다 균등하게 매년 관광콘텐츠 확충 및 홍보마케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Ⅰ)